



정책보고서 2014-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2013년도 추진실적 및 5개년 종합평가

정홍원 외

【책임연구자】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영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태균 숭실대학교 교수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류명식 서울복지재단 전략경영본부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

문성현 백석대학교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원 연구위원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효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류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간사 <<

정책평가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란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하기로 결정한 일련의 활동이라는 정책의 기본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정책의 당위성, 정책의 집행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정책의 효과,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성취 정도, 동일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보다 나은 방법이 있는가 하는 정책대안의 효율성 등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정책평가이다. 또한 정책평가는 정책이 당초 의도한대로 집행되었는지 진단하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정책의 기획과 결정, 집행에서 효과성 증대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5년 마다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전략이며 종합 계획이다. 본 보고서는 2013년에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미래세대가 꿈을 키우는 복지,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복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 위기대응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등 5가지 비전을 설정하였다. 또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16개 영역에 걸쳐 52개 중점 추진과제와 153개의 세부시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3년에 새롭게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추진에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사회보장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요약 1

제1장 평가 개요 및 총괄 평가

제1절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평가 개요 3

- 1.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평가대상 3
- 2.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평가 개요 7

제2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총괄 평가 11

- 1.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계획 평가 11
- 2.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실행 평가 20
- 3. 총괄평가의 시사점과 제언 31

제2장 보육·가족 분야

제1절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1-가) 37

제2절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1-나) 46

제3절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1-다) 56

제4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1-라) 77

제3장 아동·청소년 분야

제1절 저소득 아동청소년지원강화(2-가) 90

제2절 아동청소년 역량강화(2-나) 97

제3절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2-다) 103

제4장 노인 분야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3-가) 112

제2절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3-나) 122

제3절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3-다) 129

제4절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3-라) 134

제5장 장애인 분야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4-가) 143

제2절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4-나) 152

제3절 장애인 권익 증진(4-다) 159

제4절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선진화(4-라) 162

제6장 일자리 분야

제1절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5-가) 168

제2절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5-나) 178

제3절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5-다) 187

제7장 소득보장 분야

제1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6-가) 199

제2절 제도 운영의 합리화(6-나) 218

제3절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6-다) 226

제8장 의료보장 분야

제1절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7-가) 234

제2절 의료보장 내실화(7-나) 246

제9장 복지전달체계 분야

제1절 지역의 복지수행역량 강화(8-가)	270
제2절 행정인프라의 합리화(8-나)	282
제3절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8-라)	294
제4절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8-마)	298

제10장 민간자원 분야

제1절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9-가)	309
제2절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9-나)	323
제3절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9-다)	330
제4절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9-라)	338

제11장 교육복지 분야

제1절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10-가)	346
제2절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10-나)	354
제3절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10-다)	365
제4절 유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10-라)	371

제12장 근로자복지 분야

제1절 공공근로복지 증진(11-가)	384
제2절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11-나)	390
제3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11-다)	399
제4절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계 구축(11-라)	407
제5절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11-마)	413
제6절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11-바)	418

제13장 주거복지 분야

제1절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12-가)	428
제2절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12-나)	443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12-다)	446

제14장 에너지복지 분야

제1절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13-가)	465
-----------------------	-----

제15장 문화체육복지 분야

제1절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14-가)	476
제2절 복지관광 활성화(14-나)	491
제3절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14-다)	496

제16장 여성복지 분야

제1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15-가)	512
제2절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15-나)	522

제17장 농어촌복지 분야

제1절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16-가)	535
제2절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16-나)	560
제3절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16-다)	565
제4절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16-라)	582

제1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야별 평가결과와 정리	597
제2절 평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606

표 목 차

〈표 1-1〉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영역,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3

〈표 1-2〉 세부시행과제 평가 지표와 기준 9

〈표 1-3〉 중점추진과제의 평가 지표와 기준 10

〈표 1-4〉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기본방향 13

〈표 1-5〉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기간 동안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변화 21

〈표 1-6〉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의 연도별 추이 21

〈표 1-7〉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분야별, 연도별 추이 22

〈표 1-8〉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연도별 추이 23

〈표 1-9〉 자살률의 연도별 추이 24

〈표 1-10〉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다문화 수용 25

〈표 1-11〉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도별 추이 26

〈표 1-12〉 15~64세의 고용률 및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 26

〈표 1-13〉 OECD 국가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의 불평등도 감소 수준 29

〈표 2-1〉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1-가) : 영역별 평가결과 38

〈표 2-2〉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1-가-1) : 영역별 평가결과 40

〈표 2-3〉 양육수당 지원 도입 및 확대(1-가-2) : 영역별 평가결과 42

〈표 2-4〉 보육료 지원체계 효율화(1-가-4) : 영역별 평가결과 44

〈표 2-5〉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1-나) : 영역별 평가결과 46

〈표 2-6〉 취약가정 보육지원 강화(1-나-1) : 영역별 평가결과 51

〈표 2-7〉 평가인증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지원 강화(1-나-3) : 영역별 평가결과 52

〈표 2-8〉 보육인력 자격관리와 근로환경 개선(1-나-4) : 영역별 평가결과 55

〈표 2-9〉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1-다) : 영역별 평가결과 56

〈표 2-10〉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1-다-1) : 영역별 평가결과 60

〈표 2-11〉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1-다-2) : 영역별 평가결과 66

〈표 2-12〉 한부모가족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1-다-3) : 영역별 평가결과 73

〈표 2-13〉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확충 및 기능 강화(1-다-4) : 영역별 평가결과 76

〈표 2-1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1-라) : 영역별 평가결과 77

〈표 2-15〉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지원 강화(1-라-1) : 영역별 평가결과 80

〈표 2-1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정서발달 지원(1-라-2) : 영역별 평가결과 82

〈표 2-1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다문화 사회인식 개선(1-라-3)
: 영역별 평가결과 85

〈표 3-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2-가-1) : 영역별 평가결과 92

〈표 3-2〉 드림스타트 대상자 확대(2-가-2) : 영역별 평가결과 93

〈표 3-3〉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2-가-3) : 영역별 평가결과 94

〈표 3-4〉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2-가-4) : 영역별 평가결과 96

〈표 3-5〉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2-나) : 영역별 평가결과 97

〈표 3-6〉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2-나-1)
: 영역별 평가결과 100

〈표 3-7〉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2-나-2) : 영역별 평가결과 102

〈표 3-8〉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2-다) : 영역별 평가결과 104

〈표 3-9〉 아동청소년 안전체계 강화(2-다-1) : 영역별 평가결과 106

〈표 3-10〉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2-다-2) : 영역별 평가결과
..... 108

〈표 3-11〉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2-다-3) : 영역별 평가결과 109

〈표 4-1〉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3-가) : 영역별 평가결과 114

〈표 4-2〉 급여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3-가-1) : 영역별 평가결과 116

〈표 4-3〉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3-가-2) : 영역별 평가결과 118

〈표 4-4〉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3-가-3) : 영역별 평가결과 120

〈표 4-5〉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3-가-4) : 영역별 평가결과 122

〈표 4-6〉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3-나) : 영역별 평가결과 123

〈표 4-7〉 치매 예방 및 치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3-나-1) : 영역별 평가결과 125

〈표 4-8〉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3-나-2) : 영역별 평가결과 127

〈표 4-9〉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3-나-3) : 영역별 평가결과 129

〈표 4-10〉 노인자원봉사 활성화(3-다-1) : 영역별 평가결과	132
〈표 4-11〉 노인 여가활동 지원(3-다-2) : 영역별 평가결과	134
〈표 4-12〉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3-라) : 영역별 평가결과	135
〈표 4-13〉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3-라-1) : 영역별 평가결과	128
〈표 4-14〉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인식 개선(3-라-2) : 영역별 평가결과	140
〈표 5-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4-가) : 영역별 평가결과	146
〈표 5-2〉 장애인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4-가-1) : 영역별 평가결과	149
〈표 5-3〉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4-가-2) : 영역별 평가결과	152
〈표 5-4〉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4-나-1) : 영역별 평가결과	156
〈표 5-5〉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강화(4-나-2) : 영역별 평가결과	159
〈표 5-6〉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4-다-1-①) : 영역별 평가결과	162
〈표 5-7〉 장애인 판정 등록체계 개선 및 전달체계 개편(4-라-1) : 영역별 평가결과	165
〈표 6-1〉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5-가) : 영역별 평가결과	170
〈표 6-2〉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재정효율화(5-가-1) : 영역별 평가결과	172
〈표 6-3〉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5-가-2) : 영역별 평가결과	175
〈표 6-4〉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5-가-3) : 영역별 평가결과	177
〈표 6-5〉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5-나) : 영역별 평가결과	180
〈표 6-6〉 자립여건 조성(5-나-1) : 영역별 평가결과	182
〈표 6-7〉 자립능력 강화(5-나-2) : 영역별 평가결과	184
〈표 6-8〉 자립토대 구축(5-나-3) : 영역별 평가결과	187
〈표 6-9〉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5-다) : 영역별 평가결과	189
〈표 6-10〉 공공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5-다-1) : 영역별 평가결과	191
〈표 6-11〉 장애인 일자리 확대(5-다-2) : 영역별 평가결과	193
〈표 6-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 확대 및 유형개편(5-다-3) : 영역별 평가결과	194
〈표 6-13〉 장애인 생상품 판매 활성화(5-다-4) : 영역별 평가결과	196
〈표 7-1〉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6-가) : 영역별 평가결과	202

〈표 7-2〉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6-가-1-①) : 영역별 평가결과	206
〈표 7-3〉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6-가-1-②) : 영역별 평가결과	209
〈표 7-4〉 노후설계 지원 강화(6-가-2) : 영역별 평가결과	212
〈표 7-5〉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화(6-가-3) : 영역별 평가결과	216
〈표 7-6〉 기초노령연금 확대(6-가-4) : 영역별 평가결과	218
〈표 7-7〉 제도 운영의 합리화(6-나) : 영역별 평가결과	220
〈표 7-8〉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합리화(6-나-1) : 영역별 평가결과	223
〈표 7-9〉 국민연금의 투자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대(6-나-2) : 영역별 평가결과	226
〈표 7-10〉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6-다) : 영역별 평가결과	228
〈표 7-1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6-다-1) : 영역별 평가결과	230
〈표 7-1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간의 연계성 제고(6-다-2) : 영역별 평가결과	231
〈표 8-1〉 의료안정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7-가) : 영역별 평가결과	238
〈표 8-2〉 보험료 체납자 축소(7-가-1) : 영역별 평가결과	242
〈표 8-3〉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세부시행과제 7-가-3) : 영역별 평가결과	246
〈표 8-4〉 의료보장 내실화(7-나) : 영역별 평가결과	250
〈표 8-5〉 의료보장성 강화(7-나-1) : 영역별 평가결과	256
〈표 8-6〉 의료보장 재정안정화 도모(7-나-2) : 영역별 평가결과	261
〈표 8-7〉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7-나-3) : 영역별 평가결과	265
〈표 8-8〉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7-나-4) : 영역별 평가결과	267
〈표 9-1〉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추진(8-가-1) : 영역별 평가결과	274
〈표 9-2〉 지자체 인력재배치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8-가-2) : 영역별 평가결과	277
〈표 9-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연계(8-가-3) : 영역별 평가결과	281
〈표 9-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고도화(8-나-1) : 영역별 평가결과	285
〈표 9-5〉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망 구축(8-나-2) : 영역별 평가결과	289
〈표 9-6〉 적정급여 관리체계 활용(8-나-4) : 영역별 평가결과	293
〈표 9-7〉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8-라) : 영역별 평가결과	295
〈표 9-8〉 정보 공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8-라-2) : 영역별 평가결과	297
〈표 9-9〉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8-마) : 영역별 평가결과	300

〈표 9-10〉 (가칭)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8-마-1) : 영역별 평가결과	302
〈표 9-11〉 사용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8-마-2) : 영역별 평가결과	305
〈표 10-1〉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9-가) : 영역별 평가결과	311
〈표 10-2〉 모금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9-가-1) : 영역별 평가결과	314
〈표 10-3〉 기부참여 증대를 위한 동기 제고(9-가-2) : 영역별 평가결과	318
〈표 10-4〉 다양한 모금주체의 모금활동 참여 지원(9-가-3) : 영역별 평가결과	320
〈표 10-5〉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9-가-4) : 영역별 평가결과	323
〈표 10-6〉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9-나) : 영역별 평가결과	324
〈표 10-7〉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9-나-1) : 영역별 평가결과	327
〈표 10-8〉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화(9-나-2) : 영역별 평가결과	330
〈표 10-9〉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9-다) : 영역별 평가결과	332
〈표 10-10〉 자원봉사 지원기반 마련(9-다-1) : 영역별 평가결과	334
〈표 10-11〉 자원봉사 영역확대를 통한 참여 확산(9-다-2) : 영역별 평가결과	338
〈표 10-12〉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9-라) : 영역별 평가결과	339
〈표 10-13〉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9-라-1) : 영역별 평가결과	341
〈표 10-14〉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9-라-2) : 영역별 평가결과	343
〈표 11-1〉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10-가) : 영역별 평가결과	348
〈표 11-2〉 저소득층농산어촌 급식비 지원(10-가-2) : 영역별 평가결과	350
〈표 11-3〉 근로장학금 확대(10-가-3) : 영역별 평가결과	352
〈표 11-4〉 든든자금 수요 확대(10-가-4) : 영역별 평가결과	354
〈표 11-5〉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10-나) : 영역별 평가결과	356
〈표 11-6〉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10-나-1) : 영역별 평가결과	359
〈표 11-7〉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10-나-2) : 영역별 평가결과	361
〈표 11-8〉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강화(10-나-3) : 영역별 평가결과	363
〈표 11-9〉 WEE 프로젝트 구축 운영(10-나-4) : 영역별 평가결과	365
〈표 11-10〉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10-다) : 영역별 평가결과	367
〈표 11-11〉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10-다-1) : 영역별 평가결과	369
〈표 11-12〉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사업(10-다-3) : 영역별 평가결과	371

〈표 11-13〉 유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10-라) : 영역별 평가결과	373
〈표 11-14〉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10-라-1) : 영역별 평가결과	375
〈표 11-15〉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10-라-2) : 영역별 평가결과	377
〈표 11-16〉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10-라-3) : 영역별 평가결과	379
〈표 11-17〉 장애학생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내실화(10-라-4) : 영역별 평가결과	381
〈표 12-1〉 공공근로복지 증진(11-가) : 영역별 평가결과	386
〈표 12-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11-가-1) : 영역별 평가결과	387
〈표 12-3〉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운영고도화(11-가-2) : 영역별 평가결과	389
〈표 12-4〉 체불근로자 임금채권보장(11-가-3) : 영역별 평가결과	390
〈표 12-5〉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11-나) : 영역별 평가결과	391
〈표 12-6〉 우리사주제 확산 지원(11-나-1) : 영역별 평가결과	393
〈표 12-7〉 기업복지 활성화(11-나-2) : 영역별 평가결과	394
〈표 12-8〉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내실화(11-나-3) : 영역별 평가결과	396
〈표 12-9〉 퇴직연금제도 활성화(11-나-4) : 영역별 평가결과	398
〈표 12-10〉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11-다) : 영역별 평가결과	400
〈표 12-11〉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11-다-2) : 영역별 평가결과	403
〈표 12-12〉 산재취약부분 안전관리 강화(11-다-3) : 영역별 평가결과	405
〈표 12-13〉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 활성화(11-다-4) : 영역별 평가결과	407
〈표 12-14〉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계 구축(11-라) : 영역별 평가결과	408
〈표 12-1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11-라-1-①)	
직업능력개발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11-라-1-②) : 영역별 평가결과	410
〈표 12-16〉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11-라-2-①)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사업 실시(11-라-2-②) : 영역별 평가결과	413
〈표 12-17〉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11-마) : 영역별 평가결과	414
〈표 12-18〉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11-마-1-①)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확대(11-마-1-②) : 영역별 평가결과	416
〈표 12-19〉 저소득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11-마-2) : 영역별 평가결과	418
〈표 12-20〉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11-바) : 영역별 평가결과	419

〈표 12-21〉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11-바-2) : 영역별 평가결과	422
〈표 12-2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11-바-3) : 영역별 평가결과	423
〈표 12-23〉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11-바-4) : 영역별 평가결과	425
〈표 13-1〉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12-가) : 영역별 평가결과	432
〈표 13-2〉 국민임대주택 공급(12-가-1) : 영역별 평가결과	436
〈표 13-3〉 영구임대주택 공급(12-가-2) : 영역별 평가결과	439
〈표 13-4〉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12-가-3) : 영역별 평가결과	443
〈표 13-5〉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12-나) : 영역별 평가결과	447
〈표 13-6〉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12-나-1) : 영역별 평가결과	450
〈표 13-7〉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12-나-2) : 영역별 평가결과	453
〈표 13-8〉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12-다) : 영역별 평가결과	456
〈표 13-9〉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12-다-1) : 영역별 평가결과	459
〈표 13-10〉 임대료차등화 시범사업 실시(12-다-2) : 영역별 평가결과	462
〈표 14-1〉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보장(13-가-1) : 영역별 평가결과	468
〈표 14-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13-가-2) : 영역별 평가결과	471
〈표 14-3〉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13-가-3) : 영역별 평가결과	473
〈표 15-1〉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14-가) : 영역별 평가결과	479
〈표 15-2〉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수지원(14-가-1) : 영역별 평가결과	485
〈표 15-3〉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14-가-2) : 영역별 평가결과	488
〈표 15-4〉 이주민 문화활동 활성화 및 상호이해증진 교육(14-가-3) : 영역별 평가결과	491
〈표 15-5〉 복지관광 활성화(14-나) : 영역별 평가결과	493
〈표 15-6〉 취약계층 복지관광(여행바우처)(14-나-1) : 영역별 평가결과	496
〈표 15-7〉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14-다) : 영역별 평가결과	498
〈표 15-8〉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지도사 양성배치(14-다-1) : 영역별 평가결과	502
〈표 15-9〉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14-다-2) : 영역별 평가결과	506
〈표 15-10〉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14-다-3) : 영역별 평가결과	509
〈표 16-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15-가) : 영역별 평가결과	516

〈표 16-2〉 국민이 체감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15-가-1) : 영역별 평가결과	519
〈표 16-3〉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15-가-2) : 영역별 평가결과	522
〈표 16-4〉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15-나) : 영역별 평가결과	526
〈표 16-5〉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15-나-1) : 영역별 평가결과	530
〈표 16-6〉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15-나-2) : 영역별 평가결과	532
〈표 17-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16-가) : 영역별 평가결과	538
〈표 17-2〉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가 특례 개선(16-가-1) : 영역별 평가결과	541
〈표 17-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16-가-2) : 영역별 평가결과	543
〈표 17-4〉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16-가-3) : 영역별 평가결과	547
〈표 17-5〉 농지연금사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16-가-4) : 영역별 평가결과	550
〈표 17-6〉 농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16-가-5) : 영역별 평가결과	553
〈표 17-7〉 어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16-가-5) : 영역별 평가결과	560
〈표 17-8〉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16-나) : 영역별 평가결과	561
〈표 17-9〉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16-나-1) : 영역별 평가결과	563
〈표 17-10〉 농어업인 질환 예방 및 농어업인 건강 증진 지원(16-나-2) : 영역별 평가결과	565
〈표 17-11〉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16-다) : 영역별 평가결과	568
〈표 17-12〉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16-다-1) : 영역별 평가결과	571
〈표 17-13〉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용자확대(16-다-2) : 영역별 평가결과	574
〈표 17-14〉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16-다-3) : 영역별 평가결과	578
〈표 17-15〉 농어촌 유학 활성화(16-다-4) : 영역별 평가결과	582
〈표 17-16〉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16-라) : 영역별 평가결과	584
〈표 17-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운용(16-라-1) : 영역별 평가결과	587
〈표 17-18〉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6-라-2) : 영역별 평가결과	589
〈표 17-19〉 농어촌 고령자 주거여건 개선(16-라-3) : 영역별 평가결과	592
〈표 17-20〉 이민여성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16-라-4) : 영역별 평가결과	574

그림 목차

<그림 1>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기본이념, 비전 및 지향성 1
<그림 1-1>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평가의 절차 8
<그림 1-2> 불평등도(지니 계수)의 연도별 변화 28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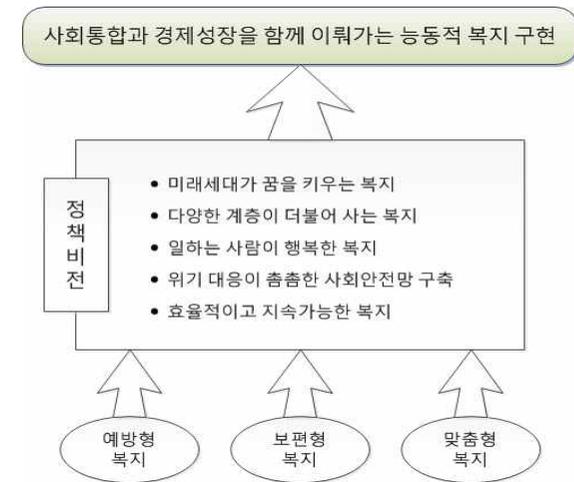
I.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개요

1. 목표, 지향성 및 중점투자 방향

□ (기본이념) 능동적 복지(active welfare)

-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되, 개인 및 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
 -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형성을 위해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

<그림 1>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기본이념, 비전 및 지향성



○ 능동적 복지의 4대 핵심 요소

- (복지국가체제 유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기본생활 보장 및 보호기능 수행
- (능동적 국민)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적극 개발하는 주체
- (능동적 공동체) 가족, 기업, NGO 등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역량을 극대화
- (능동적 국가)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되 국가복지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며,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정책적 지향

○ 예방형 복지

- 미래 사회적 위험의 극복을 위한 보육·아동·교육 등에 사전적 투자

○ 보편형 복지

- 기존의 선별적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 맞춤형 복지

-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적재적소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비효율·중복·낭비적 요인 제거

2. 분야 및 추진과제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분야

- 보육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소득보장, 의료보장, 복지전달 체계, 민간자원, 관련복지 등 10개 분야로 구분
- 관련복지는 교육, 근로자, 주거, 에너지, 문화·체육, 여성, 농어촌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장기발전방향은 총 16개 분야로 구성

□ 분야별 추진과제

- 분야별로 2~4개의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중점추진과제는 2~5개의 세부시행과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작성
- (2009년) 중점추진과제 52개, 세부시행과제 154개
→ (2013년) 중점추진과제 55개, 세부시행과제 174개

II. 공공 사회복지지출과 중점투자

1. 공공 사회복지지출

□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목표 수준

- 공공 사회복지지출 목표 설정의 고려사항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반을 둔 전망치 : GDP 대비 9.95%
 - 기존제도의 성숙과 일부 제도의 추가를 고려한 전망치 : GDP 대비 12.0%
 - 선진국(국민소득 3만 불)과의 차이를 고려한 적정지출 : GDP 대비 16.16%
-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목표 : GDP 대비 **12.1%**
 - 2013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전제로,
 -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미형 국가의 공공 사회복지지출 규모(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와 공적 연금제도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

□ 공공 사회복지지출 현황(2009~2013)

-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2013년에 GDP 대비 10.2%
 - 2009년 9.4%에서 2010~11년에 9.0%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
 - 공공 사회복지지출 목표치인 12.1%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한 전망치(9.95%) 보다 다소 높은 수준

〈표 1〉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2009~2013년)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공 사회복지지출 (GDP 대비 %)	9.4	9.0	9.0	9.6	10.2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SOCX), <http://stats.oecd.org>

○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포함)과 관련성이 높음

-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조세부담률의 변화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
- 2009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0.2%p 증가하였으며, 조세부담률은 0.5%p 그리고 사회보장부담률은 0.8%p 증가
-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사회보험료(사회보장부담률) 인상에 기인하며, 정부예산(조세부담률)을 재원으로 하는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

〈표 2〉 국민부담률의 연도별 추이

(단위 :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부담률	19.7	19.3	19.8	20.2	-
사회보장부담률	5.9	5.8	6.1	6.6	-
국민부담률	25.6	25.1	25.9	26.8	-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OECD, Revenue Statistics.

□ 사회복지지출의 중점투자 부문에 대한 평가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재정투입의 원칙은 기존 역할*은 핵심적 부문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투자적 사회지출'에 집중

* 노령, 실업 등에 의한 소득 중단이나 질병에 의한 예외적인 지출 위험

- 투자적 사회지출이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투자',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 '장애인 등 근로능력 제한자의 역량 형성',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의미

〈표 3〉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분야별, 연도별 추이

(단위 :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령	1.9	2.1	2.1	2.1	2.4	-
유족	0.3	0.3	0.3	0.3	0.2	-
무능력 관련 ¹⁾	0.6	0.6	0.5	0.5	0.5	-
보건 ²⁾	3.5	3.9	4.0	4.0	4.1	-
가족	0.7	0.8	0.8	0.9	1.2	-
적극적 노동시장	0.3	0.5	0.3	0.3	0.3	-
실업	0.3	0.4	0.3	0.3	0.3	-
기타 ³⁾	0.7	0.8	0.7	0.6	0.7	-
합계	8.2	9.4	9.0	9.0	9.6	10.2

1) 무능력 관련(incapacity related)은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관련 급여를 의미

2) 의료급여는 보건으로 분류됨

3)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중 대부분의 현금급여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됨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SOCX), <http://stats.oecd.org>

○ 중점투자 방향(계획)과 사회복지지출(결과)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

- 기존 역할은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기타 부문)의 지출을 억제되었으나,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공적연금 급여 증가로 노령 분야의 지출은 상당한 증가를 보임
- 보건 분야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전예방적 건강투자의 결과라기보다 건강보험의료급여의 진료비 상승에 기인하며, 특히 노인 의료비 증가가 주 원인임

- 아동·청소년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투자적 사회지출에 대한 강조는 보육비 지원의 본격화되면서 가족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보육비 지원을 제외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출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 근로능력 제한자의 역량 형성, 근로빈곤층 경제활동 참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인적자본 투자를 강조했던 계획과 달리 무능력 관련(장애, 산재·직업 병) 분야 및 적극적 노동시장 분야의 지출은 오히려 감소

III.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비전과 총괄 평가

□ 총괄평가의 개요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5가지 비전*을 제시
 - ※ ① 미래세대가 꿈을 키우는 복지, ②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복지,
 - ③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 ④ 위기대응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 제시된 비전에 따라 2009~2013년의 기간 동안 주요 사회지표의 변화를 통해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평가

1. 미래세대가 꿈을 키우는 복지

□ 출산율

- 출산율은 경제활동세대(출산가능 세대)가 현재의 삶을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표현하는 지표
- 2009~2013년의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정체 양상
 -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08로 가장 낮았으며,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9년에 합계출산율은 1.14에서 2012년에 1.30으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1.19로 하락

- 출생아 수 역시 합계출산율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48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44만 명 수준으로 하락

〈표 4〉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연도별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생아수(명)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합계출산율(명)	1.19	1.15	1.23	1.24	1.30	1.1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산율은 정책 노력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출산율 증가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못함

□ 자살률

- 자살률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대리지표이며, 우리사회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중요

〈표 5〉 자살률의 연도별 추이

(단위 :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6.0	31.0	31.2	31.7	28.1	28.5
10 ~ 19세	9.4	13.0	10.2	10.7	9.7	9.2
20 ~ 29세	44.5	49.6	47.6	47.8	38.8	36.2
50 ~ 59세	66.4	82.0	80.8	82.5	70.7	76.1
65세 이상	71.7	78.8	81.9	79.7	69.8	64.2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자살률은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하락세로 반전
 - 20대의 자살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미래세대의 행복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
 - 중고령층인 50대와 노인층의 자살률은 매우 높은 수준

2.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복지

□ 다문화 가족

-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 증가로 사회통합의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나, 가족 관계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다문화 사회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책적 대응과 정책의 성과는 아직 미흡한 상태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아직 높지 않음
 - 배우자의 다문화 수용성은 평균 3.5점(6점 만점)이며, 부정적 응답이 44.8% 긍정적 응답이 55.2%로 나타남

〈표 6〉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다문화 수용성¹⁾

(단위 : %)

전혀그렇지않다	조금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20.9	11.7	12.2	23.9	15	16.3

1) 배우자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는 6점 만점에 3.5점 수준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장애인 의무고용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09~2013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
 - 2008년에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부문 1.76%, 공공기관 2.05%, 민간부문

1.70% 수준이며, 2013년에 정부부문 2.85%, 공공기관 2.81%, 민간부문 2.39%로 상승함

-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여전히 의 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표 7〉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73	1.87	2.24	2.28	2.35	2.48
정부부문	1.76	1.97	2.38	2.48	2.61	2.85
공공기관	2.05	2.11	2.56	2.72	2.80	2.81
민간기업	1.70	1.84	2.19	2.22	2.27	2.39

자료 :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

□ 고용률과 실업률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기간 동안 고용률은 상승하였으며(62.9% → 64.4%), 실업률은 하락(3.81% → 3.25%)

〈표 8〉 15~65세의 고용률 및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고용률	63.8	62.9	63.3	63.8	64.2	64.4
실업률	3.32	3.81	3.81	3.49	3.30	3.25

자료 : OECD,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

-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고용률은 중간 수준으로 향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임금 격차 및 근로시간
 - 임금 격차
 - 전일제 기준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2008년 61.2%에서 2012년 62.6%로 상승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 임금격차(하위 10% 임금소득 대비 상위 10% 임금소득의 배율)는 2008년 4.78, 2010년 4.72, 2011년 4.85, 2012년 4.71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미국의 5.22(2012년)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수준에 해당
 - 저임금 근로자 비율(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8년에 25.4% 이며, 2012년에는 25.2%로 별다른 변화가 없음
 - 월 근로시간은 2009년 195시간에서 2013년 164시간으로 상당히 감소
 - OECD 자료에서는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163시간(2012년)으로 멕시코(2,226시간, 2012년) 다음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
 - 반면에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2년 기준 US\$28.9로 OECD 평균 US\$46.7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 상황과 노동시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음
 -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이며, '저고용률-저실업률'의 노동시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별 임금격차나 고소득/저소득의 임금격차를 유지
 - 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살펴본 결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복지'와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

4. 위기대응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불평등도와 상대빈곤율
 -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2009년에 0.345에서 2013년 0.336으로,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314에서 0.302로 감소하여 불평등도는 일정 정도 완화
 -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2008년 15.2%에서 2013년 14.6%로 다소 감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상당히 감소
 - 2008년 153만 명(인구 대비 3.2%) → 2013년 135만 명(인구 대비 2.6%)
 - 반면에 상대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인구) 중 기초보장수급자가 아닌 인구의 비율은 2008년 74.3%에서 2012년에 76.9%로 높아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소는 탈빈곤의 결과이기보다는 빈곤정책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음을 의미
- 사회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중 2010년 8월 기준 공적연금 가입률은 65%, 고용보험은 59%였지만, 2013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68%와 고용보험 68%로 상승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일부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상당히 증가
-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는 미흡
 - 조세제도와 공적이전소득(사회보장급여 등)이 불평등이나 빈곤을 감소시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및 빈곤 감소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

〈표 9〉 OECD 국가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의 불평등도 감소 수준(2011년)

	가처분소득기준(b)	시장소득기준(a)	격차(b-a)
스웨덴	0.273	0.435	0.162
독일	0.293	0.506	0.213
프랑스	0.309	0.512	0.203
한국	0.311	0.342	0.031
이탈리아	0.321	0.502	0.181
캐나다	0.316	0.438	0.122
호주	0.324	0.460	0.136
영국	0.344	0.525	0.181
미국	0.389	0.508	0.119

자료 : OECD, OECD.StatsExtracts

5.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공공 사회복지지출과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의 변화 추이를 보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정책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8년 28%에서 2013년 34.3%로 증가
 - 공공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사회보장부담률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가채무 증가는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복지재정 확대의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

□ 유사중복제도 정비와 누락 방지의 결과는 미지수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의 기간 동안 유사중복 프로그램 정리와 누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 추진
-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효율화 또는 재정절감 효과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IV. 분야별 평가

〈표 10〉 16개 분야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

분야	성과지표명	달성도(목표치 / 달성치)	
		2009년	2013년
보육 가족	평가인증 보육시설(%)	50 / 39.5	75 / 68.8
	가족친화 인증기업(개)	31 / 34	140 / 522
	가족친화지수(점)	45 / 49	51 / 58 (201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지급성공률(%)	62 / -	66 / 79.8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률(%)	35 / 13	50 / 27.4
아동 청소년	복지예산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0.12 / -	2.32 / 1.18
	드림스타트사업 수혜 아동(천명)	22.5 / 26.2	75 / 95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수혜 청소년(천명)	90 / 98	170 / 183
	안전사고 사망 아동(십만명당 명)	5.8 / 6.2	5.0 / 4.6
노인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노인인구 대비 %)	5.6 / 5.4	9.6 / 6.1
	치매검진 인원(천명)	630 / 690	840 / 2,250
	(노인) 자원봉사 활동자(천명)	50 / -	180 / -
	노인 여가 활동 지원(천명)	10 / -	100 /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 인원(천명)	130 / 130	200 / 313
	노인보호전문기관(개)	20 / 20	32 / 25
장애인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수당 수급비율(%)	21 / 20	30 / 25
	1급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수급비율(%)	11 / -	30 / 36.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4 / -	80 / -
	장애인주거시설 중 소규모 및 그룹홈 비율(%)	25 / -	15 / -
일자리	보건복지 사회서비스일자리 취업자 비중(%)	3.9 / -	5.0 / 6.3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성공률(%)	14.0 / 16.9	20.0 / 31.8
	장애인 보호고용률(%)	1.17 / -	1.80 / -
소득보장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 빈곤층 규모(%)	2.1 / -	1.7 / -
	공적연금 노후소득 보장율(%)	80 / -	85 / -

〈표 10〉 16개 분야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계속)

분야	성과지표명	달성도(목표치 / 달성치)	
		2009년	2013년
의료보장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비율(%)	25.1 / -	24.5 / 25.8
	암환자 보장률(%)	75 / -	80 /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	1.9 / 7.5	8.3 / 20.4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억)	15 / -	15 / 12
복지전달체계	중점서비스 연계대상자 비율(%)	1 / - (2010)	7 / -
	부적정 급여율(%)	10.8 / -	7.7 / -
민간자원	개인기부금(억원)	460 / 468	673 / 1,917
	사회복지분야 기업기부금(조원)	1.1 / 2.7	2.0 / 3.2 (2012)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참가인원(만명)	300 / 108	500 / 138
교육	저소득층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만명)	155 / 155	180 / 187
	근로장학금 지원(백억원)	12 / -	9.3 / 8.1 (2011)
	학자금대출 지원 인원(만명)	35 / -	107 / 29.5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학교 수(개)	1,440 / -	1,440 / - (201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수혜율(%)	65 / - (2010)	75 / - (2012)
	다문화가정 학생 입학초기 적응교육 만족도(%)	70 / -	80 / -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탈락율(%)	6.1 / -	4.0 / -
	wee클래스 확대 개소 수(개)	1,000 / 1,000	1,000 / 640 (2011)
	wee 센터 확대 개소 수(개)	49 / 49	50 / 16 (2011)
	wee 스킴 확대 개소 수(개)	2 / 5 (2010)	8 / 2 (2011)
	농산어촌 돌봄학교 지원수(개)	378 / -	378 / - (2011)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수(개)	110 / -	22 / 93 (2011)
	유치원 종일반 운영률(%)	95 / 100	100 / 100 (2012)
	장애영아 학급 운영(학급수)	53 / 70 (2010)	159 / 92 (2012)

〈표 10〉 16개 분야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계속)

분야	성과지표명	달성도(목표치 / 달성치)	
		2009년	2013년
근로자	저소득비정규직 생활안정자금 대부(억원)	320 / 246	340 / 425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자금 대부(억원)	2,200 / 1,084	200 / 177
	임금체불 근로자 체당금 지원(억원)	2,802 / 3,080	2,443 / 2,239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억원)	178 / 424	193 / 158
	우리사주 취득금액(조원)	4.7 / 4.6	6.9 / 5.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기금액(조원)	7.7 / 6.3	9.4 / 9.4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률(%)	7.9 / 11	10.6 / 14 (2012)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15 / 32.5	25 / 36 (20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도입사업장(개)	10 / 4 (2010)	23 / 9
	산업재해율(%)	0.68 / 0.7	0.59 / 0.59 (2012)
주거	업무상 질병자 수(천명)	10.5 / 8.7	9.6 / 7.4 (2012)
	장기공공임대 공급 물량(천호)	62.5 / 59.5	65.0 / 65.2
에너지	전세자금지원 이용자수(천명)	169.7 / 145.0	145.0 / 155.1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천가구)	65 / 64	80 / 49.6
문화체육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천명)	200 / 296	280 / 1,639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천명)	22 / 9	26 / 35
	복지관광 참가자 수(천명)	4.6 / 4.6	6.5 / 6.8
	생활체육 참여율(%)	35 / -	39 / 45.5
여성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7 / 7	10 / 12.3
	성매매방지정책 만족도(%)	67 / 69.7	71 / 72 (2011)
농어촌	성가정 폭력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82 / 84	86 / 86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자의 납기 내 징수율(%)	85 / 88	90 / 91
	세대당 건강보험료 지원액(원/월)	49,000 / 50,729	55,000 / 68,728
	영농도우미 지원(천 가구)	13 / 11.8	20 / 15.6
	가사도우미 지원(천 가구)	18 / 19.4	20 / 12

□ 보육가족 : 중점 추진과제 4, 세부 시행과제 16

- 성과지표 5개 중 '평가인증 보유시설 비율'과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률' 등의 2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평가인증 보유시설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2009년, 39.5%→2013년, 68.8%)하였으며,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률 역시 지속적인 상승하였으나, 실적에 비해 목표치를 높게 설정함
- 보육가족 분야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
 - 합계출산율 : 1.15(2009) → 1.23(2010) → 1.24(2011) → 1.3(2012) → 1.19(2013)

□ 아동·청소년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9

- 아동 보호와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안전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분야 사업의 성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개의 성과지표 중 '복지예산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의 비율'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분야의 재정투입이 미흡하였음을 의미
-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규정의 혼재, 분절적 사업 편제, 유사한 사업을 부처별로 분리 집행(방과 후 돌봄) 등으로 사업의 구조조정과 재설계 요청됨

□ 노인 : 중점 추진과제 4, 세부 시행과제 11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중에서 예방적 보건서비스와 재가 돌봄서비스는 원만한 사업 추진과 상당한 성과를 보임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노인보호, 사회참여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이는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예산확보의 어려움에서 기인
 - 자원봉사, 여가 등 사회참여 지원은 정책 내용과 우선순위의 재검토 필요

□ 장애인 : 중점 추진과제 4, 세부 시행과제 8

-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낮아 장애인 분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
 -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되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의 급여 인상과 대상자 확대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함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대신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대체되면서,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욕구가 활동지원제도에 집중되는 부작용 초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규모 시설과 그룹 홈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 미흡
- 활동지원 중심의 서비스 편중, 일자리에 대한 강조는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

□ 일자리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7

- 일자리는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서 근로자복지와 더불어 가장 강조한 분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
 -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목표를 달성
 -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자활사업의 취업성공률 강조는 바람직
-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며, 향후 사업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위한 개편이 필요

□ 소득보장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9

-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제도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체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 연금제도 재구조화를 통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 제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제 간의 연계성 제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은 가시적 성과가 없이 차기 미루어짐
- 현행 소득보장제도는 빈곤율 감소, 소득격차 완화에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개혁이 시급

- 성과지표인 비수급 빈곤층 규모,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률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필요

□ 의료보장 : 중점 추진과제 2, 세부 시행과제 7

- 의료보장성 강화와 제도의 재정안정화라는 상반된 목적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에서 정책추진의 난이도가 높은 영역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재정안정화는 상당한 성과를 나타냄
 - 의료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성과를 보임
- 의료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며,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검토가 시급

□ 복지전달체계 : 중점 추진과제 5, 세부 시행과제 14개

-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과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행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
 -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선은 논의에 국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의 과중함은 완화되지 않음
 - 사회서비스 관리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은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차기로 미루어짐

□ 민간자원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8

- 공공영역의 복지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영역의 복지자원 개발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둠
 - 개인과 기업의 모금과 기부는 당초 의도한 목표를 초과 달성

- 자원봉사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으며, 부처 간 연계 또는 조정 필요
- 사회복지시설 평가, 서비스 품질관리, 민간전달체계 개편 등은 별다른 변화 없이 이전의 관행을 답습하는 양상일 보임

□ 교육복지 : 중점 추진과제 5, 세부 시행과제 14

- 교육복지 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과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과 성과가 미흡
- 근로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Wee 프로그램, 장애아동 교육지원 등의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
 - 사업과 관련된 부처가 많은 상황에서 부처 간 연계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무부처의 관심도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교육복지 분야는 주무부처의 변경 등을 포함하여 구조조정이 필요

□ 근로자복지 : 중점 추진과제 6, 세부 시행과제 18

- 근로자복지는 당초 6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11개의 세부 시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시행 첫해에 중점 추진과제 3개와 세부시행과제 7개를 추가
-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었으며,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둠
 -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은 2008~9년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함에 따라 정책 수요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이후에 근로자복지 분야는 신규 사업 추가, 투입재정 증가 등으로 큰 폭의 계획 변동이 진행
 - 사업량의 증가와 목표의 상향 조정으로 초기에 집행의 어려움을 겪음
 -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퇴직연금 도입 등은 기업의 협조 없이 현재의 정책만으로 성과의 제고가 제한적

□ 주거복지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10

- 주거복지 분야는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지원, 그리고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주요 내용하는 사업으로 구성
- 임대주택 공급은 5년간 목표 대비 실적이 85.9%로 양적 목표달성에는 미흡
 - 매입·전세 방식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은 목표를 크게 상회
 - 향후 맞춤형 임대주택 뿐 아니라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전세자금 지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
 - 전세자금 지원의 목표 대비 실적은 111.4%이며, 80만 8천 가구를 지원
 - 향후 지원가구 및 용자금 상향조정, 수요자 중심의 제도설계 노력 필요

□ 에너지복지 : 중점 추진과제 1, 세부 시행과제 3

- 에너지 분야는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보장을 위한 요금감면 및 공급중단 유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구성
 - 에너지 이용보장 사업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회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부담과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부처와 연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복지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7

-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과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
- 문화바우처와 복지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대상자 확대는 주목할 성과이나, 대상자 확대에 의한 제도의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실화가 필요

□ 여성복지 : 중점 추진과제 2, 세부 시행과제 4

- 성매매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시행과제가 모두 전반적으로 잘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의 발생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 사후적 피해자 지원에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사전적 대책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

□ 농어촌복지 : 중점 추진과제 4, 세부 시행과제 16

- 농어업인 생활안정 지원과 의료보장 확대는 상대적으로 잘 추진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반면에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흡
 - 보육교육 지원은 주로 현금지원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한계를 보임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사업은 다른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조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
- 농업·어업 담당부처, 사회정책 담당부처,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정기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

V. 평가의 시사점과 제언

□ 사회보장 전략계획으로서 위상을 정립

-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현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획이자 전략계획

- 전략계획이란 계획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을 체계화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며,
-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하는 일련의 계획을 의미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전략계획이 아닌 사업목록의 성격이 강함

- 정책적 맥락과 비전 그리고 계획의 방향성간의 정합성이 부족하며, 목표와 수단(추진과제)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추진 전략과 우선순위가 부재
- 재정투자계획은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향후에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추상적 논의에 국한
- 국가 차원의 전략계획이라 하기에는 추진과제가 너무 많고(추진과제 55, 시행과제 174), 이로 인하여 추진과제 집행의 총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 향후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전략계획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한 보완 필요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현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체계화
- 추진 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재배치하고, 핵심과제 중심으로 사업의 개수를 대폭 축소
- 계획의 목표(비전, 지향성, 이념)과 수단(추진과제, 시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지도(map) 작성

□ 성과지표의 설정의 문제점과 총괄 성과지표의 부재

○ 정책 산출(output)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은 개선이 필요

- 분야별·사업별 성과지표는 대상자 증가, 제공기관 확충, 투입 예산 등 정책 성과(outcome)보다는 정책 투입(input)과 산출(output)에 해당하는 지표
- 제시한 지표들이 달성이 되었을 때 장기발전방향에서 제시된 정책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어떠한 거시지표가 그러한 변화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

- 향후에 총괄 지표부터 개별영역 지표들까지의 흐름도(flow chart)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총괄 성과지표의 부재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정책여건(맥락)부터 비전과 목표 그리고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분야별 그리고 과제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지표의 합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

○ 국가적 차원의 총괄 성과지표 설정의 중요성

- 거시적 총괄 성과지표는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정책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님
- 사회보장정책은 조세정책과 경제정책 등과 결합된 상황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사회지표 개선을 위해서 다른 정부 영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총괄적 성과지표는 중요
- 총괄 성과지표의 부재로 각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함

○ 향후에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핵심정책과 과제가 있고, 어떠한 주체들이 추진할 것이며, 세부 성과지표는 무엇이며, 투입재정 규모는 어떠한고, 결과적으로 어떤 거시적 성과지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계획 수립을 '구체적 총론과 추상적 각론'의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 현행 '추상적 총론과 구체적 각론'방식의 문제점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총론은 추상적 비전과 목표를 서술하고 있을 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음. 반면에 각론은 추진과제별로 세부적인 정책내용을 제시하고, 년 단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

- 현행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총괄하는 주체의 책임성은 미흡하게 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재량권을 축소하면서 책무성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 집행의 재량권 축소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성 부족과 집행 단계의 자율성 제약으로 연계
- ‘구체적 총론과 추상적 각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비전은 계획을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5년 후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관련 주체들간에 합의된 목표(agreed objective)이어야 하며 동시에 추진 전략과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
 - 성과지표는 계획과 정책의 산출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이며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
 - 추진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시행과제의 수를 대폭 축소
 - 총괄집행 주체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부여하여 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정책조정을 담당하고, 사업별 집행주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제고

*주요용어: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평가



제1장 평가 개요 및 총괄 평가

제1절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평가 개요

제2절 장기발전방향의 총괄 평가

1

평가 개요 및 총괄 평가 <<

제1절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평가 개요

1.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평가대상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종합계획
- 3차 계획(2009~2013)은 16개 영역, 52개 중점추진과제 및 153개의 세부사업의 구성

<표 1-1>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영역,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영역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보육 가족	자녀양육비용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비용지원확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확대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보육료지원체계효율화(전자바우처)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제고	취약가정 보육지원강화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 확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 확산, 내실화
		보육인력 자격관리와 근로환경 개선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한부모가족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기능강화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성장지원	
	결혼이민자 경제,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다문화 사회인식 개선	

4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 2013년도 추진실적 및 5개년 종합 평가

영역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아동 청소년	저소득 아동, 청소년 지원 강화	아동발달지원계획(디딤씨앗통장)확대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아동, 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확대
아동, 청소년 역량강화	아동, 청소년 권리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아동, 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다양화	아동, 청소년 권리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아동, 청소년 안전체계 강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다양화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	아동, 청소년 안전체계 강화	아동, 청소년 안전체계 강화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실종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실종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급여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
		장기요양인프라 확충과 적정분포유도
	치매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치매예방 및 치료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효과적인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노인여가활동지원	
	취약노인 보호서비스강화	
	취약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인	장애인소득보장강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강화 및 인식개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 검토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장애인 권익증진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확대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제도개선 추진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선진화	장애인편경, 등록 체계 및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일자리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재정효율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자립능력 강화		
노인 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자립토대 구축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호 고용 확대 및 유형개편	
소득보장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호 고용 확대 및 유형개편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제도운영의 합리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소득보장제도간 연계성 제고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국민연금 제정 안정화	
소득보장제도간 연계성 제고	국민연금 지급운용 체계개편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소득보장제도간 연계성 제고	국민연금 제정 안정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소득보장제도간 연계성 제고	국민연금 제정 안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연계성 제고방안 마련	

영역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의료보장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체납자 축소
		의료안전망확충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의료보장 내실화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보장 재정안정화 도모 건강검진 내실화 진료비지불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예산기반 강화 지자체 인력배치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기반 강화
복지전달 체계	지역의 복지수행역량강화	중앙-지방 간 연계 콜 상담기능 강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 복지제좌 도입 및 다부처 복지전산망 연계 유사, 중복복지사업조정강화 적정급여 관리체계의 활용
	행정인프라의 합리화	전자바우처 사업확대 추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적용 확대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	사회서비스 자격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체계화 정보공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가칭)사회서비스 이용자 관리법 제정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	사용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활성화	모금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기부참여 증대를 위한 동기 제고 모금시장 경쟁체계 마련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확대 및 활성화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화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교육복지	저소득층교육기회보장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복합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Wee 프로젝트 구축 운영
		영어 교육격차 완화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농산어촌 전일학교 육성
		유아학비 지원 확대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	유치원 종일반 운영확대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영역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근로자 복지	공공근로복지 증진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 지원 근로자복지포탈사이트 운영 고도화 체불근로자 임금채권 보장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
	산업재해보상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	산재보험 적용확대 산재취약부문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활성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거복지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 체계 마련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
에너지 복지	에너지비용부담 완화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보장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문화체육 복지	복지 관광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관광 지원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체육지도사 양성배치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여성복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
농어촌 복지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기초생활보장제 농어가 특례 개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확대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 농지연금 도입
		농어업인 재해보상 강화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농어업인 질환 예방 및 농어업인 건강 증진 지원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농어촌 보육교육여건 개선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용자확대 농어촌 학생의 고등 교육기회 확대 농어촌유학활성화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

2.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평가 개요

가. 평가 목적과 원칙

-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9~2013)’의 시행이 종료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점검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간 계획의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실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 환류기능을 강화
- 평가의 원칙
 - 2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평가,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연차별 평가 등 선행 평가와 일관성 유지
 - 사업계획 - 집행 - 성과-환류 등 정책과정(policy process) 전반을 평가
 -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체계성 평가
 - 목표-수단 정합성의 관점에서 ‘기본방향 - 분야별 목표 - 중점추진과제 - 세부시행과제’ 체계의 타당성을 평가
 - 5년의 시행기간 동안 정책여건 변화와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시행과제의 변동, 사업 집행성과의 연도별 변화 추이 등 변화와 대응에 초점을 두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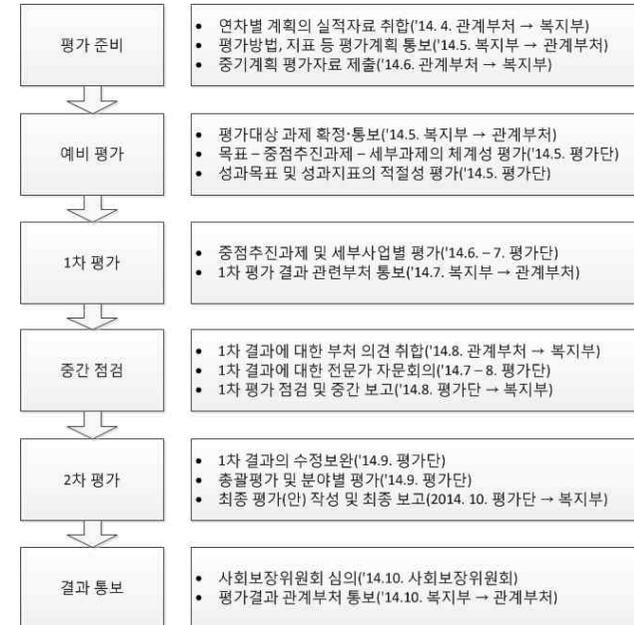
나. 평가 방법 및 절차

- 평가 방법
 - 평가 기본단위는 분야별 중점추진과제이며, 평가 지표는 ‘기획’, ‘집행’, ‘성과’의 3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정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계획서와 담당부처가 작성한 평가 자료를 서면심사 방

식으로 평가를 진행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09~2013년 연차별계획, 2009~2011년 연차별 평가, 그리고 2012~2013년 연차별 계획의 실적자료를 취합
- 제시된 양식에 따라 담당부처가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
-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담당부처 의견 청취와 전문가 간담회 실시
 - 1차 평가결과를 주관부처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부처의견을 청취
 -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평가진행과 결과에 대한 자문 실시
- 담당부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평가 결과를 정리

[그림 1-1]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평가의 절차



□ 평가 절차 및 일정

- 평가는 평가준비, 예비평가, 1차 평가, 중간점검, 2차 평가, 결과 확정 및 통보 등의 6단계로 진행
- 1차 평가 이후에 해당부처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
- 2차 평가는 중간점검을 통해 1차 평가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며, 이후에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

다. 평가지표 및 기준

□ 평가영역, 지표 및 기준은 세부시행과제와 중점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설정

- 중점추진과제는 기획, 집행, 성과환류의 3 영역에서 4개의 평가지표에 대해서 8개의 평가기준을 설정

〈표 1-2〉 중점추진과제의 평가 지표와 기준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기획	세부시행과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시행과제 선정의 타당성 •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시행과제의 연계성
	세부시행과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시행과제의 신설, 종료, 통합, 폐지 등의 적절성과 근거의 타당성
집행	집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추진주체 간 연계 및 협력 • 모니터링, 일정관리 등 집행관리의 적절성 •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성
성과환류	목표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대표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세부시행과제의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은 중점추진과제에 비해 세분화

- 평가지표는 기획 영역의 4개, 집행 영역의 3개, 그리고 성과환류 영역에 3

개 등 총 10개로 설정

- 평가기준은 기획 영역의 8개, 집행 영역의 8개, 그리고 성과환류 영역에 5개 등 총 21개로 설정

〈표 1-3〉 세부시행과제 평가 지표와 기준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기획	사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
	목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설정의 근거와 목표내용의 타당성 • 장기발전방향과 연차별계획의 사업목표 일관성
	수단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단(사업) 선택의 기준과 적합성 • 정책수단이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사업내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성 •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내용 및 급여수준의 적절성 • 재원 확보 및 투입의 적절성
집행	사업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주체, 절차, 사업기간 등의 타당성 • 전달체계 구축의 타당성 • 집행기관, 제공기관 및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자원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대비 자원(재원, 인력 등) 투입 현황 • 자원투입(계획)의 변경 및 그 사유의 타당성
	사업집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서비스(급여) 제공기관 관리 •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대국민 홍보 • 민원, 불편사항, 고충처리 등의 방안(제도적 장치)
성과환류	성과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타당성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적절성
	성과목표의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 및 그 내용
	제도개선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자체 점검을 통한 개선 노력과 정도 • 연차별평가, 내외부 지적사항의 개선 노력과 정도

제2절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총괄 평가

1.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계획 평가¹⁾

가.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주요 내용

(1) 정책 여건과 기본 방향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제1차 및 제2차와 거시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한 단계 도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기존정책을 유지하고 복지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 기존 제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개입의 폭을 확대
 - 기존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제고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정책 여건
 - 첫째, 세계경제 위기가 여전히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수 부진과 가계부채의 확대 등은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 둘째, 경제적 불안 요인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여파가 확산됨에 따라서 더욱 문제가 심화
 -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투자 위축과 사회보장 부담 가중으로 연계될 가능성
 - 셋째, 국내외적 경제 상황은 중산층 축소, 소득분배 격차 확대로 연결
 - 내수 둔화와 고용불안과 근로빈곤층의 확대가 되고 있으며, 빈곤의 세습화와 교육이나 건강에서의 양극화가 진행

1) 본 평가는 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및 재정투자 방향” 보고서(2009)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넷째, 복지서비스를 비공식적으로 담당해오던 가족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복지 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서 공공 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확충이 미흡
- 다섯째, 다문화 및 다민족 사회로의 진입이 되고 있으므로, 단순한 외국인 지원정책에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
- 여섯째, 지식-경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사회신뢰 제고, 사회자본의 확충과 고도화가 시급하고도 중요한 요소로 부상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기본 방향

- 성장 친화적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 이를 기반으로 내실화·효율화된 사회안전망을 전국민에게 제공하여,
-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

(2) 핵심 이념과 비전

- 핵심적 이념으로는 ‘능동적 복지’를 제시
 - 복지체제에 속한 각 주체들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능동적 국민’, ‘능동적 공동체’, 그리고 ‘능동적인 국가’를 통한 복지를 제시
 - ‘능동적 복지’는 기존의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 또는 학습국가(learnfare state) 등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개인의 책임성을 보다 강조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능동적 복지를 위한 정책적 지향성과 비전
 - (정책적 지향성) ‘예방형 복지’, ‘보편형 복지’, ‘맞춤형 복지’
 - (정책 비전) ① 저출산 해소를 위한 미래세대에 대한 강조, ②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③ 저소득층 보호와 일자리 제공에 대한 강조, ④ 사회안전망의 효율화에 대한 강조, ⑤ 복지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제

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표 1-4〉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기본방향

핵심과제	소통·협력으로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보장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
현실맥락/정책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축소와 소득분배 격차 확대 •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진입 • 사회적 신뢰수준의 저고, 사회자본 고도화 시급 • 복지욕구의 다양화 및 복지수요 증가 •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여파 확산 •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
정책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세대가 꿈을 꾸는 복지 •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복지 •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 • 위기대응에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적 지향	예방형 복지/보편형 복지/맞춤형 복지
기본 이념 및 철학	능동적 복지의 4대 핵심 요소 1. 복지국가체제 유지(Still Welfare State) 2. 능동적 국민(Active people) 3. 능동적 공동체(Active Community) 4. 현명하게 능동적인 국가(Intelligently Active State)
중점 투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사회적 자본 형성 • 전통적 사회위험 최소화 •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등)

(3) 재정의 중점투자 방향

-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를 바탕으로
 - 조세부담률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3.1% 증가하면서 내수 위축과 경제 활력이 크게 둔화되었다고 진단
 -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기조에서 재정을 운용
 -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추진, 조세부담 감소가 14조를 넘을 것으로 추산
 - 조세부담 완화의 순기능(세율 인하 → 내수 및 투자 증가 → 경기 활성화 →

조세수입 증가)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수입은 감소

- 지출 축소도 쉽지 않으며, 따라서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함을 암시

□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복지부문 지출 증가가 가능하다고 판단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에 비교하여 매우 낮으며, 국민소득을 1만8천불로 환원시켜서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
- 공공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국민부담률 수준에 비해서도 낮다는 점에서,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복지지출의 목표(2013년)를 GDP 대비 12.1%로 제시

- OECD 국가의 복지지출과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복지지출은 GDP 대비 16.16%가 적정 수준이나, 사회보장체계의 특성과 연금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GDP 대비 12.1%(2013년)를 목표로 제시
- 경제와의 상생 추구, 중점 투자방향을 선택해 집중할 필요를 강조
 - 제도 성숙에 따른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노령 분야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
 - 중점투자 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효율화, 그리고 가족 분야를 제시

나. 장기발전방향의 계획에 대한 총괄평가

(1) 장기발전방향의 작성 기초

□ 시장 친화적 사회보장정책과 사회투자 전략을 강조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를 경계하면서 대안으로서 ‘가족 정책’, ‘인적 자본 정책’을 강조
 - 사회투자 전략의 지속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는 추상적 수준의 논의에 국한

- 중산층 축소,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성장진화적 정책'과 '시장 활력 강화'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시
- 사회보장지출을 위한 재원 확보에 소극적 양상
 -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으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구조 개혁 등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재
 - 사회보장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확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재원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 원칙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
- 일자리 중심의 복지와 개인 책임성을 강조
 -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 '예방형 복지', '보편형 복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정책 내용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일부 빈곤층에 대한 처방에 국한
 - 예방형 그리고 보편형 복지의 핵심인 사회보험에 대한 계획이 미흡
 - 2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 비해서 보편적 복지의 특성이 약화
 - 능동적 복지의 내용은 국가의 역할에 비해 개인의 책임성을 우선
 - '개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기를 관리하되, 개인이 부득이 위험에 처하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제'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
-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제도의 효율성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역량 극대화'를 강조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계획
 - 기존 지출의 효율화를 통한 지출여력 확보를 추진하며, 맞춤형 복지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비효율·중복·낭비적 요인의 제거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

(2) 계획평가의 주요 내용

- 정책적 맥락과 정책 내용 간의 연계성 미흡
 - 정책적 맥락에서 제시된 여섯 가지 정책여건의 변화와 도전은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음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정책 비전, 계획의 방향성 및 주요 내용이 정책여건의 변화와 연계성이 미흡
 - '능동', '예방', '보편' 등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 등의 연관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음
 - 중산층 축소와 소득 격차 확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비전과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사회적 신뢰의 위기 역시 매우 중요한 지적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지는 불명확
 - '엄정한 제도 집행과 부패추방 노력'이 언급되어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나 복지효율화 등의 대책 역시 미비
 - 향후에는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목표(정책비전, 정책적 지향, 기본이념)와 계획(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지도(map) 작성 등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
- 재정 중점 투자 계획의 부재
 - 핵심과제와 정책적 지향에 따라 어떠한 정책들이 핵심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을 위하여 재정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재정 중점 투자 계획에서는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복지 지출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향후에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총괄적 수준에서 논의를 제시
 -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정책 목표와 내용이 제시되고, 각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집계/추계되는 등의 구체적인 재정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함

-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반면에,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
- 보건, 근로무능력, 그리고 가족 분야 등의 지출 증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노령 분야의 경우 제도가 성숙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논의하고 있으나, 소득 격차와 빈곤 등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이 노인이라는 점에서 다소 기계적 접근의 결과

□ 총괄 성과지표의 부재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정책여건(맥락)'부터 정책비전과 목표 그리고 재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 분야 및 중점추진과제에는 영역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영역별 성과지표의 합이 핵심 정책목표 달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
- 정책 산출(output)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은 개선이 필요
 - 대부분의 영역별 성과지표들은 시설의 이용 인원 증가, 제공기관 확충 등 정책 성과(outcome)보다는 정책 산출(output)에 해당하는 지표
 - 이러한 각 영역들과 제시한 지표들이 달성이 되었을 때 장기발전방향에서 제시된 정책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어떠한 거시 지표가 그러한 변화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
 - 향후에는 총괄 지표부터 개별 영역 지표들까지의 흐름도(flow chart)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국가적 차원의 총괄 성과지표 설정의 중요성
 - 거시적 총괄 성과지표는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님
 - 사회보장정책은 조세정책이나 경제정책과 결합된 상황에서 제시되어야 하

며, 따라서 사회지표의 개선을 위해서 다른 정부 영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총괄적 성과지표는 여전히 중요함.

- 성과지표가 부재하면서 구체적으로 각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함.
 - 예를 들어 '미래세대가 꿈을 꾸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핵심정책이 있고, 어떠한 주체들이 추진할 것이며, 세부 성과지표는 어떤 것이며, 소요 재정 규모는 어떠한고, 결과적으로 어떤 거시적 성과지표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했음.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작성 및 계획 수립 방식의 문제점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 '추상적 총론과 구체적 각론' 방식으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
 - 총론은 비전 제시나 방향 제시 정도로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성과지표도 제시되어 있지 못한 반면에, 각 정책영역별로는 매우 구체적인 정책제시와 성과지표들을 연 단위로 제시하고 있음
- 현행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사회보장의 총괄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반면, 사업의 집행주체에 대해서는 재량(discretion)의 여지를 상당히 줄이고 책무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구조
- 거시적 성과지표는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게 제시하고, 정책수단이나 추진성과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 총론과 추상적 각론'으로 전환이 바람직

(3) 장기발전방향의 계획 평가 소결

□ 새로운 사회문제 대두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을 위한 재정비 필요

- 1차와 2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계획과 집행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빈곤, 불평등 등에 대한 이슈가 현존하고,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같은 새로

은 정책 이슈들이 새롭게 부각

- 복지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 사회보장체계의 효율성을 강조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정책여건에 대한 처방으로 기존의 사회투자적 접근과 더불어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기조가 반영된 계획
 - 경제의 활성화를 기초로 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능동적인 대응
 - 예방적인 차원의 강화를 국가의 역할로 제시
-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보장체계의 효율화를 중시

□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미흡

- 정책적 맥락과 비전 그리고 정책방향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정책방향과 중점 재정 지출 방향 간의 일관성 있는 설명이 부족
- 거시적 방향과 각 영역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각 영역의 변화가 거시적 재정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결여

□ 정책 비전의 추상성 및 성과지표의 부재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추상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비전이 성과지표로 설정되지 않음
- 총괄 성과지표와 각 분야의 성과지표의 부재로 인하여 계획의 추진 주제, 추진 방법, 그리고 결과 평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한계

□ 계획수립의 방식을 '구체적 총론과 추상적 각론'으로 전환 필요

- 현행 '추상적 총론과 구체적 각론' 방식은 정책결정 및 총괄 집행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성 부족과 집행 단계의 재량성 제

약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구체적 총론과 추상적 각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2.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실행 평가

- 총괄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 제한적 범위에서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성과를 평가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재정계획 검토
 -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2009~2013년 계획의 성과를 판단

가. 사회복지 재정 지출과 중점 투자

□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목표 수준

- 공공 사회복지 지출 목표 설정의 고려사항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반을 둔 전망치 : GDP 대비 9.95%
 - 기존제도의 성숙과 일부 제도의 추가를 고려한 전망치 : GDP 대비 12.0%
 - 선진국(국민소득 3만불)과의 차이를 고려한 적정지출 : GDP 대비 16.16%
- 공공 사회복지 지출 목표 : GDP 대비 **12.1%**
 - 2013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전제로,
 -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미형 국가의 공공 사회복지지출 규모(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우리나라 연금제도 성숙도를 고려하여 목표 설정

□ 공공 사회복지 지출 현황(2009~2013)

-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2013년에 GDP 대비 10.2%
 - 2009년 9.4%에서 2010~11년에 9.0%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

가 추세

- 공공 사회복지 지출 목표치인 12.1%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한 전망치(9.95%) 보다 다소 높은 수준

〈표 1-5〉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 (2009~2013년)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공 사회복지지출 (GDP 대비 %)	9.4	9.0	9.0	9.6	10.2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SOCX), <http://stats.oecd.org>

○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포함)과 관련성이 높음

-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조세부담률의 변화와 유사한 추세를 보임
- 2009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0.2%p 증가하였으며, 조세부담률은 0.5%p 그리고 사회보장부담률은 0.8%p 증가
- 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사회보험료(사회보장부담률) 인상에 기인하며, 정부예산(조세부담률)을 재원으로 하는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

〈표 1-6〉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의 연도별 추이

(단위 :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세부담률	19.7	19.3	19.8	20.2	-
사회보장부담률	5.9	5.8	6.1	6.6	-
국민부담률	25.6	25.1	25.9	26.8	-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OECD, Revenue Statistics.

□ 사회복지 지출의 중점투자 부문에 대한 평가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재정투입의 원칙은 기존 역할*은 핵심적 부분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투자적 사회지출에 집중

※ 노령, 실업 등의 요인에 의한 소득 중단이나 질병에 의한 예외적인 지출 위험

- 투자적 사회지출이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투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투자',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 '장애인 등 근로능력 제한자의 역량 형성',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의미

〈표 1-7〉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분야별, 연도별 추이

(단위 : GDP 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령	1.9	2.1	2.1	2.1	2.4	-
유족	0.3	0.3	0.3	0.3	0.2	-
무능력 관련 ¹⁾	0.6	0.6	0.5	0.5	0.5	-
보건 ²⁾	3.5	3.9	4.0	4.0	4.1	-
가족	0.7	0.8	0.8	0.9	1.2	-
적극적 노동시장	0.3	0.5	0.3	0.3	0.3	-
실업	0.3	0.4	0.3	0.3	0.3	-
기타 ³⁾	0.7	0.8	0.7	0.6	0.7	-
합계	8.2	9.4	9.0	9.0	9.6	10.2

1) 무능력 관련(incapacity related)은 장애, 산업재해 및 직업병 관련 급여를 의미

2) 의료급여는 보건으로 분류됨

3)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중 대부분의 현금급여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됨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SOCX), <http://stats.oecd.org>

○ 중점투자 방향(계획)과 사회보장 지출(결과)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

- 기존 역할은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국민기

초생활보장(기타 부문)의 지출을 억제되었으나,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공적 연금 급여 증가로 노령 분야의 지출은 상당한 증가를 보임

- 보건 분야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전 예방적 건강투자의 결과라기보다 건강보험의료급여의 진료비 상승에 기인하며, 특히 노인의료비 증가가 주 원인임
- 아동·청소년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투자적 지출의 강조는 보육료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가족 분야의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보육료 지원을 제외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출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 근로능력 제한자의 역량 형성, 근로빈곤층 경제활동 참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인적자본 투자를 강조했던 계획과 달리 무능력 관련(장애, 산재·직업병) 분야 및 적극적 노동시장 분야의 지출은 오히려 감소

나. 주요 지표를 통해서 본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평가

□ 미래세대가 꿈을 키우는 복지

○ 출산율 및 출생아 수

- 출산율은 경제활동세대(출산가능 세대)가 현재의 삶을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표현하는 지표

〈표 1-8〉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연도별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생아수(명)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합계출산율(명)	1.19	1.15	1.23	1.24	1.30	1.1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009~2013년의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은 정체 양상
 -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08로 가장 낮았으며, 이후에 2009년 1.14,

2012년 1.30으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1.19로 하락

- 출생아 수 역시 합계출산율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48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44만 명 수준으로 하락
- 출산율은 정책노력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출산율 증가를 통한 사회·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못함

○ 노년부양비(65세 이상인구 / 15세~64세 인구) × 100)

- 노년부양비는 결과적으로 호전되지 못했으며, 2013년에 16.7%
- 2020년 22%, 2030년 39%, 2050년 71%로 향후 급격한 상승이 예상

○ 자살률

- 자살률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대리지표이며, 또한 현 세대가 우리사회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중요
-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008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
 - 특히 20대 자살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미래세대의 행복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또한 중·고령층인 50대와 노인층의 자살률은 매우 높은 수준

〈표 1-9〉 자살률의 연도별 추이

(단위 : 인구 십만 명 당 자살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6.0	31.0	31.2	31.7	28.1	28.5
10 ~ 19세	9.4	13.0	10.2	10.7	9.7	9.2
20 ~ 29세	44.5	49.6	47.6	47.8	38.8	36.2
50 ~ 59세	66.4	82.0	80.8	82.5	70.7	76.1
65세 이상	71.7	78.8	81.9	79.7	69.8	64.2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복지

○ 국제결혼 현황

- 다문화 사회로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국제결혼은 본 시기 동안 감소하였음
- 2008년 외국인 아내는 28천명 정도였으며, 외국인 남편은 8천명 정도였으며, 2013년에는 각각 18천명과 7.8천명으로 감소

○ 다문화 가정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사회통합의 중요 이슈로 등장

- 18세 미만 다문화 가족의 아동은 2007년 44천명에서 2011년 150천명으로 급증하고 있음(김미숙, 2012)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는 다문화 사회와 가족들에 대한 강조와 사회통합에 대한 강조가 상당 부분 할애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나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매우 부족

-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아동들의 학교부적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통계 생산이 필요
-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평균 3.5점(6점 만점)이며, 부정적 응답이 44.8%이고 긍정적 응답이 55.2%로 높지 않음

〈표 1-10〉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의 다문화 수용성¹⁾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9	11.7	12.2	23.9	15	16.3

1) 배우자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는 6점 만점에 3.5점 수준
 자료: 여성가족부(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장애인 의무고용의 경우는 이 시기에 꾸준히 증가

- 2008년 정부부문 고용률이 1.76%, 민간부문이 1.7%였지만, 2013년에는

각각 2.85%와 2.39%로 상승

-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1-11〉 장애인 의무고용률 연도별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73	1.87	2.24	2.28	2.35	2.48
정부부문	1.76	1.97	2.38	2.48	2.61	2.85
공공기관	2.05	2.11	2.56	2.72	2.80	2.81
민간기업	1.70	1.84	2.19	2.22	2.27	2.39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복지

○ 고용률 및 실업률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기간(2009~2013년) 동안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09년에 62.9%에서 2013년 64.4%로 다소 증가
- 실업률은 2009년 3.81%에서 2013년 3.25%로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고용률은 증가 수준으로 향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표 1-12〉 15~64세의 고용률 및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고용률	63.8	62.9	63.3	63.8	64.2	64.4
실업률	3.32	3.81	3.81	3.49	3.30	3.25

자료: OECD, OECD.StatExtracts (<http://stats.oecd.org>)

○ 남녀 임금 격차

- 전일제 기준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2008년 61.2%에서 2012년 62.6%로 부분적으로 상승하였음
-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일본의 73%에 비해서 약 10%가 뒤지는 수치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 파견/용역근로자의 임금은 2008년 57%에서 2011년에 60%로, 기간제근로자 역시 70%에서 74%로 증가
-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는 30%에서 28%로 하락하였음.

○ 임금격차 및 저임금 근로자 비율

- 임금격차(하위 10% 임금근로소득 대비 상위 10% 임금근로소득의 배율)의 경우 2008년 4.78에서 2010년 4.72, 2011년 4.85, 2012년 4.71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미국의 5.03을 제외하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치
- 저임금 근로자 비율(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8년 25.4%, 2012년 25.2%이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08년 34%에서 2012년 33%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 월 근로시간은 2009년 195시간에서 2013년 164시간으로 상당히 감소
- 한국의 일반 근로자 연 평균 근로시간이 2,163시간(2012년 기준)으로 멕시코(2,226시간, 2012년)를 제외하면 가장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반면에 시간 당 노동생산성은 2012년 기준 US\$28.9로 OECD 평균 US\$46.7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노동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음

- '저고용률-저실업률'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OECD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별임금격차나 고소득/저소득의 격차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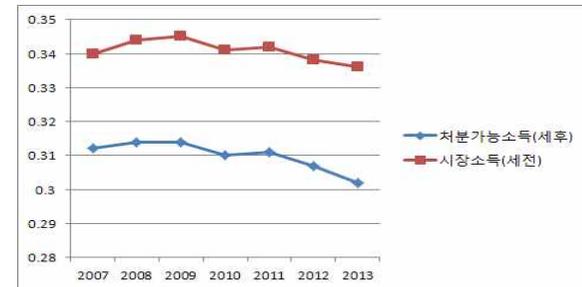
- 높은 자영업 비중과 함께 높은 한시적 근로 비중을 유지하였으며, 시간제 근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
- 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복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됨

□ 위기대응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불평등도와 상대빈곤율

-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0.345에서 2013년 0.336으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314에서 0.302로 감소하여 불평등도는 일정 정도 완화되었음
-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2008년 15.2%에서 2013년 14.6%로 다소 줄어들었음.

[그림 1-2] 불평등도(지니 계수)의 연도별 변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기간 동안 전체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상당히 감소
 - 2001년 이후 증가하여 2006~2009년은 3.2%(2008년 153만 명)로 고

정되었으며,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 2.6%(135만 명)

- 상대적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는 이들은 2008년 25.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은 23.1%로 낮아졌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감소는 탈빈곤의 결과이기 보다는 빈곤정책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약 백만 명의 사각지대 존재(국민권익위원회, 2011)

○ 사회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중 2010년 8월 기준 공적연금 가입률은 65%, 고용보험은 59%였지만, 2013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68%와 고용보험 68%로 상승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일부 축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는 미흡

-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정책이 불평등과 빈곤을 감소시키는 소득 재분배효과가 미흡하며,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사회보장제도가 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은 '촉촉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표 1-13) OECD 국가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의 불평등도 감소 수준(2011년)

	가처분소득기준(b)	시장소득기준(a)	격차(b-a)
스웨덴	0.273	0.435	0.162
독일	0.293	0.506	0.213
프랑스	0.309	0.512	0.203
한국	0.311	0.342	0.031
이탈리아	0.321	0.502	0.181
캐나다	0.316	0.438	0.122
호주	0.324	0.460	0.136
영국	0.344	0.525	0.181
미국	0.389	0.508	0.119

자료 : OECD, OECD.StatsExtracts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

- 사회보장 지출과 조세부담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사회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제고하려는 정책목적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 반면에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8년 28%에서 2013년 34.3%로 증가
 -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하여 복지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 사회보장지출의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향후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 유사중복제도 정비와 누락 방지의 결과는 미지수
 - 제3차 사회보장 계획 기간 동안 유사중복 복지제도 정리와 사회보장 급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며, 일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프로그램들의 합리화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제도의 효율화 또는 재정 절감의 효과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

다.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총괄평가 결과

□ 사회보장지출은 실질적으로 감소

- 2013년 사회보장지출은 GDP 대비 10.2%로, 목표치 12.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유사한 경제적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상당히 낮은 수치였음.
- 사회보장부담률을 포함한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지출의 변화가 미비한 것은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기간 동안 사회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위축되었음을 의미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계획이 실행되었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론에서 제시되었던 (성과)지표의 검토 결과, 일부 지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대체

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임.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아동과 가족 분야를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가족이나 인적자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저출산의 해결이나 여성고용의 변화 등 눈에 띄는 성과는 존재하지 않았음.
- 자살을 역시 2013년 전까지는 변화가 없었으며, 경제위기의 여파로 오히려 더욱 증가한 양상이 나타났음.
- 고용관련 변수를 통해서 본 한국의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양과 질은 큰 변화가 없었음. 낮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었으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간극과 남녀 간의 임금 차이는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음. 장시간 근로나 비정규직 비율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부분적으로 상황이 호전
- 빈곤과 불평등도는 낮아졌지만, 공적이전(사회보장제도)이 빈곤이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은 한계점으로 남아 있음.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목표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음.
- 다양한 계층과 함께 하는 사회나 사회통합의 목표는 그 측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다문화 사회는 그 강조에 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
- 복지서비스의 효율화와 지속가능한 복지는 구호에 비해서 구체성이 결여

3. 총괄 평가의 시사점과 제언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증가하는 경제적 불안정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 중산층의 약화와 소득분배 악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사회적 신뢰의 위기 등을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음.
- 다양한 정책비전을 제시하였으나 정책여건(맥락)부터 비전과 정책방향 그리고 재정 지출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일관성과 목표 - 정책내용의 정합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 신뢰의 위기나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한 이슈들은 총론에서 상당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이에 관련된 정책방향과 구체적 정책노력 그리고 재정 투자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 재정투자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제시되지 못하고 OECD 국가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추상적 수준으로 제시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음.
- 총괄 성과지표의 결여로 총론의 목표가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짐. 반면에 구체적 정책 영역은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지표를 제시하게 함으로서 유연성과 재량의 여지를 축소시켜 놓은 결과가 되었음.
- ‘추상적 총론과 구체적 각론’보다는 구체적인 총론과 관련 성과지표 제시, 각론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향이라고 평가됨.
- 국민들이 주목할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계획이 되면서 계획의 비중에 비해서 국민적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됨. 이러한 비판적 기초 하에 영국 공공서비스협정을 모델로 하여 성과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였음.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정 산출과 실제 유사 성과지표들을 통해서 파악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의 최종 결과는 크게 긍정적이지는 못했음.
- 대부분의 지표들이 이 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못했으며, 재정 투자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 총론에서 제시되었던 예방형 복지, 보편형 복지, 맞춤형 복지가 달성되면서 능동적 복지가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임.
- 가족이나 노동시장 그리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였지만, 실제 지출이나 최종 지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판명됨.
-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 및 투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역시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상당 부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오히려 자연증가분에 가까운 노령이나 보건에서 지출의 증가가 발생하였음.
- 실효성이 높은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만들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핵심 비전과 목표부터 정책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영역, 재정 운용계획까지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함.
 - 거시적 성과지표 제시를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구체적인 추진 체계와 평가 방법 제시를 통해서 정책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총론과 정책 영역에 대한 각론 사이에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제2장 보육가족 분야

- 제1절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제2절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
- 제3절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
- 제4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2

보육·가족 분야 <<

제1절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1-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가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1-가-1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
		1-가-2	양육수당 지원 도입 및 확대
		1-가-3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1-가-4	보육료 지원체계 효율화

□ 자녀 양육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 “양육수당 지원 도입 및 확대,” “보육료 지원체계 효율화”라는 타당한 세부시행과제를 선정하였고, 추진주체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집행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아래의 세부시행과제는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 사업으로 통합 및 폐지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의 통합과 폐지의 근거가 있고 타당함

- 만 5세 보육료 전액 지원 : 2010년부터 “0~5세 보육료 지원”에 통합되었으며, 2013년부터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 포함
-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기준 완화 : 2010년 “맞벌이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2011년부터 “0~5세 보육료 지원”, 2013년부터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 포함
 - ※ 통합된 사업은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 포함하여 평가
-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만 0~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에 구분 없이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함에 따라 2011년에 사업 종료

<표 2-1>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1-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자녀 양육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중점추진과제 하에 세부시행과제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집행	추진주체간의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모니터링, 일정 관리 등 집행 관리의 적절성을 보였으며, 보육 환경 및 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성과환류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와 “보육료 지원체계 효율화”는 타당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지만, “양육수당 지원 도입 및 확대”는 적절하지 못한 성과지표를 제시함. 각 세부 추진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는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제언

- 사업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의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 활동 여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무상보육 지원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전업모의 직접 양육 도모 등을 통한 보육료 지원의 효율화가 필요함
- 양육수당의 목표 중의 하나인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1.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1-가-1)

가. 기획

- 보육정책은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중요성을 가진 사회정책이며, 국민 행복 구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근거의 타당성이 있음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장애아동은 만 12세 이하)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
- 2009년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만 0~4세 영유아의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 것에서 점차 지원대상 인원,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2013년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료 전 계층 지원으로 보육 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이에 매칭하여 편성하는 지방비 부족 발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초래

나. 집행

- 재원 형태는 국비 10~80%, 지방비 20~90%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보육료 지원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로 매년 예산 집행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였음
- 보육료 지원내용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지자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보조 인력 지원, 지자체 보육업무 설명 및 요구사항 수렴,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편성 현황 매월 파악, 어린이집 이용현황 매월 파악 및 보고 등 사업 집행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다. 성과환류

- 성과목표로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와 성과지표로 보육료 지원 아동 수 그리고 2013년도부터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서 적절하게 제시함
- 보육료 전 계층 지원에 따른 지방의 보육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예산집행 모니터링과 더불어 보육료 지방비 중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며, 지방의 보육예산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기준보조율을 15%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2-2〉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1-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맞벌이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보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타당함
집행	사업 시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서 타당한 전달 체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음 · 보건복지부가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국고 보조금을 교부 · 시도는 국고보조금에 지방비를 가산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 시군구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보육료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약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카드사에 보육료 결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지급 내역 확인 및 정산
성과환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매년 약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임

- 사업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의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활동 여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업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지원 보다는 양육수당 지원금의 증액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며,
- 취업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보육 시설 운영 시간, 취업모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입소권에서 우선권 부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무상보육 지원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전업모의 직접 양육 도모 등을 통한 보육료 지원의 효율화가 필요함
- 보육료 지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보육시간에 따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이 불가피하지 않은 전업모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지양하고 직접 양육을 도모하는 유인 체계 마련이 필요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비례적인 금액의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 마련

□ 사업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자녀양육부담 경감과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여부를 성과지표로 하여 매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혹은 돌봄노동 측면에서 자녀양육부담이 얼마나 경감되었으며, 여성 취업률, 경력 단절 감소 등에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연도별 분석 및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임

2. 양육수당 지원 도입 및 확대(1-가-2)

가. 기획

□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

□ 보육서비스 지원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적절한 사업수단을 이용함

나. 집행

□ 재원은 국비(서울 10~30%, 지방 40~60%)와 지방비로 지원되며 2014년 국고보조율을 전년 대비 15% 인상하여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

□ 행복e음 통계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지자체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급자에 대해 환수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졌음

다. 성과환류

□ 성과목표로 재가아동의 양육부담 경감('09~'11)과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12~'13)를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성과목표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서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양육수당 수혜율, 수혜자 만족도는 적절하지 못함

○ “양육수당 수혜율”의 목표치를 80%('11년)로 설정하였는바 이는 영아를 양육하는 취업모의 시설 이용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

□ 연구사업을 통해 양육수당 수혜와 관련된 인식, 수당 지원 사용처 등 사업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2-3〉 양육수당 지원 도입 및 확대(1-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저소득층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양육수당은 점차 아동의 연령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2013년 무상 보육 실시에 따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적절한 사업 내용을 보임
집행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타당한 사업 추진 전달체계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짐 · 보건복지부는 지원 기준 마련 및 국고 보조금 교부 · 시도는 국고보조금에 지방비를 가산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 시군구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급여액 산정 및 지급 의뢰 및 정산
성과환류	제도 도입 초기로 인지도가 낮아 신청율이 저조하였으며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가정 양육으로 대체되는 효과는 낮게 나타나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낮게 나타남

□ 양육수당의 목표 중의 하나인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육수당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양육수당 지원 금액의 인상은 가정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육 시설 가수요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양육수당 효과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아동의 건전한 발달 등의 측면에서 시설 이용 아동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 필요
-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 내 방치, 취업모의 근로 의욕 저하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

3.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1-가-3)

- 만 0~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에 구분없이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함에 따라 '11년에 사업 종료
- 동 사업은 "1)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 포함하여 앞 절에서 평가함

4. 보육료 지원체계 효율화(1-가-4)

가. 기획

-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전자바우처로 지급하여 부모가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여 보육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보조금 관리 및 보육 행정을 간소화하여 지자체 및 보육시설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
- 정부 지원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 보육관련 행정업무 및 유관기관 업무를 전자화 하는 등 적절한 정책수단을 사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 전자바우처 모니터링 및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등 바우처 사업관리 등 적절한 사업내용 추진

나. 집행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추진 체계로 사업이 이루어짐

- 사업 예산은 국비 지원으로 예산과 집행 실적에서 사업 잔금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집행율이 저조하거나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월된 금액은 다음해에 모두 집행된 것으로 보고됨

다. 성과환류

- 성과 목표로서 보육료지원체계 개선과 보육포털을 통한 정보 제공 활성화, 성과지표로 시스템 구축 및 바우처 시행, 접속자 수 등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2-4> 보육료 지원체계 효율화(1-가-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보육료 지원업무 효율화, 보육 수요자 체감도 제고, 시설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보육전자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집행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매월 운영 실적을 보고받는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졌음
성과환류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100%로서 당초 사업 목표가 적절하게 달성된 것으로 나타남

- 전자바우처를 통해 보육료 지원업무의 효율화는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보육수요자의 정책 체감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책 체감도는 보육료 지원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감면되었는가 혹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하여 만족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통해 나타는 것이지, 부모가 직접 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불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동 사업의 목적에서 “보육 정책의 체감도 제고”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보육 전자바우처를 통하여 시설의 회계 운영이 얼마나 투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에 따른 부당 이익 환수 등이 얼마나 감소하였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

제2절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1-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나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	1-나-1	취약가정 보육지원 강화 ①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지원 ②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 ③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나-2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1-나-3	평가인증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지원 강화
		1-나-4	보육인력 자격관리와 근로환경 개선 ①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 ② 보육인력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의 세부시행과제로서 취약가정 보육지원 강화, 평가인증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지원 강화, 보육인력 자격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을 제시함
- 농어촌 지역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사업은 2012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사업이 폐지되었음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시행과제가 이관되어 폐지되었다고 봄

〈표 2-5〉 보육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1-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중점추진과제의 목적에 따라 타당한 세부시행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됨
집행	세부사업 추진주체간 연계와 협력, 모니터링, 일정 관리 등 집행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보육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응
성과환류	성과지표로 전체 보육시설 대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을 제시하였는바 동 지표로 질적 수준 제고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제고를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100%가 넘게 나와 향후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임

□ 향후 제언

-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육시설 평가 인증 제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혹은 비인센티브가 보육시설에 부여되어야 할 것임
- 보육인력의 자격관리를 통해 안심 보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처우 개선을 현실화하고 보육업무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취약가정 보육지원 강화(1-나-1)

가. 기획

□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지원(1-나-1-①)

- 영유아기는 언어 및 사회성 발달 단계의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특히 다문화 가족의 증가 및 「다문화지원법」 시행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지원이 더욱 요청되고 있음
- 다문화 영유아 보육 지원을 통해 조기 사회 적응 및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다문화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적절한 목표 설정,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적절한 사업수단을 활용함

□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1-나-1-②)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및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아동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적절한 목표 제시,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및 장비비, 인건비 지원 등 적절한 사업수단을 활용함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차량 운영비 지원, 장애아 어린이집 이용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및 농어촌 어린이집에 차량 운영비 지원 등 적절한 사업내용 추진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1-나-1-③)

- 다양한 시간 유형의 보육 수요에 대한 보육 지원 확대에 맞춰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및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적절한 목표 제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함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이용 수요 예측 합리적 반 편성 및 부모의 이용 책임 제고를 위해 사전 이용신청 제도 도입, 인건비 상향 조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의 적절한 사업내용 추진

나. 집행

□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지원(1-나-1-①)

- 사업수행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지원(안) 마련 및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자 조사 확인 및 지원 결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 아동 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당한 체계로 사업이 수행됨
- 예산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이루어지며 매년 100%의 예산 집행 실적을 보임

□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1-나-1-②)

- 보건복지부는 지원(안) 마련 및 예산 확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조사 확인 및 지원 결정,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보육 환경 조성 및 아동 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 등 적절한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짐
-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매해 예산의 증가가 이루어짐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1-나-1-③)

- 사업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급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린이집으로 적절한 추진체제로 사업이 이루어짐
-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100%의 예산 집행율을 보임

다. 성과환류

□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지원(1-나-1-①)

- 성과목표로서 다문화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을 전국 어린이집에 보급, 다문화 보육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성과지표로서 다문화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보급률 및 다문화 보육료 지원 아동 수로 적절하게 제시됨
- 급여·서비스의 제공기관 및 담당 인력, 집행기관 실무자에 대한 직무교육, 보육 시설 종사자 및 보육 담당 공무원 다문화역량 강화 교육 등 적절한 제도 개선 노력을 보임

□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1-나-1-②)

- 기능보강비 지원, 장애아 보육 환경 개선, 장애아보육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확대를 성과목표로, 지원시설수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였는바,
 - 지원액 확대, 지원 시설 수 등 인프라 확대 보다는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통하여 장애아 영유아 발달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장애아 보육 관련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아보육직무교육'을 매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임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1-나-1-③)

- 시간연장형보육교사 지원,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성과목표로,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형 이용 아동수를 성과지표로 제시함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의 목적인 맞벌이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 및 자

녀 양육부담이 얼마나 감소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실태조사 분석, 관련 연구용역 실시, 담당자 회의, 전문가 간담회의 개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지원(1-나-1-①)

- 다문화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증진 프로그램과 다문화 아동의 문제행동 경감을 위한 교육용 자료 제공 이후 다문화 아동들에게 나타난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문화 아동에게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실무자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제공 이후 다문화 아동에 대한 태도, 기술 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필요

□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1-나-1-②)

- 시설 확충이나 지원 확대보다는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통하여 장애아 영유아 발달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통합적인 시각으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리고 도와가며 성장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환경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1-나-1-③)

- 시간연장형보육교사 지원 혹은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등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의 확대보다는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 및 자녀 양육 부담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아동을 시설에서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은 건전한 아동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규 보육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보

육서비스(재가 보육)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표 2-6) 취약가정 보육지원 강화(1-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지원 : 다문화 영유아 보육 지원을 통해 조기 사회 적응 및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다문화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함
	②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및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아동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함
	③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다양한 시간 유형의 보육 수요에 대한 지원 확대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 및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함
집행	①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지원 : 다문화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다문화 아동의 문제 행동 경감을 위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개발 및 보급, 보육 시설 종사자 및 보육 담당 공무원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졌음
	②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 : 장애인 보육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보육교사 교육 실시, 이이사랑 포털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육아 정보 제공,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 해소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졌음
	③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실태조사, 연구 용역, 지자체 담당자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졌음
성과환류	① 다문화가정 아동 보육 지원 : 성과목표 달성도는 매년 100%의 성과를 보임
	②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 : 성과목표는 매년 100%의 달성율을 보였으나, 지원시설 수의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
	③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목표치 달성율이 100%를 넘거나 미달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현실성 있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평가인증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지원 강화(1-나-3)

가. 기획

□ 민간어린이집의 증가에 따른 효과적인 품질 관리, 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양적 성장에 걸맞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국가 책무 강화, 상시적 질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및 부모의 참여 육구 증대 등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이 있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적절한 목표 제시, 평가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 개선하도록 한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수단의 적정성을 보이고 있음

나. 집행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음

□ 모니터링, 평가, 제공기관 관리 등 집행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정보 제공, 대국민 홍보, 민원, 불편사항 및 고충처리 등 사업집행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다. 성과환류

□ 평가인증 어린이집 품질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을 성과지표로 제시하여 타당한 목표와 지표가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 사업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 노력을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2-7) 평가인증 어린이집 품질관리 및 지원 강화(1-나-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평가인증 신규 및 재인증 절차 진행, 보육 수요자 평가 인증 참여 기회 확대, 인증 어린이집 사후 확인 점검, 연차별 자체점검, 부적절 어린이집 인증 취소 조치의 사후관리 등 적절한 사업내용을 추진함
집행	국비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평가인증 참여수 증가 및 재인증 실시에 따라 예산 대비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100%의 예산 집행율을 보임
성과환류	매해 성과목표는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임

-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 제고 및 질 낮은 어린이집의 퇴출이 뒤따라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평가인증 결과가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인증 결과가 부모들이 욕구에 부합하고 양질의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평가결과의 세부적인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부모가 어린이집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보육인력 자격관리와 근로환경 개선(1-나-4)

가. 기획

-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1-나-4-①)
 - 0~5세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무가 강화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이 있음
 - 보육 교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및 교육 지원을 통한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는 적절한 목표 제시, 보육종사자 자격기준 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양성 체계 개편방안 검토 등의 적절한 사업수단을 활용함
- 보육인력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1-나-4-②)
 - 0~5세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무가 강화되고 보육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이 있음
 - 보육교사의 임금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라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함. 특별근무수당, 대체교사 지원, 근무환경 개선비, 누리과정 처우 개선비 등보다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현실화 등이 더 적절한 사업수단일 것으로 판단됨

나. 집행

-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1-나-4-①)
 -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이 사업 운영 지원을 하는 적절한 사업 추진체계로 사업을 수행함
 - 2012년도부터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0%의 예산 집행율을 보임
- 보육인력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1-나-4-②)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적절한 사업 추진 체계를 통해 사업을 수행함
 -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 지원으로 100%의 예산 집행율을 보임

다. 성과환류

-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1-나-4-①)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를 성과목표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였는데, 실제 목표치는 지침서 발간 및 보급, 법령 개정 및 공포, 누리과정 연수 인원 등 실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제시함
 -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교과개요 등 지침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을 통하여 자격기준 개편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
- 보육인력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1-나-4-②)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과 대체교사 지원율보다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수준,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의 개선 정도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할 것임
 - 제시한 목표는 100%에 가까운 달성율을 보임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단가 인상,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누리과정 보조교사 및 행정도우미 채용을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2-8〉 보육인력 자격관리와 근로환경 개선(1-나-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p>①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 : 표준 교과 개발, 표준 보육 실습지도 지침 개발, 보육교사교육원 및 보수교육 기관 운영 현황 조사 등 적절한 사업이 이루어짐</p> <p>② 보육인력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 보육교사의 인건비 현실화, 보육 교육의 과도한 아동 보육 노동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사업내용 추진이 필요할 것임</p>
집행	<p>①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 :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 교육훈련시설 보급, 정책내용 홍보 등 적절한 사업집행관리가 이루어졌음</p> <p>② 보육인력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 위탁기관의 정기보고 체계 유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졌음</p>
성과환류	<p>①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 : 지침서 개발, 법령 개정 및 공포, 누리 과정 연수 인원(목표치 미달)으로 사업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p> <p>② 보육인력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과 대체 교사 지원율은 부족한 성과지표라고 판단됨</p>

□ 보육인력 자격관리 강화(1-나-4-①)

- 동 사업의 목표를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교육 지침서 개발보다는 보육 인력의 전문성이 얼마나 제고되었는가에 두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보육 인력의 전문성이 얼마나 제고되었는가 평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육인력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1-나-4-②)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건비 현실화, 보육 교육의 과도한 아동 보육 노동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사업내용 추진이 필요함
-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얼마나 상향 조정되었는가 그리고 보육교사의 근로 환경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돌보는 아동 수, 근로 시간 등)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3절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1-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다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	1-다-1	<p>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p> <p>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p> <p>②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p>
		1-다-2	<p>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p> <p>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p> <p>②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p> <p>③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지원</p> <p>④ 산후도우미 파견</p> <p>⑤ 남성의 가사생활 참여 활성화</p>
		1-다-3	<p>한부모가족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p> <p>①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p> <p>② 한부모가족 자립심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p> <p>③ 저소득모·부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p> <p>④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사회복귀 종합지원체계 마련</p> <p>⑤ 청소년기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조기 자립지원 강화</p>
		1-다-4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기능 강화

□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해 타당한 세부시행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됨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는 2011년부터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통합되었으며, 가족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가족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는 2012년부터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기능강화로 통합되었음
- 세부시행과제 통합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도 증진될 것으로 판단됨

〈표 2-9〉 가족친화 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1-다)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중점추진과제의 목적에 따라 타당한 세부시행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됨
집행	세부사업 추진주체간 연계와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니터링, 일정 관리 등 집행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가족을 둘러싼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성과환류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의 성과지표로서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와 가족친화지수를 적절하게 제시하였음. 목표치 달성율이 100% 가 넘는 경우가 있어 향후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제언

-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선정이 필요하며,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현실성 있는 목표치 제시가 요구됨
- 사업 추진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만족도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집행 관리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1-다-1)

가. 기획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1-다-1-①)

- 많은 기업에서 가족친화 환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경영전략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
 -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관심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인증을 부여
 -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가족역량 강화부문의 관련 정책과 연계성이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절하고 재원 확보 및 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1-다-1-②)

- 가족친화 관련업무 수행기관이 각 사업별, 연도별로 달라짐에 따라 업무의 전

문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와 가족친화지수 웹 시스템으로 이원화된 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성 저하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교육컨설팅·홍보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중 상시적인 업무 수행 및 기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 지정 필요
- 가족친화 관련정책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통합 홈페이지 오픈 필요
- 사업목표로 2009~2010년, 2011~2013년 연차별로 각각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사업수행기관 지정 등 적절한 목표를 제시하여 일관성을 보임.
- 정책수단으로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가족친화교육, 컨설팅, 홍보 및 가족친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가족친화지수 측정을 선택한 것은 적합성을 보이며 이는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나. 집행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1-다-1-①)

- 여성가족부를 사업수행주체로 하여 기업의 신청을 통해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이 접수 및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수행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졌음
- 재원은 국비 100%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09년 70백만원→2010년 100백만원→2011년 180만원→2012~2013년 280만원으로 연차별 확대
 - 예산 집행은 각년도 모두 계획대로 100% 집행률을 보임
- 가족친화 인증수여식, 가족친화기업 우수사례집 발간 및 홍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보 제공 등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졌음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1-다-1-②)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

부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을 평가하고, 가족친화지원 센터가 교육, 컨설팅, 지수 측정, 홍보 등 가족친화사업을 실시

- 사업수행주체, 절차, 사업기간 및 전달체계 구축에 타당성을 보임
-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컨설팅, 직장교육, 홍보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사업비는 국비로 추진되었으며 예산은 '10년과 '11년에 확대되고 예산 집행율은 매해 100%의 달성을 보임

다. 성과환류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1-다-1-①)

○ 성과목표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성과지표를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로 제시하였으며, 매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목표치는 연도별로 확대되었음

- 34개('09) → 56개('10) → 123개('11) → 155개('12) → 180개('13)
- 측정방법을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로 제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자체 점검을 위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보임

- 기업 및 기관의 참여 유인 동기 기제가 미약하다는 2011년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추진 실적 평가 내용을 수렴하여 기업 및 기관의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1-다-1-②)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타당하게 설정

- 성과목표는 2009년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활용, 2010년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 2011~2013년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연차별로 적절하게 설정함
- 성과지표로서 2009~2012년 가족친화지수 측정, 2013년 가족친화컨설팅 기업수로 측정방법에서 적절성을 보임

- 가족친화인증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기업·심사 등 관계자 인터뷰, 가족친화 지수 측정결과 및 인증사업 검토 등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자체 점검을 위한 개선 노력을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2-10〉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1-다-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 : 가족친화 우수기업 심사 및 선정, 인증기준 개선, 가족친화 우수기업 등 홍보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사업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②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 수행기관이 사업별, 연도별로 달라짐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집행	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 : 예산 집행은 각년도 모두 계획대로 100% 집행률을 보임 ②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직장교육, 홍보 등 시행,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관리,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보고서 발간 등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성과환류	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 : 성과지표는 매해 100% 이상을 훨씬 높은 달성률을 보여 성과목표는 충실히 이루어졌으며 향후 목표치를 보다 높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②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타당하게 설정하였고, 달성도는 매해 목표치 초과 달성을 보임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1-다-1-①)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환경 조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므로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임. 가족친화환경 조성이 기업 차원에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요청되고 있음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가 실제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 년도마다 제시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수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달성률을 보

이고 있으며, 이러한 초과 달성치는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증기업 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 및 가족친화사업의 효율적 추진(1-다-1-②)

- 가족친화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대상 교육과 홍보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보다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는 기업의 종류 및 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지수의 공개가 필요할 것임
- 각 년도마다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초과 달성치는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증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1-다-2)

가. 기획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1-다-2-①)

- 취업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만 12세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영아 종일제로 구분하여 제공
 - 정책 수단 선택의 기준이 적합하고 이러한 정책 수단을 통해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됨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
 - 2010년에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육을 포함한 놀이활동, 이유식·식사간식 제공, 등하원 동행, 위생 안전 관리 등으로 확대함
 - 지원 대상은 종일제 돌봄과 시간제 돌봄 각각에 대해 소득수준을 완화하고 취업 부모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함

□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1-다-2-②)

- 동 사업의 목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표 설정의 근거와 목표 내용이 타당함
-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대한 가사, 활동 지원,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 수단이 적합하며 이러한 정책 수단은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사업대상을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인 사람으로 선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가사 지원,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 동행 등 활동 지원 등 적절한 사업내용을 추진하였음

□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지원(1-다-2-③)

- 장애아동 돌봄 및 휴식 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사업목표 설정의 근거와 목표내용이 타당하며, 일관성 있는 사업목표를 제시함
- 1~3급 중증 장애아동 및 그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돌봄 서비스 지원량을 연간 320→480 시간으로 확대, 돌보미 4대 보험 및 교통비 지급을 위한 예산 신규 편성하는 등 적절한 정책 수단을 활용함
- 지원대상으로 18세 미만, 1~3급,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480 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가족 대상 문화, 교육, 캠프, 자조 모임 등 휴식 서비스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 대상자 653명('09) → 688명('10) → 2,500명('11) → 2,500명('12) → 3,000명('13)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대상자 확대가 이루어짐

□ 산후도우미 파견(1-다-2-④)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평가 실시를 산후도우미 파견을 위

한 근거와 타당성이라고 제시

-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이 가지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근거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함
-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및 신생아 돌봄을 위한 가정 방문 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정책 수단을 활용

나. 집행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1-다-2-①)

- 추진 체계로서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제공기관, 광역거점기관, 중앙사업지원기관 등의 역할과 연계·협력 추진을 통해 타당하게 이루어졌음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실시를 통하여 아이돌보미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지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됨
 - 사업비는 연도별로 급속도로 확대: 34,600백만원('09) → 31,291백만원('10) → 62,976백만원('11) → 67,976백만원('12) → 109,209백만원('13)
 - 예산 집행율은 90.9%('09) → 100.5%('10) → 100%('11) → 100%('12) → 87.9%('13)로 '09년과 '13년을 제외하고 100%의 달성율을 보임
- 아이돌보미 활동 도우미는 7,262명('10년) → 10,758명('11년) → 11,589명('12년) → 16,393명('13년)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여 적절하게 증가함

□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1-다-2-②)

-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적절한 사업 추진 체계를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음

- 재원은 국비 70% 및 지방비 30%(서울 50%)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매해 100%의 예산 달성율을 보임

□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지원(1-다-2-③)

- 사업 추진 체계로서 보건복지부가 지원 기준을 통보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며, 시도가 시군구별 보조금을 교부하며, 시군구가 수혜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당한 전달체계를 보임
- 재원 형태는 국비 50~70%, 지방비 30~50%로 예산을 2,070백만원('09년) → 2,349백만원('10년) → 6,091백만원('11년) → 6,141백만원('12년) → 7,098백만원('13년)으로 확대
 - 2009~2013년 기간 동안 거의 100%에 달하는 예산 집행 달성율을 보임
 - 장애아동가족지원 이용 실인원 수는 578명('09) → 714명('10) → 3,149명('11) → 3,259명('12) → 3,684('13)으로 확대

□ 산후도우미 파견(1-다-2-④)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시도,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타당성 있는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 전달
- 2010~2012년 기간 동안 국비(서울 50%, 지방 80%)와 지방비(서울 50%, 지방 20%), 2013년 이후 국비(서울 50%, 지방 70%)와 지방비(서울 50%, 지방 20~30%)의 재원 분담이 이루어짐
 - 예산액은 34,000백만원('09) → 36,613백만원('10) → 36,988백만원('11) → 37,778백만원('12) → 38,633백만원('13)의 증가를 보임

다. 성과환류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1-다-2-①)

- 성과목표를 아동 양육부담 경감('09년)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만족도('10년)

→ 취업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11~'12년)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13년)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육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제시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평균치로 산출하여 과거 추세를 반영하고 연도별 상향조정함으로 측정함

- 아이돌봄미 교육과정 개발로 제공 서비스 표준화, 양성 과정, 보수 과정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자격 관리 강화, 아이 돌봄미 활동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관리 지원 체계화 등 사업의 자체 점검을 통한 개선 노력을 보임

□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1-다-2-②)

- 성과목표는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성과지표는 수혜 노인수로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타당하며 측정 방법이 적절함
- 현장 점검 및 조사 등을 통해 바우처 부정 수급을 환수하고 지자체 담당자 지침 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감사원 지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임

□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지원(1-다-2-③)

- 성과목표로서 수혜자 만족도 제고('09~'11)와 서비스 이용자 이용률 제고('12~'13)를 제시하고, 서비스 만족도('09~'11)와 서비스 이용률('12~'13)을 성과지표로 적절하게 제시함
 - '서비스 만족도'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률'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업 통계를 따름으로써 측정 방법의 적절성을 보임
 - 목표치를 80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객관성 있는 근거가 필요

□ 산후도우미 파견(1-다-2-④)

- 성과목표로서 사회 투자형 사회서비스 확충, 성과지표로 수혜자 만족도를 제시하였으나, 산후도우미 파견 사업의 목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2-11)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1-다-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적절한 사업 목표 제시
	②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음
	③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지원 : 1~3급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감면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④ 산후도우미 파견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적절한 사업내용을 추진함
집행	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및 서비스제공기관 현장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사업 집행관리가 이루어졌음
	②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 : 바우처 부정 수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지침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음
	③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지원 : 매월 사업 추진 실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제공기관 관리, 평가와 워크샵 실시, 수급자에 대한 지원, 대국민 홍보, 민원, 고충처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④ 산후도우미 파견 : 전수 실태조사, 제공기관 현장 점검, 만족도조사 실시, 제공기관 품질 평가, 홍보 리플렛 배포, 휴대용 미니북 제작 배포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를 수행함
성과현류	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성과목표 달성도는 96%('09년), 103%('10년), 107%('11년), 108%('12년), 100.6%('13년)로 거의 100%에 가까운 달성도를 보임
	②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 : 목표치 달성율이 매해 100% 이상 초과 달성율을 보여 향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지원 : 매해 100%가 넘는 목표치 달성율을 보여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매월 사업 추진 실적 현황을 파악 및 관리하고 사업 워크샵, 설명회, 평가 대회, 만족도 조사, 현장 점검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을 보임
	④ 산후도우미 파견 : 매해 거의 100%에 달하는 성과목표 달성율을 보임. 사업의 결재 및 지불 방식의 전환, 다각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제도 개선 노력을 보임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1-다-2-①)

- 공보육서비스로서 무상 보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자리 매김을 명확하게 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으로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는 기업의 종류 및 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 대

한 가족친화지수의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각 년도마다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초과 달성치는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목표치의 상향 조정 필요

□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 확충(1-다-2-②)

- 목표치 달성율이 매해 100% 초과를 보여 향후 목표치를 상향 조정 필요
- 소득기준 등 자격기준 완화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가 필요함
- 서비스 내용을 보다 다양화하고 내실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구에 충실히 부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지원(1-다-2-③)

- 장애아가족 돌봄 휴식 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치 설정(80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

□ 산후도우미 파견(1-다-2-④)

-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치 설정(80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

3. 한부모가족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1-다-3)

가. 기획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1-다-3-①)

- 취약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 등 생

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많아 낮은 양육비 수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종합적·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와 자립 기반을 조성의 사업목표는 타당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등 지원과 복지 자금을 대여하는 적절한 사업수단을 선정함

- 소득 인정책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국가기초수급자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 자금을 대어

-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아동 연령은 8세 미만('08) → 10세 미만 ('09) → 12세 미만('10)으로 확대되고,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5만원에서 2013년 월 7만원으로 인상

□ 한부모가족 자립심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1-다-3-②)

-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역할 갈등 및 혼란으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 발생 시 상담 활성화 및 문제 해결 중심의 관리 필요
- 사업수단으로서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
-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자립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창업 컨설팅 및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비용 지원,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적절한 사업을 추진

□ 저소득 모부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1-다-3-③)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입양기관에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을 따라 정부 차원에서 대체시설 설치 등 시설 확충이 필요
- 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여 시설 입소 미혼모의 출산 환경 조성 및 분만을 지원하고, 입양 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대체시설 설치를 '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타당한 목표를 제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노후 및 기능개선이 필요한 시설 지원, 연차적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13년도에는 3개소 대체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며, 신규 시설 및 타시설 유형 전환시 기능 보강비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적절한 사업수단을 활용
-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사회복지 종합지원체계 마련(1-다-3-④)
 - 미혼모부자가 초기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위기 지원 서비스 및 상담·치료 제공을 통하여 미혼모부자의 조기 자립 지원 하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
 - 미혼모부 가구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으로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는 적절한 정책 수단을 사용함
 -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 생계비 100% 이하자, 초과자로 구분하여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며, 미혼모부 거점 기관 운영 지원과 미혼모자 보호 시설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등 적절한 사업내용을 추진함
- 청소년기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및 조기 자립 지원 강화(1-다-3-⑤)
 - 청소년기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조기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 아동양육비 지급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부 가구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비,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부의 자립기회 제공이라는 적절한 목표 하에 아동양육비 지원, 자립촉진수당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함

나. 집행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1-다-3-①)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저소득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는 여성가족부와 농협중앙회가 사업 추진체계로서 타당한 전달

체계 구축을 보임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중앙과 지자체의 예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는 민간 보조로 이루어져 왔으며, 예산 감소의 이유와 설명이 필요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예산은 2009~2011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2~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 감소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 자금 대여 예산도 매해 감소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자립심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1-다-3-②)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적절한 추진체계를 통해 추진
 - 예산 지원은 국비(50%)와 지방비(50%)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업비 예산은 매해 증가하였으며 집행율은 매해 100%에 가까운 달성율을 보임
 - 사업 수행 기관은 5개소('09) → 17개소('10) → 17개소('11) → 31개소('12) → 30개소('13) 로 증가함
- 저소득 모부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1-다-3-③)
 - 여성가족부, 시도지사(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적절한 사업 추진 체계를 통해 이루어짐
 - 부자보호시설 신축 관련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 및 지역적 편견에 따른 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중단(2010~2013년)되었으나 민원 부담이 큰 시설 보호 중심의 신축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웃 가정형 주거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추진
-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사회복지 종합지원체계 마련(1-다-3-④)
 - 여성가족부, 시도지사, 미혼모부자 지원 거점 기관 등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
 - 사업 예산은 24,160백만원('10년), 12,760백만원('11년), 6,614백만원('12년), 5,428백만원('13년)으로 감소하였으며, 예산 집행율은 '13년에 99%를 보였으나 '10년 45%, '11년 51%로 저조한 집행율을 보임

- 예산 감소 및 2010~2011년 집행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소년기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및 조기 자립 지원 강화(1-다-3-⑥)

-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추진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
- 사업 예산은 24,160백만원('10년), 12,760백만원('11년), 6,614백만원('12년), 5,428백만원('13년)으로 감소하였으며, 예산 집행율은 '13년에 99%를 보였으나 '10년 45%, '11년 51%로 저조한 집행율을 보임

- 예산 감소 및 2010~2011년 집행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성과환류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1-다-3-①)

- 성과목표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09),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10), 한부모가족지원 확대('11~'13), 성과지표로서 한부모가족 지원 인원수, 한부모가족지원 수혜자 만족도, 복지자금 자립성공률 등으로 적절하게 제시함
- 지자체 공무원 의견 수렴, 민원 분석을 통해 법령 및 지침 개정,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및 상향 필요성 제기 등 제도 개선 노력을 보임

□ 한부모가족 자립심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1-다-3-②)

- 성과목표를 취약가족의 역량 강화('09~'10), 사례관리사업 활성화('11~'13), 성과지표를 서비스 지역 확대 수('09~'10), 사례관리 대상자 확대('11~'13)로 적절하게 제시하였음
- 성과목표 달성도가 2010년을 제외하고 낮거나 높게 나타나 목표치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
- 가족 보듬,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조손가족지원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저소득 모부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1-다-3-③)

- 부자보호시설에 대한 수요,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대체시설 설치 필요성에 부응하여 부자시설 확충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확충을 성과목표로, 시설 개선 지원수, 부자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개소수, 대체시설 설치 지원 개소수를 성과목표로 제시
- 부자가족 및 미혼모자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신축 이외의 다양한 정책 방안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

□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사회복지 종합지원체계 마련(1-다-3-④)

- 성과목표로 가족의 역량 강화를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성과지표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 만족도로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성과지표 제시가 필요함
- 성과목표 달성율은 거의 10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과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따라 달성율이 달라질 수 있음
- 매년 사업 종료 후 미혼모부자 거점 기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거점 기관 이용시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고 차년도 운영지침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청소년기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및 조기 자립 지원 강화(1-다-3-⑤)

- 성과목표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 기반 마련, 성과지표를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가구 수 등으로 적절하게 제시
- 2011년 청소년 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 지원방안 등 연구, '12년 한부모 가족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2-12) 한부모가족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1-다-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 취약한 한부모 가정의 양육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상자 선정 기준, 급여 내용 및 급여 수준은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한부모가족 자립심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 : 한부모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도모를 사업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
	③ 저소득 모부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부자가족복지시설 확충 등 적절한 사업내용을 보임
	④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사회복지 종합지원체계 마련 :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사회복지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⑤ 청소년기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및 조기 자립 지원 강화 : 소득상한액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양육비, 자립촉진 수당, 자산형성계좌지원 등 적절한 사업내용을 제시
	⑥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 지원기준 고시, 지침 개정 통보, 지자체 의견 수렴,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를 보임
집행	② 한부모가족 자립심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 : 사례관리자를 활용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지속적 상담서비스,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적절한 사업이 이루어짐
	③ 저소득 모부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 국비(50%)와 지방비(50%)의 재원 형태로 지원되며 2009~2011년까지 예산액의 증가를 보였으며, 예산 집행은 100%미만 수준임
	④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사회복지 종합지원체계 마련 : 매년 사업 종료 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거점기관 이용시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를 수행함
	⑥ 청소년기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및 조기 자립 지원 강화 : '11년 청소년 한부모 생활실태 조사 및 자립 지원방안 등 연구, '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짐
	①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 매해 100%가 넘는 목표 달성율을 보여 향후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
	② 한부모가족 자립심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 : 성과목표 달성도가 2010년을 제외하고 낮거나 ('09년 83.3%, '13년 84.1%), 높게 나타나('11년 155.6%, '12년 205.9%) 목표치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
성과·환류	③ 저소득 모부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 지자체 제정 부담과 운영 법인 부재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였으며 입양기관이 시설 전환 등 대체 시설 설치를 현재 결정 이후로 유보되면서 성과지표 달성도가 낮게 나타남
	④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사회복지 종합지원체계 마련 : 성과목표치를 각각 점수화하여 '10년 60점, '11년 84점, '12년 87.5점, '13년 85.4점으로 제시하였는바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 필요
	⑤ 청소년기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및 조기 자립 지원 강화 : 성과목표의 달성도는 매해 100%로 넘는 달성율을 보여 향후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1-다-3-①)

-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 연령과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취약한 한부모 가정의 양육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 내용 및 급여 수준은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예산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 자금 대여 예산도 매해 감소하고 있어 예산 감소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더불어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청됨
- 목표치 달성율에 있어 매해 100%가 넘는 달성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자립심 향상을 위한 가족상담 등 사례관리 강화(1-다-3-②)

-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수요자 만족도 조사,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 등 사업 집행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
- 성과목표 달성도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달성도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을 보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 모부자 가족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1-다-3-③)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대체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 추진이 필요하며 기존의 시설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임대 주택 지원의 연차별 확대 필요
- 한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한부모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홍보 등 사업 집행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사회복지 종합지원체계 마련(1-다-3-④)

-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과 사회복지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
- 예산 감소 및 2010~2011년 집행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다 구체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
- 청소년기 미혼모부의 자녀양육 및 조기 자립 지원 강화(1-다-3-⑤)
 - 청소년기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 및 조기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필요성과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
 - 예산 감소 및 2010~2011년 집행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확충 및 기능 강화(1-다-4)

가. 기획

- 우리나라의 가족형태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가족 내 발생하는 가족문제 및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가족교육, 가족 상담,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가족 내 문제 및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및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 관련 센터간 통합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타당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시군구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병합하는 모델 추진, 가족관련 센터간 통합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적절한 사업내용을 추진함

나. 집행

-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적절한 사업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짐

-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 지원으로 예산은 매해 증가하였으며 사업 집행율은 100%임
- 건강가정지원센터 수는 97개소('09) → 137개소('10) → 138개소('11) → 148개소('12) → 151개소('13)로 매년 확대됨

다. 성과환류

-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병합모델 센터 확충, 효율적 센터 운영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전달체계 기능 강화의 성과목표, 신규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센터 운영 및 서비스 관련 종사자 교육을 성과지표로 적절하게 제시하였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운영하는 센터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가족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2-13〉 가족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확충 및 기능 강화(1-다-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집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 감독 및 지도,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 제공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짐
성과환류	매해 100%의 달성율을 보였으며, 100%가 넘는 달성율을 보이는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모니터링, 대국민 홍보, 정보 제공 등 사업 집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됨
- 목표치 달성율이 100%가 넘는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적절한 목표치 제시가 필요함

제4절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1-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라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지원	1-라-1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지원 강화 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사전정보제공 강화 ②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강화
		1-라-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정서발달 지원
		1-라-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다문화 사회인식 개선 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 ② 대국민 다문화 인식 개선

□ 중점추진과제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의 세부시행과제로서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정서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을 제시함

□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 지원 강화’ 사업은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강화’로,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강화는 2012년부터 결혼 이민자의 경제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으로 통합되었음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과제의 명칭이 변경되고 통합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도 증진될 것으로 판단됨

〈표 2-1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1-라)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중점추진과제의 목적에 따라 타당한 세부시행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됨
집행	세부사업 추진주체간 연계와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니터링, 일정 관리 등 집행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 환경 및 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성과현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의 성과지표로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률을 제시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매년 목표 달성률 100%의 적절한 실적율을 보임

□ 향후 제언

-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 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선정이 필요하며 성과목표치 설정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함. 각 연도마다 제시한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현실성 있는 목표치 제시가 필요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사업을 통하여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 통합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발굴

1.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지원 강화(1-라-1)

가. 기획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사전정보제공 강화(1-라-1-①)

- 국제결혼 당사자간 사전 정보 및 이해 부족으로 한국 적응 및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 성사를 위한 허위 정보 제공, 집단 맞선, 속성 결혼 증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법 준수율 제고, 국제결혼중개업자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의식 함양, 국제결혼 중개 피해예방 홍보 안내 및 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 실시,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및 주요 출신국 공무원 및 강사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적절한 사업내용을 추진함

□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강화(1-라-1-②)

- 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원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다문화 가족의 가구 소득이 낮다는 현실에 대응하여 결혼 이민자 초기 적응 및 생활

정보 제공 강화가 요청되고 있음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 조기 정착 지원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는 적절한 목표를 제시함
- 한국어교육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결혼 이민자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교육을 부모교육과 자녀생활서비스로 세분화 추진, 다문화가족정보매거진 발간 언어 및 배포처 확대 등 적절한 사업수단을 선택함

나. 집행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사전정보제공 강화(1-라-1-①)
 - 여성가족부가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총괄, 지자체 공무원 교육 및 결혼중개업자 교육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중개업체 등록 및 관리, 민간수행기관으로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결혼중개업자 교육을 추진하여 적절한 사업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불법결혼 중개행위 적발업체 수사, 행정처분 등 의뢰, 정기점검을 통해 지자체 및 업체로부터 건의사항 수렴, 국제결혼 피해예방 및 국제결혼 건전화 유도를 위한 홍보 전개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를 보임

-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강화(1-라-1-②)
 -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수행기관 등 적절한 사업 추진체계를 통해 수행됨
 - 신규센터 및 민원다발센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의 성과 도출 및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 시행, 사업 안내 FAQ 발간,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짐

다. 성과환류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사전정보제공 강화(1-라-1-①)
 -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내실화를 성과목표, 국제결혼 중개업 일제 단속 실시 횃

수를 성과지표로 적절하게 제시함

- 근거법령 개정, 지자체 건의 등 반영,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결과 분석을 통하여 조치를 요구하고 건의사항 수렴, 결혼 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현장 방문 점검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졌음
-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강화(1-라-1-②)
 -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 강화, 자조모임 운영 확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성과목표로, 한국어 방문교육 서비스 수혜자, 자조모임 운영 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 이민자 수혜율을 성과지표로 적절하게 제시함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장 점검 및 평가를 통한 현장 종사자 건의 및 의견 수렴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2-15〉 국제결혼의 체계적 관리 지원 강화(1-라-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사전정보제공 강화 : 주요 결혼 상대국과 주한대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법령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제결혼 중개업자 교육, 대국민 홍보, 현지 사전 교육 등 적절한 정책 수단을 활용 ②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방문교육서비스 확대, 상담 및 부부교육 강화, 다누리 콜센터 개설, 생활정보제공 강화 등 적절한 사업 추진
집행	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사전정보제공 강화 : 국비 100%의 지원으로 사업은 추진되며 사업 예산은 매해 증가하였고 100%에 가까운 예산 집행 실적을 보임 ②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강화 :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매해 100% 예산 집행 실적을 보임
성과환류	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사전정보제공 강화 : 성과목표는 100% 달성하였으며 목표치를 2회로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②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강화 : 매해 100%가 넘는 성과목표 달성율을 보였으며 성과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및 사전정보제공 강화(1-라-1-①)
 -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 집

행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로 제시한 국제결혼 중개업 일제단속 실시 횟수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점검 실적의 목표치를 2회로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가 필요

□ 결혼이민자 초기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강화(1-라-1-②)

○ 매해 100%가 넘는 성과목표 달성율을 보였으나, 성과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통하여 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 통합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정서발달 지원(1-라-2)

가. 기획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정책 필요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적절한 사업수단을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여 언어진단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생애주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의 적절한 사업내용을 추진

나. 집행

□ 여성가족부 계획 수립,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 집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수행으로 적절한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이 수행됨

□ 사업 모니터링, 사업 만족도 조사, 사업 종사자 보수 교육 실시, 각 사업별 자문위원 구성을 통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를 보임

다. 성과환류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확대를 성과목표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도자 수를 성과지표로 제시

○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을 사업 목표로,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표준 언어발달 테스트 등)

□ 연도별 사업 평가, 현안 사업 관련 운영 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 모니터링 회의, 연구 용역을 통한 사업 효과 분석, 개선 방안 도출, 교육비 사업과의 중복성 지적에 따라 '언어영재교실'을 개편하여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2-1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및 정서발달 지원(1-라-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언어 및 교육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 영재 교실을 제공한다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함
집행	국비와 지방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지원액은 연차별로 증가하였으며 예산 집행율은 100%의 달성을 보임
성과환류	목표치 달성률은 매해 100%의 성과를 보였으나 목표치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을 사업 목표로 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선정 필요

- 목표치 달성율은 매해 100%의 성과를 보였으나 목표치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다문화 사회인식 개선(1-라-3)

가. 기획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체계 정비(1-라-3-①)
 - 다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추진함에 따라 부처 및 사업간 유사 중복 문제 제기 및 일부 사각 지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실무위원회 구성,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관계부처 합동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적절한 사업수단을 제시
 -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을 통해 중앙 부처 사업 조정 및 체계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활성화, 민간자원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 포럼 운영 등 적절한 사업내용 추진
- 대국민 다문화 인식 개선(1-라-3-②)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다문화 이해 교육과정 개설,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일반 국민 대상 교육 및 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 등 적절한 사업수단을 활용함
 -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중매체를 활용한 인식 개선 홍보, 다문화 홍보대사 참여 프로그램 확대, 지역의 우수한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 등 적절한 사업내용을 보임

나. 집행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체계 정비(1-라-3-①)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 및 평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공개 및 결과 활용, 다문화가족 포럼 설립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짐
- 대국민 다문화 인식 개선(1-라-3-②)
 - 여성가족부와 사업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조, 다문화이해교육 수요기관과의 협력 등 타당성 있는 사업 추진 체계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짐
 - 다문화 가족 지자체 공무원 교육 시 대상별 맞춤형교육 시행 및 지역 순회교육 추진 등 적절한 사업 집행 관리가 이루어짐

다. 성과환류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체계 정비(1-라-3-①)
 - 성과목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제고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내실화, 성과지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수 및 이용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 회의 개최 횟수를 제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 제고를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을 성과지표로 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 특히 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내실화의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다문화가족 정책 위원회 등 관계 부처 회의 개최 횟수로 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통계 기반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임

□ 대국민 다문화 인식 개선(1-라-3-②)

- 성과목표로 다문화 교육강사 확충, 공무원 다문화 교육을 제시하였으며, 성과지표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를 제시하였는데,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제시가 필요함
- 교육 종료시 교육 평가 및 교육 요구도 수렴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졌음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발굴이 요청됨

□ 대국민 다문화 인식 개선(1-라-3-②)

-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
- 목표치 설정을 실현 가능성 있게 제시하여 목표치 달성도를 제고

라. 총평 및 제언

(표 2-1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다문화 사회인식 개선(1-라-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 내실화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 기반 구축 및 중장기 정책 개발 강화, 지자체 역할 및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전달 효율화 등 적절한 정책 목표를 제시 ② 대국민 다문화 인식 개선 :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존중 및 다문화 가족 또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대국민 인식을 제고한다는 적절한 사업목표를 제시
집행	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 : 재원은 국비 100%로 지원되며 매해 100%에 가까운 달성율을 보임 ② 대국민 다문화 인식 개선 : 국비 100%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매해 사업 예산을 증가하였으며 100%의 예산 집행율을 보임
성과원류	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 : 성과목표 달성율은 100%를 보였으나 목표치 설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② 대국민 다문화 인식 개선 : 성과목표치 달성율인 100%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성과목표치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1-라-3-①)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정비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제3장 아동·청소년 분야

제1절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제2절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

제3절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3

제1절 저소득 아동청소년지원강화(2-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2-가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강화	2-가-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
		2-가-2	드림스타트 대상자 확대
		2-가-3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2-가-4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는 4개의 세부시행과제로 구성
 - 세부시행과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드림스타트,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 시설 입소 아동, 중도 학업 포기자, 취약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원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2-가-1)

가. 기획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성장 후 자립 시 보다 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동이 저축, 후원 등을 통해 일정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3만원 내에서 같은 금액을 1:1 매칭 지원하고,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훈련, 자격취득 주거 및 창

업 등의 자립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사업을 설계함. 성장 후 자립을 위한 용도로 재좌를 제한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는 내용설계라고 판단함.

○ 다만, 향후에는 본 계좌가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명이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임. 대상자확대, 지원금확대, 후원확대와 같이 다양한 사업내용이 구성될 수 있음. 사업내용이 사업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나. 집행

- 예산은 계획대로 100% 집행되었음.
- 디딤씨앗통장의 계좌별 적립실태분석을 통해 정부재원추가 및 후원자증가 등의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발견함. 모니터링의 결과가 사업운영과정에 반영되어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함. 또한 향후 정책 설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다. 성과환류

□ 경제교육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디딤씨앗통장이 자립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인지 판단할 근거가 불충분함. 그러나 디딤씨앗통장이 경제교육과 함께 제공될 때 자립의 효과가 증가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교육의 만족도가 95.9%라는 점은 높게 평가함.

라. 총평 및 제언

- 향후에 본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
- 실태분석을 통해 정부재원 추가 및 후원자 증가 등의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모니터링의 결과가 향후 정책 설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표 3-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2-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가 명확하고, 추진체계간 역할 및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집행	자원 확보를 위해 후원자 발굴을 위한 노력들은 적절함. 그러나 홍보를 통해 나타난 후원자 및 후원금 현황과 같은 성과를 판단할 근거자료는 없음.
성과환류	아동 1인당 월평균 적립액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가입아동 수 및 월 저축액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성과목표나 성과지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아쉬움

2. 드림스타트 대상자 확대(2-가-2)

가. 기획

- 사업내용은 저소득 계층 0세~12세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아동복지자원의 연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전달체계 구축으로 설정함.
- 사업의 주요한 목적이 맞춤형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보육·복지·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타당하며, 이를 위해 자원의 연계·조정을 수행하는 공공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사업내용이라고 판단됨.
- 사업명칭이 대상자 확대임을 감안한다면, 대상자 확대 또는 프로그램 확대, 시설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함께 포괄할 필요가 있음.

나. 집행

□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과정과 실무자 교육일정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음.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욕구나 개선사항들을 평가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한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함.

다. 성과환류

-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수혜자 및 종사자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함. 만족도 조사결과가 아동은 85%, 부모는 92%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직무만족도 또한 3.57(5점 만점)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3-2〉 드림스타트 대상자 확대(2-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명확하고 적절하게 설정함. 사업의 각 주체별 역할이 명확하다고 판단됨.
집행	예산 또한 계획대로 100% 집행되었음.
성과환류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지역 목표치는 100% 달성. 드림스타트 사업 수혜아동 수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그러나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적인 통합서비스 제공과 연계조정을 위한 공공전달 체계 구축과 같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향후에는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적인 통합서비스 제공과 연계조정을 위한 공공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되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2-가-3)

가. 기획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망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의 발견부터 상담·보호·의료·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확하고 적절함.

- 초기개입 주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제시되어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의 주체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나. 집행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됨. 또한 CYS-Net의 신규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을 독려한 점은 높게 평가.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홍보 노력과 홍보효과로 인한 성과(예, 서비스 인지도, 대상자 발굴효과) 등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자료는 2012년도 홍보효과 실적만을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수혜대상자 수의 증가와 같은 성과는 긍정적인임.

다. 성과환류

- 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만족도나 위기변화 정도는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 매우 적절한 지표임. 설정한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점은 높게 평가함.

라. 총평 및 제언

- 향후에 현황조사에서 파악된 욕구 및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이 필요.

〈표 3-3〉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2-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업의 내용은 상담의 확대와 상담채널 활성화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의 목적과의 연관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망 구축과 관련한 사업내용과 상담·보호·의료·자립 지원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집행	예산은 계획대로 지출된 것으로 평가함.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토론회를 통해 욕구 및 개선사항을 파악한 점은 높게 평가함. 이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함.
성과환류	향후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상담·보호·의료·자립 지원, 대상 청소년의 발굴과 관련된 성과지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2-가-4)

가. 기획

- 본 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보호, 상담, 학습지도, 결식 및 지역사회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함
-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돌봄 사업과 여가부에서 수행하는 방과 후 돌봄 사업은 모두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부는 최종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돌봄을 제공
 - 비슷한 대상에게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전달체계를 이원화하여 한다는 점은 사업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전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사업내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나. 집행

-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민관·학계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판단됨. 실태조사 및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욕구를 발견하여 이를 사업운영에 반영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함.
-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아카데미 종사자의 전문성 및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를 제시하고 있음. 목표치에 대한 근거가 이전년도 만

족도에 근거하여 약간 상향하여 설정하였다는 것은 타당한 부분이 있음. 다만, 용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 아카데미 이용자 만족도보다는 만족률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3-4〉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2-가-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가 명확하고 역할분담 또한 명확함. 방과후 돌봄사업은 3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부처간 업무는 단순 나누기가 아닌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할 것으로 기대함. 이러한 사항은 기획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집행	예산은 대체로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사업의 운영 또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기획부터 운영 및 전달체계까지 이원화되어 사업을 운영한 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성과환류	현장의 모니터링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어 사업이 수정되고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음.

□ 비슷한 대상에게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전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며, 사업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을 통합하고,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함.

□ 현장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향후 사업기획에 반영하기를 권장함.

제2절 아동청소년 역량강화(2-나)

〈표 3-5〉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2-나) : 영역별 평가결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2-나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	2-나-1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①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도화 ②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
		2-나-2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다양화 ① 청소년 교류 약정국 확대 ② 해외체험 참가자 확대

□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 청소년 교류 약정국 확대 및 해외참가자 확대를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였음.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설치는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판단됨. 그러나 청소년 교류 약정국 확대 및 해외참가자 확대와 같은 사업의 중요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종결 및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목표를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로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했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를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함. 향후에는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한 정도 및 청소년 정책활동이 정책에 반영된 성과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봄.

1.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2-나-1)

가. 기획

□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도화(2-나-1-①)

○ 본 사업은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함

로써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있음.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사업의 운영에 대한 주체가 명확함.

○ 본 사업은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조정 노력 미흡함.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미반영된 채로 2011년에 중단된 사업임. 따라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용을 주 평가대상으로 함.

□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2-나-1-②)

○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 사업은 청소년 친화적 정책구현 및 청소년의 민주 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의 사회 참여기반 확대와 청소년이 관련정책의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기회와 경험의 장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목적이 명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업의 시행 주체는 명확하나, 주체간 역할 분담과 협업은 미흡함.

나. 집행

□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도화(2-나-1-①)

○ 연차별 시행계획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같은 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근거는 없음.

□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2-나-1-②)

○ 현황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성과지표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

○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의 홍보와 관련된 노력과 관련된 근거자료가

없어 이를 판단할 수 없음. 반면에 청소년이 제안한 과제가 정책에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매우 높게 평가함.

-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으며, 청소년의 정책활동 참여 정도와 관련되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제시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함.

다. 성과환류

□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도화(2-나-1-①)

- 성과지표는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제도화로 설정되어 있음. 사업의 목적이 아동의 권리 증진과 사회적 인식 확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매해 같은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음. 제도화가 되지 못하였을 때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는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2-나-1-②)

- 실제 청소년이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관련 성과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만족도 조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향후에는 만족도와 함께, 청소년이 실제 한 노력들과 그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총평 및 제언

□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도화(2-나-1-①)

- 사업중단에 따른 사업의 책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사업의 방향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2-나-1-②)

- 향후에는 사업주체간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현황조사에서 발견된 욕구 및 개선 사항을 반영 필요
- 청소년이 실제 한 노력들과 그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

〈표 3-6〉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과 참여기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2-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도화 : 아동의 권리증진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UN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점검, 아동권리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아동권리음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음.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내용이라고 판단됨. ②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 : 사업내용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목적에 맞는 내용이라고 판단됨.
집행	①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도화 : 예산은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계획대로 100% 집행되었음. ②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 :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 예산은 계획대로 100% 집행하였음
성과환류	① 아동권리 모니터링 제도화 : 결과적으로 3개년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②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설치 : 현황조사를 통해 청소년특별회의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나, 성과지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2.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2-나-2)

가. 기획

□ 청소년 교류 약정국 확대(2-나-2-①)

- 청소년의 인격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참가국과의 청소년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는 적절하고 명확함
- 반면에 사업의 집행 주체가 변경되었고, 그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해외체험 참가자 확대(2-나-2-②)

- 청소년의 국제교류 증대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됨. 사업의 내용 또한 목적에 맞게 설정되었다고 봄.
- 2012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그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나. 집행

□ 청소년 교류 약정국 확대(2-나-2-①)

- 상대국의 사정에 의해 사업집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매년 반복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수정·보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음
-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음

□ 해외체험 참가자 확대(2-나-2-②)

- 세부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그러나 상대국의 사정에 의해 사업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매년 반복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예산 또한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음

다. 성과환류

□ 청소년 교류 약정국 확대(2-나-2-①)

-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대체로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해외체험 참가자 확대(2-나-2-②)

-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그러나 목표치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설정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목표치 달성률을 높여 함.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보완되어야 하겠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3-7〉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2-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청소년 교류 약정국 확대 : 매년 10-40명의 청소년을 1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초청 및 파견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제시한 것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② 해외체험 참가자 확대 : 청소년의 국제교류 증대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됨.
집행	① 청소년 교류 약정국 확대 :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국가수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교류약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었는가는 의문임 ② 해외체험 참가자 확대 : 해외체험 참가확대가 성과목표이나, 목표치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하향 조정된 점은 사업의 목적에도 맞지 않음.
성과환류	① 청소년 교류 약정국 확대 :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음. ② 해외체험 참가자 확대 :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 교류 약정국 확대(2-나-2-①)

- 사업의 중단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며, 상대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사전 대응이 미흡

□ 해외체험 참가자 확대(2-나-2-②)

- 사업의 중단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상대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본 사업의 성과가 달라짐에도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미흡.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성과 달성을 위한 당해년도 목표치는 이전 년도의 실질적인 목표 달성치와 비교하여, 달성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정된 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판단됨(2009년도의 성과목표치는 1,865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400명으로 설정함. 이는 2009년도 말에 실질적으로 달성한 목표치가 1,267명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2011년에는 2010년도에 달성한 수치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목표

치 달성률이 높아짐.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보완되어야 함.

제3절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2-다)

〈표 3-8〉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2-다) : 영역별 평가결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2-다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2-다-1	아동청소년 안전체계 강화 ① 안전사고 사망아동 수 감소 ② 안전지표 마련 및 활용
		2-다-2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①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신고율 제고
		2-다-3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구축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지표 마련과 동시에 안전사고 사망 아동 수 감소,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 과 같은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세부사업들은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이 경찰청 아동지킴이집 사업에 통합된 점은 사업기획 단계에서 타 부처와의 유사사업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향후에는 사업 기획 시 타 부처 사업들과 유사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각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이 반영되는 환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겠음.

1. 아동청소년 안전체계 강화(2-다-1)

가. 기획

□ 안전사고 사망 아동수 감소(2-다-1-①)

-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해 아동안전콘텐츠 개발·보급,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구축 및 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사업내용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함
- 사업의 주체가 명확하고 주체 간 역할이 비교적 명확함
- 안전사고 사망 아동 수 감소사업은 홍보 및 교육에 치중되어 있음. 안전사고의 원인별 대책이 다르고, 교육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임

나. 집행

- 안전사고 사망 아동수 감소(2-다-1-①)
 - 대상 아동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한 점은 높이 평가함. 그러나 안전사고 사망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홍보나 교육 이외의 다른 방식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모니터링을 통해 나오기를 기대함.
 - 홍보나 교육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만족도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음. 또한 교육대상이 아동으로만 치우쳐져 있음. 아동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동 이외의 아동관련 종사자 및 가정 내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안전 교육 또한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다. 성과환류

- 안전사고 사망 아동수 감소(2-다-1-①)
 - 실제로 안전사고 사망아동 수의 감소와 관련된 지표를 당해년도에 제시하는데 한계는 있으나, 다른 방식의 사업효과성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총평 및 제언

- 안전사고 사망 아동수 감소(2-다-1-①)
 - 향후에 안전사고의 원인별 대책이 사업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안전사

고 사망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홍보나 교육 이외의 다른 방식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 교육대상이 아동으로만 치우쳐져 있음. 아동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동 이외의 아동관련 종사자 및 가정 내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안전 교육 또한 향후에 사업에는 반영되어야 할 것임.

〈표 3-9〉 아동청소년 안전체계 강화(2-다-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로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교육콘텐츠 개발·보급과, 아동안전교육 활성화 및 대국민 홍보로 본 사업의 목적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집행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산 또한 100% 집행되었음
성과환류	사업내용이 교육과 홍보에 치중되었다는 점은 아쉬우나, 그에 맞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치 또한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2.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2-다-2)

가. 기획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2-다-2-①)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법 등 아동학대 예방 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을 통한 제도 개선,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50개소)에 대한 업무 지원,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매우 적절한 사업내용임. 또한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 전담 심리치료·보호시설 운영 및 가족치료 서비스 제공은 적절한 사업내용이라고 평가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명확하나 심리치료·보호시설에 대한 기능 및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5개소의 시설만으로 치료·보호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12년과 비교하여 4개소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함.

-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치료·보호 관련기관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치료기능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함.

나. 집행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2-다-2-①)

-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추진 및 아동학대 관련 예방 교육 실시 등과 같이 사업의 기획에 맞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었고, 성과도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예산 또한 계획대로 100% 집행되었음. 치료·보호시설을 확대운영한 부분도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정책자문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 예방 관련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결과를 본 사업의 계획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만함.

다. 성과환류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2-다-2-①)

- 성과지표가 타당하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판단됨.
- 학대와 관련한 재신고율이 높아지는 시점에 보호·치료시설을 확장하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러한 노력이 (1→5개소로 확장)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라. 총평 및 제언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지원(2-다-2-①)

- 향후에는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치료·보호관련 기관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치료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치료·보호와 관련된 성과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표 3-10〉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2-다-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사업의 목적은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명확하게 설정함.
집행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추진 및 아동학대 관련 예방교육 실시 등과 같이 사업의 기획에 맞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었고, 성과도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함.
성과환류	성과지표가 타당하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판단됨.

3.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2-다-3)

가. 기획

-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의 목적은 아동대상 범죄 및 실종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 등 아동보호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 안전보호체계 구축임. 사업목적이 명확함.
- 경찰청의 아동지킴이집 사업과 본 사업이 유사한지에 대해 사업기획단계에서 사전에 점검되었어야 함.
- 본 사업의 주체가 명확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 경찰청,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 지방경찰청 및 지구대와 파출소 간 역할을 적절하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됨.
- 아동안전지킴이의 규모와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같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기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근거 자료가 없음.
- 연도별 사업실적의 수치가 맞지 않은 부분과 각 실적이 아동안전지킴이의 효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나. 집행

- 매년 동일한 사업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업의 구체성이 미흡
 -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사업시행 주체의 구성원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협의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할 근거는 없음.
- 본 사업은 2013년도에 아동범죄 예방 유사사업간 예산을 통합하여 경찰청으로 이관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가 2011년도까지 범죄예방 및 아동 보호실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도에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만족도로 변경됨.
- 2012년도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점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 목표치의 설정 또한 불분명함.
- 향후에는 만족도 조사 수행 시 본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라. 총평 및 제언

- 향후에는 사전기획단계에서 타 부처의 사업과의 유사성 검토가 필요

〈표 3-11〉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2-다-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아동과 관련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순찰활동을 전개한 것은 지역단위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사업내용임.
집행	예산은 계획대로 100% 집행되었음.
성과환류	범죄발생 다발지역의 집중치안에 대한 성과지표로 범죄예방 및 아동 보호실적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나 목표치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제4장 노인 분야

-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제2절 치매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
- 제3절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 제4절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

4

노인 분야 <<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3-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3-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3-가-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범위 단계적 확대
		3-가-2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3-가-3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
		3-가-4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시행과제 선정은 타당성이 있고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이 있음

□ 2012년에 종료된 경증대상자 보건복지예방서비스 제공 강화사업은 등급의 판정자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역 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단순 협조 요청사항으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성과관리 과제로 부적합

□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제는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에게 재가급여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재가센터장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과정 고시(안) 마련 등으로 과제가 종료된 것은 그 근거가 타당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확대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량 성과지표로써, 인정점수 완화에 따른 급여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등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으로 달성

할 수 있는 포괄적 지표로 타당함

□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마련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함

○ 그러나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시 2013년까지 계획하였던 급여대상자는 57만명(노인인구 9.6%)으로 그 수준에는 미달하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양적 및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함

〈표 4-1〉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3-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의 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시행과제 선정은 타당성이 있고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이 있음
집행	등급의 판정자를 지자체 사업으로 연계, 제공인력 양성의 개선 등의 집행은 적절하였으나, 대상자 확대는 당초 계획에 비해 다소 미흡
성과환류	성과목표는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비율은 노인인구의 5.5~6.1%로 지속적으로 상향하였고,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매년 100%에 도달함.

1. 급여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3-가-1)

가. 기획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를 확대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를 등급외자 중 치매·중풍 등 보호가 시급한 대상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은 적절함

□ 사업내용의 적절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55~75점→51~75점)하여 대상자 확대 추진

○ 대상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마련 및 시행령 개정('13년 7월)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보건복지부
 - 제도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재정 운영 및 추계, 시설운영 지원 등
 - 전달체계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급여제공)
 - 사업시행기간: 2008. 7월 이후 계속 사업
- 자원투입
 - 예산 재원 형태: 국비 15%, 지방비 22%, 기타(보험료) 63%
- 사업집행관리
 -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전체 회의 및 실무위원회 주기적 개최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확대 관련 홍보 실시
 - TV/라디오 방송, 옥외매체(전광판), 신문잡지, 페이스 북 등
 - 민원, 불편 사항, 고충 처리 등의 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 1577-1000 운영

다. 성과환류

- 성과계획의 적절성
 - 성과목표를 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재원으로 설정하고, 성과척도를 전년대비 5%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 성과목표의 달성도
 - 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 성과 달성치를 매년 초과 달성함

□ 제도 개선 노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2012. 9.)을 수립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 추진

라. 총평 및 제언

〈표 4-2〉 급여대상자 범위의 단계적 확대(3-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 추진한 점이 우수함
집행	과제 추진체계에 따른 역할이 명확하고 모니터링과 홍보가 실시됨
성과환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원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됨

□ 향후 제언

- 사업의 필요성과목표 설정이 타당하고,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대상자 범위의 확대에 따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적 추진이 요구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인식도 조사 내용을 세분화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

2.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3-가-2)

가. 기획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설 입소자의 증가 등에 따른 인프라 확충
 - 노인요양시설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 강화된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증개축, 개보수사업 중점지원
 - 취약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

○ 2009년 248개소 → 2012년 363개소 → 2013년 2,379개소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사업시행 절차: 국고보조금사업 확정 내시 및 국고보조금 교부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 시행기간: 1986년 이후 계속 사업

□ 자원투입

- 예산 재원 형태: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집행관리

- 정기 점검
 - 점검내용 : 신축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사유 및 지자체의 관리 실태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확인
- 수시 점검
 - 점검내용 : 시도 또는 시군구 자체 계획에 의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확인

다. 성과환류

□ 성과목표의 달성도

- 요양시설 충족률은 100%를 상회하였으나, 장기요양기관 이용률은 달성률 90% 이하임

- 강화된 시설기준 충족 및 안전관리 강화: 달성률 1,042%(2013년)

- 개인운영시설의 소방설비 설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당초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

□ 제도 개선 노력

- 2013년 예산 집행 시 소모품 구입을 금지토록 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신규 장비 구입 시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물품정보를 등록
- 장비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장비구입의 투명성 확보

라. 총평 및 제언

〈표 4-3〉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3-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요양시설 충족률이 100%를 상회함
집행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음
성과환류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100% 기준으로 약간 미달함

□ 향후 제언

- 적극적 인프라 구축으로 양적인 확보가 가능해졌으나,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와 재가서비스의 과열 경쟁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질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3.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3-가-3)

가. 기획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로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유도를 통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 보장

- 시설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촉진, 시설 선택권 보장 및 알권리 충족
 - 2009~2010년: 시설급여(1,194개) 및 재가급여(5,794개) 장기요양기관 평가 (신청에 의거 평가)
 - 2012~2013년: 전체 장기요양기관(재가 9,186개, 시설 3,664개) 평가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 주관: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2년 주기로 평가
 - 평가방법: 평가단이 시설을 방문하여 평가지표 시행률 조사
 - 평가기간 중 건보공단 평가전담인력 90명 투입('13년 평가기준)
 - 2인 1조로 시설을 방문하여 1일간 현장 평가
- 평가 내용: 5개 영역 98개 지표
 - 적정 입소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적 서비스 관련 기준 총98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인력기준, 종사자 복지, 회계, 감염관리, 실내환경, 식당위생, 화재, 낙상·욕창, 배설, 확대방지, 소독, 목욕, 응급대응 등)
- 사업집행관리
 - 평가계획의 수립·확정→평가계획 공고→평가예정 통보→평가요원 교육 및 평가 매뉴얼 마련→평가실시(현장방문)→평가결과 공표

다. 성과환류

- 대상기관 전체평가, 평가결과 분석으로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및 경과결과 공표

라. 총평 및 제언

〈표 4-4〉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수준 향상(3-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로 서비스 수준의 향상
집행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평가 실시
성과환류	전 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와 인센티브 제공 및 결과 공표

□ 향후 제언

- 입소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 서비스의 개발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대국민인식 개선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

4.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3-가-4)

가. 기획

- 요양보호사 양성제도의 개선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 및 지속적인 자질향상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질 제고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및 자격제도 개선,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등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 및 지속적인 자질 향상
- 요양보호사 시험제 등으로 요양보호사 전문성 제고
- 교육기관 지정제를 통한 적절한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강화로 교육과정 운용

의 내실화 강구

- 보수교육의 법제화 추진으로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자질 향상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임금, 근무환경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서비스 달성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에게 재가급여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령 정비, 관련 고시 제·개정 및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및 급여제공
 - 사업주 위탁교육 등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와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리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요양보호사 양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자격관리 등
- 사업수행절차
 - 요양보호사 양성
 - 보건복지부: 법령 및 지침 마련
 - 시·도: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교육기관 설립 및 관리감독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기관)
 -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
 - 보건복지부: 고시 및 지침 마련,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 교육기관: 교육실시, 교육수료자 관리

다. 성과환류

-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 양성을 성과목표로 설정
- 요양보호사 자질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양성제도의 개편, 다양한 직무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법령 마련 및 정비가 우선 필요하여 성과지표 달성치로 설정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규제라는 관련 제도 변화에 의해 직무교육 여건마련으로 달성도를 수정하였으며, 직무교육 교재 개발 등 직무교육 여건마련을 통해 성과지표를 달성함
- 제도 개선 노력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장 간담회 개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직무교육과 관련된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자격제도 개편, 직무교육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4-5〉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3-가-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요양보호사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집행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법령 및 지침 마련
성과환류	직무교육 입법화 및 관리책임자 자격 부여 교육과정 고시 제정

- 향후 제언
 - 교육과정 고시제정 및 직무교육 여건 마련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나, 직무교육의 질 및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제2절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3-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3-나	치매 예방 및 치료 관리 강화	3-나-1	치매 예방 및 치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3-나-2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3-나-3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세부 시행과제로 치매예방 및 치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인프라 구축,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의 선정은 타당하고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이 있음

□ 제2차 치매종합계획 수립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짐

- 치매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함
-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저소득층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잘 이루어짐

〈표 4-6〉 치매 예방 및 치료관리 강화(3-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세부시행과제로 과제의 선정은 타당하고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이 있음
집행	제2차 치매종합계획 수립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짐
성과환류	성과지표가 2012년까지 노인인구 대비 치매선별검사 실시율이었으나, 2013년 총 검사 노인수 대비 75세 고위험군 비율로 변경됨에 성과지표 달성도는 미달됨.

□ 향후 제언

-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과제는 전반적으로 대상자 및 인프라 확대 등 종합적 지원이 제공되었으나, 향후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1. 치매 예방 및 치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3-나-1)

가. 기획

□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료·관리

-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로 증상 호전 또는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 사업의 목적은 타당성이 있음

□ 치매검진은 2009년에 191개 보건소에서 2010년에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2010년 32천명에서 2013년 42천명으로 확대

□ 치매관리법 제정(2012년 2월) 및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년 7월) 수립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 예산 지원 등
- 시·도: 보조금 예산 확보, 시·군·구의 사업집행상황을 점검
- 시·군·구(보건소): 치매검진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치매치료관리, 수혜자 발굴 및 지원
- 협약병원: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수행

- 보건소, 협약병원 등은 치매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치매검진 실시내용 등을 적극 홍보
- 보건소, 협약병원 등은 치매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검진사업 홍보물 및 교육 책자 등을 보급하고 교육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를 '치매검진 인원 수'에서 2013년에 '고위험군 치매검진 수'로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09~2012년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2013년 성과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100% 달성률에 미달된 수준임.
- 제도 개선 노력
 - 현장 점검 실시 및 반기별 집행사항 점검
 - 지자체 협동평가에 반영하여 사·도의 관심 유도 및 실적 증가

라. 총평 및 제언

〈표 4-7〉 치매 예방 및 치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3-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치매검진사업의 확대,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집행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적절한 치료·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
성과환류	2013년 성과지표의 변경으로 성과목표의 달성도가 약간 미달

- 향후, 인지기능 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치매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관리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

2.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3-나-2)

가. 기획

- 치매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치매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치매관리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확충, 치매 전문인력 교육, 관련 정책통계 생산 등의 사업을 설정
- 중앙치매센터(2012. 5.) : 치매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치, 치매연구사업 계획 작성, 국내외 추세 및 수요예측, 치매인식개선 등
- 광역치매센터(2013. 7.) : 11개소 지정, 광역 단위 연구사업 추진, 지역 내 치매현황 조사 및 통계관리 등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 지역사회 치매환자 및 치매위험군 대상 인지증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전문병동 운영
- 치매전문인력 교육 실시
- 치매유병율조사(2012년), 치매노인실태조사(2011년) 등 정책통계 생산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수립, 지침 시달, 예산 지원 등 사업 총괄
 - 시·도: 광역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광역치매센터, 공립요양병원) 감독 등
 - 중앙치매센터: 치매연구사업, 치매환자의 진료, 재가치매환자관리지침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업무,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제공 등
 - 광역치매센터: 광역 내 치매 치료·보호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훈련, 광역단위 연구사업 추진, 지역 내 치매병원 및 요양시설에 기술지원 및 질 관리, 지역 여건에 맞는 가족지원·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수행

-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구축, 경증치매환자 대상으로 인지프로그램 실시, 저소득층을 대상 공공보건의료 사업 실시
- 치매전문교육기관(각 학회) 등: 교육대상자 모집, 교육, 사업평가 등

사업집행관리

- 사업 중간보고(반기) 및 결과보고서 보고

다. 성과환류

- 치매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치매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성과지표와 증점추진과제와의 관련성이 있음
- 치매전문인력 중도 이탈자 및 교육대상자 모집이 다소 부진하여 일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달성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4-8〉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3-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확충, 치매전문인력 교육 실시
집행	국가치매관리사업 추진체계가 잘 이루어짐
성과환류	치매전문인력 양성의 성과목표를 대체로 달성함

제언

- 치매전문인력 및 시설인프라의 수요 대비 공급 측면에서의 목표치 설정
- 구체적 통계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실시

3.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3-나-3)

가. 기획

사업의 필요성

- 치매가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이라는 사실을 홍보·교육
- 치매에 대한 인식전환 및 지식향상을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체계적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 치매극복의 날 매년 실시

사업내용의 적절성

-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배포
- 치매극복의 날(9.21)을 기념해 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치매정보365사이트 운영

나. 집행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선정
- 민간단체(홍보기획사): 홍보세부계획 수립, 매체광고 실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다. 성과환류

- 치매극복의 날 행사는 매년 실시되어 달성률이 100% 이나, 행사 실시 여부는 성과지표로 부적절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4-9〉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3-나-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치매극복의 날, 치매정보365사이트 운영
집행	치매극복의 날 행사 실시
성과환류	성과목표 달성률이 100%임

□ 제언

- 일회성 행사사업 실시 여부에 대한 성과목표 산출 근거는 제한적임
- 라디오 홍보, 온라인 홍보 등 매체광고, 보도자료 배포 등 매체 종류별 홍보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제3절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3-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3-다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3-다-1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3-다-2	노인 여가활동 지원 ① 노인 여가활동 지원 ② 노인생애관리서비스 제공

1. 노인자원봉사 활성화(3-다-1)

가. 기획

□ 사업의 필요성

- 노인들의 자발적, 주도적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속 노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사회참여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자원봉사 기반을 마련

□ 목표의 적절성

- 노인자원봉사를 통해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책임지는 노인상 제시, 노인의 자아실현 등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국적인 노인자원봉사 조직화 및 체계적인 지원·관리를 통하여 노인자원봉사의 가시화 및 효율화

□ 사업내용의 적절성

-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지원
 - 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자원봉사 클럽 구성·운영비 지원
-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지원
 -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구성된 자원봉사단 리더 및 봉사자 교육 등
-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지원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노인자원봉사클럽 지원: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중앙회, 14개 시도 연합회, 경로당 및 노인대학
- 전문노인자원봉사사업: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협회, 법인단체 등
-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수행): 사업참여기관 공모, 선정 → 사업실행 → 종료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집행관리

-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과정 평가 및 성과평가
- 민원, 불편 사항, 고충 처리 등의 방안(제도적 장치)

□ 자원투입

- 2011년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지원센터(16개 지역 700개 클럽)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37억원 확보로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확대 추진
-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지원 클럽 수 확대('11년 700개→'12년 1,000개→'13년 1,400개) 및 전문 프로그램 지원 확대('11년 20개→'12년 30개→'13년 36개)

다. 성과환류

□ 성과계획의 적절성

- 노인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유도

- 연간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연차적인 성과지표 설정
 - 전국 시군구 약 230개를 고려할 때 적절한 클럽 지원 확대
 - 예산 지원을 고려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범위 설정(중복 프로그램 지원 배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지원)
- 중점추진과제인 노인사회참여 활성화의 성과지표 자원봉사 참여 지원 수를 확대하기 위해 세부시행과제 상의 성과지표인 경로당 중심의 자원봉사 클럽 운영 지원 및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 연도별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으로 목표치 달성

- 시·군·구 당 평균 지원 클럽 수를 확대(2011년 약 3개 → 2013년 약 6개)

□ 제도 개선 노력

- 시행과정에서 사업주체(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자체평가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점검
- 자체 평가 결과를 차기 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라. 총평 및 제언

〈표 4-10〉 노인자원봉사 활성화(3-다-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
집행	사업 운영 및 수행기관의 과정·성과 평가 실시함
성과환류	경로당 중심의 자원봉사 클럽 및 전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함

□ 제언

- 기존 노인복지사업 실시 기관 중심의 단순 자원봉사활동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단체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

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활력적인 노후생활의 기회 제공으로 확대

- 노인자원봉사활동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의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자원봉사자로서의 잠재능력과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의 개발

2. 노인 여가활동 지원(3-다-2)

가. 기획

- 사업의 필요성
 - 노인이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의 계기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절히 적응해 나갈 능력을 향상시켜 보람된 노후생활 설계 지원
- 사업내용의 적절성
 -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건강교육, 평생교육, 예능교육, 취미교육 등 다양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재발의 기회 제공
 - 연차별 노인복지관 개소 수 확대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절차: 사업계획 제출(노인복지관) → 사업승인 및 교부금 교부(지자체) → 사업수행 및 사업수행 결과보고(노인복지관)
- 사업집행관리
 - 사업수행 및 자치구 등의 지도점검, 행정지도, 노인복지관 사업결과를 자치구에 제출하고, 관련자에게 정보제공 및 대국민 홍보

○ 모니터링 추진

- 시·도별 노인복지관 건립 수요 조사 실시
- 노인복지관이 없는 취약 시·군·구 위주로 노인복지관 신규 건립을 위한 분권교부세 교부 요청

다. 성과환류

-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성과목표로 하며, 노인복지관의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인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
- 노인복지관 이용인원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

라. 총평 및 제언

〈표 4-11〉 노인 여가활동 지원(3-다-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노인이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기개발 기회 제공
집행	취약 시군구 위주로 노인복지관 신규건립 지원
성과환류	성과목표 100% 달성함

□ 제언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노인복지관 뿐 아니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

제4절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3-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3-라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	3-라-1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3-라-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인식 개선

- 취약노인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 노인학대사례의 체계적 대응과 노인학대 예방 등의 세부과제 선정은 타당하고,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이 있음
- 취약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및 노인학대 사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이 필요
- 양질의 체계적인 공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됨

〈표 4-12〉 취약노인 보호서비스 강화(3-라)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 복지안전망 구축, 노인학대사례의 체계적 대응, 국민의 인식전환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등의 과제 선정은 타당하고,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 있음
집행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에 의해서 수행되고, 노인학대 예방사업은 복지부와 시·도가 주체이나 학대사례관리 등은 시·군·구의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루어짐
성과·환류	노인돌봄서비스 수혜 인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함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인원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수는 목표치 달성률이 약간 미달함

1)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3-라-1)

가. 기획

- 사업의 필요성
 -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

□ 사업내용의 적절성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과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가사·활동 지원, 안전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소득·건강·주거·사회적 접촉수준이 열악한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의 A, B자로서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사업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노인(등급의 A, B)에 대한 가사(청소, 세탁 등)·활동(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외출동행 등) 지원 및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시행 절차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사업기관 선정(시군구)→ 독거노인 현황조사(시군구, 사업수행기관) → 사업대상자 선정(사업수행기관) → 사업대상자 승인(시군구) → 노인돌봄미(생활관리사) 파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건강상태조사(건강보험공단)→ 신청 및 접수(읍면동) → 상담(읍면동) → 자산조사(읍면동) → 대상자선정(시군구) → 통지(시군구)

□ 사업집행관리

- 바우처 부정수급 지속 관리
 - 동일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간 중복 청구건 조사 (분기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매년)
-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지침 교육 실시(매년)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실시(매년)
- 폭염대비·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정책 마련 및 시행(매년)

□ 자원투입

- 재원형태: 국비 70%(서울 50%), 지방비 30%

다. 성과환류

□ 성과계획의 적절성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통한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는 적절함

□ 성과목표의 달성도

- 예산 증액 비율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 달성률이 100%를 상회함

□ 제도 개선 노력

- 현장점검 및 조사 등을 통해 바우처 부정수급 환수
- 지자체 담당자 지침 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 의견 수렴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조사
- 폭염대비/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라. 총평 및 제언

〈표 4-13〉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3-라-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제공
집행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와 폭염기 취약노인보호 사업을 실시
성과환류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수가 목표치를 100% 달성

□ 제언

- 취약노인의 환경 및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취약층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보호서비스 체계 구축
-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연계 프로그램 강구

2.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인식 개선(3-라-2)

가. 기획

- 가족간 갈등·부양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사례의 체계적 대응과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통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하며, 학대사례에 개입하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률, 의료, 상담서비스를 제공
 -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충(2개소),
 -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 및 사후 모니터링 확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 실시, 상담 매뉴얼 교육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 실버스마일(노인일자리 사업) 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변안전 대책 수립,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장점검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업무지도 및 감독
- 지방자치단체(시·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분관 설치 지원, 시·도 지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업무지도 및 감독
- 사법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9 구급대: 노인학대사례 신고의무자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학대피해 응급사례 노인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신속한 장기 요양 등급판정, 학대관련 조사 및 증빙자료 요청 시 적극적 협조
- 의료기관: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노인학대의심사례 조기 발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 시 신속한 보호, 우선 입소 보호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법률기관: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 사업집행관리

- 현장점검 및 평가: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가(2010년, 2013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장점검(2012년)
- 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 노인학대예방 TV CF송출(09년), 노인학대예방 라디오 CM송출(13년), 세계노인학대인식의날 기념 SBS라디오 공개방송(13년), 홍보대사 위촉 등

- 노인보호전문기관 차량지원: ‘바보의 나눔’과 ‘하나은행’의 후원으로 학대피해 노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지원(2012년 24개 전문기관에 1대씩 지원)

다. 성과환류

□ 성과계획의 적절성

-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례 종결율을 목표로 설정: 사례종결률 2008년(75.7%)에서 약 2% 이상 증가한 78%로 설정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노인학대 현장조사 접근성을 고려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1개 이상), 도(2개 이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기관 설정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보호노인 수: 응급사례 등 일시보호 및 상담치유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숙식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목표로 설정, 2011년 약 600명에서 10% 증가한 660여명으로 설정

□ 보호노인 수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4-14〉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인식 개선(3-라-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집행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성과환류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100% 상회

□ 제언

-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교육의 실시



제5장 장애인 분야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제2절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제3절 장애인 권익 증진

제4절 장애인복지전달체계 선진화

5

장애인 분야 <<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4-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4-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4-가-1	장애인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4-가-2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가. 기획

-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 중점추진과제는 크게 2개의 세부시행과제(장애인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로 구성됨.
- 세부시행과제는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및 사회참여 기회 상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계안정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장애인들의 권리인식 향상과 사회참여 강화로 인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요구가 증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부응하는 적절한 과제이며,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을 가짐.
- 세부시행과제의 변화는 수혜자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변화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됨.

나. 집행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의 중점추진과제를 구성하는 2개의 세부시행과제는 제도 추진과정 중 변동이 있었음.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 ‘장애인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과제의 경우, 2007년 국회에서 기초장애연금 도입이 결의되어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0년 장애인연금법으로 제정, 시행되고, 2011년 이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 결과 중증장애수당 대비 급여액이 인상되었고, 차상위 초과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절하게 진행됨.
-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과제의 경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및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에는 연금제도를 설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 즉, 관련 연구결과를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의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정부재정투입 우선순위의 문제, 소득역진 발생가능성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지 않고 과제를 종료하여, 목표 대비 추진실적이 미약함.

□ 이의 ‘장애인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의 세부시행과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 주체로서,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이후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계의 반발 등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장애계와의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함. 그러나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 과제의 경우, 2011년 과제 종료 시 장애계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미약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수당(연금) 수급 비율임.
 - 세부시행과제인 ‘장애인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의 성과지표를 중점추진과정의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핵심 제도인 장애수당(연금)의 보장 범위 확대를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의 지표로 삼고자 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장애연금 수급자 비율을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95%(2009년)에서 89%(2011년) 수준으로 낮아짐. 일정 부분 목표치에 근접하였으나 하향되는 경우 그 원

인 검토를 통해, 즉 예산 확보 및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목표 대비 달성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표 5-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4-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요구가 증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부응하는 적절한 과제이며,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을 가짐.
집행	세부시행과제는 제도 추진과정 중 변동이 있었음. 장애인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한 결과 급여액 인상, 차상위 초과자까지 대상자 확대 등 적절하게 진행됨.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의 경우 여러 문제 제기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지 않고 과제를 종료함.
성과환류	장애연금 수급자 비율을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하향된 원인 검토를 통해 목표 대비 달성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1. 장애인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4-가-1)

가. 기획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과제 추진 중인 2010년 7월 도입·시행됨.
 - 본 사업은 2010년 ‘장애인연금법’ 제정으로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수당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사업의 목표는 적절하며 필요한 절차였음.
 - 법 시행 이후 2010년 5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2011년 종료시까지 급여의 원활한 지급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진행하여 옴.
 - 본 사업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 1급, 2급, 3급 중증) 중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만원~ 15만원의 연금을 지급함.
 - 급여대상을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부가급여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함.
 -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합산 지급하는 형태로,

2011년까지 소득 하위 56%인 326천명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로 계획함. 사업추진을 통해 소득 하위 70% 수준까지 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성과를 나타냄.

- 목표 대상자는 제도 시행년도인 2010년 237,185명에서 2011년 285,531명으로 증가함.
- 사업 예산의 경우도 2010년 224,781백만원에서 2011년 430,897백만원으로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99% 수준의 예산집행률을 보여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 향후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장애계의 욕구가 매우 높음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대상자의 확대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시 됨.

나. 집행

- ‘장애인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세부시행과제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자격심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연금이 지급되게 되는 절차로 시행됨.
- 장애인연금은 장애에 대한 기초보장과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제도로써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기여하였으나, 2010년의 경우 대상자가 소득기준 하위 60%로 기초노령연금의 70%에 비해 낮았으나 점차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70%로 상향시키는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함.
- 급여·서비스 제공기관 및 담당인력, 집행기관(지자체) 실무자 대상 직무교육을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연금 사업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집행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함.
- 특히 ‘10년과 ‘11년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신청에 대한 개별 안내, 장애인연금 관련 온라인 배너, 리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장애인연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게 되는 성과를 보임.

- 2010년 장애인연금의 도입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장애등급심사제도 등의 도입으로 장애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노력을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수당(연금) 수급비율로써, 본 과제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보다 더 넓은 등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방향성을 가진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사업의 성과지표인 장애인연금(수당) 수급률은 제도 도입에 따른 일차적인 양적 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함.
- 장애수당(연금)의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성과지표가 설정됨. 또한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을 통해 장애수당(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성과지표 설정함.
- 다만 성과목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목표 대비 달성률은 2009년의 경우 95.2%, 2010년 이후는 80% 중반에 머물러 있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
 -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장애수당의 경우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급자의 지속적 증가가 어려움. 따라서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해 대상자 확대 및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 필요
- 수혜자 수는 2012년에는 수급대상의 42%, 2013년에는 44%로 설정되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수급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 필요
- 현장 및 장애계 의견수렴, 현장점검, 홍보 등을 적절하게 실시하였고, 본 사업 추진 중인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상자 범위 확대 및 급여 수준 인상 등의 건의들을 받아들여 장애인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옴.

라. 총평 및 제언

〈표 5-2〉 장애인 연금지도의 안정적 운영(4-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2010년 '장애인연금법' 제정으로 종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수당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사업의 목표는 적절하며 필요한 절차였음. 향후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장애계의 욕구가 매우 높음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대상자의 확대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시 됨.
집행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연금이 지급되게 되는 절차로 시행됨. 장애인연금에 대한 홍보 실시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게 되는 성과를 보임.
성과환류	성과지표인 장애인연금(수당) 수급률은 제도 도입에 따른 일차적인 양적 목표인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함.

- '장애인 연금지도의 안정적 운영' 과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0년에는 장애인연금 법안이 통과되어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고, 단계별 추진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옴,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계의 반발이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지속적인 장애계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내용이 적절하게 추진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집행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급여대상 확대와 급여수준 인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4-가-2)

가. 기획

-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 과제는 부모의 노후 및 사망 이후 남겨진 장애인 자녀의 장기적인 생계안정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됨.

- 본 사업은 기존 장애인전용보험상품인 '곰두리보험'의 가입 및 판매실적 저조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의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시행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부모 등 보호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 장애인 자녀 등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회적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확대 등 정부 재정투입에서의 상대적 낮은 우선순위로 인하여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부재원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시되었고,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소득수준의 장애인가구 위주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보험료 지원 시 소득역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됨. 이에 따라 별도의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으로의 제도화 없이 장애인이 용이하게 가입·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상품을 개발·판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과제를 추진함.

-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계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보다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된 것은 보험상품 가입 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본 과제는 평가대상기간(2009년~2011년) 동안 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목표로 진행하여,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 도입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미약함.

나. 집행

- 보건복지부, 민간회사가 사업 추진주체로서,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방안 및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보험회사의 경우 세부 상품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도입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보임. 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9년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재원은 수혜자가 될 중증장애인 가족이 부담하고, 정부는 민간부담금에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매칭형태의 재원조달체계를 기본으로 제도를 설계·검토하였으나, 2010년 이후 부모 등 보호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로 장애인 자녀 등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적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본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변화됨. 본 과제의 추진방향 변화에 대한 상황 및 여건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약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방안 마련'이며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관련 연구 수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객관적 성과 달성도를 파악하는 근거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 수행,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재원투입의 우선순위가 낮은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대두,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보험회사 설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방안 마련이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향후 보다 객관적 성과지표로의 설정이 필요함.
- 민간보험회사의 참여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협력·연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5-3)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도입(4-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정부 재정투입에서의 상대적 낮은 우선순위로 인하여 도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
집행	과제의 추진방향 변화에 대한 상황 및 여건에 대한 근거제시가 미약함.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도입방안 마련이며 달성도는 관련 연구 수행으로 설정되어 있어 객관적 성과 달성도를 파악하는 근거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가족의 부양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 자녀에 대한 생계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 본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제도 설계를 추진하는 본 과제의 목적에 맞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단, 연구 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에 따른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장애계와의 의견수렴 기회가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과정 제시가 미흡함.
- 다만, 환경 및 여건 상 별도의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의 제도화 없이 장애인이 용이하게 가입·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보험 상품 개발·판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제시됨.
- 향후 민간보험회사의 참여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협력·연계를 통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필요함.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의 지표는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도입방안 마련' 과 '관련 연구 수행'으로 설정되어 있어 달성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향후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로의 재설정 필요함.

제2절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4-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4-나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4-나-1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4-나-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강화

1.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4-나-1)

가. 기획

-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세부시행과제는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장애인 자립생활’로의 전환, 장애인 욕구 다양화 및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2011년까지 중증장애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 이는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적절하고 필요성이 높음.
- 본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시행된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목표인 ‘추진단’ 운영을 통한 제도 도입의 사회적 합의 도출, 시범사업을 통한 모형의 적정성 및 본 사업의 실현 가능성 검증,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사업목적에 따라 타당한 사업내용이었으며, 장기발전방향의 연차별 사업목표와 일관성을 가짐.
-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도입 기반이 마련됨.
 - 이는 노인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요양 이외에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특징을 반영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추진이었다고 판단됨.

- 구체적으로 제도 시행을 위해 장애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운영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됨.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9년~2011년까지 2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제도 결정임.
- 추진단의 운영 및 시범사업의 실시 등은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합한 정책수단이었으며, 본 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음.

- 본 사업은 만 6세~64세의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어 중점추진과제와 적절하게 연계된 사업내용으로 구성됨. 사업예산의 경우 목표치에 따라 재원이 확보되었으나 집행률이 약간 저조함.
- 향후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급여의 다양화, 급여수준 등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함.

나. 집행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적절하게 추진됨.
- 시범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 관리운영기관, 사회복지서비스관리원, 제공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됨. 이는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집행한 것임.
- 1차 시범사업 결과에 근거한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었고, 제도 도입시 쟁점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적절한 추진과정을 거침.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본 세부시행과제의 목표에 따라 목표기간 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이 추진됨.

-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서비스 다양화, 인종조사 주체 변경, 활동지원기관 지정기준 신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수탁기관 지정(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전달체계가 변화되었으나 이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변화로서 적절함.

다. 성과환류

- 성과목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과 수급 인구를 1급 장애인 대상 30%로 설정하고 성과지표는 수급자의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1급 장애인 대비 활동장애인 수급비율로 제시됨.
- 성과목표는 제도 도입단계에서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급 장애인 즉, 가장 필요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수급비율을 설정하고 있어 타당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하여 추진단의 운영, 시범사업 수행, 주요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계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였음.

라. 총평 및 제언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의 세부시행과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 과제로, 추진과정에 장애계, 학계와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사업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게 추진됨.
-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대상자 확대, 급여의 다양화 및 급여량 확대 등 사업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추진과정과 사업성과는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제도의 내실화에 따른 사업성과목표의 단계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즉, 대상자 확대 등 사업의 내실화에 맞추어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제도 확충 및 내실화를 위한 사업예산의 확보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12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쟁점들에 대한 장애계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대상자 확대 논의와 관련하여 향후 장애등급 기준 보다는 장애인의 인정조사 결과 중심의 대상자 선정이 고려되는 것이 적절함.

〈표 5-4〉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4-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노인장기요양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 이는 장애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적절하고 필요성이 높음.
집행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된 제1차, 제2차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관리운영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적절하게 추진됨.
성과환류	성과목표는 제도 도입단계에서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1급 장애인 즉, 가장 필요도가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수급비율을 설정하고 있어 타당성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2.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강화(4-나-2)

가. 기획

- 사업목표의 타당성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의 목표는 타당성이 있음.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도모하고 장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필요성이 크며, 장애아동 가구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장기발전방향과 일관성을 가짐.

○ 18세 미만, 6종 장애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변병),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1인당 월 14~22만원 바우처를 제공하여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소득기준의 조정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확대 및 강화라는 본 사업의 목표에 적절한 추진이었음.

- 장애아동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장애유형의 확대 및 소득기준의 지속적인 조정을 통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함.

나. 집행

□ 본 사업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제공기관으로,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수혜자를 선정하여 제공기관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개선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 확보 노력을 적절하게 수행함.

□ 계획 대비 자원을 적절하게 투입하였으나, 2009~2010년까지는 집행 실적이 계획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음. 이후 지원 확대 및 대국민 홍보 등의 노력으로 계획 대비 달성률이 점차 증가하도록 한 것은 사업 확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노력이었다고 평가됨.

○ 모니터링, 제공기관 관리, 평가, 워크숍 실시, 민원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사업집행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짐.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초기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에서 2012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률'로 변경되어 목표치를 측정·제시하고 있음. 이는 객관성 담보 측면에서 적절하게 수정된 성과지표임.

□ 성과지표는 2009~2011년까지는 재활치료서비스 만족도, 2012~2013년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로 사업 중간단계에서 성과지표를 수정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성과지표가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통계에 의해 작성되며 타당한 성과지표로 반영되었다고 하겠음.

○ 목표치의 경우 65%에서 시작하여 82% 수준대로 상향되어 있으며, 달성률은 사업 초반은 100%를 초과하였으나 2013년은 95% 수준으로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간 시점에서의 성과지표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성과지표 변화에 따른 성과목표치 설정에 대한 검토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즉, 만족도는 높으나 이용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서비스 이용 활성화 전략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추가예산 확보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였고, 국감 등을 통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적절하게 하였음.

○ 향후 정교한 성과목표치 설정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5-5〉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강화(4-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경제적 부담경감과 재활치료서비스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장애아동가정의 높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타당한 사업임.
집행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발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장애계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특히,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것은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였음.
성과환류	성과목표 달성의 경우 성과지표 개선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하였으나 성과지표 변화에 따른 목표치 설정과 달성률 검토를 통해 하향된 성과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아동 가족의 경우 조기치료를 위한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비용 부담이 높아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경우 어려움이 매우 컸음.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확대 과제외의 경우 저소득장애아동 가정의 상황을 잘 반영한 사업이라 하겠음.

□ 향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제3절 장애인 권익 증진(4-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4-다	장애인 권익 증진	4-다-1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2009~2010) ②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전략 추진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2011~2012)
		4-다-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제도 개선 추진

1.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4-다-1-①)

가. 기획

□ 본 사업은 '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홍보 및 법령상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며 이는 적절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의 구성·운영을 통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대국민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사업의 연중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를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였는데, 이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절차임.

○ 2009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모니터링 체계구축을, 2010년은 2010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개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내용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임.

□ 사업 예산은 국비 100%로 2009년과 2010년 동일하게 450백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집행실적은 2009년의 경우 46.9%, 2010년은 96.8%로 사업수행 초반 계획 대비 달성율이 매우 저조하였음.

나. 집행

- 본 사업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영역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에서 담당하고, 동 사업에 대한 의무대상기관의 사업추진 진행상황의 모니터링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함.
- 본 사업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수행(사업기간 2009~2010)
 -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을 포괄하는 동법의 특수성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공공 및 민간의 장애인 차별실태 개선 의무이행 사항 점검 및 장애인 차별개선 등 종합모니터링을 실시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조사표의 개발, 예비조사 실시, 조사 실시(① 관계부처 협의회 → 당해연도 이행 모니터링 → 현장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실시, ② 조사원 교육 → 전년도 이행개선 모니터링 → 이행개선 상담·안내반 운영), 조사결과 분석 및 결론(모니터링 결과 및 이행개선방안 제시)의 절차로 추진되어 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로 성과목표인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와 연계되는 지표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인지도’는 주관적 지표로서 성과목표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객관적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함.
- 성과 달성정도는 목표치 대비 88%('09)에서 108%('10)로 나타나 높게 나타났으나, 2009년에 비해 2010년의 목표치가 더 낮아진 것은 사업기간이 더 길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객관화와 더불어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평균 50% 대 수준으로 지속적인 홍보 필요

라. 총평 및 제언

〈표 5-6〉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강화(4-다-1-①)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홍보 및 법령상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며 이는 적절함.
집행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시 되는 추진사업들에 대한 조사 실시,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 조사 및 현장 점검 실시, 그 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회, 언론 등을 활용한 홍보사업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추진함.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로 인지도는 주관적 지표로서 성과목표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는데 한계가 있음. 향후 객관적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함.

-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추진과 진행일정이 적절하게 진행됨. 이는 법 시행에 따른 장애계의 높은 관심 하에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됨.
-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부처 협의체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09년 10월에서 ’10년 5월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은 적절하게 진행됨.
- 2010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년)이 3년차에 있으나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임.
 - 단,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는 주관적 지표로서 객관적 지표로의 재설정 필요할 것이며, 성과목표치의 상향조정을 통해 발전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2010년 이후의 본 추진과제와 연계되어지는 후속 세부시행과제에 대한 설명이 부여되어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 즉, 본 사업이 2010년에 종결되는 사업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향후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사업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임.

제4절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선진화(4-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4-라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선진화	4-라-1	장애인 판정·등록체계 개선 및 전달체계 개편
		4-라-2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1. 장애인 판정 등록체계 개선 및 전달체계 개편(4-라-1)

가. 기획

- 본 사업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 및 등급심사 확대를 통한 장애인 등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장애등록 판정의 평가 및 조사와 서비스의 연계성을 통한 장애인 욕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됨.
- 2013년의 경우 본 과제는 장애판정을 통한 등급 부여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낙인 의식을 해소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선 및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본 과제는 2013년 장애인 복지서비스 다양화, 낙인감 해소를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되며 사업의 타당성을 가짐.

나. 집행

-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애등록 판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판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함.
-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행은 약간 미흡함.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공단(장애등급 심사기관) 등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개년 기간동안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제도화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절하게 수행함.

- 장애등급심사의 경우 현황 검토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공기관도 지속적으로 관리함.
- 추진과정에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기획단’,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선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장애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적절함.

□ 본 세부시행과제는 장애등급 심사,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등 하나의 사업내용이 아닌 다양한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추진사업내용 또한 5개년 동안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업내용을 추진하는 등 변화가 있었음. 하반기는 주로 장애등급심사 중심의 사업이 진행됨.

다. 성과환류

-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로 ‘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참여율’을, 장애인 판정·등록체계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여부’를 설정함.
- 매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등을 통한 장애판정체계 개선 및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을 통한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함. 이는 성과목표치 달성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또한 과제 추진내용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
- 수급자 및 장애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하고, 등급심사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한 것은 본 세부시행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 노력이었다고 인정됨.
-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인 ‘장애인주거시설 증 소규모 및 그룹홈 비율 확대’와 본 세부시행과제와의 연관성은 미약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5-7〉 장애인 판정 등록체계 개선 및 전달체계 개편(4-라-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는 2013년 장애인 복지서비스 다양화, 낙인감 해소를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의 타당성을 가진.
집행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애등록 판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5개년 기간동안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여 제도화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절하게 수행함. 사례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진행은 약간 미흡함.
성과환류	성과지표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여부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성과목표지 달성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또한 과제 추진내용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

□ 본 사업은 장애등록 판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 및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 목표 설정은 적절함.

○ 본 사업은 초기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 후반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이의 영향을 받아 장애등급 판정체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경은 타당성이 있음. 이는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2013년부터는 장애종합판정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을 위한 간담회, 추진단의 운영 등을 통하여 장애계, 의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함.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상 다양한 내용을 추진함에 따라 성과지표도 변화되어 왔는데, 향후 객관적인 수치로 인정될 수 있는 성과지표로의 설정이 필요함.



제6장 일자리 분야

제1절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제2절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강화

제3절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6

일자리 분야 <<

제1절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5-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5-가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5-가-1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촉진 및 재정효율화 ① 초기 시장형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재정투자 확대 ② 시장 친화적 투자방식으로 전환 ③ 사회서비스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5-가-2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 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②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정비
		5-가-3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①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추진 ②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 세부시행과제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촉진 및 재정 효율화’,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은 중점추진과제의 목표인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연관성이 높고 각 세부시행과제의 목표 역시 중점추진과제의 목표와 일관성 있게 설정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정비’ 세부사업에서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적절하므로, ‘우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등 나머지 세부사업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2010년 3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부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체계를 적절히 변경 및 운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나 예산 집행 내용의 제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평가에 어려움

- 대부분의 세부시행과제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100%이상 달성하였고 이러한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나 모든 성과지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은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고려해보아야 함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게 설정되었거나 두 개념을 혼동하여 성과목표를 성과지표로, 성과지표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표 6-1〉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5-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중점추진과제 하에 시장, 제공기관, 서비스 단위로 나누어 세부시행과제를 기획한 점과 각 세부시행과제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재정투자, 제공기관 육성과 서비스 개발 지원, 제공인력의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수립으로 분담한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집행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시행과제의 추진계획 수립에 있어 추진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주체들 간의 연계 및 협력과 궁극적으로 중점추진과제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성과환류	각 세부시행과제 성과가 중점추진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같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움

1.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재정효율화(5-가-1)

가. 기획

-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재정효율화’라는 세부사업 목표를 설정한 것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한 것에 비해 현재의 사회서비스가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타당한 분석에 근거함
- 각 연차별 세부사업 목표가 ‘초기 시장형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재정 투자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자립 및 시장화’,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스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재정효율화'라는 세부시행과제 목표와 부합함

- 사회서비스 시장의 재정효율화라는 목표는 '사회서비스 투자를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한다'는 연차별 세부시행과제 목표와 연관이 있으나, 이를 위한 계획으로 제시된 것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적용 및 확대이고 이는 재정효율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나. 집행

- 연차별 세부시행과제 목표와의 연관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초기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국비, 지방비를 재원으로 집행하였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위해서는 국비뿐만 아니라 민간대응 투자금을 재원으로 집행한 점은 적절함
- 세부시행과제의 추진체계가 목표와 계획을 적절히 달성하는지 보여주기에는 다소 표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10년 3월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부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으나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집행실적을 제시하여 예산집행 내용의 파악이 어려움

다. 성과환류

- 세부시행과제와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의 수행실적은 '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중점추진과제와 연계성이 높음
- '사회서비스 재정투자 확대'라는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율'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연차별 재정규모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표임
- 다만, 연도별 목표 달성치를 제시한 표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혼동하여

기재하였으며 따라서 성과목표를 '사회서비스 재정투자 확대'로, 성과지표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예산 증가율'로 기재해야할 것임

- '사회서비스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세부시행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하게 제시되거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사회서비스시장의 확대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노력을 수행한 점은 적절하지만 과제수행에 대한 개선점 도출 및 환류활동이 미흡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6-2〉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촉진 및 재정효율화(5-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초기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잠재수요가 많고 취업유발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도록 설정된 것이 타당함
집행	사업의 추진체제로 초기 사회서비스 시장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전담조직'을 운영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굴하고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성과환류	모든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에서 설정된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이러한 성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모든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은 목표치가 도전적이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시행과제,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의 목표가 일관성이 있고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계획도 적절한 수단을 설정하고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의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목표에 따라 국비와 민간재원을 적절히 고려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예산집행 내역이 누락되어있거나 타 부서로 이관된 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집행내역을 기재하여 실질적인 예산집행의 평가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세부시행과제의 수행내용은 중점추진과제의 목표와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고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역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일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전반적으로 사업수행에 대한 개선점 도출과 이에 대한 환류의 노력이 미흡하므로 사업수행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내·외부의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2.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5-가-2)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로 설정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은 서비스 품질 제고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계획을 수립한 점이 바람직함
- 전문 사회서비스 공급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학계 및 현장전문가, 제공기관 등 해당 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중점추진과제의 목표인 일자리 확대와의 연관성을 위해 교육훈련 및 자격취득 이후의 고용연계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

나. 집행

- 2009~2013년 동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의 환경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09~2011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방안 마련을 계획으로 삼았던 것을 법률제정 이후(2012~2013

년)에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연계하는 계획으로 수정한 점이 적절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는 국비를 예산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인 품질관리분야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정비'를 위한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체적 환류체계를 구축한 점이 우수함

다. 성과환류

- 사회서비스 만족도가 2008년에 73.8점이었지만 평가 대상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81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점이 과제수행의 성과라고 판단되고,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분야의 만족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된 점이 우수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평가 인식 및 현장평가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제수행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절함
- 평가대상 기간동안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라는 동일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하였으나 연차별로 '품질향상 계획 수립 → 품질관리체계 정비 → 평가지표 개선 및 품질평가 실시'라는 단계적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성과지표는 실제로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제시된 성과지표는 성과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정비'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세부시행과제가 지표를 설정하기 까다로운 점이 인정되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6-3〉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전략적 일자리 창출(5-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자 유인과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세부시행과제 목표를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정비'로 설정한 것이 적절함
집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과제시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적절함
성과·환류	과제의 목표 중 품질제고의 측면은 달성되었으나 이를 통해 전략적 일자리 창출이 달성되었는지 여부가 모호함. 이는 중점추진과제 목표인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높은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세부과제 수행을 통한 중점과제의 목표달성이 부분적 성과에 그침

- 중점추진과제의 목표와 세부시행과제의 목표가 연관성이 높고 이러한 목표를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에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한 점이 우수하나 각 세부시행과제의 수행내용이 어떻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확대로 연계되는지 모호함
- '사회서비스 품질제고'와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정비'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과제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환류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비스제공기관 등 세부사업 수행에 관련된 기관들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행정여건의 변화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정한 점이 우수함
- 평가대상 기간동안 설정한 성과목표를 모두 100%이상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실제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전반적으로 세부시행과제 수행내용이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중점추진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분적인 성과라고 판단되며, 세부시행과제와 중점추진과제의 연계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5-가-3)

가. 기획

-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과 전문화된 사회서비스 산업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부사업 목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사업 기획능력의 부족, 제공기관의 영세성, 사회서비스 영역의 낮은 부가가치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함
- 각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을 취약 지역 지원,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화 및 공동사업화, 신규 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으로 나누어 계획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육성 사업'을 대학 중심으로 추진한 것은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집행

- 사업의 추진체계에서 추진주체간 협의,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집행기관과 제공기관 및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특히 사업명이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임에도 추진체계 상에서 제공기관과 사업단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움
- 모니터링, 홍보, 민원 대응방안 등 사업집행관리에 관한 내용이 반기 및 연간 실적보고에 그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이 취약 지역 지원, 돌봄서비스 네트워크화 및 공동사업화, 신규 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 모든 부문에서 추진된 점과 사업내용이 다양한 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육성사업'에 투입된 재정과 인력이 적절한 수준이며, 청년사업단의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해당사업 실적과 일자리 창출 실적도 우

수한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육성 사업' 시행계획에서 지원액의 비율이 서울 50%, 지방비 70%로 제시되었으나 예산에는 재원형태가 국비 50%, 지방비 70%로 제시된 점과, 실제 집행된 예산 수치는 국비가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등, 제시된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함

다. 성과환류

-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과 전문화된 사회서비스 산업기반 구축사업의 성과지표 제시가 미흡하고, 일자리 창출의 경우 부합하는 성과지표 일부 제시
-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 시행계획에서 제공기관을 2008년 9월에 7개, 동년 12월에 3개, 2009년 12월에 3개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성과목표치에는 2009년에 10개, 2010년에 13개로 제시하였고, 두 해 모두의 달성치가 13개로 잘못 제시되는 등 성과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라. 총평 및 제언

〈표 6-4〉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육성(5-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과 전문화된 사회서비스 산업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부사업 목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사업 기획능력의 부족, 제공기관의 영세성, 사회서비스 영역의 낮은 부가가치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함
집행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이 취약 지역 지원, 돌봄서비스 네트워크화 및 공동사업화, 신규 고부가가치형 사회서비스 육성, 모든 부문에서 추진된 점과 사업내용이 다양한 점이 바람직함. 지역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육성사업에 투입된 재정과 인력이 적절해 보이며, 실적도 우수함
성과환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부사업 목표에 청년사업단 참여인력 수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보이나,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에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 지표는 다소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시행과제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연관성이 있고 그 성과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전문

화된 사회서비스 산업기반 구축에 해당하는 질적 부문은 미흡함

- '사회서비스 선도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육성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고 집행 실적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절하나, 추진체계 상에서 추진기관간의 협의, 의견수렴, 직무교육, 모니터링, 민원 대응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사업의 시행계획과 성과평가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 등 시행계획, 집행 실적, 성과평가 간의 연관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자체 점검과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2절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5-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5-나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	5-나-1	자립여건 조성 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실시 ② Micro-credit(무보증 소액신용대출) ③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
		5-나-2	자립능력 강화 ① 자활인큐베이팅 실시 ② 자활근로사업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③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5-나-3	자립토대 구축 ①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 ②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 중점추진과제의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과제가 자립여건 조성, 자립능력 강화, 자립토대 구축이라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적절히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이 기획됨
- 개인별로 특화된 자활경로를 설정한 점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기획되어 다각도의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됨
-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집행과 추진실적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구성 혹은 사업 명칭의 변동에 대한 근거 제시가 미흡하여 변동된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내부 모니터링에 따라 발굴된 개선사항 혹은 외부 지적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내용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등 환류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됨
- 사업 목표치가 사업에 따라 너무 낮거나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는 사업의 성과를 적절히 도출해내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사업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전년도 목표달성 수준과 사업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6-5〉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5-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중점추진과제의 목표를 중심으로 세부시행과제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라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집행	시범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였고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여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확대했을 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적절함
성과환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과 그 내용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나 대부분 사업의 단일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해당 지표로는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사업성과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임

1. 자립여건 조성(5-나-1)

가. 기획

- 희망리본사업(성과관리 자활사업)은 4년(2009~2012)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자활성과 및 취업유지율 제고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체계를 점검 및 발전시켰고, 2013년에 본격적인 추진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획한 점이 우수함
- 프로그램에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 비중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연차별 기본급을 조정하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등 자활참여기관 성과체계와 자활참여자 지원체계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사업체계를 구성한 점이 적절함
-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 사업은 자활과 관련된 지역간, 단체간의 네트워크가 자활사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추진기반이라는 점에서 자립여건 조성이라는 세부시행과제의 목표에 부합함

나. 집행

- 희망리본사업(성과관리사업)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을 적절히 모니터링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개선 및 조정사항을 발굴하고 적용한

점이 적절함

-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을 위해 정기적인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단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자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적절한 사업집행을 함
-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워크숍, 포럼 개최 외의 활동이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 및 의견 반영 여부 등의 구체적 제시가 부족함

다. 성과·환류

- 희망리본사업(성과관리사업)의 성과지표가 매년 취업률로 동일하고 이는 본 사업의 목표가 탈수급 및 취업률의 제고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정할 수 있으나 취업률 지표만으로는 자활여건 조성이라는 세부시행과제의 목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임
- 희망리본사업(성과관리사업)의 사업목표치가 시범사업 기간동안 30% 초반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달성치는 2010년 이후로 40% 이상의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희망리본사업(성과관리사업)의 내용이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자활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조정함 점이 적절함
-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의 성과목표가 탈빈곤 촉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와는 다소 관련성이 낮고 성과지표 역시 자활 성공률이라는 단편적인 지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성과목표의 수정과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6-6〉 자립여건 조성(5-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희망리본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자활성과 및 취업유지율 제고라는 목표 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우수함.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은 자활관련 네트워크가 중요한 추진기반이라는 점에서 자립여건 조성이라는 세부시행과제의 목표에 부합함
집행	희망리본사업의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2013년도에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개선 및 조정사항을 발굴하고 적용한 점이 적절함.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여건을 조성하는데 적절한 사업집행을 함
성과환류	희망리본사업의 성과지표는 취업률로 이것만으로는 자활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엔 한계가 있음.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의 성과목표가 탈빈곤 촉진으로 설정되어 있어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와는 다소 관련성이 낮음

- 희망리본사업(성과관리사업),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 등 연차별 세부사업의 내용이 자립여건 조성이라는 세부시행과제와 연관성이 높고 적절함
 - 희망리본사업(성과관리사업)은 시범사업을 적절히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적절히 발굴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우수함
 -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은 정기적인 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환류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적절하나 포럼 및 워크숍 개최 이외의 다양한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희망리본사업(성과관리사업)의 연차별 성과지표가 취업률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고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강화사업 역시 성과지표가 자활 성공률 한 가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전반적인 성과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 희망리본사업(성과관리사업)의 사업목표치가 전년도 목표달성률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의 설정이 필요할 것임

2) 자립능력 강화(5-나-2)

가. 기획

- 자활사례관리·Gateway(인큐베이팅)사업은 개인별로 특화된 자활경로의 설정과 본 사업의 대상 선정기준에 자활근로사업 참여기간을 고려한 점은 참여자의 지속적 자활 참여를 제고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적절함
- 사업내용이 대상자의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다른 유형의 자활근로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은 참여동기 감소에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
-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사업은 그 목표가 자활의욕 고취 및 적응력 강화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 모호한 표현이며 기획된 내용 역시 연차별로 동일한 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제공을 통해 자립능력을 강화하려는 중점추진과제의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

나. 집행

- 자활사례관리·Gateway(인큐베이팅)사업은 자활계획을 수립, 전문인력의 역량 고도화 교육을 실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사범사업 운영, Gateway프로그램 실시 등의 사업 집행을 연차별로 수행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집행체계를 구축함
- 전반적인 사업예산의 사업추진실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개선의 정도가 고무적이라고 판단됨
- 자활근로사업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사업은 인문학 강좌 및 디딤돌 사업을 2009년 이래로 꾸준히 시행하던 중 2011년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자활근로사업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자료가 2012년 이전과 이후 그 구성이 달라졌으나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이전과 이후의 예산집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보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변동사항의 제시가 필요함

다. 성과·환류

- 자활근로사업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사업은 2011년 개선사항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근로유지형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업그레이트형 자활근로의 확대를 지적받았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근로유지형 비율을 줄이고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비중을 높이는 등 사업구성 내용을 조정하였고 이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됨
- 전반적인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제시되었고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모든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각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라. 총평 및 제언

〈표 6-7〉 자립능력 강화(5-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자활사례관리·Gateway(인큐베이팅), 자활근로사업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로 구성된 세부시행과제는 중점추진과제인 '자립능력 강화'와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각각의 연차별 과제 역시 일관성 있게 기획됨
집행	전반적인 사업예산 추진실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집행에 따른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한 점이 우수함
성과환류	모든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각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됨

- 중점추진과제의 목표와 부합하는 세부시행과제들의 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과제가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 자활사례관리·Gateway(인큐베이팅)사업은 개인의 근로의지 및 역량에 따른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을 목표로 하였고 이는 자활참여자의 자립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획이라고 판단됨
- 사업의 명칭 및 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 제시가 미흡하여 변경된 내용의 파악과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변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자활근로사업 확충 및 내실화와 관련하여 지적된 개선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음
-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각 사업이 모두 동일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는 것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3. 자립토대 구축(5-나-3)

가. 기획

- 수급자의 근로이탈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일관된 세부시행과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이 타당하며, 자산형성지원 제도의 목표는 연차별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였다는 점이 적절함

나. 집행

-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사업에 관한 예산집행이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2013년 대폭 감소하였고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재하여 예산조정의 적절성 평가에 한계가 있음.

-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대상은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로, 자립토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 선정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경우 행복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이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만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변동사항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변동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 성과·환류

-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사업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설정된 사업 목표치를 상회하는 사업 목표 달성치를 보이기에 사업성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자산형성 지원제도 사업 중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는 여타 자활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높은 성과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사업의 운영 및 성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성과목표가 자산형성저축 대상자 수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성과지표로 설정된 '실제 지원 대상자수'와 같은 수준의 단위이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도전적인 성과목표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사업 목표치를 모든 연차(2009~2013년) 동안 도달하지 못 하였으며 이는 목표치가 무리한 수준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사업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 자립토대 구축이라는 목표를 각 연차별 세부시행과제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달성

하므로 이러한 점이 적절하며 일관된 세부시행과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하였음

□ 사업집행의 평가와 관련하여 예산의 변동 및 사업내용의 변동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사업집행에 관한 변동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함

〈표 6-8〉 자립토대 구축(5-나-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자립토대 구축이라는 세부시행과제의 목표를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의 내용이 적절한 수단을 통해 달성되므로 이러한 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집행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사업에 관한 예산집행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재하여 예산조정 적절성 평가에 한계가 있음. 자산형성지원제도는 행복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이 동시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 한 가지만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변동사항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성과환류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근로유인 강화사업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를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목표치를 상회하는 달성치를 보이기 사업성과가 적절함. 자산형성 지원제도 사업 중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는 여타 자활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높은 성과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우수함

□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사업대상 선정 기준이 적절히 설정되어 자립토대 구축이라는 세부시행과제 목표를 달성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근로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근로 유인 강화 사업은 적정 수준의 사업 목표치를 설정하여 연차별 사업 목표 달성치 역시 적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자산형성지원제도 사업의 목표치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연차별 사업 목표 달성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였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목표치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3절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5-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5-다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5-다-1	공공-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확대
		5-다-2	장애인일자리 확대 ①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활성화 ② 장애인주민주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 활성화 ③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확대
		5-다-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 확대 및 유형 개편
		5-다-4	장애인생산물 판매 활성화 ①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제도 ② 장애인생산물 인증제를 통한 판매 활성화

□ 세부시행과제로 선정된 ‘공공-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보호고용 확대 및 유형개편’, ‘장애인생산물 판매 활성화’는 중점추진과제의 목표인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연관성이 높음

○ 그러나 세부시행과제가 장애인 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 부분의 세부시행과제 목표가 중점추진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연차별 세부시행과제 사업수단이 일자리 사업 대상의 경우 노인, 장애인, 중증장애인으로, 사업유형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다양한 점은 바람직함

○ 다만 추진체계와 모니터링 체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사업수단의 장점이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함

□ 중점추진과제의 목표,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목표, 세부시행과제의 성과지표 간 연관성이 다소 모호하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미약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의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성과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

○ 성과지표는 구체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사업의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자리 창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세부시행과제의 경우 성과지표가 사업실적이 아닌 사업목표 달성정도 및 중점추진과제와의 연관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6-9〉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 및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5-다)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세부과제로 선정된 공공-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 확대 및 유형 개편,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는 중점추진과제의 목표와 연관성이 높음
집행	일자리 사업 대상의 경우 노인, 장애인, 중증장애인으로, 사업유형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다양함 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성과환류	대부분의 세부시행과제에서 성과지표를 100%이상 달성하였고, 이러한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나, 모든 성과지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은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고려해보아야 함

1. 공공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5-다-1)

가. 기획

-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세부사업 목표를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60세 이후의 근로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일자리 확대가 근로소득 보장과 의료비 부담 해결 그리고 사회참여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타당한 분석에 근거함
- 각 연차별 세부사업목표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큰 차이가 없고, 단순히 일자리의 수 이외에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사업목표가 단순히 노인의 근로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해

당 사업에서 창출해내는 일자리의 종류와 급여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일자리의 종류를 사회공헌형과 시장형으로 나누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동시에 추진하려고 계획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나. 집행

- ‘공공-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확대’ 세부시행과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뿐 아니라 일자리의 창출이 목적이므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추진체계상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모니터링 체계가 지자체 합동 노인일자리 현장점검 실시, 노인인력개발원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 현장점검 실시, 노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노인일자리 현장점검 실시 및 만족도조사,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취업실적 확인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 성과환류

-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성과목표와 ‘노인일자리 창출 수’라는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은 명확하나, 세부시행과제의 목표가 단순하게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노인의 소득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수’외의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자체점검과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참여자 보수 증액, 참여기간 확대,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등의 제도 개선 실적이 인정됨

라. 총평 및 제언

- ‘노인일자리 확대’는 중점추진과제와 명확한 연관성이 있고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적절한 사업임

- 그러나 단순한 일자리의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자체 모니터링 체계가 구체적이고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적극적인 환류활동을 통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됨

〈표 6-10〉 공공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확대(5-다-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노인일자리 확대가 근로소득 보장과 의료비 부담 해결 그리고 사회참여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타당한 분석에 근거함
집행	사업의 추진체계가 사회공헌형 및 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 취업지원센터로 나뉘어 있고, 추진주체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자체,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수행기관으로 다양한 반면, 추진절차는 한 가지로 제시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성과환류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수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일자리 욕구 충족률 제고'라는 중점추진과제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2. 장애인 일자리 확대(5-다-2)

가. 기획

- 연차별 시행과제로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활성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 활성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확대'로 나누어 시행한 것은 적절하나,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활성화' 중 행정도우미 부분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 활성화'와 중첩되므로 사업 선정에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활성화'의 사업수단으로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확대'의 사업수단으로 일반직업재활서비스, 특화서비스, 정책지원 및 개발로 사업수단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적절하다고 봄

나. 집행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활성화'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역특화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한 점이 적절하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확대'의 추진체계 상에서 각 추진주체의 역할과 추진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확대'의 경우 모니터링 체계가 집행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이용자로 다차원적이고, 모니터링의 내용도 정량, 정성, 만족도로 다양한 점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 성과환류

- 세부시행과제의 성과가 중점추진과제의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참여자와 담당자의 만족도 혹은 취업인원 증가율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간의 연관성 제시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일자리 홍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근로소득 공제율 완화 등의 개선 노력과,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일자리 전이 노력과 직무보조인 활성화 등의 환류활동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 취약한 장애인 고용 현황과 장애인 자립생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세부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각 연차별 시행과제에서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일반직업재활서비스, 특화서비스, 정책지원 및 개발로 세분화하여 사업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한 것은 적절
- 추진체계 상에서 사업 추진주체들의 역할과 추진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명확하

게 제시되지 않음

-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목표가 중점추진과제와 연계되기는 하나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의 집행 실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되어야 함

〈표 6-11〉 장애인 일자리 확대(5-다-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장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자립생활, 직업재활, 일자리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추세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세부시행과제로 선정할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임
집행	각 사업의 예산 집행은 예산 계획에 부합하였으나 세부 사용처를 제시하지 않아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의 변동에 따른 예산 사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성과환류	각 세부시행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전반적으로 초과 달성되었으나, 단순히 서비스 제공건수와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사용해서는 사업의 실질적 효과나 목표달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 확대 및 유형개편(5-다-3)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 선정의 근거와 현재 환경에 대한 분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목표가 단순히 소규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독립적인 세부시행과제로서 선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시함에 있어 시행계획과 시행실적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정책 수단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부시행과제의 목표인 보호고용률의 증가 간 연관성이 다소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집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의 내용과 목적을 추진체계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는 타 세부시행과제에 속한 것인데 해당 세부시행과제 집행관리 항목에 포함된 것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사업내용이 유형개편과 기능보강임에도 예산이 어떠한 사업내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모호하며, 제시된 사업실적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어떠한 유형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개편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유형이 추가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다. 성과환류

- 중점추진과제인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목표인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성과지표인 '근로장애인 평균임금 인상율' 간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자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 노력에 다소 미흡

라. 총평 및 제언

〈표 6-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 확대 및 유형개편(5-다-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업목표가 단순히 소규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독립적인 세부과제로 선정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집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의 내용과 목적을 추진체계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는 타 세부시행과제에 속한 것인데 해당 과제 집행관리 항목에 포함된 것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성과환류	성과지표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은 근로장애인 평균임금 인상율이, 2012년부터 2013년은 근로장애인 고용증가율로 대체된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각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세부시행과제의 선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기획과 집행 그리고 성과 및 환류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으로, 타 세부시행과제와의 통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4.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5-다-4)

가. 기획

□ 장애인의 자활, 자립, 사회통합의 목적, 그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점, 그리고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통한 판매활성화'를 연차별 세부시행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업수단으로서 법 개정, 경영컨설팅 지원, 인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수단을 기획한 점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나. 집행

□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체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실적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에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으나, 경영컨설팅 역할 이외에 수익계약 대행업무 부담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비하여 크게 낮은 점에서,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성과환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서 우선구매 실적 증대라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명확하나, 해당 사업수단 중 법령 개정 외에 경영 컨설팅이나 통합시스템 구축과 실적 증대 간 연관성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통한 판매활성화'에서 인증품목 증가율이 성과지표로 선

정된 근거와 목표치를 5%로 설정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자체 점검이나 외부 지적사항을 통한 환류 노력이 미흡

라. 총평 및 제언

〈표 6-13〉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5-다-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라는 중점추진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세부시행과제의 목표가 중점추진과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집행	모니터링 체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실적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성과환류	연차별 세부시행과제, 세부수행과제, 중점추진과제 목표 간의 연계성 자체는 적절하나, 각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이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라는 세부시행과제는 '일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라는 중점추진과제에 부합하며, 중점추진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수요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사업의 추진체계와 모니터링 체계가 다소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았으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세부시행과제의 목표가 아니라 사업의 집행 실적에 연관되어, 사업의 집행 내용과 그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제7장 소득보장 분야

제1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

제2절 제도 운영의 합리화

제3절 소득보장제도간 연계성 제고

7

제1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6-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6-가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	6-가-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2009~2013) ②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2010~2012)
		6-가-2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① 노후설계 지원 강화
		6-가-3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①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및 장애연금 적정화 ② 노령연금 수령연기 선택권 강화 ③ 고령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6-가-4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가. 기획

- 기초생활보장 및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중점추진과제로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를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함.
-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장애연금, 조기노령연금 등의 급여수준 적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중점추진과제의 명칭을 ‘급여수준 적정화’가 아닌 ‘급여의 형평성 제고’로 설정한 점은 타당성이 낮음.
- 세부시행과제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와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의 4개로 선정
- 대상기간(2009~2013) 동안 ‘긴급복지 주거지원 활성화’ 또는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 시행과제가 일부 기간(2010~2012) 실시되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여러 대책 중 ‘노후설계 상담’만이 세부시행과제로 추진되었

고 나머지 대책의 체계적 관리는 부재하였음.

- 긴급복지 관련 제도는 법개정으로 일몰기간이 삭제되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임을 고려하면, 지속적 확대 추진이 필요한 과제임

□ 세부시행과제의 타당성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층 보호기능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여 사각지대 축소를 도모하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의 사업 타당성은 높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세부시행과제의 사업은 실제 추진에서는 노후설계 상담추진 또는 지원 강화로 한정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고려하면, 관련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 사업 설정이라고 할 것임.
-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와 관련된 3개의 세부시행과제 사업은 기간 중 지속 추진되었으며, 세부시행과제의 타당성이 높음.
- 기초노령연금 확대 세부시행과제는 사업내용이 제도 확대보다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하위 70%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선정의 타당성이 낮음.

나. 집행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며, 또한 제도가 개선된 사항을 일선에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홍보가 필요한 과제임. 동 과제 수행의 집행관리는 적절하였음.
 -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신규수급자 수(2012~201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2012~)'을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개선사항 대국민 홍보

-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후설계상담은 2011년 전국 141개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는 등 집행관리가 적절하였음.

-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를 위한 3개의 세부시행과제 추진을 위해 급여제도 개선 TF가 운영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집행과정을 거쳤음.

-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의 집행관리는 적절하였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의 내용 및 타당도

- 본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와 '공적연금 노후소득 보장을'임. 성과지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7-1〉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의 형평성 제고(6-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기초생활보장 및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된 것은 매우 적절함. 그러나 명칭을 '급여수준 적정화'가 아닌 '급여의 형평성 제고'로 상정하여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
집행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모두 적절한 집행관리가 이루어졌음.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와 공적연금 노후소득 보장율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6-가-1-①)

가. 기획

□ 연차별 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여 생계가 곤란함에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확대였다는 점에서 적절함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변경 등은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함을 고려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동 과제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전반적 실태조사 등 연구추진을 통한 방안 마련,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의 사업수단 및 사업내용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시행과제의 시행은 방안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예산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여,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는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일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 2009년에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부터 관계부처 협의, 추가보호 규모 분석·평가 등 기준완화를 추진
 - 2011~2012년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방안에 집중, 공론화를 거쳐 개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의 내실화를 병행
 - 2012년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2013년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해소 효율성이 높은 소득기준의 상향조정을 추진

나. 집행

□ 제도 개선을 위한 집행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09년 부양실태 및 부양의식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준 개선 시 신규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을 추계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하였음.
- 부양기준 초과자 구제방안 의견수렴 등 검토
 -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일률적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재정문제 등으로 협의·실득 지속
 - 부양의무자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자 중 부양비 적용대상 제외자 확대
- 재산의 소득환산율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연구 추진 및 공론화, 예산 협의 및 관련법령 개정
 -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중위소득 가구의 재산보유 수준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하였음.
- 부양능력 판단기준 및 부양비 부과 구간의 상향조정 추진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합이 4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85% 미만일 경우 부양능력 미약으로 인정

□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집행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변경 등 제도 개선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집행이 별도로 수행되었으며, 선정기준·지원내용·개선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적절히 이뤄졌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는 제도 개선과제임을 고려하면 성과지표는 제도 개선과정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또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과제 목적을 고려하면 매해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2009년 기초연구 수행,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 수, 2011년 신규수급자 보호실적, 2012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2013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음.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라는 성과목표가 단기에 완성될 수 없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계량 및 정성지표가 성과지표로 제시될 수는 있으나, 각 연도별 성과지표의 비일관성은 문제로 여겨짐.
- 성과지표란 사업의 목적(목표)에 근거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관련 법·규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정성지표 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등을 계량적 성과지표로 지속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달성도

- 정성지표인 기초연구 수행,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모두 완료되어 성과지표 달성도는 100%임.
- 정량지표인 2010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목표치의 95.4%, 2011년의 신규수급자 보호실적은 목표치의 62.5% 달성에 그쳤음.
 -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과 이후의 정기적 확인조사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가 전반적 수급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 노력

- 제도 개선효과에 대한 추계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양의무자 관

련 데이터를 추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산출하는 등 제도 개선노력이 계속되었음.

- 기초생활보장 신규신청 시 탈락사유 및 수급중지사유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산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영향을 평가
- 부양의무자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 규모를 추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엄격성 해소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 보호 필요성에 대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 일선 현장의 탄력적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하도록 조치

라. 총평 및 제언

〈표 7-2〉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6-가-1-①)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 추진의 내용 역시 제도 개선의 지속 추진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음.
집행	본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일관되게 추진되었으며, 과제의 추진체계 역시 적절히 운영되었음.
성과환류	제도 개선이라는 정성적인 성과지표는 사업 기간 중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정량지표에서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목표치에 미달하였음. 한편, 성과지표의 비일관성에는 개선이 필요함. 성과지표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노력이 상당한 성과로 연계됨

2)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6-가-1-②)

가. 기획

□ 연차별 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소득·재산 조사 후에 급여 결정이 이뤄져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각종 위기나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빈곤층에게는 신속하고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위기사유 확대는 적절한 사업 기획으로 판단됨.

○ 동 세부시행과제는 2010~2011년에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활성화', 2012년에는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라는 과제명으로 추진되었음.

- 긴급복지 주거지원이 제한된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주거지원 활성화'에서 2012년 위기사유 확대로 사업목적은 변경한 것은 적절함
- 그러나 실제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긴급지원 지침교육, 긴급지원 홍보 실시 등이었음을 고려하면,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을 '긴급지원 활성화'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2010~2011년에 갑작스러운 화재, 풍수해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임시 주거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2012년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선지원·후처리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와 같은 변경은 적절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2010년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지원대상 확대, 2012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개정 등을 계획하였음.
- 2011년 시행계획은 기존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의 실시에 국한됨.

나. 집행

□ 주거지원 대상자 확대 및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

○ 주거지원 대상자 확대 및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를 위한 과정이 적절히 집행됨
- 2010년 기존 사유 외에 경매·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를 확대, 2011년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포함하였고, 2012년 가정폭력 등의 대상에 '장애인 괴롭힘' 추가,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확대.

- 제도가 개선된 사항은 매년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지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

□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체계를 적절히 구축하였으며, 지원 결정 등을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체계적 집행을 위한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였음.

- 민간협력체계, 읍면동 복지위원 등 민간자원과 보건복지콜센터(129) 활용
- 시·군·구(긴급지원담당공무원)는 대상자 현장 방문 등 위기상황 확인 및 신속한 지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성과지표는 2010~2011년 주거지원 건수, 2012년 긴급지원 건수였음.

- 주거지원 건수 성과지표는 사업목표 대비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전체 사업 중 약 1%에 지나지 않는 사업대상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협소함.
- 2012년 변경된 과제목표를 위한 긴급지원 건수 성과지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확대를 통해 지원건수를 늘리자는 것으로 매우 적절함.

□ 성과지표 달성도

○ 2010~11년 주거지원 건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각각 100%, 140% 달성

○ 2012년의 긴급지원 건수는 목표대비 85% 수준

○ 동 기간 중 성과지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 등의 지

원 지침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이 이뤄졌음.

□ 제도 개선 노력

-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등 요구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을 통한 지침 개정으로 여건 변화 대응에 노력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저소득 빈곤층을 적극 발굴 등 제도 운영의 활성화 주력
 - 2010년 긴급지원 지침 교육, 2011년 긴급지원 통계 전산망 교육 및 홍보, 2012년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 시군구 담당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침 개선 등 제도적 노력 추진
- 시·도 담당자 간담회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긴급지원 집행 저조원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라. 총평 및 제언

〈표 7-3〉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6-가-1-②)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초기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되었으며, 2012년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로 타당하게 변경되었음.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 과제는 중점추진과제에 부합하며, 2009년 법개정을 통해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몰규정이 삭제되었음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었음.
집행	긴급지원제도의 수행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온 것은 적절함.
성과·환류	과제 추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주거지원 건수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협소한 성과지표라는 한계가 있으며, 긴급지원 건수는 목표치에 미달하였음.

3) 노후설계 지원 강화(6-가-2)

가. 기획

□ 연차별 세부시행과제 목적

- 동 과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라는 세부시행과제를 '노후설계 상담 및 서

비스'로 한정하여 추진하여, 과제 성격이 제한되었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정책과제는 노후설계상담, 고소득미납자 체납처분 강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일부지원 등 부담 경감, 지속적인 사업장가입자 적용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노후설계상담은 이중 일부에 국한됨.
- 그럼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후설계상담(CSA: 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 제공으로 소득신고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 사업 기획은 우수하다고 판단됨.
 - 노후설계상담사업을 통해 자발적 제도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 목표는 적합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이 연차별 계획과 일치하지 않음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2009~2011년까지의 과제 목적인 자발적 제도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내용으로 노후설계 상담 실시는 적절하였으며, 2012년부터의 노후준비 인식제고 등을 위한 정보 사이트 구축, 노후설계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역시 목적과 시행계획의 적절한 매칭을 보여줌
-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연차별 계획과 일치하지 않음.

년도	목적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2009년	가입률 제고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제공(250천명)
2010년	가입률 제고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제공(280천명)
2011년	가입률 제고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제공(360천명)
2012년	가입 및 가입기간 증가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제공(501천명)
2013년	가입 및 가입기간 증가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제공(552천명)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중기계획에 동 시행과제는 일부에 국한됨.
- 사업 대상이 납부예외자 중 연금수급 가능성이 높은 자 및 고소득 추정자에

서 국민연금가입자(였던자) 및 수급자 등으로 확대되어,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었음. 이는 미래 노인세대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자원투입 및 사업집행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함.
 - 동 사업의 추진주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CSA 실시 대상자 명부를 구축하여 각 지사에서 CSA 상담을 실시하고, 그 추진실적 통계를 구축하고 있음.
 - 동 사업을 위한 예산은 계획대로 모두 집행되었음.
 - 사업예산에서 2010년까지는 국비가 일부 투입(연간 600만원)되었으나, 이후는 전액 국민연금기금에서 사용 중에 있음. 사업대상이 확대되었음을 고려하면 일반 예산의 투입이 요구됨.
 - 노후설계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등의 사업 집행 관리가 매우 우수함.
 - 국민연금법에 노후설계 조항을 신설하고,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한 노후설계상담사 자격 개발, 노후설계포털 오픈 등 추진
 - 행복노후설계센터 설치 및 노후준비 종합진단 지표 개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노후설계 신설 등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도와 준비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노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
 - 서비스가 점차 확대·안정화됨에 따라 양적 지표인 상담·교육 실적에서 나아가 노후준비 인식도라는 질적지표를 추가하여 보완한 것은 매우 적절함.

- 다만 이에 병행하여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라는 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소득신고 전환인원의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연차별 계획상 성과지표와 제출한 성과지표간의 차이가 있으나, 변경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 성과지표 달성도
 - 정량적 성과지표 중 소득신고 전환인원, 노후설계 상담, 대외교육은 모두 목표치를 달성 또는 초과달성하였으며, 상담실적 중 2010년의 경우는 목표치에 미달하였음.
 -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후준비 인식도 개선은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제도 개선 노력
 - 노후설계서비스 내용 강화 및 교육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양적 성과 확보 이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였음.
 -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 지속 추진, 강의콘텐츠 개선 등
 - 노후설계서비스 대상을 선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각 대상에 맞는 상담 콘텐츠 개발 및 안내 등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정보제공, 고객대상자별 특화된 상담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었음.

〈표 7-4〉 노후설계 지원 강화(6-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는 중점추진과제 중 일부에 국한된 내용을 기획하였으나, 이의 추진 목적은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평가함.
집행	사업추진 체계, 자원 투입 등 집행체계는 매우 우수하였다고 평가함.
성과환류	과제 추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성과지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목적의 달성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4.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화(6-가-3)

가. 기획

□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및 장애연금 적정화(6-가-3-①)

- 본 과제는 국민연금 장애판정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 보호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히 기획되었음.
 - 장애의 인정 범위를 적정범위 확대하고 상병별 장애등급 세부인정기준을 조정하여 장애연금 급여수준을 강화하는 장애심사규정 정비
- 시행계획은 전반적으로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목적에서 시행계획은 비교적 적절하게 매칭됨. 단, 노령연금 대비 장애연금 수준의 장기적 감소에 따른 급여수준 적정화 조치가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었음.

□ 노령연금 수령연기 선택권 강화(6-가-3-②)

- 본 과제는 소득 있는 수급자만이 노령연금 수령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가산율을 인상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금 선택권을 강화하고 생애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짐.
- 본 과제 목적은 기간 중 일부 변경이 있었음.
 - 2009~2011년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정비하여 수급권자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근로의욕 고취였으며, 2012~2013년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금 선택권을 향상하고 생애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자는 조기수급 억제를 통한 연금급여 수준의 적정화 확보, 후자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의 은퇴 후 적정 급여수준 확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나, 이에 대한 과제목적 변경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 고령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6-가-3-③)

- 본 과제는 재직자노령연금이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함에 따라 고령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로, 연

금을 통한 소득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과제 기획으로 판단됨.

- 본 과제의 연차별 계획으로는 2009~2011년에 재직자노령연금의 지급제한 기준 완화, 2012~2013년에 재직자노령연금의 연령별 감액방식을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여, 과제 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등 과제 기획이 매우 부적절하였음.
 - 재직자노령연금의 지급제한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의 개선이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집행

□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및 장애연금 적정화(6-가-3-①)

- 장애심사관련 규정 개정
- 본 과제의 추진 주체는 보건복지부로,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개정을 담당하여 적절히 추진되었음.
 -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장애제도개선 TF,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장애심사규정 개정·공포 및 적용

□ 노령연금 수령연기 선택권 강화(6-가-3-②)

-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정비 및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
- 추진 주체는 보건복지부로, 관련제도 개선을 담당하여 적절히 추진
 -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 급여제도개선 TF,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 고령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6-가-3-③)

- 본 과제의 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로, 국민연금법 개정·시행을 담당하였음.
- 다음과 같은 일련의 체계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음.

-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 급여제도개선 TF,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다. 성과환류

□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및 장애연금 적정화(6-가-3-①)

- 본 과제는 제도 개선 과제로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함.
 - 다만, 수급권 강화의 결과로 장애연금 수급자 수 증가 등의 양적지표를 통한 보완이 필요함.
- 계획한 성과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나, 연도별 사업추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제시가 필요함.
- 제도 개선 노력 :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장애심사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실시하였음.

□ 노령연금 수령연기 선택권 강화(6-가-3-②)

- 본 과제는 제도 개선과제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두고 있으며, 수급요건 등은 법 개정사항으로 단기의 제도 개선은 불가함에도 성과지표를 2009~2010년 중 시행령 개정으로 설정하고 목표치는 개선방안 마련으로 제시하는 등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지 못함.
 - 법·시행령 개정 대상임을 고려하여 사업 단계별 성과지표가 설정될 필요
-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근거가 부재함.

□ 고령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6-가-3-③)

- 본 과제는 제도 개선과제로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인 국민연금법 및 하위법령의 개선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함.

〈표 7-5〉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화(6-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및 장애연금 적정화 : 본 과제는 중기계획 중 일부에 국한된 내용을 기획하였으나,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판정체계 개선 및 심사규정 개정은 지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을 고려하면 기획은 일부 적절하였음.
	② 노령연금 수령연기 선택권 강화 : 본 과제는 사업기획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기간 중 세부계획이 근거 없이 변경되었음. 2009~2011년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정비 명칭으로, 2012~2013년 중 노령연금 수령연기 선택권 강화로 추진되었음. 이는 상이한 사업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관점에서 별개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과제로 판단됨.
	③ 고령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 고령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재직자 노령연금제도 개선을 시행과제로 하였음. 재직자노령연금의 소득기준, 금액기준을 개선하여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 기획은 일부 적절하였으나,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의 수립이 매우 부적절함.
집행	①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및 장애연금 적정화 : 집행체계는 적절하였음.
	② 노령연금 수령연기 선택권 강화 : 본 과제의 집행체계는 일부 적절함.
	③ 고령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 본 과제의 집행체계는 일부 적절함.
성과환류	①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및 장애연금 적정화 : 과제 추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성과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양적지표 보완의 필요가 있음.
	② 노령연금 수령연기 선택권 강화 : 과제 추진의 성과는 평가근거가 부재하여 평가 불가함.
	③ 고령자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 과제 추진의 성과는 평가 근거 미재출로 평가 불가함.

5. 기초노령연금 확대(6-가-4)

가. 기획

- 연차별 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높은 노인빈곤율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급여 인상 등의 사업 필요성이 인정됨.
 - 장기발전방향에는 지급대상자 확대 등의 검토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으나, 연차별 사업계획은 단순히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으로 한정되어 생활안정 지원 및 사각지대 축소라는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음.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중기계획인 기초노령연금의 확대가 아닌 현상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됨.
 - 소득 하위 약 70%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A값의 5% 지급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해당 기간은 아니나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음.
 - 소득 하위 약 70%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수급대상자는 동일하나, 최대 급여액을 2배 인상

나. 집행

□ 사업추진체계

- 본 과제는 급여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사업지침 통보,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군·구가 연금액을 지급하는 체계로 적합함.

□ 자원투입

-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확보되었음.
 - 노인인구 비중, 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보조금은 40~90% 차등 지급
 - 2010년, 2011년은 일부 예산 부족이 나타났음.

□ 사업집행관리

- 본 사업의 집행을 위해 매해 유사한 형태의 추진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고려하여 2013년 기준으로 평가
- 2013년에는 선정기준액 고시, 신청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및 선정기준액 부내외 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업집행체계는 적절하게 진행되었음.

다. 성과환류

- 본 과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사업 성과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 대비 성과지표를 선정
 - 본 사업의 실적과 중점추진과제 성과지표간에 상당한 연계가 있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100% 이상 달성하였음.
- 제도 개선 노력
 - 기초노령연금 지급률에서 전체 지급 대상자수인 노인인구의 70%를 달성하기 위해 법정 수급율보다 높은 소득하위 76.7%를 정하여 운영(2013년)하였음에도, 신청주의에 의한 급여 지급이 수급률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실수급률 제고를 위해 개별안내 및 홍보,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필요한 근거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음.

〈표 7-6〉 기초노령연금 확대(6-가-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로 높은 노인빈곤율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그러나 실제 사업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목표와 수단의 정합성은 낮음
집행	연금액 지급은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추진체계 및 자원 투입의 형태는 바람직함.
성과환류	목표에 비해 제한된 사업내용을 기간 중 추진하였음.

제2절 제도 운영의 합리화(6-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6-나	제도 운영의 합리화	6-나-1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합리화
		6-나-2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효율화(2009~2012)
		6-나-3	국민연금의 투자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대(2013)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 합리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3개로 선정
 -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로능력자의 자립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부분급여 지원 및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합리화' 사업의 타당성은 높음.
 -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불안정 해소를 위해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필요성도 명확함.

나. 집행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합리화
 -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획단 등 협의체계를 통해 관련 부처, 전문가 및 주요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2년에 그간의 논의의 종합하여 개편안을 마련, 2013년에 개편방안을 확정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
-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 2009년~2012년에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행과제로

로 제출하였고, 2013년에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에서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시행과제로 상정하였음.

-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었으나, 논의 지연 등을 고려하여 과제 내용을 변경하였음.
- 투자다변화 등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한 일부 방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성과

- 성과지표의 내용 및 타당도
 - 본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합리화'와 '국민연금 재정안정'임
 - 사업목적 또는 중기계획을 성과지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는 매우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표 7-7〉 제도 운영의 합리화(6-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근로능력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정책 수혜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위해 부분급여 지원 및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합리화 사업의 타당성은 높음.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불안정 요소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필요성도 명확함.
집행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급여개편안 마련,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적절한 집행체계를 갖추었음.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시행과제로 제출하였고, 2013년에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에서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시행과제로 상정함.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합리화와 국민연금 재정안정임. 사업목적 또는 중기계획을 성과지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는 매우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1.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합리화(6-나-1)

가. 기획

- 연차별 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어, 일부 지원만 필요한 위기가구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는 생계(77%), 의료(17%), 교육(3%) 순이며, 탈수급 시 필요한 지원은 의료(66%), 교육(11%) 순으로 나타남(2012, 복지패널)
 - 소득증가로 인해 탈수급시 부분급여 지원을 통해 탈수급 의욕을 제고하고, 복지욕구를 충족하여 반복적으로 빈곤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 과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2010년~2012년 기간 중에는 소득증가로 인해 탈수급 시 부분급여 지원을 과제 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재편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분리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 본 과제는 제도 개선과제로 '기초생활보장 부분급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 등 개최, 개편방안 확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의 사업내용은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2010년 탈수급 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바로 도입이 가능한 이행급여(한시적 의료·교육급여 지급)를 신설하고, 2012년에 기획단 운영결과 등을 종합하여 급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

나. 집행

-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적절히 운영되었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획단 등 협의체계를 통해 급여체계 개편에 관한 국토

교통부,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복지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각계 각층의 경제·사회복지·고용 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빈곤정책 제도 개선 기획단」 운영(2011.2.~2012.3.)
 - 2013년 5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확정 이후,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워크숍 등 지속적인 설명회('13.5월~7월) 개최 및 현장방문(~'13.11월, 32개 시군구)을 통해 지자체 현장 맞춤형 제도 개편 추진
- 사업집행관리
- 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급여체계 개편방안 발표 이후 관련 언론보도 및 정책관계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 또한, 제도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예측·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지원 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수행되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는 제도 개선과제로 단계별 추진 내용을 정성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
 - 바로 시행이 가능한 보완책의 도입부터 급여체계의 근본적인 합리화 방안 마련, 사회적 공론화, 관계부처 협의 및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에 이르는 일련의 제도 개선과정에 대한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제도 개선과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성과지표를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안의 마련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본 과제는 이에 해당함.

○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이자 동시에 세부시행과제의 성과지표임.

□ 본 과제는 계획한 연차별 목표를 모두 100% 달성하였음.

□ 제도 개선 노력

○ 제도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예측·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 관련데이터를 축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급여체계 개편 등 정책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산출하는 등의 자체 점검 과정이 우수함.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현황 통계분석 연구(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수 및 평균 급여액 증가 규모 등 제반사항을 추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 유인 제고 등 저소득층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우선적으로 이행급여를 도입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추진을 병행하는 등 개선과정이 적절히 이뤄졌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7-8〉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합리화(6-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는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매우 우수한 사업 기획을 보여주었음.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집행 과정 전반이 적절하였음
성과현류	계획한 바의 사업성과를 도출하였음.

2. 기금운용체계 개편, 투자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대(6-나-2, 6-나-3)

가. 기획

□ 연차별 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기금의 장기투자 특성을 활용한 투자 성과 제고 방안은 필요함.

- 다만,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은 입법 과정의 상당한 논의를 필요로 하므로, 2013년 과제 목적을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기간 중 과제 시행계획의 변경은 적합하였다고 판단됨.

- 2010~12년 기간 중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여야간 입장대립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2013년에는 투자다변화로 과제를 변경하였음.

-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으로 기금운용공사 설립, 민간전문가 상설 기금운용위 개편, 기금운용 부이사장 도입 등의 의견 차이로 논의가 지연됨

○ 2013년 중 과제인 '국민연금의 투자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의 5년간 중기자산배분 및 단년도 기금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해외·대체투자 비중 및 투자허용 범위 설정은 타당함.

나. 집행

□ 기금운용

○ 기금운용에서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투자운용 현황을 분기별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매년 기금운용 성과에 대해 내·외부 평가기관 및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간지에 공시하는 등 집행체

계를 갖추고 있음.

- 중기자산배분 계획 수립(보건복지부) →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보건복지부) → 기금운용(국민연금공단) → 성과평가(보건복지부)

다. 성과환류

□ 본 과제의 성과지표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제시하였음. 법 개정과정에 필요한 각 단계를 사업의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 본 과제 중 2013년에는 국민연금의 투자다변화를 위한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과거 실적 추세와 중기자산배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국민연금법 개정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반면에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다변화를 위한 해외투자 비중은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가 국민연금 재정안정으로 제시되었으나, 본 사업의 성과지표가 해외투자 비중 확대에 제시되었음.

- 2013년말 기준 해외주식 수익률은 21.61%, 대체투자 수익률은 6.44%로 국내주식, 국내채권 투자 수익률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

- 기금운용체계 개편 또는 투자다변화가 곧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에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실적지표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제도 개선 노력

-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기금의 투자다변화와 관련한 정책·전략 등을 검토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2011년 신설하였음.

- ①기금운용 ②해외투자 ③대체투자 ④자원개발의 4개 소분과를 운영

- 해외·대체투자 관련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투자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였음.

- 2011년 뉴욕사무소, 2012년 런던사무소 개설로 해외투자 관련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형성
- 2013년 국민연금공단 인력을 38명 신규채용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억불 한도의 외화계좌를 개설하여 해외투자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였음.

〈표 7-9〉 국민연금의 투자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 확대(6-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기금운용체계 개편 또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안정적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국민노후자금인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2010~2012년 중 추진하였으며, 논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2013년 중에는 투자포트폴리오에서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사업 기획으로 하였음.
집행	과제 수행을 위한 집행과정은 2013년 중 적절하였음.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집행 과정에 대한 별도의 평가근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성과환류	해외·대체투자 관련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적절히 수행되었음.

제3절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6-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6-다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	6-다-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연계성 제고
		6-다-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간의 연계성 제고

가. 기획

□ 과제 선정의 타당성

○ 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검토는 향후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국민연금과의 역할 설정 및 재구조화 추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이미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에 별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편적 기초연금화', '선별적 공공부조화' 등에 대해 논의

○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의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근로장려세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탈수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준과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체계 연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세부시행과제의 타당성

○ 세부시행과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연계성 제고'의 2개로 선정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 지속가능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

계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의 타당성은 높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연계장려세제의 연계가 미흡하여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연계성 제고'의 사업 필요성이 높음.

나. 집행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 연금제도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로 사업계획이 한정되어 있음.

다. 성과

□ 성과지표의 내용 및 타당도

- 본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는 '소득보장제도간 연계성 제고'임
- 사업목적 또는 중기계획을 성과지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는 매우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표 7-10〉 소득보장 제도간 연계성 제고(6-다)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 지속가능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의 타당성은 높음.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급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을 고려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연계성 제고의 사업 필요성이 상당함.
집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 방안 : 연금제도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로 사업계획이 한정되어 있음.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소득보장제도간 연계성 제고임. 사업목적 또는 중기계획을 성과지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는 매우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음

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6-다-1)

가. 기획

□ 연차별 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공공부조의 중간적 성격으로 노후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모호한 위상을 지니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사업 기획으로 판단됨.

-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 지속가능한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연차별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임.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본 세부시행과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방안 마련-공론화-법률 개정'의 시행계획을 설정하여, 과제 목적과 수단의 매칭이 비교적 적절하였음

○ 소득보장제도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나. 집행

□ 과제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근거 부재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는 제도 개선과제로 전문가 및 국민 의견 수렴과 관련한 정책 대안의 마련과정이 지속되어야 하므로, 성과지표로 '논의 및 의견수렴 절차 마련', '정책

연구 추진'을 제시한 것은 적절함.

□ 성과지표 달성도

○ 성과달성치를 제출하지 않은 2009년을 제외하면, 사업연차별로 계획 대비 성과를 달성하였음.

○ 또한,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음.

〈표 7-1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성 제고(6-다-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는 추진 필요성은 명확함에도, 수차례 제도 개선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음. 과제 목적 자체가 제도 개선임을 염두에 두더라도 정치적 논쟁이 지속될 수 있는 과제는 명확하며, 이와 같은 과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집행	과제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근거 부재함.
성과환류	성과지표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노력이 상당한 성과로 연계되었음.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간의 연계성 제고(6-다-2)

가. 기획

□ 연차별 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수급자의 자립촉진을 위해 다양한 근로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의 연계가 부재하여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구축에 한계

○ 이에 본 과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활동에 비례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 목표는 적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본 과제는 제도 개선과제로 기간 중 연구용역 실시, 연계방안 검토 및 개선방안 공문화, 관계부처 협의의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하였음.
- 본 과제는 제도 개선과제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계획 단계에서 적절히 배치되었음.

나. 집행

- 개선방안 마련 : 자료 미제출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기간 중 사업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미제출로 연차별 평가 불가

□ 성과지표 달성도

-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
-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려세제 지급대상에서 제외

〈표 7-1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간의 연계성 제고(6-다-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간 연계가 부재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의 연차별 계획이 적절하게 배치되었음.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 미제출로 평가가 불가함.
성과환류	과제 성과지표가 연계방안 마련임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과제가 기간 중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제8장 의료보장 분야

제1절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제2절 의료보장 내실화

8

의료보장 <<

제1절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7-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7-가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7-가-1	① 보험료 체납자 축소 ② 지방자치단체에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유도 ③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여 의료급여 자격 부여
		7-가-3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적정화

가. 기획

□ 과제 선정의 타당성

○ 건강보험 자격측면의 사각지대인 보험료 체납세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지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04~2008년)의 핵심과제였으며, 경기 침체의 지속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보험료 체납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의료사각지대 발생 위험을 확대시킴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함.

□ 세부시행과제

○ 세부시행과제는 '보험료 체납자 축소', '의료안전망 확충',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의 3개로 선정

○ 대상기간(2009~2013) 동안 세부시행과제 추진 틀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으며, 세부시행과제에 있어서도 세부 사업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음.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폐지는 기존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운영 중이므로 적절하였음.
-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및 사례관리대상자 수 확대와 사례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의 두 개 사업이 2011년 이후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로 통합되었음.
- 의료급여사례관리 효율화를 위한 TF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례관리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단계적인 변화로서 평가됨.

□ 세부시행과제의 타당성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서는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라는 중점추진과제의 수행을 위해 '보험료 체납자 축소', '의료안전망 확충', '의료급여사례관리 강화' 라는 세부시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었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정책 개입 대상과 분야에 대해 적절한 세부시행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 정보제공과 보건복지자원 연계지원을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대상자 수와 더불어 사례관리사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는 세부 사업으로써 적절함.

나. 집행

- 공단 지사별 홍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유도
-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보험료 지원에 대한 지자체 조례여부를 확인하여 참여를 요청하고 공단과 지자체 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보험료 체납세대 예방을 위한 보험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높게 평가됨.

-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한 장기체납세대의 의료급여 자격 부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체납세대 자료를 수집하여 체납보험료 납부 독려 및 결손처분 상담을 시행하고 지자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조사를 의뢰함.
 - 지방자치단체는 공단 의뢰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부합여부를 판정하여 결정함.
 -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을 위한 보험자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높게 평가됨.
- 건강정보 분석과 보건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내실화
 - 의료급여 대상자의 자가 관리를 지원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코디네이터로서 사례관리사의 역할을 향상시켰으며,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접근도를 확대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함.

다. 성과환류

- 본 중점추진과제(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의 성과지표는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비율'
 - [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비율의 측정
 - 중점추진과제 성과지표인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비율"은 세부시행과제가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과 취약계층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전환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체납세대 비율이 감소할 것을 가정하여 설정
 - 의료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 의한 것이고 세부시행과제가 보험자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로서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비율은 적절함.
- 성과지표의 달성도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서는 2013년까지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비

율을 24.5%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최근 3년간 체납세대 비율 실적 평균은 2013년 25.8%로 목표수준(24.5%)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연도별 실적과 목표를 비교하면, 2009년은 알 수 없고 2010년은 24.9%로 100%달성, 2011년은 24.8%로 100%달성, 2012년은 25.2%로 98.01%달성, 2013년은 25.8%로 94.9% 달성
 - 2010년과 2011년은 목표수준을 달성했으나 2012년 이후부터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비율이 2009년 목표수준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8-1〉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7-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었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정책 개입 대상과 분야에 대해 적절한 세부시행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평가됨.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유도는 보험료 체납세대 예방을 위한 보험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높이 평가됨. 장기체납세대의 의료급여 자격 부여는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을 위한 보험자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높이 평가됨.
성과환류	의료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 의한 것이고 세부시행과제가 보험자와 지자체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로서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비율은 적절하다고 평가됨.

- 본 중점추진과제는 집행의 측면에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 보험료 지원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강보험 장기체납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이 없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하려고 한 점은 적절함.
- '의료안전망 구축'에 대한 세부사업이 연차별로 계획되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과제 기획과 성과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임

1. 보험료 체납자 축소(7-가-1)

가. 기획

- 지방자치단체에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유도(7-가-1-②)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을 유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강화 도모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내용은 매칭이 적절하며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여 의료급여 자격부여(7-가-1-③)
 - 세부시행과제 목적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세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매칭이 적절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 다만 '10년과 '11년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전환 대상 기준이 월 보험료 4천원 미만에서 일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선정기준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

나. 집행

- 지방자치단체에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유도(7-가-1-②)
 -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 기반을 마련
 - 지자체 조례제정 참여 요청(공단) ⇒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조례제정(지자체) ⇒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공단-지자체)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 절차 및 과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참여 촉구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참여 홍보 및 안내 실시(각 공단 지사별)
- 지방자치단체와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지자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
- 세부시행과제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개선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집행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매월 조례제정 현황 파악 및 조례 제정을 제도방안 협의 및 독려
 - 공단 지사별 조례 미 제정 지자체에 대한 홍보 강화
-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여 의료급여 자격부여(7-가-1-③)
 -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간의 협력관계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체납세대 발굴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 수급권자 판정 결정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 절차 및 과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체납세대 자료 수집 ⇒ 체납보험료 납부 독려 및 결손처분상담 ⇒ 지자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조사 의뢰
 - 지방자치단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 결정
 - 의료급여 전환 실적을 정기적으로 집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개선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집행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매월 전환 현황 파악 후 지자체와 공단 간 전환율 제고 방안 협의
 - 공단: 체납보험료 납부 독려 및 결손처분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의뢰

다. 성과환류

- 지방자치단체에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유도(7-가-1-②)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조례제정 참여기관 수'임. 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지자체

체 수가 많아질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와 연관된다는 가정 하에 성과지표 설정은 타당함.

- 성과지표 달성도는 2009년은 참여기관 수가 193개로 목표기관 수(193개) 대비 103% 달성, 2013년에는 참여기관 수가 222개로 증가했지만 목표기관 수(223개) 대비 99.5%에 그침.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2013)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목표치 달성이 점차 어려워짐
 - 조례 미제정 지자체 수가 작고, 지방재정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
- 새로운 조례 제정 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세부시행과제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13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성과가 집계된 것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서 적절하지 못했음을 보여줌.
 - 조례 미제정 단체 22개 중 서울특별시 등 9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하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1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어, 새로운 조례의 제정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여 의료급여 자격부여(7-가-1-③)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의료급여 전환자 수'임. 의료급여 전환자 수의 변동이 건강보험 장기체납자의 의료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성과지표로서 타당함.
 - 다만, 2009년 전환요청자 중 15%정도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0천명을 목표치로 설정했으나, 이후는 그 근거가 부족함.
- 성과지표 달성도는 매년 10,000명 의료급여 전환자 수 목표치에 대해 2009년만 100% 달성을 하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3년 78.3%까지 달성률이 감소하여 달성수준이 미흡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8-2) 보험료 체납자 축소(7-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p>② 지방자치단체에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유도 :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도 중점추진과제 달성과 연계되어 있어 타당성이 높음. 또한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음.</p> <p>③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여 의료급여 자격부여 :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도 중점추진과제 달성과 연계되어 있어 타당성이 높음.</p>
집행	<p>② 지방자치단체에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유도 : 과제의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이는 자체 노력에 의한 제도 개선의 상당한 성과로 연계되었음</p> <p>③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여 의료급여 자격부여 :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으며 추진체제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p>
성과현류	<p>② 지방자치단체에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유도 : 성과지표는 '조례제정 참여 기관 수'에서 연차별 목표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13년도에는 기존의 추진 실적에 의해 조례 미제정 지자체 수가 작고 조례제정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목표수준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p> <p>③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여 의료급여 자격부여 : 매년 10,000명 의료급여 전환자 수 목표치에 대해 2009년만 100% 달성을 하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3년 78.3%까지 달성률이 감소하여 달성수준이 미흡함.</p>

□ 지방자치단체에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유도(7-가-1-②)

- 과제 추진의 성과 측면에서,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를 달성하고 중점추진과제인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연차별 평가에 의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되어 지역별로 형평적인 시행이 어렵고, 저소득층의 자격 전환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예산문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대상자를 모두 의료급여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여 의료급여 자격부여(7-가-1-③)

- 건강보험 장기체납 대상자에서 소득 및 재산 등이 없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하려고 한 점은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됨.

- 하지만,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료급여 전환자 수 목표치를 미달하였으며, 2003년이 가장 낮아 성과 달성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매년 10,000명이라는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근거가 부족하고 전환이 필요한 대상자 대비 실제 전환자의 수보다 직접적인 성과지표 선정이 필요함.
- 의료급여전환자 수는 체납세대의 선정 조사 의뢰 외에도 경제적 여건의 변화, 소득분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외생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목표치 통제가 곤란한 부분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월)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에 저소득, 취약계층 장기체납자 세대의 명단을 전달할 수 없게 되어 적극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발굴이 어려운 상황임.
 - 2013년 사업계획도 공단이 직접의뢰가 아니라 의료급여 전환을 상담시 안내하는 것으로 변동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장기체납세대의 의료급여 전환을 위한 공단과 지자체간의 정보 교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성과지표 변화가 검토되어야 함.

2.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7-가-3)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

- 본 과제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과제의 목적은 2010년과 2011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이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복합상병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상담·관리, 정보제공,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목적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집행과정에서 과제 목표에 맞게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성과를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
 - 전반적으로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적절하게 매칭됨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중기계획(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 장기발전방향에 언급된 '사례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의료급여사례관리 효율화를 위한 TF 운영, 성과분석을 통한 집중관리군 제도 운영 등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나. 집행

□ 사례관리 업무흐름도 공유를 사례관리사업의 체계화

- 고위험군 기준 사례관리 업무흐름도 활용을 통해 사례관리 업무의 표준화와 체계적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사례관리 업무흐름도(고위험군 기준)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통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례관리사업의 연계 기반 마련

□ 세부시행과제의 주기적 성과 평가와 집행 관리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10주년 기념회 개최('13년 5월), 사이버 교육자료 개발, 우수사례 선정, 홍보자료 제작을 통해 사례관리사 간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주기적 사례관리 현황분석을 통해 '12년도부터 연중 지속적 사례관리가 제공 되는 집중관리군제도 도입하고 지속적 의료급여과다이용자에 대한 효과적 중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사업의 운영·집행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 그러나 예산대비 결산기준 집행실적은 2009년 87.9%, 2010년 77.3%, 2011년 85.8%, 2012년 85.9%, 2013년 88.2%로 수준이 증가하고 있지만, 90%를 넘지 못하고 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대상기간인 2010년에는 연 사례관리자 수였다가 2011년 이후 총 사례관리자 수와 교육(횟수, 명수)로 변경되었음.
 - 사례관리사업 활성화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수급권자가 사례관리를 받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수 확대와 사례관리사의 역량 확대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자 교육 확대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됨.
 - 아울러, 2011년부터 변경된 성과지표가 2010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성과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평가됨.

□ 성과지표 달성도

- 사례관리 대상자 수와 사례관리자 교육 횟수는 매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2013년에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교육 실적이 보고되지 않았음.

- 그러나 총 사례관리 대상자수가 시군구 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대상자 수를 300명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수가 아니라 사례관리사 배치 현원에 따라 목표치 수준이 변동함으로써 목표치 설정근거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제도 개선 노력

- 의료급여수급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로 판단되는 수급권자에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연계하고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사례관리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을 하였음.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단의 운영을 통해 사례관리 사업 뿐 아니라 의료급여 전반의 제도 개선을 지원하여 사례관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표 8-3〉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세부시행과제 7-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과 추진 계획은 적절하게 기획되었으며, 목적과 계획내용(수단)의 연계성이 확보되었음
집행	과제 추진체계로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 선정, 업무 흐름도를 마련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 내실화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단, 예산 집행 실적이 90%이하 수준임.
성과환류	과제 추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미흡함

제2절 의료보장 내실화(7-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7-나	의료보장 내실화	7-나-1	의료보장성 강화 ①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의 급여 전환 ②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 ③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의 급여 전환 ④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추진
		7-나-2	의료보장 재정안정화 도모 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 ②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7-나-3	건강검진 내실화 ①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7-나-4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① 상대가치점수의 재평가와 보완 ② 한국형 포괄수가제의 개발 및 평가

가. 기획

□ 과제 선정의 타당성

- 중증질환 고액진료비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 증가 등으로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 지속적인 급여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정체시키는 구조적 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함.
- 정책적 시의성 차원에서 의료보장의 내실화는 매우 적절한 과제 선정임.

□ 중점추진과제의 세부시행과제

- 세부시행과제는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보장 재정안정화 도모', '건강검진 내실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의 4개로 설정함. 대상기간(2009~2013) 동안 세

부시행과제의 사업내용 변경은 사업추진의 단계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의료보장성 강화'는 장기발전방향에서 세분화된 내용들이 연도별로 변화하다가 2013년에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으로 변경됨.
- '의료보장 재정안정화 도모'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의 일정 수준 유지'와 '의료급여재정안정화'의 내용으로 구성됨.
- '건강검진 내실화'는 2009년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사업내실화'와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에서 2010년 이후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로 변경됨.
-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은 '상대가치점수의 재평가'와 보완과 '한국형 포괄수가제의 개발 및 평가'의 내용으로 설정되었다가 2013년에 '한국형 포괄수가제의 개발 및 평가'로 변경됨.

□ 세부시행과제의 적절성

- 의료보장 내실화를 위한 세부시행과제는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인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으로 판단됨.
- 전자의 세부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심으로 진료비 부담 경감사업과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른 질환에 비해 평균 진료비가 높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의료비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제한된 자원에서 우선 접근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됨.
 - 2010년 이후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사업이 추가된 것은 국가적 저출산 지원 대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됨.
 - 2013년에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보장성 강화의 단계적 추진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적절함.
- 의료보장 내실화 차원에서 '의료보장 안정화 도모', '건강검진내실화',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안정적 의

료보장체계 구축차원에서 적절한 세부시행과제라고 평가됨.

-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공급자의 진료량 증가 동기를 변화시키고 조기진단 등을 통해 환자 의료경로를 효율화시키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운영의 재정 안정화 도모는 세부시행과제로 적절하다고 평가됨.
- 한편, 건강검진내실화의 세부시행계획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 내실화는 2009년에만 집행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중점추진과제의 세부시행과제의 설정은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집행

□ 중점추진과제의 추진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 간에 기획-수행-모니터링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대부분의 세부시행과제가 연차별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음.
- 계획과 집행은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정기적인 실적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을 보였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의 내용 및 내용의 적절성

- 본 중점추진과제(의료보장 내실화)의 성과지표는 5개 지표를 설정하였음.
 - 2013년까지 암환자 보장률을 80%로 확대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누적적립금 비율을 2013년까지 8.3%로 유지
 -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을 15일분 이내로 축소
 - 상대가치의 재평가와 보완, 한국형 포괄수가제의 개발 및 평가 등을 통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 한국형 포괄수가제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 및 확대

□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성과지표 대부분이 목표를 달성하였음.

- '암환자 보장률'에 대한 실적이 '09년 이후 최근까지 연도별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평가가 어려움.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누적적립금 비율'은 목표('13년까지 8.3%로 유지)가 달성됨.
-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을 15일분 이내로 축소'는 '13년 12일분 이내로 감소시킴으로써 목표대비 125% 달성률을 보임.
- '상대가치점수의 재평가와 보완'은 단계별로 연구점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목표가 달성됨.
- '한국형 포괄수가제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 및 확대'는 2011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목표가 달성됨.

〈표 8-4〉 의료보장 내실화(7-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세부시행과제 내용이 장기발전방향과 연차별 계획에서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본 중점추진과제의 기획은 적절하게 이루어짐
집행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 또는 지자체 간에 기획, 집행, 모니터링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성과 목표와 연차별 추진계획에 맞게 의료보장 내실화의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계획대로 달성했으나, 성과지표의 내용과 목표 설정 수준의 적절성 또는 구체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음

1. 의료보장성 강화(7-나-1)

가. 기획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7-나-1-①)

- 세부시행과제 목적은 '다른 질환에 비해 평균진료비가 높고 정상적인 사회생

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1년에 성과를 달성하여 완료됨.

- '05년부터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을 통해 암 등 고액·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 수준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임.
 -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08): OECD(73%), 한국(55%)
 - 보장성 확대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료보장 내실화를 추구하려는 중점추진과제 달성에 적합하다고 평가됨.
- 전반적으로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적절하게 매칭됨
- 2009~2013년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중기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단계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평가됨.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7-나-1-②)

- 세부시행과제 목적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11년에 성과를 달성하여 완료됨
- '05년 보장성 강화 방안 추진 및 '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나머지 가구에서의 발생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음(32.2% 대비 14.2%).
 - 저소득·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필요성 증가 측면에서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이 타당하며, 의료보장 내실화를 추구하려는 중점추진과제 달성에 적합하다고 평가됨.
- 전반적으로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적절하게 연계됨.
- 중기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 과제 완료시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이 단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됨.

□ 진료비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7-나-1-③)

- 세부시행과제 목적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진료비 부담이 크고 대상이 많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변동 없이 추진되었음.
-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시행과제의 목적이 타당하며, 의료보장 내실화를 추구하려는 중점추진과제 달성에 적합하다고 평가됨.
- 전반적으로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적절하게 연계됨.
-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 일관성 있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됨.

□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추진(7-나-1-④)

- 세부시행과제 목적은 '저출산 지원대책 강화 및 미래가입자 확보를 위해 임신부 및 소아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변동 없이 추진되어 완료되었음.
-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과의 연계와 미래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장성 확대 추진 차원에서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이 타당함.
- 전반적으로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적절하게 연계됨.
- 중기계획('10년 이후)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10년부터 '12년까지 시행계획이 일관성 있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됨.
 - 단, 중기계획에서 구순열 급여확대가 연차별 계획에 없음.

나. 집행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7-나-1-①)

- 사업의 주체 간 역할이 조화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적용방안 마련 및 관련 법

령을 개정하는 등 세부시행과제의 시행절차 및 과정이 합리적이며 국민 홍보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 사업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주체별 역할) 보장성강화계획 수립(보건복지부), 운영 및 모니터링(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7-나-1-②)

- 사업의 주체간 역할이 조화되고, 의견수렴을 통한 적용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세부시행과제의 시행 절차 및 과정이 합리적이며 국민 홍보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 사업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체별 역할) 보장성강화계획수립(보건복지부), 운영 및 모니터링(국민건강보험공단)
- 전문가 등 의련 수렴을 통한 적용방안 마련, 건정심 보고 및 의결, 관련 법령 개정
- 건강보험 소식지 및 고지서 활용한 홍보

□ 진료비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7-나-1-③)

- 중장기적인 보장성강화계획을 기반으로 기획·집행·모니터링의 피드백 기전 마련
- 사업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주체별 역할) 보장성강화계획 수립(보건복지부), 운영 및 모니터링(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문가 등 의련 수렴을 통한 방안 마련, 건정심 보고 및 의결, 관련 법령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수가 및 급여기준 개선 → 고시개정 → 사후관리

□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추진(7-나-1-④)

- 보장성 확대를 위한 관련고시 개정과 집행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국민

홍보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 절차 및 과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보건복지부)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확대 적용(국민건강보험공단)
- 세부시행과제의 집행관리
 - 공익캠페인 광고 및 TV 프로그램 제작 협찬
 -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관련 홍보물 배포
- 다만, 결산기준 예산 집행율이 2010년 62.7%, 2011년 66.5%, 2012년 67.8%로 낮은 것은 기획의 부정확성 또는 집행의 부진 가능성을 보여줌.
- 제도 개선 노력 : 건정심 논의와 법령 개정 과정에서 관련고시 개정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다. 성과환류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7-나-1-①)

- 성과지표는 '연도별 보장성 확대 시행'으로 연도별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타당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연도별 보장성 확대 시행을 통하여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중점추진 과제와의 관련성도 높음.
 - 단, 목표치의 기준이 되는 보장성 확대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성과지표 달성도는 목표에 따라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중증화상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한 간담회(2회)를 통해 관련 기준을 개정한 것은 의료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보장성 강화 노력으로 높이 평가됨
 - 중증화상학회, 화상전문병원 등과 중증화상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 개정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7-나-1-②)

- 성과지표는 '연도별 보장성 확대 시행'으로 연도별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타당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
 - 단, 목표치의 기준이 되는 보장성 확대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본 과제외의 성과지표는 연도별 보장성 확대 시행으로 목표에 따라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제도 개선 노력 : 관련법 개정안 마련 시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제도 도입 취지 및 기대효과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단체 등의 제출의견을 검토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높이 평가됨.

□ 진료비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7-나-1-③)

- 성과지표는 '연도별 보장성 확대 시행',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을 위한 상대 가치점수(고시) 개정', '급여화 시행'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타당하게 설정된 것으로 평가됨.
 - 단, 보장성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목표치의 기준이 되는 보장성 확대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또한 전환이 필요한 항목 대비 실제 전환된 항목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구제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달성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제도 개선 노력 : MRI 급여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한 간담회(3회), 병협 등과 논의를 통해 MRI 급여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 개정
 - 건성심 논의와 법령 개정 과정에서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노력이 우수함.

□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추진(7-나-1-④)

- 성과지표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으로 설정하고 있음. 연도별로 출산지원

금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은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성과지표로 타당함.

- 성과지표 달성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표 8-5〉 의료보장성 강화(7-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 : 보장성 확대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료보장 내실화를 추구하려는 중점추진과제 달성에 적합하다고 평가됨.
	②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 : 저소득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필요성 증가 측면에서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이 타당하며, 의료보장 내실화를 추구하려는 중점추진과제 달성에 적합하다고 평가됨.
	③ 진료비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시행과제의 목적이 타당하며, 의료보장 내실화를 추구하려는 중점추진과제 달성에 적합하다고 평가됨.
	④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추진 : 전문가 의견수렴, 보장성 항목별 관련고시 개정, 국민 홍보 등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됨. 단, 장기발전계획에서 '13년부터 시행 계획된 구순열 급여확대가 연차별 계획에서 빠져있고 그 사유와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이 없음.
집행	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 : 본 사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을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보장성 항목별 관련고시 개정, 국민 홍보 등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다고 평가됨.
	②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 : 본 사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을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보장성 항목별 관련고시 개정, 국민 홍보 등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다고 평가됨.
	③ 진료비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 보장성 강화 계획을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보장성 항목별 관련고시 개정, 국민 홍보 등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다고 평가됨.
	④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추진 : 보장성 확대를 위한 관련고시 개정과 집행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국민 홍보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다만, 결산기준 예산 집행율이 낮은 것은 기획의 부정확성 또는 집행의 부진 가능성을 보여줌.
성과현류	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 :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목표치 대비 100%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였으나 목표치의 기준이 되는 보장성 확대 항목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성과지표로서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②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 :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목표치 대비 100%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였으나 목표치의 기준이 되는 보장성 확대 항목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성과지표로서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③ 진료비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목표치 대비 100%이상의 높은 성과를 보였으나 향후, 목표치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 대비 실제 전환된 항목으로 성과지표를 구제화 할 필요가 있음.
	④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추진 :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목표치 대비 100%로 사업기간 내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2. 의료보장 재정안정화 도모(7-나-2)

가. 기획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7-나-2-①)

○ 연차별 시행계획 목적의 연도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년도	세부시행과제의 목적
2009년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이를 통한 의료보장 내실화 기반 마련 누적적립금 보유 목표 : 급여비의 1.9%
2010년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이를 통한 의료보장 내실화 기반 마련 누적적립금 보유 목표 : 급여비의 3.8%
201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이를 통한 의료보장 내실화 기반 마련 -매년 건강보험 재정 결산상 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 갑작스러운 보험급여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
2012년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의료보장 도모 -매년 건강보험 재정 결산상 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 갑작스러운 보험급여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재원 유지
2013년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의료보장 도모 -매년 건강보험 재정 결산상 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 갑작스러운 보험급여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재원 유지

○ 세부시행과제 목적의 변화는 적절함

- 단기보험 성격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당해연도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년 누적적립금 비율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7일분 급여비에 해당하는 2% 정도의 누적 적립금 비율 유지로 변경한 것임.
- 급속한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등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이용 수요 증가, 의료보장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 건강보험 재정 결산상 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 갑작스러운 보험급여비 지출에 대응하는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의료보장 내실화 차원에서 적절함.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적절히 연계됨.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건강보험의 단기보험 특성을 반영하여 누적적립금 비율의 명시에서 적정 재원 유지로 변경되었지만 갑작스런 급여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재원 유지라는 목적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이와 연동하여 환산지수 계약, 보장성 규모 결정, 보험료율 결정, 보험료 부과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관리강화(7-나-2-②)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 목적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세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매칭이 적절

○ 장기발전방향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이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 있지 못함.

- 장기발전방향에서는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 '부정청구 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 강화', '시군구 현장점검' 이 제안되었으나, 기존에 신고 보상금제도가 추진되고 있었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활성화가 다른 중점추진과제의 세부시행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의료급여 지출 관리 차원에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시행을 중심으로 성과가 관리된 것으로 보여, 연차별 세부계획의 변동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집행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7-나-2-①)

○ 건강보험 재정추계 및 재정추이 모니터링에 기반을 두고 재정상황에 맞게 체

계적으로 관련 정책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됨. '09~'13까지 매년 건강보험 재정추계 및 재정추이 모니터링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환산지수 계약, 보장성 규모 및 차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 (누적적립금이 일정수준 이상 되도록 보험료율 결정)

- 복지부·공단·심평원 재정안정대책 추진 T/F 운영 및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한 재정안정대책 추진 현장 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황변화에 잘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 복지부와 사업주체별 사업추진 협조체계가 원만하게 구축되어 운영되었으나 누적적립금은 관련기관뿐만 아니라 수입, 지출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로 가입자, 공급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관리강화(7-나-2-②)

○ 사업주체(부처)와 집행(담당)기관에 업무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된 것으로 평가됨.

○ 세부시행과제의 추진주체(부처), 집행(담당) 기관, 급여·서비스 제공기관 등

- 사업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 집행기관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시군구 대상으로 현지조사 신고센터 운영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제도 홍보 및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집행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현지조사 신고센터 운영관련 설문조사(260개 시군구 대상, '13.10.7~11.3 4주간) 결과 신고센터 인지도 90.9%이나 이용률 34.3%로 낮은편, 현지조사 의뢰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개선에 반영

다. 성과환류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7-나-2-①)

○ 성과지표는 '09년 1주일 급여비 확보를 위한 적립율 수준에서 '13년에 1개월

분의 누적 적립율이 되는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09년) 1.9% → ('13) 8.3% 로 매년 1.9%씩 추가로 적립하도록 재정 운영

- 건강보험 재정안정이라는 성과목표 차원에서 성과지표는 타당함.

○ 중점추진과제인 의료보장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건강보험 누적적립율은 적절한 지표임.

○ '10, '11년 성과지표 대비 달성률이 낮은 이유는, '09년 보험료율 동결로 인해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이 감소한 점, '09년 신인플루엔자 유행 등이 원인임.

- '12년과 '13년에는 달성수준이 높아짐. 이는 '10년 대규모 당기수지 적자(약 1.3조원)에 따라 '11년부터 강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수립·시행으로 조기에 재정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임.

- 당기수지: ('09)△31, ('10)△12,994, ('11)6,008, ('12)30,157, ('13)36,446

○ 제도 개선 노력 : '13년에는 국고지원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정부 예산안 제출 전으로 변경하였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기획단(13.7~)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관리강화(7-나-2-②)

○ 성과지표는 '의료급여 현지조사 기관 수' 임. 의료급여 보장 범위 및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합리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와 불필요한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써 '의료급여 현지조사 기관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함.

○ 성과지표 달성도는 '09년과 '10년에는 153개소, '11년 이후에는 매년 16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목표치를 100% 달성함.

○ 직접적으로 현지조사 시행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급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간접적으로 현지조사 집행 사례 홍보를 통해 부정청구를 예방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와 중점추진과제인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임.

- 제도 개선 노력 : 「의료급여과다 이용자의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다이용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적정관리 방안 마련 및 정책에 활용
 - 주요 내용 : 최근 5년간('08~'12) 연간 급여일수 700일 이상인 진료 상위자 및 의료급여 진료비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의료이용행태 파악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패널 구축
-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장관주재 토론회 개최와 의료급여 과다·부적정 이용자의 관리방안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한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 및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의료급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4회), 장관주재 토론회(1회) 개최
 - 의료급여 과다·부적정 이용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 개최(3회)

〈표 8-6〉 의료보장 재정안정화 도모(7-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p>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 : 의료보장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적절한 지출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일정수준 이상 유지는 재정안정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은 과제라고 판단됨.</p> <p>②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관리강화 :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도 중점추진과제 달성과 연계되어 있어 타당성이 높음.</p>
집행	<p>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 : 지속적인 재정모니터링에 기초하여 복지부와 사업주체간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의료보장 재정안정과 내실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과제가 집행된 것으로 평가됨.</p> <p>②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관리강화 :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으며 추진체계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p>
성과관리	<p>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은 '10년과 '11년에는 목표치를 미달하였지만, 최근 '12년과 '13년에는 목표치를 크게 하는 높은 성과수준을 보이고 있음. 건강보험 재정안정 측면에서 누적적립금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며 향후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p> <p>②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관리강화 :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하며, 목표치를 100% 달성하고 있음. 다만, 현지조사 대상 의료급여 기관의 규모가 160개 기관에서 정제하고 있어 향후 적정 규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p>

3.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7-나-3)

가. 기획

□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적

- 본 세부시행과제 목적의 연도별 내용은 연차별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음.
 -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 성장 발달의 중요시기에 건강문제의 이상소견을 조기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 지원과 의료보장 내실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적절하게 연계되었음.
 - 연차별 시행계획은 6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 내실화를 위하여 일관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음.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집행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됨.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보건소), 건보공단
- 정기적인 수검실적 관리,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방안 마련을 통해 적절하게 집행관리가 이루어졌음.
 - 모니터링, 평가, 제공기관 관리 등 세부시행과제의 집행관리 계획 및 실적
 - 건강보험공단 내부 평가지표 반영하여 건보가입자에 대한 수검실적 관리

- 안행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을 지표로 설정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수검실적 관리
- 수급자(대상자)에 대한 지원(정보 제공 등), 대국민 홍보 등의 실적과 성과
 - 검진 안내문(검진표) 발송을 통한 수검 안내 실시 : 매월 20~25일경(검진시작일 도래자) 최초 안내문 발송 및 안내문 분실 등에 대하여 수시 재발급(다문화 가정은 다국어로 번역하여 발송)
 - 수검독려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언론 등 홍보
- 민원, 불편사항, 불만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방안, 실적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어려움 해소, 검진 소요시간 단축 추진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연도별로 성과 달성을 근거로 양적·질적 발전을 위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한 것으로 보임.
 - (2009년) 영유아 건강검진은 2008년부터 실시하였으므로, 제도 초기에 국민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 제고”에 대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 (2010년)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제도의 안정화를 위하여 성과목표 “영유아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에 대하여 “검진기관 일반평가 실시”를 성과지표로 설정
 - (2011년)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효과를 높이고자 성과목표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에 대하여 “영유아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제공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
 - (2012년,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수검률이 꾸준히 상승했으나, 일반 건강검진의 수검률 72.6%(11년)에 비하여 매우 저조(53.8% '11년)하였으므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목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대

- 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 하지만, 성과 달성을 위한 목표 기준치를 변경한 것일 뿐 결과적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검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매년 실적 향상을 점진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의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단기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 달성도
 - 매년 성과목표치 대비 100%이상을 달성함.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건강관리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는 의료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관련성이 높은 지표임.
- 제도 개선 노력
 - 영유아 건강검진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검진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임.
 - 검진 소요시간 단축 추진 : 한국 영유아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개발 및 웹(Web) 서비스 제공(2014. 9월) 및 영유아 건강검진 매뉴얼 통합개선 및 의사교육자료 개발('14.2.~12.) 추진
 - 수검 접근성 증진 : 공휴일 건강검진 시 상담료 30% 가산 적용('12년) 및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지속 추진
 - 수가 현실화 추진 : '14년도 상담료를 진료수가의 80% 수준으로 인상('14.1.)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개선 노력을 보임.
 - '11년 결산 상임위, 영유아 건강검진비 관리 부실 지적
 - 건보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건강검진비 예산을 정산·반납 조치
 - '12년 결산 상임위, 건보가입자 대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낮은 수검률 지적
 - 의료급여수급자 수검률 향상을 위해 홍보·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공휴일 검진 적극 독려

〈표 8-7〉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7-나-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과 내용은 타당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이 잘 연계되어 있음 장기발전방향의 내용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잘 연계되어 있음.
집행	정기적인 수검실적 관리,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 고층층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방안 마련을 통해 적절하게 집행관리가 이루어졌음.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연도별로 성과지표가 달라 일관성 있게 성과의 추진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율) 선정이 필요함. 자체 노력과 외부 지적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필요한 제도 개선의 성과를 실현함

4.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7-나-4)

가. 기획

□ 상대가치점수의 재평가와 보완(7-나-4-①)

- 과제의 목적은 상대가치점수 단계별 적용으로 급격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상대가치 연구 보완으로 연차별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음.
 - 상대가치 점수를 단계별로 적용으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수가구조의 바른 개편을 통한 의료보장 내실화 측면에서 적절함.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적절하게 연계되었음.
 - 일부 내용(상대가치 도입 예측 프로그램 개발)은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한국형포괄수가제의 개발 및 평가(7-나-4-②)

-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포괄수가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으로 연차별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음.
 - 신포괄수가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차원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적으로 적절함.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적절하게 연계되었음.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나. 집행

□ 상대가치점수의 재평가와 보완(7-나-4-①)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논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됨.
- 사업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상대가치연구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개정 및 시행

□ 한국형포괄수가제의 개발 및 평가(7-나-4-②)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됨.
- 사업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관리공단
- 세부시행과제의 집행관리
 -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시범기관 현장지원 및 상담확대 : 복지부, 지방의료원연합회 합동
 - 시범기관 대상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스터, 리플릿, 배너 제작 배포

다. 성과환류

□ 상대가치점수의 재평가와 보완(7-나-4-①)

- 성과지표는 '상대가치 연구점수 도입' 임. 현행 수가체계에 상대가치 연구점수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에 따라 지표 선정이 타당함.
- 매년 성과목표치를 100% 달성함.

□ 한국형포괄수가제의 개발 및 평가(7-나-4-②)

- 성과지표는 ‘시범사업 실시’ 임. 한국형 지불제도 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적용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로 타당함.
- '10년을 제외하고 매년 성과목표치 대비 100% 달성함.
 - 일산병원은 지속되었으나 연구용역 지연 및 대상 공공병원 사정으로 시범사업 시행을 하지 못함.
-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시범사업 확대에 기여함.
 -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가산수가 부여(취약계층 진료비율, 중환자실, 분만실 운영)
 - 시범사업 장려비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 산정방법 개선을 개선하여 1인당 9,140원 감소
 - 진료비의 중간청구가 가능하도록 진료비 분할 청구제 도입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조기 지급 효과

〈표 8-8〉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7-나-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p>① 상대가치점수의 재평가와 보완 : 본 과제의 추진 목적과 내용은 타당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이 잘 연계되어 있음. 장기발전방향의 내용과 연차별 시행계획도 비교적 잘 연계되어 있음.</p> <p>② 한국형포괄수가제의 개발 및 평가 : 본 과제의 추진 목적과 내용은 타당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이 잘 연계되어 있음. 아울러, 장기발전방향의 내용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잘 연계되어 있음.</p>
집행	<p>① 상대가치점수의 재평가와 보완 : 성과목표에 맞게 연차별 계획이 체계적으로 집행되었음.</p> <p>② 한국형포괄수가제의 개발 및 평가 : 건강보험 정책의 합리적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한국형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의료기관에 시범 적용하여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객관적 검증자료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우수한 정책 사례임.</p>
성과환류	<p>① 상대가치점수의 재평가와 보완 :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하며, 목표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임.</p> <p>② 한국형포괄수가제의 개발 및 평가 : 현재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공공병원을 이용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은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판단됨. 의료계의 반대 등 어려운 환경에도 계획된 내용대로 성과를 달성하였음.</p>



제9장 복지전달체계 분야

제1절 지역의 복지수행 역량 강화

제2절 행정인프라의 합리화

제3절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제4절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

9

복지전달체계 분야 <<

제1절 지역의 복지수행역량 강화(8-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8-가	지역의 복지수행 역량강화	8-가-1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추진
		8-가-2	지자체 인력재배치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
		8-가-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연계

1.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추진(8-가-1)

가. 기획

- 본 과제는 지방분권과 복지재정 지방이양에 따라 도입된 분권교부세가 2009년 종료 예정이었다가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임
- 지방이양복지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2005년 이후 순 지방비 부담은 25%씩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매년 약 8%씩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지방의 복지재원이 감소
-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절감된 재원을 복지분야에 투입
- 복지사업과 재정의 지방 이양 이후 구조적으로 나타났던 재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매우 시급하게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이며, 전반적인 지방이양 사업의 구조조정과 재원 확대를 추진한 것 역시 적절한 사업 기획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복지부 지방이양사업 담당부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 지방재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그 근거 법령인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정
- 이렇게 복지재정 지방이양과 관련된 부처와 합동으로 당면 과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자체 복지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음
- 지방이양 복지사업에 대해서 재원의 문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기획능력이나 추진의지의 부족으로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는 진단도 제기
- 이에 따라 과제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비단 이양사업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함
- 또한 이 과제가 2010년 추진완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 문제는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라 그 문제는 심화되고 특히,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가 지방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쟁점화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이양 이후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복지재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당시 당면한 과제에 제한적으로만 대응한 측면이 있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나. 집행

- 본 과제의 집행을 위해 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 담당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 합동으로 분권교부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확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
- 복지부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구조조정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

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구조조정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처의 책임범위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어 수행됨

- 비예산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 투입은 해당사항이 없음
- 기획된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예정된 일정과 역할에 따라 부처간에 적절한 분담과 추진이 이루어져 우수했다고 평가됨
- 복지주무부처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지방자치)와 기획재정부(재정)까지 관련된 과제였음에도 계획된 기간 안에 과제가 추진되어 목표한 관련법령 개정이 원만하게 완료됨
- 따라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 적합한 역할 분담과 추진이 이루어져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 성과환류

- 분권교부세 한시적 운영 기한이 2009년 만료됨에 따라 정부 합동으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분권교부세 운영기간을 2014년까지 5년간 연장 하였으며 2010년 지방이양사업 구조조정 실시
- 2010년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 구조개선을 하였으며 수도권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중 일부를 출연하여 지역상생기금 신설
- 149개 지방이양사업을 89개로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분야 재원으로 배분하여 분권교부세 중 복지분야 재원비중이 2010년 70.3%에서 2011년 74%으로 증가
- 2009년 지방이양 근거법령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고 2010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성과지표상 100% 달성
- 당면한 분권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한 바대로 성과를 이루었으나,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와 안정적 추진을 달성하였는지는 미지수임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절감 예산의 복지분야 투입으로 분권교부세 도입 초기 60%였던 사회복지사업 예산 비중이 74%까지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법과 시행령을 계획한 2010년까지 개정 완료하여 계획한 사업과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
- 하지만 성과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라는 궁극적 정책 목표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음
-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보완 문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기획 능력 및 추진의지 문제, 신규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고려나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9-1〉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추진(8-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복지사업과 재정의 지방 이양 이후 구조적으로 나타났던 재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매우 시급하게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이며, 전반적인 지방이양 사업의 구조조정과 재원 확대를 추진한 것 역시 적절한 사업 기획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집행	기획된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예정된 일정과 역할에 따라 부처간에 적절한 분담과 추진이 이루어져 우수했다고 평가됨
성과환류	당면한 분권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한 바대로 성과를 이루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와 안정적 추진을 달성하였는지는 미지수임

- 지방정부의 예산기반 강화는 2005년 사회복지 사업과 재정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과제로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으나 분권교부세 문제에만 제한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분권교부세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복지예산

비중을 어느 정도 확대시켰으며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함

- 사업의 기획과 성과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적인 사업의 범위로 인하여 정책 목표가 적합한 범위에서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의 성과도 제한적이고 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예산부담에는 여전히 뚜렷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은 지방의 여건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기준보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복지재원 부담 문제는 계속 악화되는 상황
 - 많은 복지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준보조율에 따른 부담으로 지방에게 재정부담이 현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중앙-지방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음
 -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부담이 악화되어 지방분권의 취지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 지방분권 이후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한 기획역량과 추진의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예산기반의 강화와 함께 지역의 복지사업이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방분권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따라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정체되거나 위축되는 문제가 제기됨
 - 복지에 대한 예산기반 강화와 함께 예산이 복지사업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복지 욕구에 따른 예산 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의 복지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 지자체 인력재배치 및 인력운영계획 수립(8-가-2)

가. 기획

- 민생안정체계 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사회복지사업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재배치 등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집행하기 위한 본 과제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함
 - 2009년에는 민생안정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전국 시군구에 민생안정추진TF 내 평균 4명의 민생안정 전문요원을 배치
 - 2010~11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과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시군구-읍면동 사무조정, 인력 재배치, 이행사항 모니터링, 전문화 교육 추진 등을 계획
 - 2012년부터는 2011년 발표된 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대규모로 충원되는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및 교육 사업을 계획
- 과제 수행과정에서 유의미한 인력확충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획되기보다 상황 변화에 따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2009년 민생안정지원체계 추진, 2011년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발표 등이 이루어지면서 그 때마다 인력 확충계획이 확정
 - 인력 확충과 교육, 재배치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 효과가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그에 따른 개선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발표된 일정에 따라 확충하고 교육하고 배치하는 제한적인 범위에만 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음

나. 집행

- 목표 인력을 확충하고, 신규재배치 인력에 대한 교육을 완료
 - 계획대로 인력 확충과 교육은 꾸준히 수행하였으나 인력 재배치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함

- 특히 2011년 개선대책에 의한 인력 확충의 경우 행정직 전환 배치에 대한 문제(행정직 복지부서 배치 후, 기존 복지직 타부서 배치 등)나 읍면동 신규 복지직 업무조정 문제(신규 복지직 일반 민원창구 배치 등)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다. 성과환류

- 2010년, 2012년, 2013년에는 모두 신규 및 재배치 인력에 대한 교육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2009년, 2011년에는 계획대비 총원 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모두 100% 이상 달성
- 인력 충원에 의해 목적인 바대로 자자체에서 업무재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복지업무의 효과성이 얼마나 제고되었는지, 궁극적으로 지역의 복지수행역량 강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성과는 반영되지 못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9-2〉 지자체 인력재배치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8-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과제 수행과정에서 유의미한 인력확충과 배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사업의 기획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라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두드러져보임
집행	목표한 인력을 확충하고 신규·재배치 인력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는 등 원만하게 추진이 되었으나 업무 분석에 따른 계획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고, 지자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은 효과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성과환류	2010년 이후에는 매년 성과지표로 신규 및 전환배치자에 대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전원 교육이 시행되어 100% 이상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인력 충원도 모두 달성하였으나 그 결과에 따른 복지수행 역량 강화나 복지업무의 효과성 제고 등의 성과는 반영되지 못함

- 복지인력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 인력 확충이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획한 바대로 확충된 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업무 재조정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배치 인력

- 에 대한 교육에만 집중함으로써 성과가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
-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직에서 전환배치된 인력만큼 기존 복지직을 타부서나 타업무로 전출시키거나, 읍면동에서 신규 배치된 복지직을 일반 민원창구에 배치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함
- 복지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업무의 질적 향상이 병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향후 기초연금 실시, 개별급여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복지 확대와 제도 변화에 따라 복지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인력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복지욕구 진단과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므로 복지직의 선발과 교육에서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복지행정 전담인력’ 이기보다는 전문적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공공 사회복지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 적극적 모색이 필요할 것임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연계(8-가-3)

가. 기획

-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가구 발굴,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해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과 민간계약직으로 구성된 사례관리 전담팀(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2010년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상담·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활용하여 DB를 축적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 협력체계 강화

- 복지욕구는 특히 위기가구에서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복지급여와 서비스는 부처별, 전달체계별, 주체별로 분절되어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본 과제는 매우 적절함
- 본 과제를 통하여 기초지자체별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체계(희망복지지원단)가 마련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로 평가됨
- 2009년 10개 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고 2012년부터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개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매뉴얼 개발, 교육, 포상 등을 계획
- 사업의 확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통합적 전달체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
- 하지만 지역 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기관이 긴밀하게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직접 재원을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복지기관 뿐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공단이나 고용센터, 전문서비스 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 하지만 본 과제의 기획에 있어서는 사례관리 전담팀의 구성과 이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연계협력은 이 전담팀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예산구조, 각 기관별 평가구조, 연계협력 거버넌스 등 보다 광범위하고 긴밀한 연계협력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능동적인 접근이 없었다는 한계를 내포

나. 집행

- 2009년 10개 시군구 서비스연계팀 내 설치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2010년에 전국 사업으로 확대, 2012년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시군구 평균 4명, 민간계약직)을 배치하고 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사례관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 컨설팅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집행을 촉진하고, 우수사례 포상 및 보급을 통하여 전담조직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촉진
- 사례관리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및 평가, 부진지역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
-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평가, 포상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역의 집행주체들의 역량 향상을 촉진함
- 사업예산도 계획한 예산을 100% 집행하여 예산 역시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과제의 집행은 체계적인 집행체계 구축,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및 역량 개발 등을 사업기간 전반에 걸쳐 수행하여 매우 우수함
- 현장점검과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과정과 매뉴얼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지속적으로 관리
- 매년 1~2회 주기로 반복되는 이러한 교육, 평가와 지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성과환류

- 본 과제의 성과목표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사례 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목표치에 2~4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양적 성과만 강조됨
- 1인의 사례관리자 당 연간 40가구 정도를 적절한 사례규모로 산정하고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년 그 2~4배에 달하는 사례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목표의 초과달성이 아니라,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사례의 '질'보다는 '양'

을 중심으로 수행된 측면이 있다는 근거로 보여짐

- 사실 복잡하고 다양한 통합사례관리에 있어 질적 수준을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양적 실적만 고려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양적 성과 이외에 실질적인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 구축은 아직 한계가 있어 보임
 -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질적 성과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보다는 사례관리팀(희망복지지원단)의 개별적인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다양한 민간기관(각종 공단, 고용센터, 민간전문기관 등)의 연계협력체제나 거버넌스 구조가 여전히 미흡하여 각 기관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남아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9-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연계(8-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우리나라 복지급여와 서비스는 부처별, 전달체계별, 주체별로 분절되어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본 과제는 매우 적절함
집행	체계적인 집행체계 구축,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및 역량개발 등을 사업기간 전반에 걸쳐 수행하여 매우 우수함
성과환류	성과목표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사례 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목표치에 2~4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양적 성과만 강조됨.

-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집중적인 보호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연계체계 구축은 매우 적절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통합사례관리팀의 구축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됨

- 통합사례관리팀을 민간계약직 사례관리인력 배치를 통하여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 포상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한 점이 돋보임
- 통합사례관리팀을 통한 개입사례가 양적으로는 매년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양적 성과 이외에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고, 지역사회 광범위한 민간기관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민간 복지시설 이외에 다양한 복지(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단과 고용센터, 전문서비스 기관 등과 연계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그에 맞는 연계체제나 거버넌스 구축이 추진되지는 못했음
 - 서로 다른 재정구조와 평가체계, 전달체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계협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전담팀 구성과 운영 이외에 일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재정 공유, 평가 연계와 함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제2절 행정인프라의 합리화(8-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8-나	행정 인프라의 합리화	8-나-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고도화
		8-나-2	법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망 구축
		8-나-4	적정급여 관리체계 활용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고도화(8-나-1)

가. 기획

-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 수급자격 조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복지급여·서비스 적정성 확보 및 맞춤형 복지 기반 마련
 - 시군구별, 복지사업별 DB를 개인별, 가구별 DB로 전환하여 수급자 단위로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관리하고 27개 기관 200여종의 정보를 연계
 - 사업별 유사, 중복서식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과 민원 편의를 증대시키고 소득, 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 다양한 사업에 공동으로 활용
 - 복지급여 대상 선정과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기반과 범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고 연차별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스템 보급,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소요일수 단축, 타부처 사업 활용 등 확대·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함
 -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이후 행정업무의 효율화, 활용 사업의 확대, 연계 범위의 확장 등 연차별로 시스템 확대·고도화 계획을 수립
 -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이 돋보임

나. 집행

- 2010년 1월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고, 연차별 성과목표로 설정한 소득·재산 공적자료 소요일수 단축, 통합관리망 관리범위 확대 등은 모두 100% 이상 달성하여 원만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 집행 실적은 미흡
 - 2010년 소득, 재산 공적조회 소요일수는 기존 14일에서 목표한 5일보다 더 짧은 3일로 단축되었으며, 2011년 지자체 및 타 부처 서비스 수용(활용) 건수는 목표치인 70건 보다 60% 이상 더 많은 113건에 이르렀고, 급여·서비스 적정성 관리실적도 목표한 2건을 모두 수행
 - 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2011년에는 배정된 예산의 54%, 2013년도에는 예산의 66.7% 밖에 집행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초기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
 - 상담문의 대응전화 운영, 온라인 포털 개설,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초기 혼란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기능 오류가 많아 지나치게 촉박한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짐
 - 소득재산 자료 연계로 인하여 기존 초과자 약 18만 건에 대한 보장 중지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에도 갑작스런 보장 중지에 대해 대체 서비스나 지원 연계 등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급여중지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 노정
 -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책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행정효율화로 더욱 효과적 인 복지 기반을 구축한다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무색해짐

다. 성과환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보급률,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회 일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통합관리범위 확대 등의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어느 정도 확대된 2012년 이후 더욱 시스템의 고도화

를 위한 성과지표보다는 연 2건의 급여·서비스 적정성 관리실적만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성과 추진이 아쉬움

- 또한 애초에 목적하였던 민간서비스까지의 통합관리 범위의 확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나 대응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사례별 맞춤형 복지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복지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복지사업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시스템에서 민간복지 자원은 거의 관리되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원인 진단과 대응 모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9-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 확대고도화(8-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운영하고 연차별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보급,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소요일수 단축, 타부처 사업 활용 등 확대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함
집행	연차별 성과목표로 설정한 소득·재산 공적자료 소요일수 단축, 통합관리망 관리범위 확대 등은 모두 100% 이상 달성하여 원만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 집행 실적은 미흡
성과현류	사업단계별로 확대·고도화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고, 모두 100% 이상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만큼 사업의 단순한 측면만 반영한 한계가 있음

- 복지급여 수급자격 판정 및 관리에 필요한 소득·재산·인적 자료 조회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체계를 만드는 매우 적절한 과제임
- 대상자별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 효과적인 대상자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과제임
- 실제로 소득·재산 조회기간이 단축되고 통합관리 범위도 확대되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원만히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 수급자의 대량 탈락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으며, 민간복지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상에서의 확대와 통합관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효과적인 복지사업 관리와 이용자별 맞춤형 복지 제공이 가능해지도록 기능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
- 아직 사용방법이 복잡하고, 대상자별 정보를 조회할 때 개별급여 정보들을 일일이 선택하여야 볼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소득·재산 정보 연계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역할 뿐 아니라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미수급 급여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띄워주는 등 수급권 보장을 위한 기능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민간 복지사업까지 통합으로 관리하고 공적지원을 받는 민간기관도 제한적인 영역에서 통합관리망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시설 평가나 실적 평가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에 근거해 실시하는 등 통합관리망에 참여할 동기를 제공해야 함

2.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망 구축(8-나-2)

가. 기획

- 본 사업은 대상자에게는 복지급여(현금)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1인 1계좌의 '복지계좌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부처간의 현금 및 비현금성 사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복지전산망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이후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사업만 추진
- 2010년과 2011년에는 "부처간 복지정보 연계망 구축"으로 2012년과 2013년에는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망 구축"으로 과제명이 변경
- 대상자를 위한 복지계좌제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라 복지급여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체제로 대체
- 범부처 복지정보연계사업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293개의 전부처

복지사업 정보 연계를 추진

- 정부의 복지사업이 다양한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 과제는 매우 시급하게 요청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과제가 변경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보다는 단순한 '정보연계'만 추진됨
- 애초의 과제는 대상자별 복지계좌제 도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의 현금급여와 비현금성 급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한 듯 하나 연차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연계 정도로 축소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수혜자의 서비스 체감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혜자를 중심으로 한 '통합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체감도 개선의 목적보다는 중복수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무게가 실린 듯함

나. 집행

- 초기 사업의 시행 주체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이었고, 이후 행정안전부의 복지정보연계추진단이 구성되어 추진하다가 2012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과제를 추진하는 등 사업주체가 계속 변경
- 이 사업은 복지부를 포함한 17개 부처 292개 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과제로 보다 효과적인 과제수행을 위해서는 국무총리급 이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반에는 행정안전부, 후반에는 복지부가 주체가 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통합적 관리보다는 단순 정보연계밖에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범부처 복지정보연계에 있어서는 전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연계하는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되어 무난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복지사업 정보연계는 2012년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한 198개 복지사업 연계가 1단계로 추진되고 2단계에서는 전부터 대상자에 대해 전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연계 추진
-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자격*수입이력 통합DB'를 구축하고 중복 및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지킴이' 프로그램을 구축
- 하지만 예산집행율은 2010년에만 100%였으며 2011년에는 32.5%, 2012년에는 66.4%, 2013년에는 75.9%로 저조

- 따라서 계획한 정보연계는 추진일정과 성과목표대로 무난하게 달성하였으나 사업목적과 효과적 수행에 적합한 사업추진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계속 변경되었으며 예산집행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다. 성과환류

- 추진실적 측면에서는 2012년까지는 194개 사업, 2013년까지 292개 전 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자격·수입이력 통합DB가 구축되어 핵심적인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임
- 과제추진과정에서 전부처의 현금성 복지사업과 비현금성 사업을 모두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DB 구축작업을 진행
- '자격·수입이력 통합DB' 구축에 따라 복지사업의 신청-조사-결정-급여 과정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원시스템' 구축
- 하지만 과제의 성과가 중복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통합적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 다양한 부처의 복지사업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중복수급 방지 등을 통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뿐 아니라 급여누락을 방지하거나 이용자 중심으로 다양한 급여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목적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음

- 정보연계를 통해서 복지급여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되면서 효과적으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오히려 복지체감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9-5〉 범정부 복지정보통합관리망 구축(8-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정부의 복지사업이 다양한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 과제는 매우 시급하게 요청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과제가 변경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보다는 단순한 '정보연계'만 추진됨
집행	범부처 복지정보연계에 있어서는 전 부처 292개 복지사업을 연계하는 2단계 사업까지 완료되어 무난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성과현류	추진실적 측면에서는 전 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자격수입이력 통합DB가 구축되어 핵심적인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사업이 다양한 부처에서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필수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본 과제는 매우 시급하였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점
- 본 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 부처의 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파악된 전 사업에 대한 '자격*수급이력 통합DB'가 구축되어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구축
- 또한 이를 기반으로 복지사업의 신청-조사-결정-급여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중복수급 관리를 통하여 복지재원의 효율적 관리도 향상
- 하지만 이러한 통합적인 시스템은 비단 복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뿐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도 보다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제공

함으로서 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본 과제는 관리측면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측면만 강조됨
- 중복수급 방지나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등으로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었다면 반대로 그 시스템을 통해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범부처 서비스를 개인별, 가구별로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체감도도 높일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측면의 사업추진은 나타나지 않음
- 복지사업의 '통합관리'란 단순히 정보를 연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부처의 급여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신청-조사-결정되어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단일 부처가 아니라 국무총리급 이상에서 과제를 추진하여 부처 간의 적극적인 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적정급여 관리체계 활용(8-나-4)

가. 기획

- 본 과제는 복지급여에 대한 적정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 효과성의 향상을 추진
 - 2009년에는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사업을 계획하였으며 2010년 행복e음의 도입으로 부정수급 관리의 효과성이 대폭 개선된 이후 2011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등 주요 6개 현금급여로 대상 확대
 - 2012년부터는 복지급여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관리하면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점검과 소외계층 발굴 점검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권리구제도 균형있게 실시
 - 2013년부터는 민간복지조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의 '좋은 이웃들' 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보다 강화
- 사업 기획에 있어 연차별 성과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에서 사후관

리, 사각지대 발굴 및 권리구제로 이어져 비교적 능동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 지표와 목표는 그 결과 감소되어야 할 '주요 복지급여 조정비율'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늘리는 모순이 있었음

- 기초보장관리단 시범사업, 행복e음 개통,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 '좋은 이웃들' 연계사업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등 사업이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적정급여 확립을 추진
 - 적정급여가 확립된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급여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나 성과지표를 주요 복지급여 조정비율로 설정하여 오히려 목표치는 매년 늘려잡는 모순이 있었음
 - 주요 복지급여 조정비율을 성과목표로 잡음으로 인하여 급여 오류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급여가 여전히 더 많아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
- 결과적으로 제도적 성과와 환경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의 확대와 변화를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와 목표를 모순되게 설정함
- 가령 2011년부터 매년 6~70개 지자체에 대한 중앙현장평가를 하여 2013년까지 전국 대부분 시군구에 대한 현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핵심사업이라면 차라리 현장평가 수행 수급자 수나 전국 지자체 현장평가 완료율 등 산출(output)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함
 - 매년 서로 다른 지역에 대한 현장평가를 수행한다고 할 때 그에 의한 급여조정 비율이 더 낮다고 해서 사업의 성과가 없었다고 하기도 어렵고, 더 높아졌다고 해서 사업을 잘했다고 하기도 어려운 모호한 성격의 지표(애초에 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된 지역이라면 더 많은 건수를 평가검증하였다고 해도 급여조정 비율은 낮을 수 있음)
 - 현장평가 지역만 달라지는데 연차별 계획에서 매년 3%에서 그 다음해 3.1%로, 또 그 다음해 3.17%로 조금씩 목표치가 늘어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이를 달성했다고 해서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도 없음

나. 집행

- 기초보장관리단은 2011년에 복지급여권리구제TF로 개편되었다가 복지급여권리과로 한시조직이 아닌 상시조직으로 전환
 -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기초보장관리단과 복지급여권리구제TF 등 한시적 조직으로 추진하다가 사업의 상시적 필요에 따라 복지급여권리과를 설치
 - 상시적 조직을 통해 매년 6~70개의 지자체에 대한 정례적인 중앙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전국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지침 적용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제고
 - 권리구제의 확대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협업체계를 구축
- 과제를 수행하면서 급여기준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점검·조정하고, 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을 능동적으로 확대하고, 균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돋보여 우수하였다고 평가됨
 - 시범사업단계에서 정례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상시조직을 설치하고, 과제 추진 과정에서 근로능력 평가기준, 행복e음 도입 이후 사후관리, 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등 관련된 쟁점을 순차적으로 집중
 - 이러한 추진과정은 사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과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연차별로 예산 집행율이 5~60%에 머문 경우가 있어 사업예산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였으며 이마저도 2012년부터는 달성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부적정 급여 조정 비율로 설정된 성과지표는 2009년에 15.5%, 2010년에는

48.7%로 지표상 달성율은 모두 100%를 훨씬 넘어섰고 특히 2010년에는 행복e음 도입에 따라 급여조정율이 대폭 증가

- 2010년부터 대상급여를 확대하면서도 성과지표를 복지급여 조정비율로 설정하고 2011년부터는 3%대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달성도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성과지표 자체는 적정급여의 효과적 관리정도를 보여주지 못해 행정 인프라의 합리화라는 중점추진과제와의 연계성도 떨어짐
- 하지만 집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의 성과와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정례화되고, 대상이 확대되고, 권리구제가 강화되었던 것은 그만큼 추진과정에서 환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전반기의 사업이 다소 부정수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된 측면이 있으나 후반기에 갈수록 과제의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 발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과의 연계 등 권리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
 - 이러한 능동적 대응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체적인 점검과 내외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도 평가할 수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9-6〉 적정급여 관리체계 활용(8-나-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업 기획에 있어 연차별 성과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에서 사후관리, 사각지대 발굴 및 권리구제로 이어져 비교적 능동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 지표와 목표는 그 결과 감소되어야 할 ‘주요 복지급여 조정비율’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늘리는 모순이 있었음
집행	과제를 수행하면서 급여기준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점검조정하고, 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을 능동적으로 확대하고, 균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돋보여 우수하였다고 평가됨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부정적 급여조정 비율로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이마저도 2012년부터는 달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적정급여 관리’란 단지 기 수급자뿐 아니라 비수급자 중에서도 적절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나 과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급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적정급여 관리’ 부정수급 방지 뿐 아니라 권리구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까지도 포함
 - 하지만 핵심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 대한 중앙현장 점검을 통하여 기존의 수급자의 급여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집중하고 하반기에 ‘좋은 이웃들’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는 하였으나 성과지표는 여전히 ‘급여조정’에 국한됨
- 이러한 과제추진의 한계는 급여조정, 예산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성과관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결국 과제에 대한 접근부터 앞으로의 개선이 요구됨
-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 중의 하나는 욕구에 따라 필요한 급여가 제공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보를 획득한 사람이 먼저 신청해서 급여를 확보하는 구조
 - 따라서 복지급여가 필요를 기준으로 우선적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빠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매우 부적절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고, 결국 필요한 사람이 법적 자격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존재함
- 이미 보편화된 복지시대에 ‘적정급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수급자 중심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증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과성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함
- 제대로 된 ‘적정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점검 수준이 아니라 전 국민이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규모 이상 무작위 추출 후 적절한 급여수급 여부와 급여수준을 검증하여 기존 수급자의 정적수준 급여 뿐 아니라 사각지대 규모까지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해야 함

제3절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8-라)

〈표 9-7〉 서비스 제공인력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8-라) : 영역별 평가결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8-라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강화 등 서비스 질 향상	8-라-2	정보 공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1. 정보 공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8-라-2)

가. 기획

- 사회서비스의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추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기관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 뿐 아니라 매출액, 제공 인력 수, 수혜 인원 수 등을 추가로 공개
 - 제공인력의 경력, 매출액 등 개인의 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
-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기에는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나, 바우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를 통한 경쟁유도는 적절하다는 점에서 우수함.
 - 기존의 주소와 연락처와 같은 기본정보 뿐 아니라 매출액, 규모, 제공인력 경력 등 공개까지 추진한 것은 분명 선택권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이용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단순명료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검증된 이용자의 평가를 공개하거나 제공인력 근속률, 이용자 중도중단을 등 간접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제한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그침

- 또한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문 발송시에도 핵심정보를 첨부하거나 보통 서비스를 신청하는 읍면동에 비치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모색되지 않음

나. 집행

- 2009년에는 제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고 2010년에는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여 사업 추진은 계획된 일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임
- 모든 제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였는지, 공개된 정보는 정확한지, 최신정보가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나 점검, 평가는 진행되지 않아 지표상 100% 완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정보공개가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모든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정보가 제공된 것인지, 정확한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반기별로 최신정보를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움

다. 성과현류

- 실적으로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공개가 모두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켰는지에 대한 성과도 알 수 없음
 - 이미 집행 평가에서 기술하였듯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그에 따른 점검이나 모니터가 수행되지 않아 모든 제공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한 것인지 알기 어려움
 - 또한 정보공개 여부만 성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이용자의 정보이용 성과나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이용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 궁극적 목적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음
 - 추가적인 점검이나 이용자 선택권 향상과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2010년에 사업완료로 처리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9-8〉 정보 공개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8-라-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기에는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나, 바우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로 통한 경쟁유도는 적절하다는 점에서 우수함.
집행	모든 제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하였는지, 공개된 정보는 정확한지, 최신정보가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평가는 진행되지 않아 지표상 100% 완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성과환류	실적으로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공개가 모두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켰는지에 대한 성과도 알 수 없음

-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 이용자의 실질적인 이용 등을 점검했어야 함
- 시장경쟁 방식을 도입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올바른 선택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은 매우 중요함
-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시행하는 것에 그쳤을 뿐 정보가 정확한지, 얼마나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음
-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다면 공개된 정보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보공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음
- 또한 공개만 되고 이용자가 선택을 위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역시 정보공개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함

- 시도 담당자나 사회서비스지원단,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 현황, 정보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는 등 추진체계를 보완하고 공개된 정보의 이용자 이용현황,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등 실질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시도와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시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도 점검하거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질 평가에도 정보의 공개정도와 정확성을 포함시키는 등 보완이 필요함
-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시 제공자 선택 동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제공기관 공개정보(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선택의 비율을 점검하거나 공개정보의 인지정도, 공개내용의 만족정도 등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의 시장경쟁방식에 대해서 이용자의 제한적인 선택권으로 그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보다 이용자가 쉽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많은 만큼 정보만 공개하고 이용자가 알아서 해석하여 판단하도록 하기보다는 보다 쉽게 이용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서비스 질 평가기준에 의한 별점 평가나 우수기관 인증제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종합적인 평점을 내리는 것이 객관성이나 형평성 등으로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별 항생제 처방율, 주사제 처방율 등의 등급을 제공하여 의료납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듯이 제공인력 근속연수, 이용자 중도 중단을 등 서비스 질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표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제4절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8-마)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8-마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 기반 마련	8-마-1	(가칭)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제정
		8-마-2	사용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①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② 기관별·개인별 정보보호 대책 강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개념과 발급 및 사용, 관련된 권리와 책임 등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
 -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시행되는 바우처제도에서 다양한 통계정보를 산출하여 정책결정자를 비롯한 이용자와 공급자, 학계에 제공하여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중점추진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과 시스템의 구축 뿐 아니라, 실제 효과적 운영구조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에서 계획, 공급, 평가까지 이어지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성과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만 세부시행과제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중점추진과제에서는 전자바우처의 실시간 결제율 90% 달성을 성과지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소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결제시스템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제도 운영 측면만 반영하고 있음
 - 실시간 결제율에 대한 평가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전자바우처 결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 없이 달성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미 전자바우처 통합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2008년부터 시행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간의 목표를 시스템에 의한 결제율 90%로 설정한 것은 소극적인 목표치라고 할 수 있음

〈표 9-9〉 관리운영체계 선진화 및 안정화기반 마련(8-마)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집행	본 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과 시스템의 구축 뿐 아니라 실제 효과적 운영구조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나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추진한 한계가 있음
성과환류	전자바우처의 실시간 결제율 90% 달성을 성과지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결제시스템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제도 운영 측면만 반영하고 있음

1. (가칭)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8-마-1)

가. 기획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
 -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격과 발급, 사용, 정산 등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과 신뢰를 확보
 - 기존의 다른 복지서비스나 사회서비스의 공급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법을 제정
-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독립법을 추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계획한 것은 적절함
 - ‘시장의 안정적 성장 도모’라는 후속 일정이 명시되었을 뿐 법 제정 이후 법이

행사항을 점검하거나 평가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완을 추진하는 등 후속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나. 집행

□ 2010년까지로 계획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 독립법 제정이 2011년에 완료되기는 하였지만 계획한대로 제출된 이후 국회심사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무리 없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법안은 2009년에 계획한 바와 같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11월 25일)
- 2010년에 법안 제정을 계획하였으나 상임위 의결만 마무리 되고, 2011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됨

□ 정부가 마련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통해 ‘대리입법’하는 관행은 여전히 전한 것으로 보임

- 효과적인 법안 마련과 법 제정 추진을 위해 법안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수렴하고, 홍보 등 여론화를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사업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음
- 정부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대리입법’을 하는 것은 현재 관행화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입법에 필요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심의와 조정과정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기 위한 편법이고, 결국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기는 어려움

다. 성과환류

□ 2011년에 계획한 독립법 제정이 이루어져 목표한 성과는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법 제정에 의한 제도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점검이나 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보완 등 후속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 계획보다는 지연되었지만 2011년까지 법제정이 모두 완료되어 계획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음

- 사업 담당자나 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법 내용 홍보 등 후속작업이나 인지도 조사, 실효성 평가 등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계획 기간 중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평가나 추후 보완을 위한 환류 과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9-10〉 (가칭)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제정(8-마-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독립법을 추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집행	2010년까지로 계획되었던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 독립법 제정이 2011년에 완료되기는 하였지만 계획한대로 제출된 이후 국회심사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무리 없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성과환류	2011년에 계획한 독립법 제정이 이루어져 목표한 성과는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법 제정에 의한 제도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점검이나 법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보완 등 후속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 기존 서비스의 공급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위한 독립법 제정은 적절하고 무난하게 추진되었지만, 효과적인 법 제정을 위한 조치나 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법의 제정은 적절하였으며 약간이 지연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추진되었다고 할 것임
- 법안 제출 이외에 효과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한 의견 수렴, 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홍보, 법의 실효성과 향후 보완을 위한 평가 과정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나 성과관리는 결여되어 있음

□ 특히 정부제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국회의원을 통해 ‘대리입법’을 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며 책임 있는 입법을 위한 절차를 기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움

- 물론 정부법안의 의원 '대리입법' 관행은 모든 정부부처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만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움
- 특히 정부입법은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직접 입법한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상세한 의견 수렴과 조정과정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의 입법과정은 훨씬 간소하여 결국 이러한 의견 수렴과 조정과정을 기피하기 위한 방법임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정부입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 명백한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사용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8-마-2)

가. 기획

- 본 과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시행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관계자에게 효과적 정책 결정과 사업 수행을 위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됨
-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통계정보를 이용자, 제공기관, 관련 학계 등에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과 사업시행의 기반정보로 활용
- 부정이용 패턴 분석 등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하여 활용하고, 제공기관에도 인사 및 급여 관리, 보호계획 수립 등 전문화된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파기 절차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에 기술적·시스템적 보호장치 강화
- 하지만 연차별 계획에서 시스템 구축 일정과 구축 내용 등과 같은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사항만 포함되었을 뿐 정작 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통계 제공과 시스

템 보급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가령 정부나 지자체에 어떤 통계를 어떻게 제공하여 활용토록 할 것인지, 이용자나 제공기관에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여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 특히 제공기관에 인사 및 급여, 보호계획 수립 등 전문화된 시스템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정작 연차별 계획에서는 제외됨
- 정보보호 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겠다고 계획이 명시하였지만 정작 연차별 계획에는 몇 건의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만 제시될 뿐 인증 획득 등의 보호수준 강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나. 집행

- 일정에 따라 통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개인정보 보호시스템도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임
- 전자바우처 통계정보시스템은 일정에 따라 2010년까지 구축 완료
- 정보보호 대책 강화는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매년 2~3건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꾸준히 추진
- 하지만 정부시스템 구축 이후 정작 목적인 바대로 지자체나 이용자, 제공기관 등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에 의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 사업은 시스템 자체의 구축에만 그치고 있으며 계획 기간 중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시스템에 대한 의견 수렴, 활용도나 유용성에 관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 보완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업의 효과적 집행은 나타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구축 건수 이외에 실질적인 정보는 파악하기 어려움

다. 성과환류

-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의 성과지표로 통계자료 사용자의 이용만족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없음
 - 사회서비스 통계정보시스템은 2010년에 완료되었음에도 정작 통계가 얼마나 활용이 되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설정한 통계정보 만족도 지표조차 측정결과가 제출되지 않음
 - 정보보호 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2~3건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건수의 내용을 알기 어렵고 정작 외부기관의 인증과 같은 보호강화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가 평가되지 못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9-11〉 사용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8-마-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시행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서비스 정책 관계자에게 효과적 정책 결정과 사업 수행을 위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됨
집행	정부시스템 구축 이후 목적인 바대로 지자체나 이용자, 제공기관 등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에 의한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성과환류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의 성과지표로 통계자료 사용자의 이용만족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없음

-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통계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관계자나 이용자, 제공기관, 학계 등에서 활용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매우 필요한 도구이나 시스템 구축 이상의 사업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음
 - 계획에 의해 시스템 구축은 추진이 되었으나 정작 시스템의 보급과 활용, 관계자 교육 등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 통계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성과목표가 설정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성과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시스템 구축 이후 의견 수렴이나 보완 등 후속사업은 제시되지 않음
 -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정책관계자, 이용자, 제공기관, 학계 등에서 적극적인 통계정보 활용과 보급을 위한 사업(교육 및 통계정보 서비스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 대책 강화 역시 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자바우처 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매우 필요한 과제이나 보호 시스템 구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인증과 같은 평가와 지속적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정보보호 체계는 단순히 보호시스템 건수만 추가한다고 강화되기 보다는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 시스템 보강과 함께 외부인증기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보호 강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여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 역시 필요함



제10장 민간자원 분야

제1절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

제2절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확대 및 활성화

제3절 사회복지 인적 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제4절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제1절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9-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9-가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	9-가-1	모금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①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공익성 정기점검방안 마련 ②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9-가-2	기부참여 증대를 위한 동기 제고 ①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②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 추진
		9-가-3	다양한 모금주체의 모금활동 참여 지원
		9-가-4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①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②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모금시장 및 모금기관 차원의 개선과 개인의 기부동기 제고 간에 상호 연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시행과제들 간에도 상당한 연계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과 중점추진과제와의 부합성이 다소 떨어지며, 나머지 세부시행과제들과의 연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모금시장의 공급자(기부자)와 수요자(모금기관)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추진주체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의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 내 관련부처 및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체계도 잘 구축한 것으로 판단됨
- 개인기부금 총액 규모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당장 활용가능한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모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0% 증가한 금액을 목표치로 삼은 것은 다소 작위적인 것으로 판단됨

〈표 10-1〉 사회적 나눔 확산을 위한 기부, 모금 활성화(9-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모금시장 및 모금기관 차원의 개선과 개인의 기부동기 제고 간에 상호 연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시행과제들 간에도 상당한 연계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집행	세부시행과제별로 사업추진 일정 및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환경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성과환류	설정된 성과목표를 매년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연도별로 달성을 편차가 상당히 크게 존재하고 있고, 2013년의 달성률(284.8%)이 급격히 상승한 점에서 목표설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1. 모금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9-가-1)

가. 기획

-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정기 점검방안 마련(9-가-1-①)
 -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문제가 우리사회의 나눔문화 확산 및 기부금 증대에 상당히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필요한 정책적 조치로 판단됨
 -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에서 전달, 최종 수혜까지의 주요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 역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됨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기관 및 자동연계를 확대한 것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임
 -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정기점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9-가-1-②)
 - 모금단체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강화는 필요
 - 표준화된 회계정보 프로그램 보급과 모금기관 종사자 회계교육으로 한정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부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되나, 구체적인 운영목표 및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음
 -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중단되었다는 점은 타당성이 부족함

나. 집행

-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정기점검 방안 마련(9-가-1-①)
 -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민간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고 시민감시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국민(수요자)의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형성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시민감시위원회의 구체적 활용 내용 및 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주요 일간지 및 온라인을 통해 모금/배분 명세를 공고한 것은 타당한 조치임
 - 국민들이 공고 내용을 통해 공동모금회의 모금/배분의 구체적 내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개 노력이 필요함
-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9-가-1-②)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국무총리실 '정책 현안 과제'로 채택

- 하고, '기부문화 확산 정책협의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한 것은 바람직함
- 2012년에 '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나눔포털 및 나눔통계 개선방안, 나눔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추진현황 점검, 나눔기본법 제정현황 점검 등을 실시한 것도 큰 성과임
 - 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실적 제시가 생략되어 있어 객관적 성과 평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회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가 2013년 이후 중단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 성과환류

-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정기점검 방안 마련(9-가-1-①)
 - 지정기부금 단체 주관부처에 의견 제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동연계, 기부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피드백 서비스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들이 실적 중심만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향상이라는 실질적 목표 달성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큰 한계이며,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심층적 연구 등의 조치가 요구됨
 - 기부자 온라인 피드백 서비스 제공 건수가 2011년 60만건, 2012년 65만건, 2013년 96만건으로 매년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목표대비 달성률 측면에서는 2011년 600%, 2012년 92.8%, 2013년 133%로 나타나 연도별 편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9-가-1-②)
 - 담당부서에서 설정한 모든 성과지표들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설정된 목표치가 매우 단순하고 소극적이므로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할 수 없음

- 2010년 모금단체 투명성·공익성 확보를 위한 의견 제시 1회(100% 달성),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 공시 1회(100%), 2011년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100%), 회계교육 실시 2회(100%), 2012~2013년 범정부 차원의 기부관련 정책협의체 구성·운영(100%)
-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이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금 증가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10-2〉 모금기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9-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정기점검 방안 마련 :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부금 모금에서 전달, 최종 수혜까지의 주요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 역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됨 ②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회계정보 프로그램 보급과 모금기관 종사자 회계교육으로 한정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집행	①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정기점검 방안 마련 :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②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나눔활성화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나눔활성화 관련 정책과제 점검, 나눔기본법 제정현황 점검 등을 실시한 것은 큰 성과이나 2013년 이후 중단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성과환류	①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정기점검 방안 마련 : 지정기부금 단체 주관부처에 의견 제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동연계, 기부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피드백 서비스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②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 모든 성과지표들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설정된 목표치가 매우 단순하고 소극적이므로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할 수 없음

-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공익성 정기점검 방안 마련(9-가-1-①)
 - 나눔문화의 확산 및 기부금 확대를 위해 기부금 모금단체의 투명성·공익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 하지만,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 전반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조직의 기부금품 모집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모금방법과 내역, 활용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9-가-1-②)

- 모금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회계프로그램의 보급과 종사자 회계교육은 매우 기본적인 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 모금단체나 비영리조직들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법률적, 세제상의 적극적 정책 도입이 필요함
- 모금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중단되었다는 점은 타당성이 부족한 조치임

2. 기부참여 증대를 위한 동기 제고(9-가-2)

가. 기획

-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9-가-2-①)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 것은 개인의 기부동기 및 기부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됨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2008년 15%, 2010년 20%, 2011년 30%로 설정한 것은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설정인 것으로 평가됨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 추진(9-가-2-②)

- 나눔교육은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이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나눔교육을 어린이와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포괄하여 실시하고자 기획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나눔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나눔교육 전문교육장 설치 등 나눔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적·표준화된 나눔교육을 확산하고자 한 것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나. 집행

□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9-가-2-①)

-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하여 추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평가됨
 - 기획재정부가 세수 축소에 대한 우려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대국민 홍보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노력도 인정됨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 추진(9-가-2-②)

- 사업 초기단계부터 모금전문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눔교육 실행을 전담하고, 관련부처인 교육부와 협력한 것도 나눔교육의 체계적 추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사)나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역별 나눔교육 거점기관을 공모·선정하고 민간 나눔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도 성과로 평가됨
- 다만, 2012년까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률(87.5%)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됨

다. 성과환류

-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9-가-2-①)
 -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라는 성과목표에 대한 목표치를 2010년 20%, 2011년 30%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 추진(9-가-2-②)
 - 본 사업의 성과목표로 나눔교육 참가자 수와 강사 양성, 나눔교육 개발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다만, 2013년 지역별 나눔교육장 운영 지원의 경우 목표치(16개소)에 미달(13개소) 하였음
 - 나눔교육 참가자 수의 경우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였다는 점은 당초 설정된 목표치의 타당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음
 - 특히, 2012년 나눔교육 참가자 수 목표치는 5,000명인데 비해 실적은 23만명이고, 달성률이 4.600%인 점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결과임

라. 총평 및 제언

-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9-가-2-①)
 -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2008년 15%에서 2010년 20%, 2011년 30%로 확대한 것은 기부동기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개인의 기부참여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소득공제 한도와 같은 법률적 지원 이외에 다양한 금전적,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 추진(9-가-2-②)
 - 나눔교육은 장기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나눔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교육방식도 기부와 자원봉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표 10-3〉 기부참여 증대를 위한 동기 제고(9-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p>①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 것은 개인의 기부동기 및 기부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됨</p> <p>②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 추진 : 나눔교육을 어린이와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포괄하여 실시하고자 기획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p>
집행	<p>①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하여 추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평가됨</p> <p>②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 추진 : 사업 초기단계부터 모금전문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나눔교육 실행을 전담하고, 관련부처인 교육부와 협력한 것도 나눔교육의 체계적 추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p>
성과환류	<p>①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라는 성과목표에 대한 목표치를 2010년 20%, 2011년 30%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p> <p>②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 추진 : 성과목표로 나눔교육 참가자 수와 강사 양성, 나눔교육 개발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음</p>

3. 다양한 모금주체의 모금활동 참여 지원(9-가-3)

가. 기획

- 모금시장의 경쟁체제 마련을 통한 국민의 기부권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모금주체의 모금활동 참여 지원' 방안을 추진한 것은 매우 적절함
- 투명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모금기관을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하여 공동모금회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매우 필요한 조치로 평가됨

- 다양한 모금주체가 공동모금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은 국민의 기부 선택권을 확대하고 총 모금 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나. 집행

-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력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평가됨
- 관련 법규의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함
-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모금심사위원회에서 전문모금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한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됨

다. 성과환류

- 전문모금기관의 다양화와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 점은 성과로 인정됨
- 다만, 모금기관 다양화와 연계하여 총 기부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과 평가지표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됨

라. 총평 및 제언

- 모금기관을 다원화하기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이 현실적으로 국민의 기부권 확대 및 모금 총 규모 확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성과지표로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
- 현재 총 기부금액과 증가율을 고려할 때 모금기관의 다원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과 중장기적 계획 필요

- 모금기관의 다원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문모금기관 자격 부여로서는 충분하지 못하고, 이들의 모금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

〈표 10-4〉 다양한 모금주체의 모금활동 참여 지원(9-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특정 모금단체에 모금이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투명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모금기관을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하여 공동모금회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매우 필요한 조치로 평가됨
집행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력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평가됨
성과환류	전문모금기관의 다양화와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 점은 성과로 인정됨

4.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9-가-4)

가. 기획

-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9-가-4-①)
 - 민간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06)을 통해 시작된 식품나눔은 이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여 가져가는 '푸드마켓'의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기부식품의 공급 및 수요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인 전국 확대 설치는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 및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됨
-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9-가-4-②)
 - 기부품목을 식품 외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수요가 높은 일반 생활용품까지 다

양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기부식품의 모집 확대 및 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위해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한 것도 적절한 계획으로 평가됨
- 식품기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와 지역별 발전모델 마련을 추진한 것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나. 집행

□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9-가-4-①)

-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 사업자,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국비 100%로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치 차후년도부터 지자체가 임대료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푸드마켓 설치 신청이 저조한 결과 발생
- 국무총리실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실태 분석(2011. 6월) 결과에 따라 푸드마켓 확대 설치 지원계획의 재정비 필요 발생
 - 지역특성 및 기존 푸드마켓의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가운데 사업이 추진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9-가-4-②)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광역 및 기초단위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식품기부법 개정과 평가지표 개발 등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효과에 대한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 의견수렴이 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식품 기부자와 이용자들의 욕구 및 불편사항 등을 수렴한 실적은 확인할 수 없음

다. 성과환류

□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9-가-4-①)

- 성과지표로 '푸드마켓 확대 실시'만이 제시되고 있는데, 신규 푸드마켓의 설치 개수 만으로는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성과지표의 목표치로 설정된 신규 푸드마켓의 수(2009년 45개소, 2010년과 2011년 25개소)에 관한 타당성 있는 근거도 확인할 수 없음
- 2011년에는 국무총리실의 운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치 개수의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달성률은 60%에 그침
- 2011년 이후 푸드마켓 확대와 관련한 개선 노력이나 구체적 개선계획이 제시되지 못했음

□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9-가-4-②)

-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가 단순히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 제도 개선 여부로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매우 힘든 구조임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한 것과 함께 당초 설정된 목표도 달성되지 못함

라. 총평 및 제언

□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9-가-4-①)

-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사업내용과 추진체계, 성과 측면에서는 개선이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추진과정에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2012년 이후 푸드마켓 확대가 중단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
- 취약계층 식품나눔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

□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9-가-4-②)

- 사업의 필요성과목표 설정 등에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추진과정과 성과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됨
- 기부식품 전달체계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현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식품을 기부하고 활용하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단계적으로 조율해나가는 노력 필요

〈표 10-5〉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9-가-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 저소득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완화를 위해 민간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②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기부식품의 모집 확대 및 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위해 기부식품 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한 것도 적절한 계획으로 평가됨
집행	①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 사업자, 지자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②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식품기부법 개정과 평가지표 개발 등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으나, 구체적인 수립 내용 및 효과에 대한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성과환류	① 기부식품 제공 인프라 확충 : 성과지표로 '푸드마켓 확대 실시'만이 제시되고 있는데, 신규 푸드마켓의 설치 개수 만으로는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② 기부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한 것과 함께 당초 설정된 목표도 달성되지 못함

제2절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9-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9-나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	9-나-1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① 정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체계 '행복나눔 N' 캠페인 ② 사회공헌활동 분야 인센티브 강화 ③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9-나-2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화 ① 체계적인 기업사회공헌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 ③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컨설팅

□ 세부시행과제를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화'로 선정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정도를 사회복지분야 기업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할 수 있는 다수의 지표를 개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제시된 실적치 역시 대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하는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방안에 제한됨

〈표 10-6〉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및 활성화(9-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기업의 사회복지 참여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거시적 제도 개선과 미시적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서비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집행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 내 관련부처 및 민간기관들과의 협력체계도 잘 구축한 것으로 판단됨. 세부시행과제별로 사업추진 일정 및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었으며, 정책환경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짐
성과환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정도를 사회복지분야 기업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1.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9-나-1)

가. 기획

- 정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체계 '행복나눔 N' 캠페인(9-나-1-①)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인 '행복나눔 N 캠페인'을 추진한 것은 민간자원 적극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임
 - 다만, 기업의 판매활동과 소비자의 구매활동을 나눔으로 연계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나눔문화 실천이라는 차원에서는 가치가 있으나, 공공정책의 목표로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인식도 존재함
 -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조성을 통한 사업의 시행은 구체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사회공헌활동분야 인센티브 강화(9-나-1-②)
 - 사회공헌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포상과 사례확산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임
 - 정부포상 이외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에 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9-나-1-③)
 - 현재 기업 공익재단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나. 집행

- 정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체계 '행복나눔 N' 캠페인(9-나-1-①)
 -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의 협력체계,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는 효과적인 방안임

- 사회공헌활동분야 인센티브 강화(9-나-1-②)
 - 보건복지부와 나눔국민운동본부가 민관 협력을 통한 우수기업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시행한 것은 체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9-나-1-③)
 -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됨
 -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공익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운용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로 '사회복지분야 기부금액'을 제시하였는데, 본 세부시행과제와 성과지표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기부금액은 2009년 2.7조원에서 2012년 3.2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목표치가 없이 달성치만 제시되고 있어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정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체계 '행복나눔 N' 캠페인(9-나-1-①)
 - 행복나눔 N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수와 기금액이 매년 증가하였고, 2013년 기준 46개 기업, 590여억원의 기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성과로 인정됨
- 사회공헌활동분야 인센티브 강화(9-나-1-②)
 - 연도별 포상 수상자 수를 성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추진과정의 성과라기보다는 결과물로 해석됨
 - 포상 이외의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포상 이후에 해당 기업 또는 개인의 사회공헌활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여 성과를 분석하는 노력도 필요함

-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9-나-1-③)
 -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성과목표가 상당히 모호하며, 달성 수준도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성과목표치로 의견수렴 및 개선추진 주관부서 협의 횟수를 제시하였는데, 매년 회의 횟수가 2-4회에 불과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의 내용과 실제 적용 결과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10-7〉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9-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정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체계 '행복나눔 N' 캠페인 : 민간자원 적극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② 사회공헌활동분야 인센티브 강화 : 사회공헌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포상과 사례확산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임
	③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 현재 기업 공익재단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집행	① 정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체계 '행복나눔 N' 캠페인 :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정보센터와의 협력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참여 및 역할을 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함
	② 사회공헌활동분야 인센티브 강화 : 보건복지부와 나눔국민운동본부가 민간 협력을 통한 우수기업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시행한 것은 체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③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공익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기반한 추진체계를 운용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성과환류	① 정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체계 '행복나눔 N' 캠페인 : 행복나눔 N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의 수와 기금액이 매년 증가하였고, 2013년 기준 46개 기업, 590여억원의 기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성과로 인정됨
	② 사회공헌활동분야 인센티브 강화 : 연도별 포상 수상자 수를 성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추진과정의 성과라기보다는 결과물로 해석됨
	③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성과목표가 상당히 모호하며, 달성수준도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정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체계 '행복나눔 N' 캠페인(9-나-1-①)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자 노력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민간 협력형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공헌활동분야 인센티브 강화(9-나-1-②)
 - 포상제도 이외의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단순히 포상자 수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9-나-1-③)
 - 관련 부처들 간의 협의체계를 구축한 것은 성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노력들이 제도적인 개선안으로 발전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함
 - 기업의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수렴한 의견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함

2.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화(9-나-2)

가. 기획

- 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일부 미흡함
 -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기업사회공헌활동 DB 구축 또는 성과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반면에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교육 지원과 컨설팅은 정보관리 체계화라기

보다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체계적인 기업 사회공헌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9-나-2-①)

- 우리나라의 기업 사회공헌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컨설팅(9-나-2-③)

- 주로 대기업 중심, 일회성·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욕구와 현실을 반영한 컨설팅의 필요성은 높음
- 수요자 맞춤형의 사회공헌활동 컨설팅 방법론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힘든 사업으로 판단됨
-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 있음

나. 집행

-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공헌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전문가 양성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예산이 지원되었고, 예산규모나 집행률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 대체로 충분했던 것으로 평가됨

다. 성과환류

-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기업 사회공헌활동 컨설팅 사업 모두 목표치 없이 달성 실적만 제시되어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목표달성도 역시 단순히 인원과 컨설팅 횟수만 제시되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실질적 성과를 파악할 수 없는 지표임

- 교육과정 참여자 수(연평균 약 83명)와 컨설팅 횟수(연평균 3회)를 고려할 때 계량적 달성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10-8〉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관리 체계화(9-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체계적인 기업 사회공헌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 : 교육지원의 대상과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기획의 적정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실정임 ③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컨설팅 :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힘든 사업으로 판단됨
집행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공헌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전문가 양성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성과환류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기업 사회공헌활동 컨설팅 사업 모두 목표치 없이 달성 실적만 제시되어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본 세부시행과제의 기본 목적과 실제 추진된 사업내용 간의 부합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함

- 기업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하는 민간 전문인력 양성과 컨설팅 서비스가 매우 부실한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개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공공의 장기적인 개입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제하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9-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9-다	사회복지 인적 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9-다-1	자원봉사 지원기반 마련 ① 부처간 자원봉사 지원 연계 운영 ②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자원봉사 전담인력 배치 ③ 자원봉사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인정·보상 확대
		9-다-2	자원봉사 영역 확대를 통한 참여 확산 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② 자원봉사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참여경로 다양화 ③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지원

- 자원봉사 지원기반 마련이라는 제도적 개선 방안과 자원봉사 영역 확대를 통한 참여 확산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시행과제들을 추진하는 주체가 동일하고 사업 연계 및 협력의 수준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 내 관련부처 및 민간기관들과의 협력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세부시행과제별로 사업추진 일정 및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었으며,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환경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함
-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참가인원의 증감여부를 중점추진과제의 추진성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적·지속적 자원봉사자로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임
 - 현재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치를 사회복지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조사의 타당성을 훼손하는 것임
 - 2013년에는 목표치와 실적치가 모두 제시되어 있지만, 2012년까지는 목표치 없이 실적치만 제시되었다는 점도 성과평가의 한계를 노정함

〈표 10-9〉 사회복지 인적자원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9-다)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중점추진과제의 달성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지원기반 마련이라는 제도적 개선 방안과 자원봉사 영역 확대를 통한 참여 확산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집행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 내 관련부처 및 민간기관들과의 협력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성과환류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참가인원의 증감여부를 중점추진과제의 추진성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1. 자원봉사 지원기반 마련(9-다-1)

가. 기획

- 부처 간 자원봉사 지원 연계운영(9-다-1-①)
 - 범정부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지원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해보험 가입지원 중복 완화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자원봉사관리 전담인력 배치(9-다-1-②)
 - 연도별 교육 횟수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시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담당자와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일선 사회복지시설·기관 자원봉사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실적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음
- 자원봉사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인정·보상 확대(9-다-1-③)
 -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위한 인정·보상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해보험 가입과 놀이공원 및 문화공연 무료(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점 또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나. 집행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본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그리고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가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수행체계의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 제공기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 또한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됨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대국민 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고, 각종 민원 및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제고하였음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자원봉사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배정된 예산규모가 소액(연 6백만원 ~ 12백만원)이어서 자원투입의 적절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자원봉사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인정·보상 확대 사업의 예산도 2013년 기준 250백만원으로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자(20만명) 1인당 지원액이 1,250원에 불과한 수준임
 - 자원봉사자 동기부여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투입된 자원의 규모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다. 성과환류

- 부처간 자원봉사 지원 연계운영 사업은 상해보험 중복가입 방지라는 성과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부처간 자원봉사활동 관리업무의 분리 운영(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

- 당초 설정된 목표치(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수)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성과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함
- 목표 달성률은 2011년 98.8%, 2012년 79.6%, 2013년 74.5%로 매년 낮아졌는데, 이는 최근 자원봉사자 수 증가율이 정체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라. 총평 및 제언

〈표 10-10〉 자원봉사 지원기반 마련(9-다-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부처 간 자원봉사 지원 연계운영 : 범정부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지원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해보험 가입지원 중복 완화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②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자원봉사관리 전담인력 배치 : 연도별 교육 횟수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시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담당자와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일선 사회복지시설·기관 자원봉사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실적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음
	③ 자원봉사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인정·보상 확대 :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동기부여를 위한 인정·보상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집행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 제공기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 또한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됨.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자원봉사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배정된 예산규모가 소액이어서 자원투입의 적절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성과환류	부처간 자원봉사 지원 연계운영 사업은 상해보험 중복가입 방지라는 성과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부처간 자원봉사활동 관리업무의 분리 운영(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자원봉사관리 전담인력 배치(9-다-1-②)
 -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임
 -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담인력의 배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어 핵심을 벗어난 사업 추진으로 평가됨
 -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기관의 자원봉사 관리인력 확대 배치 및 업무전문성 제

고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계획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보조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역량이 낮은 실무자가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자원봉사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인정·보상 확대(9-다-1-③)

- 전 국민 자원봉사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일한 인센티브 체계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힘든 상황임
- 자원봉사자의 성별과 연령, 계층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들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2. 자원봉사 영역확대를 통한 참여 확산(9-다-2)

가. 기획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9-다-2-①)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연구 진행,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선발, 수요처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2012년 이후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이 중단된 명확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자원봉사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참여경로 다양화(9-다-2-②)

- 자원봉사 참여경로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하고 연계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적절함
- 우리사회의 IT문화를 반영하여 '네이버 해피빈'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수요처와 수요자를 발굴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것도 의미가 있음

□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지원(9-다-2-③)

- 베이비부머 및 전문직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지역 단위에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임

나. 집행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본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그리고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가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수행체계의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자원봉사활동 관리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 제공기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 또한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됨

□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와 대국민 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고, 각종 민원 및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제고하였음

□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규모 및 집행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성과환류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9-다-2-①)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은 2012년 이후 중단되어 사업의 지속

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음

- 제시된 성과지표(1004 지역사회봉사단 구성)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라는 목표 간의 부합성이 부족함

- 사업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자들의 특성과 욕구, 지역환경 등을 반영한 새롭고 창의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 실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원봉사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참여경로 다양화(9-다-2-②)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수요처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봉사단-수요단체 연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참여경로 다양화의 성과지표로써의 적절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봉사단-수요단체 연계만을 온라인 연계 실적으로 산정한 것은 운영시스템의 한계 또는 행정편의를 위해 개별 자원봉사자의 온라인 연계는 구조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짐

- 제시된 연간 목표치(2,000개-2,200개) 설정의 근거도 불확실함

-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지원(9-다-2-③)

-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단 구성 숫자를 성과지표를 제시한 것은 타당성이 떨어짐
- 지역사회봉사단의 구성 자체보다는 이들 조직의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유형이며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목표치의 설정 근거도 불명확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파악하여 사업성과 등을 확인한 것은 적극적인 인 노력으로 인정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10-11〉 자원봉사 영역확대를 통한 참여 확산(9-다-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전문 자원봉사 활성화 연구 진행,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선발, 수요처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② 자원봉사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참여경로 다양화 : 자원봉사 참여경로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하고 연계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적절함
	③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지원 : 베이비부머 및 전문직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집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와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그리고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가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수행체계의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규모 및 집행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성과환류	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성과지표(1004 지역사회봉사단 구성)와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라는 목표 간의 부합성이 부족함
	② 자원봉사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참여경로 다양화 : 성과지표는 수요처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봉사단-수요단체 연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참여경로 다양화의 성과지표로써의 적절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③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지원 : 지역사회 전문자원봉사단 구성 숫자를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는데, 지역사회봉사단의 구성 자체보다는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유형,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세부시행과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구체적 사업내용들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자원봉사 영역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원봉사 욕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 자원봉사자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양적 확대 정책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고려한 세분화와 지속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 적용이 필요함

제4절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9-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9-라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9-라-1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① 지역별 맞춤형 기능조정방안 시범사업 실시
		9-라-2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① 서비스 품질관리단 구성 및 활동

□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단 구성 및 활동'의 2개 세부시행과제만을 추진한 것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 다기능화를 통한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업과 평가 미흡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간에 강한 연계고리를 찾기는 힘들

(표 10-12)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9-라)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단 구성 및 활동의 2개 세부시행과제만을 추진한 것은 논리적, 경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집행	민간 전문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세부시행과제별로 사업추진 일정 및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된 것으로 평가됨
성과환류	두 개 세부시행과제 모두 성과 영역에서 보통으로 평가되었음

1.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9-라-1)

가. 기획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특히 시설유형별, 지역별로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불균등 현상이 존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임

□ 민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 다기능화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점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됨

○ 각 유형별로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시군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나. 집행

□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추진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연구기간 및 연구비 지원 등 사업집행과정에 관한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맞춤형 기능 조정방안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은 합리적 방안으로 평가됨

○ 시범사업의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성과환류

□ 당초 설정된 목표대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시설유형별 지역 내 복지시설 간 기능조정 방안을 도출한 것은 성과로 인정됨. 사회복지시설의 다기능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 것도 큰 성과로 판단됨

-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2010년부터 지역 맞춤형 기능조정방안 시범사업이 실시됨으로써 연구 성과의 정책적 반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시군구가 확대되지 못하고 2010년 8개에서 2011년 6개로 축소된 것에 관한 합리적 사유 제시가 필요함
- 2년간 추진된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이후 시범사업이 발전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중단된 점은 미흡으로 평가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10-13〉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9-라-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집행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추진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성과·환류	당초 설정된 목표대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시설유형별 지역 내 복지시설 간 기능조정 방안을 도출한 것은 성과로 인정됨.

-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작업은 단시간 내에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으며,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민간복지서비스 공급은 주로 사회복지재단 등 비영리조직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2.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9-라-2)

가. 기획

-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복지시설 유형 및 개별 시설별로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미흡시설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의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방식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학계 및 우수시설 관계자들로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평가 미흡시설을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 개별 시설별 컨설팅 기간 및 전문인력의 투입규모의 적절성은 다소 부족함

나. 집행

-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평가함
- 다만, 품질관리단 조직 및 참여인력이 상시적으로 운영,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컨설팅의 전문성 제고와 일관성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품질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절대적 규모에서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며, 2009년과 2010년 50백만원, 2011년 200백만원, 2012년 100백만원, 2013년 95백만원으로 변경되는 등 충분성과 안정성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를 품질관리단 운영횟수를 설정한 것은 타당성이 미흡함

- 목표치를 연내 3회 또는 4회, 우수시설 방문으로 설정한 것 역시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품질관리를 받은 기관의 만족도나 차기 평가결과의 상승도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10-14〉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9-라-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복지시설 유형 및 개별 시설별로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집행	사회복지시설평가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평가함
성과환류	품질관리단 운영에 관한 성과지표로 운영횟수를 설정한 것은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복지시설 중심의 품질관리를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품질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 사회복지시설평가 등 품질관리체계는 정부와 복지시설 등 공급자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복지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단순히 품질관리단 운영 차원의 개선이 아니라 평가의 목적과 내용, 방식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함



제11장 교육복지 분야

제1절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제2절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제3절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

제4절 육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

11

교육복지 분야 <<

제1절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10-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0-가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	10-가-2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비 지원
		10-가-3	근로장학금 확대
		10-가-4	든든학자금 수요 확대

- 교육복지의 핵심이 소득의 격차에 의해 교육 기회의 격차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며,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함
- 세부시행과제는 저소득층농어촌 급식비 지원, 근로장학금 확대, 든든학자금 수요 확대 3개로 선정하였으며, 대상기간(2009~2013) 동안 변동사항은 없음
 - 세부사업 중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과 지역적 소외계층의 자녀 급식비 지원은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서 타당성이 있음.
 - 근로장학금 확대는 대학 등록금의 가계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근로를 통해 사회적 경험을 얻고 취업능력을 키우며, 근로장학금을 통해 학비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음.
 - 2009년도에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시작하여 근로장학금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를 저소득층 자녀 우선에서 소득 하위 70%로 한정하여 학점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변경하여 효과를 집중함
 - 든든학자금은 201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졸업 후 학자금 상환에서 일정소득 이상을 확보하는 취업 이후에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세부시행과제로 포함되어있었던 교육복지투자우

선지역지원사업은 평가대상에는 제외되었지만,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매우 중요성을 지니는 사업임.

-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어 교육부가 주관하다가 현재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관되었지만 각 교육청의 관점과 우선순위 책정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혼선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교육효과의 일관된 생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의 일정한 역할이 복원되어야 할 것임.

- 초·중·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 급식비 지원을 통해서 학비 부담 경감, 장학금제도를 통해서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그러나 빈곤의 대물림이나 계층의 고착화를 고려할 때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으며,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지 않고 연도에 따라 증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에 대한 세부사업에서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급식비 지원 학생수(저소득층농산어촌 급식비 지원), 근로장학생 학업지속률(근로장학생 확대), 그리고 예산 확보(든든장학금 확대) 등임.
 -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에 대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대다수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목표치의 설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약

〈표 11-1〉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10-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교육복지의 핵심이 소득격차에 의해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교육기회 보장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었음.
집행	저소득층 교육 지원사업은 빈곤의 대물림이나 계층의 고착화를 고려할 때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으며, 특히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연도에 따라 증감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음.
성과환류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에 대한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대다수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목표치의 설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약

1. 저소득층농산어촌 급식비 지원(10-가-2)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본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자녀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서민층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우 2011년까지 차상위계층 이하 전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과 2012년까지 도서벽지 및 읍면 지역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사업 계획으로 세웠고 이를 시행해 나갔음.
 - 2009년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겐 급식비 전액을, 농산어촌지역 학생에겐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였지만, 2010년부터 전액지원으로 바뀌었음.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이 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 및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생으로서 지원인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꾸준히 그 수를 증가하여 책정되고 있음.
 -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3,300원, 중등학교는 3,500원으로 산정
 - 그러나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협력관계 조성이 필요할 것임.
 ○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 투입액은 2009년 4,130억원에서 2013년 8,89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시·도 교육청이 시행주체로서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급식비를 통한 사업을 시행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 학생 수입. 이는 대상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일정정도 인정되며 차질 없이 성과지표가 달성됨.
 - 그러나 급식지원이 대상학생들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는 지, 급식비 단가는 타당한 지 등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저소득계층 아동들이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낙인감을 갖는 지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 사업에 환류되었는지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함.

<표 11-2> 저소득층농산어촌 급식비 지원(10-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저소득층의 경우 2011년까지 차상위계층 이하 전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과 2012년까지 도서벽지 및 읍면 지역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사업 계획으로 세웠고 이를 시행해 나갔음.
집행	시·도 교육청이 시행주체로서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교육지원청이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급식비를 통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짐.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 학생수가 되고 있음. 이는 대상자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일정정도 인정되며 차질 없이 성과지표가 달성됨.

2. 근로장학금 확대(10-가-3)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본 사업은 OECD 국가들 중 대학등록금 수준이 2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그들과 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다양한 근로경험 축적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이 사업은 전국 4년제 및 전문대 대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교내근로는 시급 6,500원, 교외 및 전공 산업체 근로는 시급 9,000원으로 책정하여 1인당 평균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것임.
 - 근로장소는 전공 산업체, 공공기관, 실험·실습시설, 도서관 등 교내외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이를 통해 학자금 부담 경감 및 취업능력 제고는 물론 사회봉사 활동 체험 기회 제공과 지역사회 봉사역할 제고까지 기대효과로 삼고 있음.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사업대상은 2009년과 2010년에는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를 우선적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학점을 70/100 이상으로 하고 동시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제한함.
 - 사업대상을 이렇게 선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대상자 수를 사전에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2009년에 4만여명, 2010년엔 2만5천명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 이 사업의 예산은 2009년 1,200억원에서 이후 700~800억원 사이로 확보되었으나 2013년엔 다시 1,431억으로 늘어남.
 - 예산 규모의 변화 폭이 큼에 따라 대상인원이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며 정책수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을 것으로 보임.

□ 추진체계 및 일정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사업시행 주체이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며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별 보조금을 교부하여 대학이 이 장학생의 신청 공고와 선정 등을 맡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2009~2011년까지는 근로장학금 지원액 확보금액을 설정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책무성이 있는 기관이 예산확보액을 성과지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함.
 - 2012년부터 근로장학생의 학업지속률을 성과지표로 새로이 도입하였음. 학업지속률은 다음 학기 등록율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휴학 동기가 학비조달 외에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라고 보기 어려움.

□ 성과지표 달성도는 2013년 학업지속율 88.7%에 달해 목표를 달성함.

〈표 11-3〉 근로장학금 확대(10-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그들과 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다양한 근로경험 축적을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집행	추진 목적을 위해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한차례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 그러나 근로장학금 확대하는 사업명에도 불구하고 근로장학금 액수 자체는 2010~2012년까지 상대적으로 적게 확보되어 사업명과 그 취지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드러났음.
성과환류	성과지표 달성도는 2013년 학업지속율 88.7%에 달해 사업성과가 인정됨.

3. 든든학자금 수요 확대(10-가-4)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본 사업은 재학기간 중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임.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이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이상의 자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하고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상환하도록 함. 졸업과 함께 상황이 시작되던 종래의 제도를 2010년부터 변경한 것임.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이 사업의 대상은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 되며 대출규모는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200만원까지(이후 300만원으로 증액)임.
 - 또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대출금리는 매학기 결정, 졸업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이 개시됨.
 - 이 사업은 취지대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행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지만, 사업수행 방식이 등록금 후불제처럼 근본적인 접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록금 수준에 대한 합리적 접근 등의 노력이 더욱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음.

□ 추진체계 및 일정

-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시행주체로서, 정부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총괄하고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학생들에게 대출과 상환을 행하며 이자를 지원하게 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장학금 대출 지원 인원수로 삼고 있으며 든든장학금 확

대의 취지에 따라 더 많은 장학금 지원자 수를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함.

□ 성과지표 달성도

- 차질없이 성과지표가 달성됨. 2013년의 경우 장학금 대출 지원 인원수가 29만 5천명으로서 목표치의 113.5%에 달하였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11-4〉 든든학자금 수요 확대(10-가-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재학기간 중 학비 부담을 없애므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임.
집행	추진 목적을 위해 연차별 단계별 추진 사업과 수단이 적절히 구성되고 달성되었음.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등록금 부담의 근본적 해결책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음.
성과환류	차질없이 성과지표가 달성됨. 2013년의 경우 장학금 대출 지원 인원수가 29만 5천명으로서 목표치의 113.5%에 달하였음.

제2절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10-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0-나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10-나-1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10-나-2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10-나-3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강화
		10-나-4	WEE 프로젝트 구축 운영

- 교육복지의 주요 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함.
- 세부시행과제는 학력향상형 창의학교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WEE 프로젝트 구축 운영 모두 4개 과제임. 대상기간(2009~2013) 동안 세부시행과제의 변동 사항은 없음
 -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재정지원 및 운영이란 과제명에서 변경되었으나 '창의 경영'이란 용어가 적절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세부시행과제의 내용은 기초학력미달학교에 대해 지원하고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2013년에 학력미달학교가 증가하는 문제점도 드러냄.
 -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은 2010년에 3개의 세부시행과제로 나누어 오던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였으나 타당한 통합으로 판단됨.
- 본 중점추진과제는 기초학력미달자,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이탈청소년 및 위기 학생 등 다양한 사업대상을 상대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 기초학력미달자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교에 대해 중점적인 지원과 관리를 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의의가 있음. 그러나 학력 격차가 발생하는 대상은 이들 외에 빈곤층, 학교부적응층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러한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각각의 사업대상에 대해 대응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대상 모집단이 일

마인지, 그리고 그 중 어느 정도까지 접근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량 자체가 타당한지 알 수 없음.

- 예컨대, 전국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3만명이 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사업의 대상은 5,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도 규모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해명되지 않고 있음.
- 성과지표는 참여학생의 만족도(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다문화가정 참여 학생 수(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교육서비스 수혜자 수(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상담서비스 지원받은 학생 수(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등이었음.
 - 참여학생 수나 수혜자 수는 사업예산에 따른 결과로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음
 -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강화의 경우는 성과지표를 수혜학생 수, 교육만족도, 중도탈락율 등이 수시로 변경되며 일관성이 미흡
- 사업량 자체를 성과지표로 삼은 경우는 달성도가 문제가 없었으나 질적 변화를 측정할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치 못한 경우도 있었음. 대표적인 예가 탈북학생의 중도탈락율인 바, 2013년 현재 목표치가 달성되지 못하였음.
- 본 중점추진과제는 다양한 접근과 집행상의 원활성을 보여주었음. 반면에 학력격차의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나 사업성과의 질적 평가 부분에 개선이 요망됨.

〈표 11-5〉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10-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 해소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교육복지의 주요 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가 채택된 것은 매우 큰 의의와 적절성을 지니는 것임.
집행	사업대상에 대해 대응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대상 모집단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중 어느 정도까지 접근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량 자체가 타당한지 알 수 없음.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참여학생 수나 수혜자 수로 이는 사업예산에 따른 결과로 등장하는 수치이므로 부적절함.

1.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10-나-1)

가. 기획

□ 과제명 변경

- 본 과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재정지원 및 운영’이란 과제명으로 출발하였으나 2011년부터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이란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 이는 2009년 학력기준 미달 학생의 비중이 일정기준을 넘는 학교가 1,440개 학교였으나 2011년엔 413개교로 줄어들어 따라 학력향상 중점학교라는 명칭 대신 학습부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라는 명칭으로 그 의미를 변경한데에서 비롯됨.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2009년에는 학습지도 역량 강화 및 학습부진 학생 최소화로 단순하였으나, 2010년에는 학습부진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관리라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강조하였고 2011년부터 과제 명칭이 바뀐 다음에는 학습부진에 대한 예방-진단-관리라는 구조적 접근을 행하는 것으로 진화함으로써 매우 적절한 목적의 변경이라 평가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교의 기준을 초등학교는 미달비율 5% 이상, 중·고등학교는 20%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 2010년부터 전년도에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모델을 구현하길 원하는 학교 등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계획한 것은 높이 평가됨.
- 사업수단에 있어서 기초학력의 진단-지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학습활동 관리 프로그램’을 일반학교에 확대 도입하며,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과제의 목적에 맞게 사업수단이 개발되고 강구되었음.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사업 성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줄어드는 특징을 보임.
 - 2009년 1,440개 학교가 기초학력 미달 학교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2010년 671개교, 2011년 413개교, 2012년 116개교, 464개교임.
 - 그렇지만 2010년은 2009년 대상학교 모두를 계속 지원대상으로, 2011년은 희망학교를 대상에 포함시켰고, 2012년엔 성과가 좋은 학교를 모형구축 학교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가지원 학교를 선정함으로써 실제 지원 대상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대상학교 이상으로 나타남.
 - 단 2013년도엔 학력미달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 학력 미달 학교가 2011년 수준으로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보이지 않음.

□ 추진체계 및 일정

- 본 과제는 교육과정평가원 등이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사업추진단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체계를 두었음.

다. 성과환류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농산어촌, 교육복지투자지역 참여학생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5점척도 중 4점 이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성과지표 달성도
 - 목표치가 일관되게 책정되지 못하고 계획수립 시점마다 변하고 있어 성과목표

가 사후실적으로 고려하여 임의로 축소변경된 흔적이 보인. 다만 2013년 달성치가 75%에 이룸으로써 최종 연도에는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6〉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10-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 역시 잘 구성되어있음.
집행	과제의 시행수단과 시행체계 역시 적절히 구성되어있음.
성과환류	과제의 사업량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축소되었고, 성과목표치 역시 축소조정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과제의 추진 의지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2.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10-나-2)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본 사업은 2009년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그리고 다문화교육 기반구축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등 3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나, 2010년부터 이들 내용을 하나로 취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으로 일원화하여 추진되었음.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능력 향상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 다문화 교육기반 구축 및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사업 대상은 다문화학생, 학부모, 예비교사 및 교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2009년 다문화가정 내의 유아를 사업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에 제외됨
-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선발하여 외국어 교육 강사로 활용하며,

교대나 사대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

-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언어, 인지, 정서 수준을 향상시키고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제고시키며,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자존감 제고, 그리고 예비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사업량은 멘토링을 맺는 학생 수가 대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성과목표와도 거의 동일함.
- 멘토링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2009년 3,000명에서 2013년 5,000명으로 사업량이 정해졌으며, 강좌수는 2009년 10개에서 출발하여 2011년 이후엔 30개로 고정되어 진행되었음.
- 사업비는 2009년 65억원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음.
- 다만 2013년도엔 2012년에 비해 삭감된 예산이 배정되어 180억에서 155.4억원으로 축소되었으나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

□ 추진체계 및 일정

- 본 과제는 교육청과 중앙다문화교육센터, 그리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다. 성과환류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사업량 자체가 지표가 되고 있어 타당성이 약함. 이는 사업량의 목표치는 될 수 있어도 성과지표로는 부적절함.
- 2013년 성과지표 중 멘토링학생 수는 5,000명 목표에 4,837명이 참여하여

96.7%에 해당하였으며, 다만 2013년에 새로이 도입된 연수교사 수는 20,000명을 훨씬 뛰어넘어 31,000명에 달하는 실적을 보임.

〈표 11-7〉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10-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 역시 잘 구성되어 있음.
집행	과제의 대상은 언어와 지각, 정서능력에 형성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유아를 첫째를 제외하고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향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사업량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사회적 수요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연차별로 달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음.
성과환류	과제의 성과로는 대상 학생들의 언어, 학습능력의 향상도를 지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였을 것임. 현재와 같은 사업량 자체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 함.

3.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강화(10-나-3)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본 사업은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교와 사회의 적응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탈북 청소년은 2009년 1,478명에서 2012년 1,992명으로 증가하였고, 학교 중도탈락율도 2009년 6.1%로 학교 및 사회 적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사업 대상은 탈북청소년 중 정착교육을 통해 정착지 학교로 간 청소년들과 이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모두 포함함.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초기적응 교육지원 강화, 학교밖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확대, 종합적인 교육지원 및 연계체제 정착 등임.
 - 2012년부터는 학교밖 탈북청소년에 대한 사업의 비중이 약화되며 초기교

육 내실화, 체계적·통합적 맞춤형 교육, 성장·자립지원 강화,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 등으로 사업이 구성됨.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사업량은 탈북 청소년 및 탈북 학생 수임. 사업 대상이 2012년부터 탈북 학생으로 변경되어 탈북 청소년의 총수가 명시되지 않음.
- 사업비는 2009년 3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2년 48억까지 확보되었으나 2013년엔 29.5억원으로 급감하였음.
 - 사업비가 급감한 것은 탈북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임.

□ 추진체계 및 일정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탈북학생 재학교가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고, 한국교육개발원 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 탈북청소년들은 국내에 입국하면 4주~6개월 동안 입국 조사를 받은 뒤, 초등학생의 경우는 삼척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하나원을 거쳐 하나둘학교로 배정되어 교육을 받은 뒤, 정착지의 초·중·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한겨레중·고교 또는 여명학교, 민간교육시설 등으로 가게 됨.
 - 결국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의 교육 경로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기도 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2010년까지는 탈북청소년으로서 교육서비스 수혜자를 설정하였으나 2011년에는 교육만족도와 중도탈락율로 수정하였고, 2012년

부터는 중도탈락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음.

- 성과지표를 사업량이 아닌 중도탈락율로 변경한 것은 적절함.

□ 성과지표 달성도

- 2011년부터 학업중도탈락율의 감소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는데, 2012년 목표치는 4.2%, 실적치는 3.5%로서 목표치를 충족하였고, 2013년엔 각기 3.2%, 3.3%가 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추세적으로 학업중도탈락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2009년 6%대의 중도탈락율이 있었음을 볼 때 2013년의 3%대의 탈락율 감소는 이 사업의 의의라고 할 것임.

〈표 11-8〉 북한이탈학생 교육지원 강화(10-나-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 역시 잘 구성되어있음.
집행	과제의 대상을 탈북청소년에서 탈북학생으로 축소하고, 사업명에서도 탈북청소년을 탈북학생으로 바꾼 것은 학교밖 탈북청소년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성과환류	과제의 성과로 사업량 자체를 잡은 초기의 부적절함을 2010년부터는 개선하였고,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중도탈락율을 감소시켜 나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인정됨.

4. WEE 프로젝트 구축 운영(10-나-4)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 2월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단위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교부적응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과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적자원 유실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임.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2008년부터 시작된 WEE프로젝트를 내실화하는 것으로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를 확대하여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사업량은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의 구축 건수가 됨.
 - WEE 클래스의 경우는 매년 1,000여개소를 확충하고, WEE 센터는 30-60여개소(2012년엔 0개소)를, 그리고 WEE 스쿨은 2-3개소(2012년은 9개소)를 각기 확충하는 것이었음.
- 사업비는 2009년 522억원에서 시작하여 매년 다른 예산액이 배정되었음. 2012년의 경우가 878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보임.
 - 사업비는 WEE 클래스에 25백만원, WEE 센터에 3억, WEE 스쿨에 3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음.

□ 추진체계 및 일정

- 본 과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사업시행 주체임. 교육부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은 스쿨 운영계획과 구축을, 지역교육청은 센터의 운영계획과 구축을, 단위학교는 클래스의 운영계획과 구축을 각기 담당하고 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전문상담서비스를 받은 학생수와 구축하려는 클래스, 센터, 스쿨의 숫자로 구성

- 그러나 실제 이러한 구축 건수와 학생 수는 투입예산에 따라 이행되는 양적 지표로서 그리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음. 실제로 학생들의 중도탈락율 감소나 학교폭력 발생건 수, 자살율, 상담사의 만족도 등이 성과지표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성과지표 달성도

- 성과지표는 2013년 전문상담서비스 수혜학생 수 40만명, WEE 클래스 256개소, WEE 센터 43개소, WEE 스쿨 3개소로 대부분 실적으로 달성된 것이라 판단됨.

〈표 11-9〉 WEE 프로젝트 구축 운영(10-나-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추진 목적과 내용은 적절히 구성되었음.
집행	과제의 대상은 학업, 교우관계, 심리상태 등에서 위기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로 되어있지만, 실제 스쿨과 센터, 클래스 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사업하고 어떤 전문가가 투입되어 운영의 성과로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유효한 판단 자료가 부재함.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전문상담서비스를 받은 학생 수와 구축하려는 클래스, 센터, 스쿨의 숫자임. 실제 이러한 구축 건수와 학생 수는 투입예산에 따라 이행되는 양적 지표로서 그리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음.

제3절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10-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0-다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	10-다-1	영어 교육격차 완화 ①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② 영어 교육격차 해소프로그램 지원 사업 ③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사업 운영
		10-다-3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원사업

가. 기획

-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경우 경제적, 문화적, 복지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소외된 지역으로서 이곳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의미가 큼.
- 세부시행과제는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초청사업과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2개 과제임.
 -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사업은 2009년부터 이 사업과 함께 '방학중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사업운영' 등 모두 3개의 사업이 운영되어오다가 하나의 사업으로 되었음. 이는 사업의 유사성을 놓고 볼 때 바람직한 면이 있음.
 - 농촌전원학교 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문화, 돌봄을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음.
- 세부시행과제 모두 사업량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추진에 소극적임.
 - 정부초청 해외자원봉사 장학지원사업의 경우는 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대상인원의 변동이 있었으며, 2012년과 2013년에 예산과 대상이 축소됨.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의 경우도 중간에 돌봄학교와의 통합운영이 있었지만 대상학교가 줄어들었음.
- 정부초청 해외자원봉사 장학사업은 참여학생들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에 비해 성과지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농산어촌 전원 학교 육성의 경우, 성과지표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였음. 대상학교 개소수에서 학생만족도, 학력미달 학생의 비율 등이 일관성있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음.

- 정부초청 해외영어자원봉사 장학지원의 경우 성과목표치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정확한 달성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전원학교 육성의 경우 성과목표치의 일관성 결여에도 불구하고 전원학교 개소수를 충족시킨 측면이 있으나 성과지표의 단순성을 생각하면 이것은 성과의 달성이라기보다는 사업실적이 달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에 그침.

(표 11-10) 농산어촌 교육복지 강화(10-다)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중점추진과제는 사업과제로서의 중요성이 있고 전원학교의 육성은 매우 의욕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집행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사업량의 축소가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상의 소극성이 나타남.
성과환류	과제의 성과측면에서 보면 지표의 설정이 적절한 지, 그리고 성과의 충족이 있었는지에 대해 모호한 면이 있음.

1.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10-다-1)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2009년부터 영어교육 격차 해소와 친한 인재 육성으로 일관하였으나 2013년도엔 여기에 국내 장학생의 영어실력과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추가됨.
 - 2013년 세부시행과제 목적의 추가의 적절성
 - 농산어촌의 초등학생들이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세부시행

과제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함.

- 사업 대상에 국내 장학생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이들에게도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이 함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의 추가는 타당성이 있음.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

- 사업 대상은 농산어촌, 교육복지투자지역의 초등학교생, 해외 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 국내 장학생으로 구성되며, 특혜 해외 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에겐 4주 동안의 사전 연수를 실시하고 국내 대학생 장학생과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방과후 수업을 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짜져 있음.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의 측면에서 일관성이 결여됨

- 2009년 543명을 대상으로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최종연도인 2013년엔 491명, 191억원으로 그 대상과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 추진체계 및 일정

-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과 시도 교육청, 그리고 재외공관 등이 결합되어 유기적인 체계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농산어촌, 교육복지투자지역 참여학생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5점척도 중 4점 이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성과지표 달성도

- 목표치가 일관되게 책정되지 못하고 계획수립 시점마다 변하고 있어 성과목표가 사후실적으로 고려하여 임의로 축소변경된 흔적이 보임. 다만 2013년 달성

치가 75%에 이룸으로써 최종 연도에는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라. 총평 및 제언

〈표 11-11〉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10-다-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 역시 잘 구성되어있음.
집행	과제의 시행수단과 시행체계 역시 적절히 구성되어있음.
성과환류	과제의 사업량이 구체적인 사유없이 축소되었고, 성과목표치 역시 축소조정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과제의 추진 의지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2.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사업(10-다-3)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농산어촌 학교·학생에 대해 학기중방학중주말 등에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교육복지 지원 강화 및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2011년부터는 별도의 추진과제였던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함.
 - 최근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조손가정·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정주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주 5일 수업제 시행으로 농어촌의 학생 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무엇보다 도·농 간 학력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매우 필요한 사업임.
 - 돌봄학교 육성 사업을 전원학교 사업에 통합 운영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며,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사례가 될 것임.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 사업은 돌봄학교와의 통합이전인 2009년과 2010년엔 e-러닝 교실의 구축, 시설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연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교수학습 시스템 구축 등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돌봄교실 운영과 교육·문화·돌봄 프로그램 비용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2012년 현재 1,572개교에 달하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도 2011년 현재 14,391명임을 감안할 때 사업의 목표량이 전체 학교 및 취약학생 수의 몇 %에 해당하고 이것 자체가 타당한 정책목표량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어있음.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이 사업의 사업량은 2011년까지는 전원학교 110개소, 돌봄학교는 370여개소이었으나 2012년부터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2012년 297개소, 2013년 250개소가 되었음.
 - 2012년부터 통합운영을 통해 대상학교가 줄어든 것은 사업의 목적 상 바람직스럽지 않음.
- 이 사업의 예산 또한 초창기인 2009년에는 학교의 여건 개선 등으로 출발하여 790억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엔 134억으로 축소되었음.
 - 2012년부터 예산의 전면 축소가 기존 사업의 목표가 완료되어 돌봄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줄이는 것이 타당했는지 정확한 판단 근거가 부재함. 그러나 도·농 간 격차의 상존을 생각할 때 이러한 예산의 대폭 축소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 추진체계 및 일정

- 이 사업은 교육부가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면 교육청이 사업비 교부 및 조정, 행정지원을 시도 및 지역교육지원청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단위학교에서 행하게 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
 - 전원학교 대상 학교 개소 수 자체를 성과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원 학교의 학생 만족도와 학력미달학생 비율의 감소수준을 성과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성과목표를 연도별로 설정하였으며, 2013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보면 93개교의 지원을 100% 충족한 것을 나타남.

〈표 11-12〉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사업(10-다-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추진 목적은 농어촌의 학생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절히 설정되었음.
집행	과제의 시행수단과 시행체계 역시 적절히 구성되어있음. 그러나 과제의 사업량이 2012년부터 급감하고 예산 또한 축소배정되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성과환류	성과지표 역시 일관성 없이 책정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되었음.

제4절 유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10-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0-라	유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	10-라-1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10-라-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
		10-라-3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10-라-4	장애학생 무교육 및 무상교육 내실화

- 유아교육은 인적자원의 육성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장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세부시행과제는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그리고 장애학생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내실화 4개 과제임.
 -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의 완화 추세 속에서 유아교육비에 대한 전액국가 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그간 3,4세와 5세아, 두자녀 이상 등의 경우로 분리되어 추진 속도가 달랐던 것들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돌봄학교가 대대적으로 확충된 것은 맞벌이 가구나 저소득가구의 방과후 유아보육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임.
 - 학교 기능을 방과후로 확대하는 데에서 그간 지역사회 안에서 추진하던 방과후돌봄에 일정한 혼선이 올 수 있었고, 지역사회 내에서 원활히 해결하고 협력체계를 갖추는 데에 주목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은 법률상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과제의 선정이 필요한 사업임.
- 유아와 초등학교, 장애아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왔음.
 -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 취학 전체 아동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함.

○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교실의 경우에 욕구 파악과 인프라 등에 대한 고려에 따라 사업량을 결정해야 하나, 이러한 접근이 부재함으로써 현 사업량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음.

□ 유아 학비 정부지원의 경우 성과지표는 유아 수가 되었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의 경우는 학부모 만족감 충족도, 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수, 장애학생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내실화의 경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증설 수 등이 성과지표임.

○ 성과지표 상의 달성도는 대부분 충실하게 이루어졌음. 그러나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비 부담 완화효과, 방과후 돌봄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효과 및 학생들의 보호효과, 장애아의 교육 효과 등에 대한 변화는 접근할 수 없었음은 향후 개선해야할 사항임.

〈표 11-13〉 유아 및 특수교육 돌봄 강화(10-라)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업의 취지와 이행과정은 대다수 잘 이행되었음.
집행	사업의 질적 변화를 가져온 성과 부분과 추진과정 상에 여타 영역과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 등은 미진한 여지가 있음.
성과관리	성과지표 상의 달성도는 대부분 충실하게 이루어졌음. 그러나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비 부담 완화효과, 방과후 돌봄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효과 및 학생들의 보호효과, 장애아의 교육 효과 등에 대한 변화는 접근할 수 없었음은 향후 개선해야할 사항임.

1.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10-라-1)

가. 기획

□ 본 사업은 취학전 연령기의 유아에게 유치원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2009~2012년까지는 만 5세아의 학비 전액 지원과 만 3~4세의 학비지원대상 확대로 사업이 나뉘어 진행되었으나 '5세 누리과정'의 도입과 영유아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지원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두 사업을 통합.

○ 사업의 통합운영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만 5세아와 만 3~4세아를 정책 기획에서 동일한 대상으로 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음.

- 만3,4세아의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차등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음. 즉 2009년과 2010년엔 소득수준에 따라 30-100% 사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소득하위 70%에게 전액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점차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2013년부터는 전체에게 100% 지원으로 무상유아교육형태가 되었음.

- 만5세아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하위 70%의 경우엔 전액 지원했으나 2012년부터 모든 대상아에게 전액지원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이 사업의 사업량은 만 3~5세의 아동 중 학비지원을 받는 아동수가 되었음.

- 사업대상 유아는 지원대상 유아가 전격 확대되는 2012년 만 3, 4세아와 만 5세아가 각기 654천명, 452천명으로 되었고, 2013년엔 만 3~5세아 1,214천명이 대상자가 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가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수준이 됨.

○ 이 사업의 예산 또한 2012년 만 3,4아를 위해서는 1조 5,879억원, 만5세아를 위해서는 8,910억원이 책정되었으나 모든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는 2013년엔 3조 1,154억원이 조달되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였음.

- 또한 2013년의 경우는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만이 아니라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국공립의 경우는 월 6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월 2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단가를 높였음.

□ 추진체계 및 일정

- 교육부가 지원기준을 통보하고 지방교부금을 교부하면 시도 교육청이 유아학비 지원 예산을 확정하며, 지역교육지원청이 유아학비를 직접 지원하고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제공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지원받는 유아수가 되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에 부합함.

□ 성과지표 달성도

- 성과지표 달성도에 있어서는 대상지원자의 확대가 계획대로 이루어짐으로써 높은 달성도를 보여왔음.
 - 다만, 정부지원 단가의 합리적 산출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유치원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제고라는 목표는 새로이 접근해야하는 과제로 남게 됨.

〈표 11-14〉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10-라-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추진 목적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있고 이를 위한 시행수단과 시행체계 역시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
집행	교육부가 지원기준을 통보하고 지방교부금을 교부하면 시도 교육청이 유아학비 지원 예산을 확정하며, 지역교육지원청이 유아학비를 직접 지원하고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제공함.
성과환류	2013년에 비로서 전 유아계층에게 전액지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임.

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10-라-2)

가. 기획

-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을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아가 방과후 과정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 과정에서 중고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효과도 노림.
- 세부시행과제의 통합 시행은 적절
 - 2012년까지 종일반 유치원의 단계적 확대와 종일제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이루어져 진행되었던 것을 2013년부터 방과후 유치원 교육 내실화로 통합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고려할 때 적절
 - 2012년까지는 종일반의 연차적 확대, 이를 위한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비용을 지원한 인력 지원 등의 세부 추진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이 사업의 사업대상은 공사립 유치원으로서 예산은 지원대상 유아가 전격 확대되는 2012년 만 3,4세아와 만5세아가 각각 654천명, 452천명으로 되었고, 2013년엔 만3-5세아 1,214천명이 대상자가 됨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가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수준이 됨.
- 이 사업의 예산 또한 2012년까지는 종일반 유치원 확대와 종일반 내실화로 구분되어 책정되었으며, 2009년 총 390억원에서 2012년에는 591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3년 통합과제가 되면서 오히려 405억원으로 삭감됨.

- 교육부가 지원기준을 통보하고 지방교부금을 교부하면 시도 교육청이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역교육지원청이 이를 직접 지원하고 유치원은 사업을 수행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종일반 운영을 통한 학부모 만족감 증진과 종일제에 투입되는 보조인력 수로 설정되었음.
 - 이는 돌봄제 도입을 확산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임.
- 성과지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달성은 충실히 이루어졌음.
 - 2013년 현재 종일돌봄제의 실시율이 99%를 충족하고 있음.

〈표 11-15〉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10-라-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추진 목적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확대와 그 내실을 기하는 것임
집행	99%의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음. 그러나 운영의 내실화에선 시설환경 개선과 자원봉사자 인력의 비용 지원이 주된 것이었고 이 부분의 성과는 측정하기 어려움.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종일반 운영을 통한 학부모 만족감 증진과 종일제에 투입되는 보조인력 수로 설정되었음.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로 달성은 충실히 이루어졌음.

3.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10-라-3)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본 사업은 학교에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의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가 생업에 종사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함은 물론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학력 향상을 꾀하는 사업임.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돌봄 교실을 확충하는 것을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종일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일 자리 창출 효과까지 도모하고 있음.

나. 집행

- 사업량과 사업예산
 -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교실수는 2009년 4,622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7,400개소까지 확대
 -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 수도 2009년 77천명에서 2012년 159천명으로 증가
 - 지역사회 내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사업처럼 아동의 방과후 보육이나 돌봄을 행하는 기관들과 어떻게 연계,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며, 또한 돌봄교실의 돌봄종사자의 고용안정성과 전문성 등이 어떤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사업 예산은 2009년 874억원에서 2013년 2,918억원까지 매년 크게 증가.

- 추진체계 및 일정
 - 이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인데, 교과부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공모하고, 교육청이 선정·지원하는 형태를 갖춘. 이때 지자체가 선정 및 예산지원의 단계에서 함께 할 수 있음.
 - 그러나 추진체계를 구성할 때 지자체와 함께 아동의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갖추어 지원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의 사전 조율을 거치는 것이 사업의 중복과 사각을 없애고 지역사회 내에 사업수행이 원활히 되는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추진체계 안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초등돌봄교실 수로 하였는데, 사업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함.
- 초등돌봄교실은 2012년 현재 전체 초등학교의 96%인 5,652개소에서 설치, 7,086개소를 운영하는 등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러한 양적 팽창이 사업의 질과 지역사회 내의 돌봄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임.

〈표 11-16〉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10-라-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추진 목적은 방과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의 확대와 예산의 투여가 있었으나 사업의 질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 내의 연계체계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집행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약의 협조체계 구성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대목임.
성과환류	성과지표인 초등돌봄교실은 2012년 현재 전체 초등학교의 96%인 5,652개소에서 설치, 7,086개소를 운영하는 등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이 사업의 질과 지역사회 내의 돌봄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임.

4. 장애학생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내실화(10-라-4)

가. 기획

- 본 사업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장애아의 교육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장애아에게도 무상교육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은 높다고 볼 수 있음.
 - 2012년까지 두 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는데, 먼저 장애영아 무상교

육 확대 사업에서는 사업대상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이며,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하여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사업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장애유아에게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음.

-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은 2010년 만 5세 이상,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나. 집행

- 연차별로 장애아 의무무상교육의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음.
 - 장애영아의 의무교육을 위해 특수교실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이 되었으며, 2010년 53학급에서 2012년 92학급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특수학교의 5개 신설이 2013년에 이루어졌음.
 - 2010~2012년까지 만5세, 만4세, 만3세에 대한 의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 예산 투입은 없었음. 행정적 조치와 지원으로 의무교육 확대를 실현하는 것임.
- 추진체계 및 일정
 - 교육부가 장애영아 및 장애유아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시도 교육청이 장애영아의 경우는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하여 장애영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거나 장애유아의 경우는 의무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등 조치를 취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특수교육 의무화의 차질없는 이행이므로 특수교육 수요

에 맞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증설이 그 지표가 되는 것은 타당하며 차질 없이 성과지표가 달성됨.

- 2013년의 경우 특수학교의 신설이 성과지표로 설정되어있는데, 이는 장애인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재고의 여지가 있음.

〈표 11-17〉 장애학생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내실화(10-라-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추진 목적을 위해 연차별 단계별 추진 사업과 수단이 잘 구성되었음.
집행	이 사업은 연차별로 장애아 의무무상교육의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임. 예산 투입은 없으며 행정적 조치와 지원으로 의무교육 확대를 실현하는 것임.
성과환류	성과지표에 있어 특수학교의 추가신설을 2013년에 설정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임.



제12장 근로자복지 분야

제1절 공공근로복지 증진

제2절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

제3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

제4절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

제5절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

제6절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

12

근로자복지 분야 <<

제1절 공공근로복지 증진(11-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1-가	공공근로복지 증진	11-가-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11-가-2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운영 고도화
			①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개설·운영 ② 5인 미만 퇴직연금 활용 및 접점 시스템 고도화
11-가-3	체불근로자 임금채권 보장		

- 복지격차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감소생계비, 대부금액 및 대부대상 확대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개선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결국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수혜가 열악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공공근로복지부문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복지를 위해 근로자복지포털 사이트를 운영 지원함. 그 결과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보장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공근로복지증진의 성과지표는 저소득비정규직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액,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액, 임금체불근로자 체당금 지원금액,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액, 근로복지포털수로 설정되어 있고, 연도별 목표달성율은 100%에 가까운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연도별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표 12-1> 공공근로복지 증진(11-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복지격차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감소생계비, 대부금액 및 대부대상 확대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개선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집행	저소득근로자들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요자중심의 근로자복지를 위해 근로자복지포털 사이트를 운영 지원함. 그 결과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보장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대부금액, 지원금액 등으로 설정되어 있고, 목표달성율은 100%에 가까운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연도별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11-가-1)

가. 기획

-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지원' 과제는 사업 목표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 융자사업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복지의 지속 확산으로 일을 통한 취약계층의 복지 증대로 설정
- 제3차 근로자복지증진계획(2009년~2013년)은 고금리 사채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전한 금융활동 지원을 위하여 융자 대상 및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함.

나. 집행

-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2010년 수시 선발제 도입, 2011년 융자종류 확대, 의료비 범위 확대, 선발방식 변경, 2013년 융자조건 변경, 융자한도액 증액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한 것은 우수하다고 평가됨.
-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명칭이 생계비 대부에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으로

로 변경되기도 하고, 성과지표도 수시로 변동되어 사업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다. 성과환류

- 2009년도를 제외하고 96%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특히 저소득근로자 수혜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2012년 이후에는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음.
- 세부시행과제의 개선을 위해 사업타당성, 운영의 적정성, 고객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연구용역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 구체적인 개선실적으로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용자대상 기준의 표준화 및 고용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의 실적이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12-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11-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제3차 근로자복지증진계획(2009년~2013년)은 고금리 사재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전한 금융활동 지원을 위하여 용자 대상 및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함.
집행	2011년 용자종류에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설하였고 의료비의 범위에 산후조리원 이용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비를 포함시켰고, 2013년에는 용자조건을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로 변경하고 자녀학자금 대상을 확대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성과가 높다고 판단됨.
성과환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성과지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합리적 근거와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운영고도화(11-가-2)

가. 기획

- 영세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이용 중심의 복지정보 전달체계 개선과 선진기

업복지도입 지원 확산 및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수혜 극대화를 목적으로 실시됨

- 선진기업복지확산운영시스템(EAP) 개발 확충과 5인 미만 퇴직연금활용 및 접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는데, 2010년부터는 이 두 가지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개설 운영으로 변경되어 추진되었고, 그 내용도 퇴직연금 대상자 확대, 복지사업 대상자 확대 등으로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운영고도화라기 근로자복지사업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획과 내용이 명확하게 연계되지 않음.
- 장기발전방향과 연차별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는 2009년도에 개설되었는데 2010년 이후 사업명이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개설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업의 목적을 타당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함.

나. 집행

- 근로자복지 포털사이트 운영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선진기업복지 확산운영시스템 개발 확충과 5인 미만 퇴직연금활용 및 접점시스템 고도화는 2009년도 사업계획에만 반영되어 있고, 2010년부터는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개설 운영으로 변경되었는데, 선진기업복지 확산운영시스템 개발 확충과 5인 미만 퇴직연금활용 및 접점시스템 고도화의 내용이 2010년도 근로자복지포털사이트 개설 운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실적은 2013년까지 제시하고 있음.
- 세부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져 집행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서 연차별 추진계획은 2009년 서비스 개시된 포털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010년 이후 EAP 서비스 확대 등 선진기업복지제도 확산 운영시스템 개발 확충 등 고도화 추진, 2011년 이후에는 5인 미만 퇴직연금 활용 및 접점시스템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연도별 계획에

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다. 성과·환류

- 2009년도에 근로복지포털 시스템을 오픈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70 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 개선과 모바일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용자수가 2009년에 약 108만명에서 2013년에는 약 177만명으로 164% 증가
- 포털이용자 수를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개선이 필요함.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보 및 해당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등 개선 노력이 요구됨.

〈표 12-3〉 근로복지포털사이트 운영고도화(11-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영세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이용 중심의 복지정보 전달체계 개선과 선진기업복지도입 지원 확산 및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수혜 극대화를 목적으로 실시됨
집행	세부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연도별 사업 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져 집행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
성과환류	포털이용자 수만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구성한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보 및 사업이용자가 해당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등 개선 노력이 요구됨.

3. 체불근로자 임금채권보장(11-가-3)

가. 기획

-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나. 집행

- 중기사업계획 수립 후 각 단계별로 진행일정을 마련하였고 기간별로 세부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 추진은 적절하였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해당금지원액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는 100% 이상 달성하였고 2011년부터 88.4%, 91.8%, 83.9%로 달성률이 낮아지고 있음.
- 이는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2009년과 2010년은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도산사업장이 증가된 결과이고, 2011년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해당금 지급 감소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라 해당금지원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과지표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임금채불근로자에게 지급된 해당금 지원액으로 설정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 변제금에 대한 평가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2-4〉 체불근로자 임금채권보장(11-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임금인상 등을 감안하여 해당금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 지적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2014년부터 해당금 상한액을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음
집행	제도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전체 해당금 대비 지원금의 비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과환류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과 산출근거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11-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1-나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	11-나-1	우리사주제 확산 지원 ① 우리사주제 확산 지원 ② 우리사주 장기보유 유도
		11-나-2	기업복지 활성화
		11-나-3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내실화
		11-나-4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① 개인별 복수제도,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등 제도유형 다양화 ②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사업 컨설팅과 사업장에 맞는 복지제도 도입 지원을 통하여 선진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튼튼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적으로 추진됨.

□ 성과지표로 우리사주 취득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기금액,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률,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사업장수를 설정하였고, 목표치는 사회보장 중장기 발전방향의 계획에 따라 관리되었음.

〈표 12-5〉 선진 기업복지제도 확산(11-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사업 컨설팅과 사업장에 맞는 복지제도 도입지원을 통하여 선진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튼튼한 중산층으로 육성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적으로 추진됨.
집행	
성과·환류	성과지표로 우리사주 취득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기금액,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률,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사업장수를 설정하였고, 성과달성률은 우리사주 취득금액과 선택적 근로자복지 제도 도입율을 제외하고는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상태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1. 우리사주제 확산 지원(11-나-1)

가. 기획

□ 2009년도에는 신우리사주제 활성화와 우리사주 장기보유 유도라는 시행과제를 시행하였고, 2010~2011년까지는 우리사주제 확산지원이라는 과제로 추진됨.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은 타당하고 합리적임.

나. 집행

□ 우리사주 도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수급관계 근로자까지 확대, 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부여한도 삭제, 협력형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연장 등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세제지원도 추진하여 우리사주 도입확대를 실시함.

○ 다만, 2009년도에 세부시행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우리사주 장기보유 유도」는 신우리사주제 활성화의 추진내용과 동일하여 중복된 사업으로 판단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로 우리사주 취득금액을 설정하고 있고, 2011년도까지는 거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목표달성률이 낮아지고 있음.

○ 2012년, 2013년에는 주식시장이 위축되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실적이 저조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연도별 사업계획의 세부시행과제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함

〈표 12-6〉 우리사주제 확산 지원(11-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2009년도에는 신우리사주제 활성화, 우리사주 장기보유 유도로 추진되었던 과제가 2010년부터는 우리사주제 확산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2012년부터는 연도별 사업계획에서 제외됨.
집행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과 담당부처의 연도별 사업계획과 유기적인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함.
성과환류	성과지표 목표치도 설정되어 있고, 달성율도 관리하고 있음.

2. 기업복지 활성화(11-나-2)

가. 기획

□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라는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2년부터 13년까지는 기업복지 활성화라는 사업으로 추진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률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복지제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근로자 복지제도간 연계성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종합적인 근로자 복지제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보장 중기발전방향)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률을 확대하여 종합적 복지제공 기능을 활성화

○ 그러나 사회보장 중기발전방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지원과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로 구분되어 있는 세부시행과제가 연도별 계획에서는 두 가지 과제가 혼재되어 관리되고 있음.

나. 집행

□ 추진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 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적,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지원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계획 측면에서의 사업을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로 정하고 세부적인 추진방향으로 컨설팅, EAP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성과·환류

□ 추진실적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 수로 제시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만 관리되고 그 이후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함.

〈표 12-7〉 기업복지 활성화(11-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지원이라는 과제명으로 3년간 추진되었다가 2012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지원은 없어지고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과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지원이 추진되었는데, 중장기 발전방향과의 연관성 및 사업의 지속성의 측면에서는 미흡함.
집행	추진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 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적,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지원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 수로 제시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만 관리되고 그 이후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함.

3.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내실화(11-나-3)

가. 기획

□ 2009년에는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활성화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내실화로 추진된 세부시행과제이지만 과제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은 동일함.

○ 근로자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복지유형과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목적은 뚜렷함.

- 수요자 중심의 고만족 복지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로 사업의 필요성과 근거는 타당함.
- 홍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장에 기금 사용 허용한도 확대 홍보를 통한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나. 집행

- 과제의 추진주체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노동부는 선택적 복지제도 개선 및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확산을 위한 컨설팅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선택적 복지제도 근거마련을 위해 2010년 6월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가입을 지원하거나 유도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비율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여부를 지표로 설정함.
- 성과목표는 2009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7%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사업이 중단되거나 완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 중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비율은 11%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성과지표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 중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증가율로 설

정한 것은 타당하나, 매년 성과목표를 11%로 동일하게 설정하는 근거제시가 되어있지 않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자의적인 설정일 수 있음.

〈표 12-8〉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내실화(11-나-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복지혜택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책적 의의가 높아 도입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만, 컨설팅 및 시스템 무료 구축 서비스 등의 노력 이외에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제도 발굴 등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집행	추진주체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노동부는 선택적 복지제도 개선 및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확산을 위한 컨설팅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성과환류	성과목표는 2009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7%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사업이 중단되거나 완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4. 퇴직연금제도 활성화(11-나-4)

가. 기획

-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는 2009년에는 개인별 복수제도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등 제도 유형 다양화가 추진되었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라는 과제로 추진됨. 결국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퇴직연금제도유형의 다양화와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가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개인별 복수제도,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등 제도 유형 다양화와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강화를 모색하고 퇴직연금 도입 인센티브를 증대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장의 퇴직연금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개인별 복수제도,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등 제도유형 다양화(11-나-4-①)
 - ‘개인별 복수제도,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등 제도유형 다양화’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동시 가입을 허용하고,
 - DC형에 한하여 대표 사용자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임.

□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11-나-4-②)

-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는 퇴직연금제도가 양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저조하고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여 노후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임.
-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중소기업자의 제도 도입 운영 부담을 감소하여, 중소기업장의 퇴직연금 확산과 취약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높음.

나. 집행

- 개인별 복수제도,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등 제도유형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형별 표준규약을 제공하여 퇴직연금 가입편의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 구체적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9년도에 개정작업을 진행하는 중으로 나타났고, 2010년부터는 연도별 세부시행과제에서 제외되어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과 등에 언급이 없음.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의 시행 절차 및 과정에는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가입 편의성 제고,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대상 특화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추진되고 있어서 과제제목을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보다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및 연금소득세 인하, 연금소득 분리과세 등을 실시하였고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가입을 유도함.

- 교육·컨설팅 및 퇴직연금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퇴직연금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퇴직연금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퇴직연금 도입률로 설정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p씩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세부시행과제가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인데 세제혜택 강화와 관련된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과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연계되지 않음.
- 퇴직연금 도입률은 연도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도별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2009년도의 목표치인 상용근로자수 대비 15%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2010년도에 도입률이 낮아진 것은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이 4인 이하로 확대되었기 때문임.
- 성과지표와 목표달성을 이루어졌지만 도입률을 15%에서 시작하게 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12-9〉 퇴직연금제도 활성화(11-나-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퇴직연금제도유형의 다양화와 퇴직연금 세제혜택 강화가 추진됨.
집행	개인별 복수제도,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등 제도유형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형별 표준규약을 제공하여 퇴직연금 가입편의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퇴직연금 도입률로 설정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5%p씩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성과지표와 목표달성을 이루어졌지만 도입률을 15%에서 시작하게 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이후에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가 달성되어 더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분석하여 다음 사회보장 중장기 발전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세제혜택이 고소득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계층별로 세제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다음 중장기 발전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함.

제3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11-다)

〈표 12-10〉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11-다) : 영역별 평가결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1-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	11-다-2	산재근로자 재활 서비스 확대 ①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사회재활 내실화 ②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확충 ③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11-다-3	산재 취약부문 안전관리 강화 ② 무상보조금 사업주 부담비용 확대 ④ MSDS·경고표시이행실태감독 ⑤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 ⑥ 외국인근로자에대한모국어로된기술자료개발·보급 ⑦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격차 해소 ⑧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⑩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감소 집중관리
		11-다-4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 활성화 ① 특수검진비용 지원 ② 근로자건강센터설치·운영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의 과제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추진하고 동시에 산재취약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

□ 성과지표로는 재해율과 업무상 질병자수를 설정함

□ 그러나 근로자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재해율과 업무상 질병자수라는 성과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세부사업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1.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11-다-2)

가. 기획

□ 본 사업은 ①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사회재활 내실화, ②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확충, ③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본 사업(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과 세부사업(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사회재활 내실화)이 동일한 내용이고, 세부사업이 본 사업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계 구성이 다소 혼란스러움.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사회재활 내실화(11-다-2-①)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사회재활 내실화는 산재근로자의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에 맞추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재활스포츠, 심리재활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사업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있음.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확충(11-다-2-②)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확충은 직장 복귀한 근로자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장복귀를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을 원하는 산재장애인에게는 창업점포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11-다-2-③)

○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은 재활사례관리제 도입으로 대상자에게 일련의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함.

나. 집행

□ 재활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는 세부사업별 집행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활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사회재활 내실화,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확충,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은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다. 성과·환류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사회재활 내실화의 성과지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활서비스 제공률로 평가하다가 2012년부터 재요양 예방률로 평가하고 있음.

○ 단순히 재활서비스 제공률로 평가하기보다는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재요양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의 달성률로 평가할 경우에는 대부분 100%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목표치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부족함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사회재활 내실화(11-다-2-①)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확충의 성과지표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로 산재근로자에 대해 원직장복귀,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지원, 창업점포지원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어서 성과지표는 적절하다고 평가됨.

○ 또한 2012년부터 재활사업 이용자에 대한 직업복귀율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됨.

○ 다만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확충(11-다-2-②)

○ 재활사업 인프라 구축의 성과지표는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은 재활사례관리 대상자가 고용시장에 복귀한 비율인 재활사례 관리대상자 직업배치율로 설정하고 있어 성과지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재활사례 관리대상자 직업배치율을 달성했으나, 목표치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표 12-11〉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11-다-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세부사업의 구성에 있어서 본 사업(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과 세부사업(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확대 및 사회재활 내실화)이 동일한 내용이고, 세부사업이 본 사업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계 구성이 다소 혼란스러움.
집행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성과현류	내부적으로 자체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한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지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2. 산재취약부분 안전관리 강화(11-다-3)

가. 기획

- 산재취약부분 안전관리 강화라는 세부시행과제에서는 10개의 사업이 추진
 - 3대 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강화 5개 사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4개 사업, 50인 미만 재해다발·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1개 사업으로 구성됨(3개 세부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7개 세부사업을 평가함)
 - 무상보조금 사업주 부담비율 확대 : 모든 사업주가 전체 소요금액의 일정비율을 부담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서비스산업, 건설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예방점검(09~11) MSDS경고표시 이행실태감독 : 화학물질 양도·제공 시 MSDS 작성·제공 및 경고표시 여부,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내 MSDS 게시·비치 여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여 법 위반 발견 시 행정·사법 조치
 -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지원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개선에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예방에 기여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모국어로 된 기술자료 개발 보급 :외국인 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교재 및 자료를 모국어로 개발하여 On-line과 Off-line을 통해 보급하여 산업재해 예방
-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격차 해소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기본정보에 대한 인식 향상 및 내국인 근로자와의 안전보건 차별격차 해소를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안전보건 기본 정보를 제공
-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 해결 및 체류기간동안 따뜻하고 편안한 한국생활 지원으로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체류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및 지역순회서비스 실시
-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감소 집중관리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지역특성에 따른 재해 취약사업장 및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의 그룹의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기술지원 실시하여 업무상 사고재해를 예방

□ 각 사업별로 목적이 분명하고 산재취약부분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업

- 예방적인 차원의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있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 지원센터 확충 등과 같은 사업도 포함되어 추진됨.
- 그러나 사업전체가 『사회보장 증장기 발전방향』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매년 사업계획에 필요에 따라 추가된 사항으로 명확한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 또한, 사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사업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음. 예를 들어 세부사업 ④와 ⑤, 그리고 ⑥~⑧은 각각 1개의 세부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음

나. 집행

□ 연도별 추진계획에서는 사업별로 세부진행일정이 잘 구성되어 있고, 적어도 해당

연도 내에서는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다. 성과·환류

□ 전체적으로 달성률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목표치의 설정근거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정하여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도 존재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12-12) 산재취약부분 안전관리 강화(11-다-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3대 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강화 5개 사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 4개 사업, 50인 미만 재해다발·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1개 사업으로 구성됨
집행	연도별 추진계획에서는 사업별로 세부진행일정이 잘 구성되어 있고, 적어도 해당 연도 내에서는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
성과환류	전체적으로 달성률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목표치의 설정근거가 전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정하여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도 존재함.

□ 산재취약부분 안전관리 강화라는 세부시행과제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고 각 사업마다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여 달성여부를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 산재취약부분 안전관리 강화라는 세부시행과제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방식의 사업기획은 지양되어야 함.

3.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 활성화(11-다-4)

가. 기획

□ 특수검진비용 지원(11-다-4-①)

○ 특수검진비용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비용 지원으로 특수검진의 신뢰성 및 수검율 제고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목적임

□ 지역산업보건센터 및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운영(11-다-4-②)

○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은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기초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수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 운영은 사업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보건소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역할 조정이 필요함.

나. 집행

□ 특수검진비용 지원과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두 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 성과·환류

□ 사업의 성과지표는 특수검진비용 지원 사업이 특수검진비용지원 근로자 수,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사업은 근로자건강센터 설치로 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는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특수검진비용 지원 사업은 목표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모두 100% 이상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12-13〉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 활성화(11-다-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특수검진비용 지원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비용 지원으로 특수검진의 신뢰성 및 수검률 제고와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목적임 ② 지역산업보건센터 및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수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집행	두 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특수검진비용 지원 사업이 특수검진비용지원 근로자 수,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사업은 근로자건강센터 설치로 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는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특수검진비용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는 외부지적을 받아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5호)을 마련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정부지원 근거, 비용지원 절차 및 안전보건공단 위탁수행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

□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외부지적을 받아 2013년 6월 산안법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방식으로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하려면 보건소의 서비스와 분명한 차별화를 해야 할 것임.

제4절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계 구축(11-라)

〈표 12-14〉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계 구축(11-라) : 영역별 평가결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1-라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계 구축	11-라-1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② 직업능력개발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11-라-2	①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 ②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 사업 실시

□ 정부 규제중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를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과제로 시행되었고, 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훈련 참여 활성화를 추진함.

□ 성과지표로 중소기업근로자 훈련참여율과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을 설정하였는데, 중소기업근로자 훈련참여율,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모두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성과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였지만 2011년 이후에는 100%를 달성하고 있지 못함. 물론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은 2011년부터 계좌제 전면 실시로 인해 훈련생이 대폭 증가하여 취약계층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취업률이 현저하게 저하된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세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다음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11-라-1-①)
직업능력개발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11-라-1-②)**

가. 기획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11-라-1-①)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는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전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 직업능력개발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11-라-1-②)

- 직업능력개발포털사이트 구축은 능력개발사업 정보, 학습 콘텐츠, 일·훈련·자격의 통합연계 정보 등을 제공하여 훈련 수요자의 훈련 선택권 확대 및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나. 집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11-라-1-①)

-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로 훈련비는 1인당 200만원까지이고 교통비 식비는 월 11만원을 한도로 지급
- 자부담은 훈련비의 20%로 설정

□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11-라-1-②)

- 2011년도에 사이트 구축 후에 이용자 대상별 TF구성을 통한 모니터링과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함.
- 2012년도에는 일·훈련·자격 정보를 연계한 고용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통합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다. 성과·환류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11-라-1-①)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의 성과지표는 2009년도 훈련실시 인원, 2010년 계좌발급자 훈련 참여율, 2011년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로 매년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게 평가됨.
- 계좌발급자의 훈련참여율보다는 훈련생의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목표 달성율도 100%에 근접함. 다만, 목표설정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직업능력개발지식 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11-라-1-②)

- 사업의 성과지표는 포털사이트 신규회원 가입자 수 및 방문자 수로 설정
- 포털사이트 방문자 수 및 신규회원 가입자 수는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포털사이트 이용자 수 이외에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12-1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11-라-1-①)

직업능력개발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11-라-1-②)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p>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전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p> <p>② 직업능력개발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능력개발사업 정보, 학습 콘텐츠, 일·훈련·자격의 통합연계 정보 등을 제공하여 훈련 수요자의 훈련 선택권 확대 및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p>
집행	<p>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로 훈련비는 1인당 200만원까지이고 교통비 식비는 월 11만원을 한도로 지급\</p> <p>②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 2011년도에 사이트 구축 후에 이용자 대상별 TF구성을 통한 모니터링과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함.</p>
성과환류	<p>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 성과지표는 2009년도 훈련실시 인원, 2010년 계좌발급자 훈련 참여율, 2011년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로 매년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게 평가됨.</p> <p>② 직업능력지식포털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 포털사이트 방문자 수 및 신규회원 가입자 수는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포털사이트 이용자 수 이외에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p>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외부지적에 대해 취약계층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취약계층이 참여할 경우 자비부담을 면제시키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함.

□ 직업능력개발포털사이트와 관련해서는 훈련정보의 부족과 비대칭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직업능력개발지식포털사이트에 대한 상담훈련원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11-라-2-①),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사업 실시(11-라-2-②)**

가. 기획

□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11-라-2-①)

-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함.
- JUMP사업은 시간적·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훈련참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의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주말 및 야간시간에 특화된 훈련과정 제공하는 사업임.

□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사업 실시(11-라-2-②)

-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취업능력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취약계층이 취업능력을 높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 중 생계비를 대부하는 사업의 목적은 적절함.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의 목적은 타당함.

나. 집행

□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11-라-2-①)

-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도별로 대상과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 생계비 대부대상자를 확대하여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개선함.
- 2011년 비정규직근로자 JUMP사업은 지원대상과 훈련목적이 중복되는 근로자 수감지원금으로 흡수·통합됨.

□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사업 실시(11-라-2-②)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으로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 두 과제 모두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 기간별로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함.

다. 성과·환류

□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11-라-2-①)

- 사업의 성과지표로는 생계비대부 지원인원, 생계비대부 참여자 중도탈락률, jump 지원인원 등을 설정하여 생계비 대부 수혜자 확대와 훈련실시를 제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jump 대상자 확대 등을 도모함.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은 사업시행 초기인 2009년에는 대부인원 목표치의 48.4%를 달성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10~2013년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지표의 100%이상을 달성함

□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사업 실시(11-라-2-②)

- 중소기업근로자 훈련참여율로 성과를 측정하다가 2012년부터 훈련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도로 변경되었음.
- 그러나 변경된 사유나 직무능력 향상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연급이 없으며, 또한 연도별 목표치 설정에 대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12-16〉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11-라-2-①)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사업 실시(11-라-2-②)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p>①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 :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함.</p> <p>②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사업 실시 : 취약계층이 취업능력을 높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훈련 중 생계비를 대부하는 사업의 목적은 적절함.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의 목적은 타당함.</p>
집행	두 과제 모두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 기간별로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함.
성과환류	<p>① 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 : 2009년에는 대부인원 목표치의 48.4%를 달성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10~2013년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혜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지표의 100%이상을 달성함</p> <p>② 중소기업·비정규직 특화사업 실시 : 중소기업근로자 훈련참여율로 성과를 측정하다가 2012년부터 훈련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도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사유나 직무능력 향상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p>

□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전직실업자인 수혜자만 보통과 만족 사이를 보이고, 다른 집단은 모두 보통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부금액의 상한이 300만원으로 낮게 설정된 것으로 2013년도에 대부한도액을 일률적으로 1000만원으로 향상시킴.

□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의 훈련참여율 제고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 특화 훈련의 활성화는 바람직한데, 세부적인 성과지표의 설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5절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11-마)

〈표 12-17〉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11-마) : 영역별 평가결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1-마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및 근로유인 강화	11-마-1	①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②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확대
		11-마-2	저소득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

□ 우리나라의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고용서비스의 품질제고,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등 통합적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됨.

□ 성과지표로는 공공고용서비스 이용자수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수 및 취업률로 설정되었고, 공공고용서비스 이용자수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취업률은 성과목표 대비 100%를 매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수는 2010년과 2011년만 100%를 달성하였고 다른 연도에는 100%를 달성하지 못함.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의 의미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계획에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1.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11-마-1-①),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확대(11-마-1-②)**

가. 기획

□ 공공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하여 공공고용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통해 취업지원 성과를 제고함

□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 확대는 취업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민간

에 위탁하여 공공·민간 고용서비스간의 상호연계·보완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및 취업촉진을 도모함

-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위해서는 고용지원서비스의 강화는 필수적 이라고 평가됨.
- 공공고용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자치단체 등의 취업지원기관과 협력하 는 것은 기획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함.
- 공공·민간 고용서비스간의 상호연계가 현실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됨.

나. 집행

- 공공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사업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시행주체이고,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시행주체가 되 어 추진함.
- 공공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은 위탁기관 선정, 모니터링, 평 가 등이 시기별로 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되었고, 지자체와 협력, 일자리정보의 통 합 제공 등을 수행함.
- 또한 지도 점검, 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관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실 시하는 등 사업관리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짐.

다. 성과·현류

-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이용자수는 단편적인 지표임. 시장점유율, 알선성공률 등의 심층적인 성과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설정된 성과지표의 달성율은 평균 100%를 상회함

- 민간위탁 사업자수를 성과지표라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성공률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12-18〉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11-마-1-①)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확대(11-마-1-②)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공공고용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자치단체 등의 취업지원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기획적 인 측면에서 바람직함. 공공·민간 고용서비스간의 상호연계가 현실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됨.
집행	공공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은 위탁기관 선정, 모니터링, 평가 등이 시기 별로 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되었고, 지자체와 협력, 일자리정보의 통합 제공 등을 수행함.
성과현류	공공고용지원서비스 이용자수는 단편적인 지표임. 시장점유율, 알선성공률 등의 심층적인 성 과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민간위탁 사업자수를 성과지표라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성공률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공공·민간위탁기관 간 상호보완성이 명확하지 않고 성과지표 및 목표산출이 합 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실질적인 연계 강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평가를 체계화 하고 있는데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기관 설정, 적절한 위탁 대상자의 선별, 위 탁단가의 차등화 등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심층평가가 필요함.

2. 저소득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11-마-2)

가. 기획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1:1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심층상담에 기초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목적은 타당함.

나. 집행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이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모두를 고용센터에서 운영하였으나 인력충원이 없이 사업규모만 증가되어 2010년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음.
-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발굴하고 있음.
- 지속적인 제도 개선, 기초수급자 취업지원 강화, 지자체의 협력추진 등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로 취업률을 설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취업성공수당이 피보험자격 취득에 한정하도록 개선된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률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사업규모의 확대에 의해 취업률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참여가 증가하는 등을 고려하여 취업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임.
 - 목표 대비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100%를 상회함

라. 총평 및 제언

- 예산이나 예결산위원회 등의 외부지적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

하고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사업 운영 실태, 참여자의 인적특성, 취업지원의 취업성과분석, 민간위탁과 고용센터 취업성과 비교, 민간위탁 추진실태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 12-19〉 저소득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합적 취업지원(11-마-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심층상담에 기초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목적은 타당함.
집행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발굴하고 있음.
성과환류	성과지표로 취업률을 설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률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6절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11-바)

〈표 12-20〉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11-바) : 영역별 평가결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1-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기업 육성	11-바-2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
			① 민간기업 어린이집시설 설치·운영지원 강화
			② 장년 고용연장 지원
			③ 장애인 능력개발기회 확대 및 고용의무제도 개선
11-바-3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		
11-바-4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연장과 촉진지원 확대,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건설한 사회적기업 확산,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됨.

□ 성과지표는 장애인 고용률과 고령자고용률로 설정하고 있으나 평가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세부사업과제에 대한 지표만 관리할 뿐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지표는 관리하고 있지 못함. 다음 계획에 있어서는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11-바-2)

가. 기획

□ 취업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육아부담 완화, 고용연장 지원, 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선 등의 사업목적은 적절함.

□ 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강화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민간기업 어린이집 설치 운영지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은 정년을 폐지·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도모하는 사업임

○ 정년 연장·폐지, 고령자재고용,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노동비용 인하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 능력개발기회 확대 및 고용의무제도 개선은 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장애인력 양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 및 안정된 직업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임.

○ 장애인의 능력개발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은 타당하지만 장애인 유형별 능력개발사업을 구체화하여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함.

나. 집행

□ 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시행주체가 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음.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시행주체가 되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장애인 능력개발기회 확대 및 고용의무제도 개선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시행주체가 되어 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지원하고, 훈련비용과 훈련수강료를 지원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는 사업임.

□ 여성·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해서는 계획수립, 실시상황 점검, 평가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다. 성과·현류

- 성과지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장 수
 - 사업장 수는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시설 공급규모에 비추어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강화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009~2010년에는 달성률이 낮았으나 2011년부터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사업은 지원인원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분모에 따라 변동이 큰 지표이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사업은 2011년 평가보고서에서는 성과지표가 정년퇴직 자재고용 및 정년연장지원인원증가율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적용근로자수 증가율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적보고에서는 달성치는 매년 보고되고 있지만 목표치는 2013년에만 설정되어 있음.
 - 변경된 사유나 목표치 누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 의무고용정도 이행상황 점검 횟수와 장애인 훈련참여 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훈련인원은 2009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 등에 설치 확대, 중소기업 운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에 대해 2012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강화 및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2년

부터 지원요건인 임금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함.

- 장애인 능력개발기회 확대 및 고용의무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매년 외부 지적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왔음.

〈표 12-21〉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11-바-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취업취약계층(여성, 고령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육아부담 완화, 고용연장 지원, 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선 등의 사업목적은 적절함.
집행	여성·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해서는 계획수립, 실시상황 점검, 평가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성과·현류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장 수는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시설 공급규모에 비추어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사업은 지원인원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분모에 따라 변동이 큰 지표이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장애인 의무고용정도 이행상황 점검 횟수와 장애인 훈련참여 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11-바-3)

가. 기획

- 취업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함.
-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신규 모델 발굴, 모델 인큐베이팅, 지원기관 선정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옴.
 -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지원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나. 집행

-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주체는 고용노동부이고 집행기관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

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확산을 추진함.

- 연도별로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 우수모델 발굴 전파, 사회적 기업 지원 펀드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을 추진하여 시기별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다. 성과·환류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제시된 성과지표가 목적달성과의 연관성이 떨어짐.
-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년 사업명과 성과지표가 변경되어 사업성과평가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연도에 정량적 성과지표와 정성적 성과지표가 혼재되어 있음.
 - 또한 2013년은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인데, 성과지표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 활성화로 되어 있어서 사업과 성과지표와의 연관성이 떨어짐.

〈표 12-2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액션플랜 마련(11-바-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사회적 기업 육성 및 확산은 취업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함.
집행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주체는 고용노동부이고 집행기관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확산을 추진함.
성과환류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회보장장 장기발전방향에서 계획했던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사회적 기업 성공모델 제시 및 확산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다음 사회보장장 장기발전방향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11-바-4)

가. 기획

-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종합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의의가 큰 사업임.

- 시행주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이고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한국어 교육안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나. 집행

- 고용센터와 민간취업지원위탁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종별 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함.

- 결혼이민자가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 또는 민간취업지원위탁기관에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직업훈련 안내를 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계획과 비교하여 실제적인 추진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를 2010년도에는 직종개발 연구용역 진행으로 평가했고, 2011년부터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권수로 평가하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목적달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없음.

- 과제의 목적달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취업알선, 훈련, 통합적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 참여자와 취업자 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지표의 설정에 문제가 있으나, 설정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표 12-23〉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11-바-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취업직종을 마련하고 이러한 직종을 중심으로 취업알선, 심층상담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 연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업임.
집행	고용센터와 민간취업지원위탁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종별 단체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함.
성과현류	성과지표를 2010년도에는 직종개발 연구용역 진행으로 평가했고, 2011년부터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건수로 평가하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목적달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없음.



제13장 주거복지 분야

- 제1절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 제2절 무주택 임차인 자금 지원 강화
-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13

주거복지 <<

제1절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12-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2-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	12-가-1	국민임대주택 공급
		12-가-2	영구임대주택 공급
		12-가-3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②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

□ 과제 선정의 타당성

- 2007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안정세를 보임에도 전세 및 월세 가격 급등,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의 임대료 부담 증가, 적절한 주택을 찾지 못해 겪는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함.
- 또한 저소득층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을 세부시행과제로 포함한 것도 대단히 적절함

□ 세부시행과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3개로 선정되어 있음

- 대상기간(2009~2013) 동안 국민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변화가 없었으나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에는 매입방식 외에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이 포함되는 등 변화가 있었음
- 단,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은 2009년 13,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평가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2010년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됨

□ 세부시행과제의 타당성

- 중점추진과제의 세부시행과제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층을 다시 구분하여 소득과 가구특성(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따라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인 점에서 세부시행과제로 매우 적절
-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4분위(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매년 몇 만호씩 하겠다는 공급목표를 담고 있어 타당성이 높음
-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최하위소득계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매년 공급물량을 제시한 점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음.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은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이 도시외곽에 지어지는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단지형 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저소득층이 원래 거주하던 지역에서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느끼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음

나. 집행

□ 최저소득계층과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공공임대 주택공급에 노력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집행에 대한 평가는 장기임대주택을 실제로 얼마나 공급했는가로 평가할 수 있음
- 계획된 공급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나 국민임대 173,572호와 영구임대 27,930호를 공급하였으며, 맞춤형 임대 114,014호를 공급함으로써 최저소득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

다. 성과

□ 본 과제(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공급)의 성과지표는 세부시행과제인 국민임대주

- 택의 공급,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목표호수를 합한 숫자임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호수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성과 및 실질적인 혜택여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적절함
 - 특히, 공급물량(지원호수)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입주계층이 다른 점에서 이를 구분하여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더욱 적절
 - 하지만 국토부는 국민, 영구, 맞춤형 임대주택의 구분 없이 매년도 공급목표호수를 합한 숫자를 성과지표로 사용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의의를 다소 훼손
 - 이러한 점에서 3가지 유형을 합한 지원 호수보다는 3가지를 구분하여 각각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함

□ 성과지표의 달성도

- 국토부가 제시한 국민, 영구, 다가구 임대주택을 합한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호수 대비 실적치를 보면, 2009년 95.2%에서 2010년 82.5%, 2011년 67.7%까지 하락했다가 2012년 91.2%, 그리고 2013년 100.5%로 상승함.
 - 2012년과 2013년의 공급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높은 것은 해당기간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세부유형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목표 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 중점추진과제의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미흡했던 이유를 공공임대주택 세부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임. 그러나 기성시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늘 목표를 상회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많은 대기자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목표 대비 실적이 55.9%에 불과한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13-1)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12-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중점추진과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최하위 소득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기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집행	집행과정에서 공급목표 호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호수 대비 실적이 매년 미흡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은 2010년을 제외하고는 공급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어 집행이 적절했다고는 볼 수 없음.
성과환류	성과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과지표로 삼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전부 합한 호수 대비 실적이 85.9%로 부진한 점에서 성과 역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취약계층의 선호도가 높은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실적이 목표를 초과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던 점에서 최저소득계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제언

- 성과지표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하여 각각의 공급목표호수 대비 실적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호수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과 달리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의 공급호수는 사업승인 기준인 점에서 실제 주택의 공급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이를 입주기준의 호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1. 국민임대주택 공급(12-가-1)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목적

- 금융위기 이후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소득 4분위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입주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

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적절하며, 이를 평가기간 내내 유지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전세가 60~80%로 설정되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위의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임대료를 달리하는 차등임대료 적용, 전세와 보증부 월세의 선택제 도입은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무주택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공급계획물량을 줄인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net) 확보라는 중기계획과 국민임대주택의 지속공급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국민임대주택 수요 변화 등의 적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2012년 이후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토부는 주택수급여건, LH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2011년 보급자리 주택 공급목표 조정(21만호→ 15만호)시에 국민임대주택 5만 5천호를 3만 8천호로 조정('11.6.29)했다고 하나, 이는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의 기준 조정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함
- 2012년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4.1%로 OECD 평균 11.5%(2007년 기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나. 집행

□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 계량목표를 설정한 과제의 집행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공급된 주택호수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임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73,572호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됨. 계획대비 78.9%에 불과한 점에서 성과 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다분하나, 173,572호라는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은 의의가 있음
-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호수는 사업승인호수로 2~4년이 경과해야 실제로 임차가구가 입주하는 점에서 시차가 존재함.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008년 이전에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된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입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물량은 사업승인기준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렇다고 해도 사업승인 시점의 국민임대주택 공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서 정책 집행이 적절했다고 할 수는 없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호수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택문제는 지역의 문제인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권의 구분 등 지역별 공급목표를 설정하는 방식도 필요함
- 또한 국민임대주택이 목표했던 4분위 이하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임차가구의 소득분포 비율과 같은 지표가 필요함. 이런 지표를 채택하려면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급호수를 사업승인 시점이 아닌 준공시점의 호수로 바꾸는 것이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 2009년 성과목표 대비 실적이 96.6%를 나타낸 이래 2013년에 이르기까지 성과목표 달성은 65%에서 75% 구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특히 공급목표를 35,000호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공급목표 대비 실적이 다시 70%를 하회했음

- 이렇게 국민임대주택의 목표 대비 실적비율이 낮은 것은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해 온 LH가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이 축소되는 등 공급능력이 약화된 점, 지역 주민 및 지자체 반대 등으로 공급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이 이유로 거론될 수 있을 것임
- 국민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점에서 공급 확대 대책(국민주택 기금 지원보다는 재정에 의한 직접지원 증가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 제도 개선 노력

- 분기별 공공주택 건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시행자를 독려하는 등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
-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자체나 지역 주민의 국민임대주택 반대 여론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등 적극적인 지원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수요보다는 공급여건에 대한 판단에 의해 2012년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줄인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국회·언론·주택업계 등이 민간주택시장 침체 및 전세난 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지적함에 따라 보금자리 물량을 조절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임대주택의 물량을 조절(11.6.29)했다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물량을 줄이는 이유로서는 타당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조정하려면 우선 수요(소요)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임

라. 총평 및 제언

- 국민임대주택이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면 지역별 공급목표의 설정이 필요함. 적어도 수도권과 기타 지역을 구분하여 계획물량의 설정이 필요함

-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조정하려면 임차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가능성 및 선호에 대한 분석, 입주가 이루어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 및 만족도 분석, 그리고 사업승인 기준에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호수와 매년도 준공호수 등을 정확하게 비교검토하는 등의 주도면밀한 분석 이후에 계획물량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국민임대주택이 적절한 대상에게 공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입주자 특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공급호수 중심의 지표를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있어 지역여건이 감안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별도의 공급기준을 반영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함. 현재 입주가능 소득계층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0%이하이지만 공장밀집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

<표 13-2> 국민임대주택 공급(12-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음
집행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이 분명함
성과환류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함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으며, 특히 공급여건에 대한 판단만으로 공급목표 호수를 일방적으로 줄인 점에서 성과환류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음.

2. 영구임대주택 공급(12-가-2)

가. 기획

- 세부시행 과제의 연차별 목적
 -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1992년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2009년 공급이 재개되기까지 20년간 재고는 190,078호를 유지

- 이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수요가 상존함. 2007년에는 대기수요가 7만명으로 조사된 바 있음.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평균 대기기간은 1.9년이었으나, 향후 대기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국토해양부, 2012: 72)
- 2008년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최하위 소득계층이 느끼는 주거불안은 더욱 극심함.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최하위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은 평가기간 내내 유지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내용은 매우 적절함
 - 임대보증금 200~300만원, 월 임대료가 5~6만원 수준의 임대료 설정도 수급자 등 최하위소득계층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매우 적절
 - 저렴한 임대료 수준이 유지되도록 건설자금의 85%를 출자 및 보조의 형태로 한 것도 적절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net) 확보라는 중기계획과 영구임대주택의 지속공급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2011년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영구임대주택의 물량을 15,000호에서 7,000호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었음에도 2012년, 2013년 영구임대주택은 1만호라는 물량계획을 유지한 것은 일관성 있음.

나. 집행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 계량목표를 설정한 과제의 집행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공급된 주택호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7,930호의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됨. 계획대비 실적이 55.9%로 매우 낮아 성과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다분하나, 영구임대주택의 대기수요를 감안할 때, 27,930호라도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은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공급호수는 사업승인호수로 2~4년이 경과해야 실제로 입차가구가 입주하는 점에서 공급효과 발생까지는 시차가 존재함
 - 2009년 190,078호의 영구임대주택 재고가 2013년이 되어도 19만 1,900호로 1,822호 증가에 그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은 20년 동안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공급되는 점에서 신속하게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했으며, 이런 점에서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었어야 함

다. 성과현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호수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
- 다만 주택문제는 지역의 문제인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권의 구분 등 지역별 공급목표를 설정하는 방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또한 영구임대주택이 목표했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해당 주택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함. 이러한 지표를 채택하려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급호수를 사업승인 시점이 아닌 준공시점의 호수로 바꾸는 것이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 영구임대주택은 2010년 목표대비 실적이 101.0%를 나타낸 바 있으나, 5년 합계가 55.9%에 불과할 정도로 달성도가 낮음

- 영구임대주택의 목표 대비 실적비율이 낮은 것은 영구임대주택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LH가 재무여건 악화로 영구임대주택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는 점, 지역 주민 및 지자체 반대 등으로 공급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임
-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어떠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보다 최하위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제도 개선 노력

- 분기별 공공주택 건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시행자를 독려하는 등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나, 성과는 미흡함.
- 다만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린 것은 영구임대주택의 부진을 매우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단지형으로 건설되는 점에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편리한 영구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나 장애자 등 최하위 소득계층의 수요를 감안할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대체될 수 없음

라. 총평 및 제언

〈표 13-3〉 영구임대주택 공급(12-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음
집행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이 분명함
성과관리	목표 대비 실적이 대단히 미흡함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음.

-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영구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최하위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소요)가 만족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지역의 최하위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임

3.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12-가-3)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목적

-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목적은 도심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
- 특히, 사업시행자가 대상자가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입대하는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은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점에서 매우 적절함
- 다만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이 기성 시가지에서 공급되는 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공급되는 도시외곽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는 주택의 입지가 좋고, 교통이 편리한 것은 분명하나, 도심 내에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도심”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생각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다가구 매입 또는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등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은 단지형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피할 수 있는 공급방식인 점에서 목적과 시행계획 연계성 대단히 높음
 - 저소득층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도 목적과 시행계획의 연계성 대단히 높음
 - 사업비에 대해서도 국비 45%, 기금용자 45%, 입주자 5%로 되어 있으며, 임대료 수준이 낮은 것도 저소득층 가구가 현재의 수입으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적절함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net) 확보라는 중기계획과 맞춤형 임대주택의 지속공급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이 축소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목표가 상향조정되는 것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됨.
 - 앞서서도 언급하였으나, 2012년 우리나라 장기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4.1%로 OECD 평균 11.5%(2007년 기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특히,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보면, 2009년 7500호였다가 2010년 20,000호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2009년 별도로 운영되던 전세임대 공급목표 13,000호가 2010년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20,000호가 된 것이지 결코 늘어난 것이 아님
 - 2009년 20,500호였던 공급목표가 2010년에 오히려 약간 줄어든 것임

나. 집행

- 맞춤형 임대주택의 적극적인 공급
 - 계량목표를 설정한 과제의 집행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공급된 주택호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09년 전세임대 공급 14,145호를 포함하면 5년간 128,159호의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을 알 수 있음. 계획대비 실적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부 유형중 유일하게 100%를 초과달성한 것에 비추어 집행 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호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

- 다만 맞춤형 임대주택이 입주대상으로 삼았던 최하위소득계층이 맞춤형 임대주택에 얼마나 입주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입주자 특성 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달성도

- 2011년을 제외하고 모든 해 목표치를 초과달성함으로써 최하위 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 5년간 전체 달성률은 122.1%이며, 2013년에는 달성률이 181.7%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공급이 이루어졌음
-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비 실적이 미흡한 가운데 맞춤형 임대주택이 계획보다 많이 공급된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최하위소득 계층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볼 수 있음
- 다만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2가지 유형의 사업방식인 점에서 2009년처럼 2010년 이후에도 각각의 최종목표치를 제시하고 어떤 부분의 사업이 더 활발하게 추진되었는지를 보여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제도 개선 노력

-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활발했던 것은 매월 사업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등 정책수행부서인 국토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 수혜계층의 확대를 위해 사업지역을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서 20만명 이상 도시로, 또한 1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
 - 입주자의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횟수를 4회에서 9회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주택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 연장
 - 사업주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정부예산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구성되는 지원한도액도 7,35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8천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로 다시 9,000만원까지 증액

- 또한 맞춤형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LH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안정행정부
를 통해 맞춤형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매우 긍정적인.

라. 총평 및 제언

〈표 13-4〉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12-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등이 기존의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음
집행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도 분명함
성과환류	목표 대비 실적이 2011년을 제외하고는 4년간 100%를 상회함은 물론, 2012년 156.3%, 2014년 181.7%를 기록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목표 대비 실적이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정책수행부서가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관련제도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피력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다만 성과지표로 맞춤형 임대주택이 적절한 대상에게 공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입주자 특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공급호수 중심의 지표를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그리고 수요가 많은 것이 확인되면 연도별 공급목표를 상향조정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제2절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12-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2-나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	12-나-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12-나-2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가. 기획

□ 과제 선정의 타당성

-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가구의 20% 이상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구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점에서 무주택 가구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장기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무주택 가구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무주택 임차인 자금 지원 강화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은 적절함.

□ 세부시행과제

- 세부시행과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 대상기간(2009~2013) 동안 세부시행과제 변동 없음

□ 세부시행과제의 타당성

- 중점추진과제가 무주택 임차인 지원 강화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세부시행과제로 매우 적절함
- 무주택가구라도 대출자금에 대한 부담능력이 차이가 있는 저소득가구와 근로자 서민가구를 각각 구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매우 적절함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용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에

계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는 세부시행과제로 타당성이 높음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세부시행과제로 타당함

나. 집행

□ 80만 8천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집행

-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의 집행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인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주는 17만 8천명이며,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주는 62만 9천명으로 계획목표를 크게 상회한 80만 8천명에 달함
- 5년간 매년 계획목표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은 점에서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단 세부시행과제의 달성실적을 보면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집행은 2012년 약간 미흡
- 무주택 임차인 대출 강화의 집행과정을 보면,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재원이 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수시로 변경하여 지역별 대출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음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2010년 1회(9.13), 2011년 2회(2.17/9.13) 2012년 2회(27.9/12.27), 2013년 4회(4.10/6.12/6.25/9.11) 총 9회 추진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의 내용 및 내용의 적절성

- 본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는 전세자금 지원을 받는 가구수임

- 중점추진과제가 무주택 임차인 지원 강화인 점에서 지원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혜택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지원가구수를 성과지표로 삼은 것은 매우 적절함
- 그러나 평가기간 5년간 전세가격 급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한다면 5년 내내 목표치가 동일한 것은 다소 융통성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물론 지원가구 수에 대한 목표치는 동일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상한을 늘리거나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목표보다 많은 가구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
- 그러나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이용자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점에서 세부시행과제 각각의 목표치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더 적절

□ 성과지표의 달성도

- 계획기간 5년 내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이용자 수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상회하며 2011년에는 목표 대비 실적이 120.6%에 달함. 5년간 전체 목표 대비 실적이 111.4%에 달함
 - 세부시행과제별로 구분하여 목표치와 실적치를 살펴보면 2012년에 한해서 저소득 전세자금 실적치가 93.2%로 목표치를 하회한 바 있음
- 5년간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이용자가 80만 8천명이며, 이들이 가구주임을 감안할 때, 본 중점 추진과제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매우 필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음

라. 총평 및 제언

- 우리나라에 전세제도가 존재하고, 전세를 월세보다 선호하는 세입자가 많은 현실을 염두에 둘 때,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전세자금 대출)은 계속될 수밖에

에 없음. 따라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지원대상 가구수나 용자금 상향조정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설계 노력이 필요

〈표 13-5〉 무주택 임차인 자금지원 강화(12-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중점추진과제는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기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집행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계획기간 5년 동안 80만 8천가구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성과환류	성과와 관련해서도 5년 내내 계획 대비 실적이 100%를 상회하였으며, 5년간의 목표 달성률이 111.4%로 높게 나타났음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12-나-1)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목적

○ 근로자에 비해 대출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저소득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은 평가기간 내내 유지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보증금 대비 대출 금액이 높고, 대출금리가 일반 시중금리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대출기간도 장기인 점에서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매우 적절함

- 임차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지역별 대출한도액 차등 지원
- 대출금리 : 연 2.0%, 신용대출은 3.0%,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대출기간 : 거치기간은 없으며 15년 균등분할상환 혹은 혼합상환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net) 확보라는 중기계획과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대단히 높음
- 특히 매년 지원대상 가구수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를 상향조정, 대출금리를 낮추는 노력은 중기계획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전망 확보에 기여

나. 집행

□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 계량목표를 설정한 과제의 집행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대출자금을 지원받은 가구수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7만 8,145가구(명)가 저소득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
- 시·군·구청장이 대상자를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대출이 일정수준(목표치) 이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진노력을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인 점에서 지원가구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
- 다만 지원가구수 외에 지원총액도 보조지표로 사용된다면, 대출받은 가구에 대한 평균적인 지원액을 알 수 있어 성과를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달성도

- 2012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해에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5년간 최종적으로

118.8%를 나타냈음

- 2013년에는 목표대비 실적이 146.2%로 43,864가구에 전세자금을 대출

○ 대출총액은 성과지표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가구에 대한 지원효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총액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성과파악에 유용

- 2009년 1조 2,878억원, 2010년 1조 4,391억원, 2011년 1조 5,114억으로 증가하다가 실적이 미흡했던 2012년 8,322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2013년 다시 2조 5,63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지원대상 가구수와 지원총액을 매치하면, 가구당 지원금액도 201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제도 개선 노력

○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름을 감안하여 전세자금 대출 재원이 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수시로 변경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대출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음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2010년 1회(9.13), 2011년 2회(2.17/9.13), 2013년 2회(6.12/9.11) 총 5회 추진

○ 저소득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유형이 다양함을 감안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였으며, 지원대상 가구주 연령도 35세에서 30세 이하로 낮추는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 계획기간 내내 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전세난이 심각했던 점을 고려할 때, 5년 내내 계획대상 가구수를 상향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과달성도를 높인 것은 적절하지 않음

라. 총평 및 제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늘리고,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고, 가구주 연령을 하향하는 등 정책이용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 시·군·구청장인 점에서 대상자 선정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포상제도를 늘리는 등 수요자 발굴에 더욱 노력할 필요

〈표 13-6〉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12-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음
집행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이 분명한
성과환류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성과 달성도가 100%를 크게 상회

2.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12-나-2)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목적

○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함으로써 근로자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은 평가기간 내내 유지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보증금 대비 대출금액이 높으며, 대출금리가 일반 시중금리에 비해 저렴하며 대출기간도 장기인 점에서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매우 적절함

-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적용되는데, 2009년에는 가구주 소득 3,000만원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3년 현재는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지원수준도 점차 늘어 2013년 현재는 수도권 이외는 전용면적 100㎡(수도권 85㎡) 이하 주택, 전세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호당 8,000만원(수도권은 호당 10,000만원)까지 지원(3자녀 이상은 2,000만원 상향지원)
- 대출금리는 2012년부터 가구특성(고령자 부양가구, 고령자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현재는 3.3%
- 대출기간도 최장 6년에서 2011년 8년으로 연장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net) 확보라는 중기계획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 대단히 높음
 - 특히 매년 지원대상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상황에 맞추어 대출규모를 조정하고 금리를 낮추는 노력을 한 것은 주거안전망 확보라는 중기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

나. 집행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 계량목표를 설정한 과제의 집행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대출자금을 지원받은 가구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2만 9,600가구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남
 - 62만 9,600가구라는 지원대상 가구수는 2012년 기준 전세가구 375만 5,000가구의 16.8%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숫자임
 - 이렇게 많은 가구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집행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성과현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는 근로자 서민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인 점에서 지원가구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
- 다만 지원가구수 외에 지원총액도 보조지표로 사용된다면, 대출받은 가구에 대한 평균적인 지원액을 알 수 있어 성과를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 달성도

- 2013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며, 5년 평균 달성률은 109.5%로 매우 높음.
 - 한해 지원대상 가구수가 11만 5천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을 제외하고는 성과 달성도가 100%를 상회하였음. 이러한 성과 때문에 375만 5,000 전세가구(12년 전세가구 통계)의 16.8%인 62만 9,700가구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을 받았음
 - 2011년은 달성률이 123.5%로 서민근로자 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수가 14만명을 상회
- 대출총액은 성과지표로 사용되지는 않으나, 가구에 대한 지원효과를 알 수 있는 점에서 대출총액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성과평가에 유용
 - 2009년 3조 4,780억원, 2010년 3조 3,463억원으로 약간 감소, 다시 2011년 4조 7,883억원으로 크게 증가, 2012년 4조 7,668억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가 실적이 약간 부진했던 2013년 4조 1,128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원대상 가구수와 지원총액을 매치하면, 가구당 지원금액은 2012년까지는 증가하지만 2013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당 지원금액을 보면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평균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평균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제도 개선 노력

-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름을 감안하여 전세자금 대출 재원이 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수시로 변경하여 수도권에 대출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음
 -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2011년 2회(2.17/ 9.1), 2012년 2회(7.9/ 12.27), 2013년 3회(4.10/6.25/9.11) 총 7회 추진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규모를 상향조정하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대상 연령을 35세에서 3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향조정한 것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가구를 배려한 것으로 사료됨

라. 총평 및 제언

〈표 13-7〉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12-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 역시 근로자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음
집행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이 분명함
성과환류	한해 지원대상 가구수가 11만 5천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을 제외하고는 성과 달성도가 100%를 상회하였음.

□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가구가 많은 것은 전세가격 급등이라는 시장상황이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이 없지만, 수도권에서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늘리고, 가구주 연령을 하향하는 등 정책이용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 특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가구특성(고령자, 고령자 부양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 가구)에 따라 우대하는 것은 주거와 복지정책, 주거와 인구정책의 결합인 점에서 유용한 정책모델로 판단됨

제3절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12-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2-다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	12-다-1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추진
		12-다-2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

가. 기획

- 주거급여, 임대주택, 전세용자 등 기존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은 매우 적절함
- 세부시행과제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의 2개이나, 주택바우처 도입은 2009년, 2010년 2개년만 수행,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는 2009년부터 2011년 3개년만 수행됨
 -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 연구용역 계약체결, 주택바우처 운영 세부방안 확정
 -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3개 지구 선정, 시범사업 평가

□ 세부시행과제의 타당성

- 중점추진과제가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인 점에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은 세부시행과제로 적절하나, ‘임대료차등화 시범사업 실시’는 과제의 범위가 너무 협소함. ‘임대료 차등화 제도 도입’으로 과제명을 확대해야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과 위계가 부합되며,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이라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시행과제로서 적절

나. 집행

-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 집행내용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거나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에 한정되어 있음

-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2009년 주택바우처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010년 주택바우처 운영에 관한 세부방안을 확정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은 2009년 시범사업 단지를 기존 2개 지구(시흥능곡, 김천 대신)에서 5개로 추가지정(대구 서재, 장성 영천, 남양주 호평)하고, 2차에 걸친 평가를 한 이후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음
- 세부시행과제에서 의도했던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이 추진된 점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은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의 내용 및 내용의 적절성

- 본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과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임.
-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은 성과지표로 적절하나, 시범사업 실시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함. 시범사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엽적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임. 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도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명분상의 시범사업 추진도 가능하기 때문임

□ 성과지표의 달성도

-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도입은 관련 연구를 실시한 것과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성과지표를 100% 달성한 것으로 해석
-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이라는 중점추진과제가 주택바우처 도입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100%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5개 지역에서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100%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국토부가 제시한 100% 달성도는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임대료 보조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주택바우처제도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통합급여로 운영되던 주거급여의 개별급여화에 기여한 점에서 다소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에 어떠한 결과를 미쳤는가를 보여주지 못하는 점에서 달성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라. 총평 및 제언

〈표 13-8〉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체계 마련(12-다)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중점추진과제는 주거급여, 임대주택, 전세용자 등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주거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기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집행	집행은 주택바우처 연구용역 체결, 5개 지구(시흥능곡, 김천대신, 대구서재, 장성영천, 남양주 호평) 입차료 차등화 시범사업과 평가에 한정되어 있음
성과환류	주택바우처 도입 연구를 수행한 것과 5개 지역에서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성과지표를 100%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움.

□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필요성이 큼.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연구는 임대료 보조로서 주거급여 개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실시는 그야말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종료되고 말아 중점수행과제를 용두사미로 만들어버렸음

□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 제도 마련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중점추진과제인 점에서 세부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1.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12-다-1)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목적
 - 임차가구에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은 매우 적절함
 - 그러나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추진은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2011년 이후 중단된 점에서 기획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음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
 - 임대료 보조로서 주택바우처 제도가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점에서 모델 구축 연구 및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
 - 그러나 주택바우처 세부 운영방안이 제시된 2010년 이후, 정책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바우처 도입추진과제가 종료된 것은 비판받아야 할 것임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net) 확보라는 중기계획과 주택바우처 도입은 일관성이 대단히 높음
 -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추진은 2009년, 2010년 2년간 추진하다가 종료된 점에서 중기계획 달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없음

나. 집행

- 주택바우처 모델 구축 연구 및 세부 운영방안 확정
 - 연구용역을 통해 주택바우처 제도 추진에 필요한 모델구축,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기초자료 조사,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 주택바우처 세부방안으로 지급대상, 지급모델, 지급절차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2011년 이후 제도 추진이 중단됨으로써 활용되지 않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에 대한 1차년도 지표로 주택바우처 모델 구축 연구용역 수행, 2차년도 지표로 주택바우처 운영 세부방안 확정을 제시하고 있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점에서 초기 2년간의 지표로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성과지표 달성도
 -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방안을 달성한 점에서 달성도 100%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달성도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어,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가 평가자료,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관련자들의 의견 등 정성적인 지표를 보조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도 개선 노력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은 2011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저소득 월세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거급여를 개편한 형태로 추진이 검토됨
 - 새로운 주거급여는 복지부를 대신하여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이에 따라 2013년 주거급여 개편방안이 연구되었으며, 2014년 7월부터 9월 주거급여 개편시범사업이 추진됨.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2014년에는 새로운 주거급여가 실시될 예정

라. 총평 및 제언

(표 13-9)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12-다-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제도 도입방안까지 마련하고도 국토부의 정책 구현 의지가 미흡하여 2011년 이후 정책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도 정책추진의 장애요인이었을 것임
집행	주택바우처 세부방안으로 지급대상, 지급모델, 지급절차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2011년 이후 제도 추진이 중단됨으로써 활용되지 않음
성과현류	주택바우처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방안을 달성한 점에서 달성도 100%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음. 해당 연구에 대한 평가자료, 관련자들의 의견 등 정성적인 지표를 보조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주거급여 개편이 검토되면서 주택바우처라는 명칭대신 주거급여로서 임대료 보조제도가 도입된 것은 전세의 월세 전환시대의 저소득 월세가구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새롭게 도입된 주거급여가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임대료 보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됨

2. 임대료차등화 시범사업 실시(12-다-2)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목적
 -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의 목적은 입주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있음
 - 임대료가 부담스러워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가구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조차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체계의 도입 필요함.

- 본 과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점에서 과제의 목적은 매우 타당함.
 - 그러나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점에서 매우 소극적인 과제임. 과제명을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제도의 도입으로 명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
- 또한 2008년부터 추진되던 차등화 사업에 이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며 5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기획임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시행계획은 시범사업 추진에 한정되며, 2009년 지구 지정이 있는 후 2010년과 2011년은 평가에 한정된 시행계획으로 내용 협소
- 또한 2012년에는 추가지정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지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시행계획으로 보기 어려움
- 시범사업의 내용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일반가구로 구분하여 차등적용함으로써 하위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적절
 - 차등적용의 내용은 수급자 등의 임대료를 일반가구의 임대료(시세대비 55~78%)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주거안전망(Housing Safety-net) 확보라는 중기계획과 임대료차등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하위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완화하는 점에서 일관성은 있음
 - 그러나 사업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실제적인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아니라 입주자를 3개 계층(일반가구, 차상위층, 수급자)으로 구분하고 일반가구 임대료를 기준으로 약간 할인하는 방식인 점에서 주거안전망 구축이라는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음

나. 집행

- 5개 국민임대단지에서 임대료 차등화와 2차레 평가 추진
 - 2009년: 2008년에 지정된 2개 단지(시흥 능곡/김천 대신)외에 3개 단지(대구 서재/장성 영천/남양주 호평)를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
 - 2010년: 시흥 능곡/김천 대신 시범사업 1차 평가
 - 2011년 :대구 서재/장성 영천/남양주 호평 시범사업 1차 평가
- 추진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평가
 - 임대료 차등화를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는 점에서 추진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국토부는 본 과제가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극빈층에게 적절한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 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 자료가 되는 시범사업 평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자 했음
 - 그러나 평가가 성과지표가 될 수는 없음. 이는 본 과제의 목적이 시범사업 추진으로 극빈층의 임대료 절감을 도모한 것이므로 시범사업 단지에서 임대료를 경감받은 가구수와 절감액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임
- 성과지표 달성도
 - 현재 상태에서는 2012년 시범사업을 위한 추가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함

□ 제도 개선 노력

- 시범사업에 대한 1차, 2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화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음
- 게다가 2012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단지의 추가지정도 전혀 없어 시범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13-10〉 임대료차등화 시범사업 실시(12-다-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적절하나 과제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추진의지도 미흡한 것으로 보임
집행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연계성을 보일 뿐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하위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 다만 시범사업이 추진된 단지에서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임대료 차등화에 대한 반발 등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성과환류	현재 상태에서는 2012년 시범사업을 위한 추가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 수준이 높아 입주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하위소득계층도 다수 있으며, 입주 후 임대료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다수 있음을 감안하여 입주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제14장 에너지복지 분야

제1절 에너지 이용부담

제1절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13-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3-가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13-가-1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보장
		13-가-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13-가-3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지원

1.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보장(13-가-1)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 전기요금 할인으로 사회복지 실현'으로 설정
- 연차별 계획에서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배려층 보호, 최소한의 전기 공급(인간다운 삶)'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09~2013년 모두 동일
- 소득 빈곤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빈곤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 여중생 촛불 사망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빈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 에너지기본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전기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매우 적절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는 '전기요금 할인'과 '전기공급 중단 유예'의 2가지이며, 중점추

진과제와의 연계는 적절함

-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서 2010년에 3자녀 이상 가구, 2011년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지속적으로 확대
 - 전기공급 중단 유예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유예기간과 전류제한기의 용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 보장의 범위가 전기사용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빈곤에 대응제도로는 다소 미흡
 -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및 동절기 체납가구의 공급중단 유예, 연탄쿠폰제도와 연계 등이 필요하며, 이는 사용하는 에너지 형태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 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나. 집행

- 세부시행과제의 집행은 한국전력공사가 담당
- 전기요금 할인 등의 신청은 한전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겠으나, 대상자를 확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한전과 지자체간의 협력체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사업의 연계를 위하여 에너지재단, 도시가스 공급자, 광해공단(연탄쿠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음
 - 중기계획(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물론 연차별계획에서도 목표치를 설정

하지 않고 있음

- 성과목표는 대상가구 수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은 에너지빈곤층의 규모 추정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수요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임
- 성과지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성도를 판단할 수 없음
- 사업예산의 집행 실적
-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아닌 한국전력공사 자체 재원을 충당
 - 사업예산은 2009년에 2,150억에서 2010년에 2,746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3년에 2,532억
 - 본 사업을 정부예산이 아닌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 사업예산은 사후적으로 지원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예산의 규모를 알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수요 파악이 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

〈표 14-1〉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보장(13-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역시 타당하게 기획됨
집행	사업의 추진을 전기 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재단, 도시가스 공급자, 광해공단 등과 연계협력체계의 구축은 미흡함
성과환류	예산 및 지원 대상의 규모에 대한 계획이 되지 않고, 사후적으로 실적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예산 집행율 등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없음. 향후 본 사업은 에너지빈곤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의 정책수요, 지원대상자의 규모 추정 등의 노력이 필요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13-가-2)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

-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시공 및 물품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은 전기요금 할인과 같은 직접 지원과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간접 지원이 있으며, 이러한 지원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적절하게 기획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
 - 전반적으로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비교적 적절하게 매칭됨
 - 사업의 내용은 단열, 창호, 바닥 등의 시공과 보일러 등의 물품지원
 -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함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2009~2013년동안 본 사업은 별다른 내용의 변화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됨

나. 집행

□ 추진체계

- 담당 부처와 주관기관(한국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시행기관, 시공업체, 조달청 등 관련기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추진체계가 잘 구성됨

□ 사업의 집행관리

-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시공 감리, 사업 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의 집행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짐
- 특히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것 등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임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대상기간인 2009~2013년의 5년 동안 '예산 집행율'과 '지원가구 누적 실적'이며, 비교적 적절하게 설정됨
- 반면에 평가자료에 제시된 목표치와 실적치는 '지원가구 누적 실적'이 아니라 '당해년도 지원가구 수'로 판단됨. 양자 모두 성과지표로는 적절함

□ 성과지표 달성도

- 예산 집행율과 당해년도 지원가구 수를 기준으로 성과지표 달성도는 100% 또는 이에 근접하고 있음
- 그러나 각 년도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 목표치의 설정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중기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와 연차별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중기계획에서는 지원가구 수를 2009년에 6.5만 가구에서 2011년 이후 8만 가구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연차별 계획에서는 2009년에 6.3만 가구에서 감소하여 2013년에 3.8만 가구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목표치 설정은 실적치(달성치)에 맞추어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임
- 사업의 재원이 복권기금에서 2012년부터 특별회계로 변경되었고, 재원 변경

이후 당초 중기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음

- 중기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연차별 계획에서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의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고, 공식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임

〈표 14-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13-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과 추진 계획은 적절하게 기획되었으며, 목적과 계획내용(수단)의 연계성이 확보되었음
집행	과제의 추진체계는 잘 구성되었으며, 집행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성과환류	과제 추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연차별 계획에서 설정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부족함

3.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13-가-3)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빈곤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기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소비전력의 절감과 수혜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것임
- 저소득층의 주거 실태가 열악하고, 주택의 에너지 사용이 비효율적이며 전기설비 안전의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이 높고, 사업의 기획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짐
- 세부시행과제 목적의 연도별 변화
 - 과제의 목적은 '저소득 가구 저효율조명을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여 요금을 절감'하는 것으로 2009~2013년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음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적절하게 연계

-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시행계획)은 '조명기기 교체'와 '전기 내선설비 점검과

간이보수'로 설정하고 있음

나. 집행

□ 사업 추진체계

- 동일한 사업을 대상자에 따라 한전(저소득층)과 KEMCO(복지시설)로 집행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2013년에 집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한 것은 매우 적절함
- 반면에 집행기관을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것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
 -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기설비 점검과 조명기기 교체 등의 전문성은 기존의 집행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취약할 수 있으며, 지방비 매칭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증가
 - 따라서 한전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중 하나의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의 추진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

□ 사업관리

-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시공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해 사업의 집행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짐
- 특히 제품의 보증기간(3년) 설정과, 준공 후 2년간의 사후관리는 지원 대상자(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

다. 성과환류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목표는 '에너지복지 실현'이며, 성과지표는 지원대상 가구 및 시설 수입
- 성과지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성과목표는 추상성이 매우 높고

성과지표에 비해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됨

- 2013년의 성과목표인 에너지(조명) 비용부담 완화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달성도

- 본 과제 의 성과지표 달성도는 2009~2012년의 기간에는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2013년에 54.4% 수준임
 - 2013년의 달성률이 낮은 것은 교체조명을 형광등에서 LED로 변경함에 따라 단가 상승으로 지원가구시설 수가 감소된 결과로 이해됨
 - 그러나 단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 성과지표 달성율은 2013년을 제외하고 높은 수준이나, 성과지표의 목표치의 설정이 적절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특히, 연차별 계획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중기계획의 성과지표 목표치와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목표치 수준이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비교하면 중기계획의 목표치의 설정이 적절하지 않으며, 연차별 계획의 목표치의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움
- 이는 확보된 예산의 규모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였거나, 또는 실적치(달성치)를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음

〈표 14-3〉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13-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사업의 기획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수단)의 연계성과 일관성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집행	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한 것은 매우 적절함
성과관리	성과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일관성과 설정 근거가 미흡



제15장 문화체육복지 분야

제1절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제2절 복지관광 활성화

제3절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15

문화체육복지 분야 <<

제1절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14-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4-가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14-가-1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수 지원 ①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③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14-가-2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①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 ② 교정시설·소년원·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확대
		14-가-3	이주민 등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활성화 ① 이주민 문화활동 활성화 및 상호이해증진 교육

가. 기획

-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과제는 크게 3개의 세부시행과제(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수 지원,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이주민 등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활성화)로 구성됨
-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수 지원과제는 저소득계층과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일반국민에 비해 문화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대표적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 문화예술교육확대 실시 과제는 사회취약계층(아동, 노인, 장애인, 재소자, 군인 등)에 대해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문화향유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이주민 등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활성화 과제는 특히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활동 활성화 및 상호이해 증진을 돕기 위한 사업임

□ 이들 3개의 세부시행과제는 소득, 신체적 장애, 연령, 사회적 조건으로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소외계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로 행복하고 건강한 국민의 삶의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이라는 중점추진과제와의 연계성이 인정됨

□ 한편 다른 과제의 경우 2009~2013년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 과제와 이주민 등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활성화 과제의 경우 사업내용 등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수혜자들의 요구 및 사업의 합리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변화였다는 점에서 변경의 적절성과 타당성 또한 인정됨

나. 집행

-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중점추진과제를 구성하는 3개 세부시행과제의 경우 사업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 주관단체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광역 단위 지역문화재단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에서 여러 개 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도 담당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업 간의 효과적인 연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사업간의 협력과 연계를 담당할 전문매개인력의 확충과 배치가 중요한 과제임
- 한편 대부분의 사업은 현장 모니터링과 담당자 워크숍,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행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문화이용권(바우처) 수혜자 수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입

- 문화이용권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2개 사업의 수혜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일응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이 경우 문화바우처나 문화예술교육 사업 이외의 사업의 성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3개 세부시행과제별로 수혜자 수를 합산하여 제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모두 2009~2013년 기간동안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세부시행과제의 경우 대부분 예산총액에 따라 수혜자 수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전년도 달성치의 추세 등을 고려한 점증적 목표치 설정보다 중장기적 목표 설정에 근거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15-1〉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14-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과제는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수 지원,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이주민 등 한국어 및 문화이해 교육 활성화로 구성됨
집행	지역문화재단에서 여러 개 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도 담당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업 간의 효과적인 연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사업간의 협력과 연계를 담당할 전문매개인력의 확충과 배치가 중요한 과제임
성과현류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모두 2009~2013년 기간동안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단순히 전년도 달성치의 추세 등을 고려한 점증적 목표치 설정보다 중장기적 목표 설정에 근거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할 것임

1.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수지원(14-가-1)

가. 기획

-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14-가-1-①)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역량 강화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득수준에 따라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률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수급자 및 상위계층에 대해 문화바우처를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사업의 목표는 적절하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한편 2009년과 2010년 온라인을 통한 포인트지급방식에서 2011년부터는 문화카드 지급 방식으로 지원방식이 전환되고 1인당 5만원 지급 방식에서 가구당 5만원 지급방식으로 전환됨
- 문화카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의 용이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가구당 5만원으로 가용금액이 감소하면서 수혜자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체감 편익은 감소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자발적으로 문화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 기획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청소년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당 5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의 체감 편익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인정됨
- 목표 수혜자수는 2009년 22만명에서 2013년 161만명으로 크게 증가함
- 문화향유기회가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은 타당성이 있음
- 다만 예산이 증대된 2013년에도 여전히 예산확보액이 전체 수급대상²⁾의 약 50%에만 미쳐 실질적으로 선착순에 의한 수급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14-가-1-②)

- 신체적 여건으로 문화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제고하기

2)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201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55만명(88만 가구), 차상위계층 규모는 185만명(102만 가구)로 추정됨.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39만명(82만 가구)로 나타나므로 통합문화이용권 수급대상은 대략 324만명(184만 가구)로 추정할 수 있음

위해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및 체험 프로그램, 축제 개최 등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14-가-1-③)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어르신 문화학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어르신 문화동아리 지원, 어르신 문화축제 지원 등을 통해 노령층의 문화향유 기회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열악한 노령층의 문화향유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노령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단순한 강좌에 끝나지 않고 문화나눔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축제까지 일종의 단계적 패키지 형식을 띠어 수혜자의 욕구와 필요에 대응되는 수단의 적절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나. 집행

□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14-가-1-①)

- 2011년 문화카드 지급방식 전환 및 예산과 수혜대상 인원의 대폭 증가에 따라 지역주관처를 중심으로 한 읍·면·동 주민센터 협력체계를 구축함
 - 사업방식 및 규모의 증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광역 단위 지역주관처-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어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임
 - 그러나 저소득계층이 문화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카드발급 등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업무만 진행되며 문화이용권 이용을 위한 지원업무는 주로 광역단위 17개 지역주관처의 한정된 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기초단위에서 문화카드 이용을 돕는 지원인력의 확대가 절실함
- 2012년 문화이용권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2013년에는 그간

별개로 진행되어 온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광이용권 사업의 통합을 통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개시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실시할 경우 수혜자의 선택 범위가 문화, 여행, 스포츠 등으로 넓어지게 되므로 수혜자 편익의 증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 모니터링 및 홍보, 민원 및 고충처리는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14-가-1-②)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립문화시설·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통해 사업의 추진되고 있으며,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프로그램별 현장 평가단 구성을 통해 집행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체육국' 내에 '장애인체육과'에서 담당함으로써 체육업무 외에 문화예술 관련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3년 3월 장애인 문화예술 업무를 '예술국 예술정책과'로 이전함에 따라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에 있어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14-가-1-③)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지방문화원(전국 229개)을 통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9~2013년 동안 약 142억원이 투입됨
 -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참여 어르신대상 만족도 조사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등의 집행관리가 진행됨
 - 다만 공모 및 선정과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우 2012년 직원이 수석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내부감사체계의 부족이 지적된바 있음
 - 개별 지방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등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 성과환류

□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14-가-1-①)

- 성과지표는 문화이용권 수혜자 수로써, 바우처 사업이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액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 다만 목표 수혜자 수는 2012년에는 수급대상의 42%, 2013년에는 44%로 설정되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전체 수급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성과목표치를 더욱 높이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인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는 2009~2013년 전 기간에 걸쳐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카드 분야별 이용액이 도서 및 영화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³⁾ 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함(문화카드 이용처의 다양화, 편의성 제고, 보다 다양하고 품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 등)
- 성과평가 연구와 모니터링, 수혜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의 통합, 기획사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고, 추가 가맹점 발굴 및 미사용 잔액 등에 대한 이용 편의성 제고와 같은 제도 개선이 충실히 이루어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14-가-1-②)

- 2009~2013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74개의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었고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혜자 수도 2009년 29,400명에서 2013년 82,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성과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가져옴
 - 성과지표인 장애인문화예술향유 참여자 수와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개소 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보이나, 향후 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목표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14-가-1-③)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의 수는 2009년 137개에서 2013년 449개로 증가했고 수혜자 수 또한 2009년 4,749명에서 2013년 13,872명으로 약 3배 증가하여 매년 성과지표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지역 내 노령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층의 문화여가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을 이용하는 노인뿐 아니라 여타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라. 총평 및 제언

□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14-가-1-①)

- 문화이용권사업은 경제적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그간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확보액이 전체 수급대상의 약 50%에만 미쳐 선착순에 의한 수급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향후 수급대상을 100% 포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바우처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인 수혜자의 선택능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매개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며, 일부 장르(영화, 도서 등)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조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추진과제의 장기적 방향 설정에 근거한 성과목표치의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14-가-1-②)

-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및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및 체험 프

3) 2013년 기준 도서(59.2%), 영화(33.45%), 공연(2.25%), 전시(0.38%), 기타(4.72%)

로그램,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추진과제의 장기적 방향 설정에 근거한 성과목표치의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14-가-1-③)
 -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는 시점에서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노령층을 위한 특화된 문화참여프로그램으로 의의가 인정됨
 - 다만 개별 지방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음

〈표 15-2〉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수지원(14-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해 문화바우처를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사업의 목표는 적절하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프로그램별 현장 평가단 구성을 통해 집행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③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열악한 노령층의 문화향유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노령층을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집행	①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 : 2012년 문화이용권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2013년에는 그간 별개로 진행되어 온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사업의 통합을 통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개시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립문화시설·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통해 사업의 추진되고 있으며,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프로그램별 현장 평가단 구성을 통해 집행의 관리가 되고 있음 ③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개별 지방문화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등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성과향류	① 저소득층 공연전시 관람 지원 : 성과지표는 문화이용권 수혜자 수로써 문화이용권 사업이 저소득계층의 최소한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우처 사업이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액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성과지표인 장애인문화예술향유 참여자 수와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 개소 수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보이나 향후 사업의 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목표지 설정 기준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③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내 노령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14-가-2)

가. 기획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14-가-2-①)
 -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문화향유 능력을 제고하고 능동적·창의적 문화향유를 가능케하려는 사업목표의 타당성이 인정됨
 - 문화예술은 경험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갖거나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저소득계층,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큼

□ 교정시설·소년원·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확대(14-가-2-②)

- 재소자, 군인 등은 특별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정서적·감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 역량 및 문화참여 제고의 필요성이 큼

나. 집행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14-가-2-①)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리고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화예술강사를 시설에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수행
 - 사업예산은 2009년 36억원에서 2013년 5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목표 수혜자 수의 증가로 일인당 수혜(목표)금액은 2009년 26만원에서 21만원으로 다소 감소하여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됨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 대상 연간 20회의 모니터링과 출강강사 전체에 대

한 평가, 통합운영시스템(UMS) 게시판과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한 민원불만 접수, 고충처리를 진행하는 등 사업집행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교정시설·소년원·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확대(14-가-2-②)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방부, 법무부와와의 협력을 통해 교정시설, 소년원, 군부대 시설의 수행자 및 군인들에 대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 사업예산과 목표수혜자는 2009년 8억원(2,200명)에서 2013년 25억원(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수혜자 일인당 수혜액 또한 38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연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운영단체, 수혜시설, 수혜자 대상 성과평가를 실시함
 - 상시 민원처리와 사업 초기-중기-후기 등 각 단계별로 정기적인 운영단체 워크숍을 통해 불편·불만사항, 개선사항 파악 등 집행관리 노력이 인정됨

다. 성과환류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14-가-2-①)

- 성과지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 노인, 장애인 수혜자 수로서 사업의 직접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 다만 목표수혜자 수의 설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적인 사업의 목표와 예산확보 계획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수혜대상 및 중장기 정책목표를 고려한 성과목표치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치가 과대하게 설정되고 이에 따라 성과지표 달성율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정교한 성과목표치의 설정 및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술강사, 복지기관 대상 현장 평가 및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 교정시설·소년원·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확대(14-가-2-②)

- 성과지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혜자 및 군인 수혜자 수로서 사업의 직접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 다만 목표수혜자 수의 설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적인 사업의 목표와 예산확보 계획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보다 정교한 성과목표치의 설정 및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예술강사, 복지기관 대상 현장 평가 및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라. 총평 및 제언

〈표 15-3〉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14-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 :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문화향유 능력을 제고하고 능동적·창의적 문화향유를 가능케 하려는 사업목표의 타당성이 인정됨
	② 교정시설·소년원·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확대 : 재소자, 군인 등은 특별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정서적·감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 역량 및 문화 참여 제고의 필요성이 큼
집행	①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문화예술강사를 시설에 파견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수행
	② 교정시설·소년원·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방부, 법무부와와의 협력을 통해 교정시설, 소년원, 군부대 시설의 수행자 및 군인들에 대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성과환류	①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 : 성과지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혜자 수로서 사업의 직접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나 목표치의 설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중장기적인 사업의 목표와 예산확보 계획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② 교정시설·소년원·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확대 : 성과지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혜자 및 군인 수혜자 수로서 사업의 직접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확대(14-가-2-①)

- 문화예술의 향유는 경험재 또는 학습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문화예술교육을 통

한 문화향유역량의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또한 취약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능동적·창의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향유 능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수혜자 수의 양적 팽창에 치중하여 사회문화예술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저비용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질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정책목표와 사업의 질 제고를 함께 고려하는 성과목표치의 설정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정시설·소년원·군부대 문화예술교육 확대(14-가-2-②)

- 교정시설에의 수감 및 입대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격리된 재소자와 군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함으로써 정서적·감정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수혜자 수의 양적 팽창에 치중하여 사회문화예술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저비용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질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정책목표와 사업의 질 제고를 함께 고려하는 성과목표치의 설정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이주민 문화활동 활성화 및 상호이해증진 교육(14-가-3)

가. 기획

-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문화예술은 문화간 상호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2009~2011년까지 지역별 특성화된 이주민축제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2012년에 다문화 프로그램 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보급,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2013년에 이주민들

의 공연·전시·영상제작 등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다양화·심층화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방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주민과 이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의 변화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집행

- 2009~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기관·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2012~2013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총괄하여 지역문화재단 등 주관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함
-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업 규모가 2009년 9억원에서 2013년 2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재단과 같이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스템화는 바람직함
- 사업별 컨설팅과 중간점검, 종합평가, 담당자 워크숍, 현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의 집행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성과환류

- 사업내용의 개편에 따라 2009~2011년에는 지역다문화 프로그램의 개수가 성과 지표였고 2012년에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분야 가이드라인 보급수, 그리고 2013년에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를 위한 참여자 만족도로 성과지표가 변화됨
- 지역다문화 프로그램의 개수는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에 부적절한 성과지표로 판단되며 참여자 만족도는 일용 타당성이 있으나 보다 구체적·객관적인 계량지표(예, 참여자 수 등)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방식 변경으로 목표치 산정에 곤란을 겪었던 2012년을 제외하고 전 기간에 걸쳐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달성도를 보임

- 사업컨설팅 및 평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사업수행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 사업수행의 어려움, 참여기관 간 마찰 및 비효율성의 문제, 다문화정책 관련 문화부의 역할 등)에 대해 제도 개선 노력이 인정됨

라. 총평 및 제언

〈표 15-4〉 이주민 문화활동 활성화 및 상호이해증진 교육(14-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다인종다문화사회의 진전이 가속화되고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문화예술은 문화간 상호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집행	2009~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기관시설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2012~2013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총괄하여 지역문화재단 등 주관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함
성과현황	지역다문화 프로그램의 개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분야 가이드라인 보급수, 이주민과 선주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를 위한 참여자 만족도로 성과지표가 변화됨. 보다 구체적·객관적인 계량지표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일반주민과 이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문화간 상호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방향은 이러한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 확대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확대 필요

- 또한 단순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테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문화 및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다양성 제고를 정책의 큰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의 개편에 따라 성과지표가 변화되어 2013년 성과지표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를 위한 참여자 만족도인데, 사업의 질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만족도 외에도 보다 구체적·객관적인 계량지표(예를 들어 참여자 수 등)를 추가적 보충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절 복지관광 활성화(14-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4-나	복지관광 활성화	14-나-1	사회취약계층 관광 지원
			① 취약계층 복지관광(여행바우처)

가. 기획

- '사회취약계층 관광 지원'이라는 1개의 세부시행과제로 구성됨

- 이는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관광복지 프로그램이 여행바우처(여행이용권사업)과 장애인버스개조사업, 소외계층 관광활성화 사업 등으로 유형도 한정되어 있고 소규모이기 때문임
- 여행바우처(이용권)사업이 가장 큰 비중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인버스 개조사업은 2010~2012년까지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나 2013년에는 추진되지 않았는데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여행(관광)이 갖는 분야별 특성상 별도의 중점추진과제로 둘 필요도 있으나 2014년부터는 문화·여행·스포츠관광바우처 사업이 통합되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개편된 만큼 향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 관광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중점추진과제 속에 편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나.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화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합하여 주관하고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함
- 잦은 사업주관부처의 변화로 인해 아직 여행이용권 서비스 전달체계는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는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것으로 보임

-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직 자리잡지 못했으므로 시·군·구 및 읍·면·동 차원에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이 여행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복지관광 참여자 수'로 여행바우처 참여자와 소외계층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합임
 - 목표치는 예산액을 1인당 지원액과 국비 지원률로 나누어 산정함
 - 여행바우처 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이 매우 소규모이며, 여행바우처를 통해 여행에 참여한 수혜자 숫자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는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보임
 - 2009~2013년 전 기간에 걸쳐 복지관광 참여자 수는 목표치를 초과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15-5〉 복지관광 활성화(14-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여행(관광)이 갖는 분야별 특성상 별도의 중점추진과제로 둘 필요도 있으나 2014년부터는 문화·여행·스포츠관광바우처 사업이 통합되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개편된 만큼 향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중점추진과제 속에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집행	찾은 사업주관부처의 변화로 인해 아직 여행이용권 서비스 전달체계는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는 어느 정도 자리 잡힌 것으로 보임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복지관광 참여자 수'로 여행바우처 참여자와 소외계층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합임. 2009~2013년 전 기간에 걸쳐 복지관광 참여자 수는 목표치를 초과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1. 취약계층 복지관광(여행바우처)(14-나-1)

가. 기획

-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확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여행 참여 및 관광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향유권 증진 및 관광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09~2010년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새터민 및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제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복지관광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저소득계층(월소득 212.5만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 대상 여행바우처 사업이 재개됨. 장애인버스 개조사업도 이때 시작됨
 - 2011년부터는 여행바우처 사업이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획여행 지원사업인 소외계층 관광 활성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소득수준, 신체적·사회적 장애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여행을 향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행경비의 일부 지원 및 장애인버스 개조를 통한 물리적 접근성 제고를 꾀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집행

- 사업 규모가 작고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잦은 변경을 겪었으나 점차 체계화·제도화되고 있어 바람직한 변화로 판단됨
 - 2009~2010년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2011년부터는 한국관광공사가 여행바우처 사업을 주관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문화스포츠관광·여행이용권 사업 주관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통합됨
 -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크지만 관광이나 스포츠에 대한 전문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업예산은 2009년 8억원에서 2013년 98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여 경제 적·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여행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여행향 유권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집행실적 점검, 여행상품 이용현황 점검,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인 터뷰, 여행동행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회의, 담당자 의견수렴 워크숍, 만족도 조 사 등을 통한 집행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다. 성과환류

-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확대 과제의 성과지표는 복지관광 참여자 수로서 경제 적·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최소한의 여행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의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 성과지표 목표치는 2009년 4,000명에서 2013년 65,000명으로 설정되었으 며 성과목표 달성률은 전 기간에 걸쳐 모두 100% 이상을 기록하여 소기의 성 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매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차년도 사업계획에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취약계층 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개 선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한편 기존 여행이용권 사업의 규모가 작아 취약계층 여행이용권 신장에 일정한 한 계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으로 가구당 10만원 범 위 안에서 문화, 여행, 스포츠관광 중 수혜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구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관광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라. 총평 및 제언

- 여행바우처 사업, 장애인버스 개조사업, 소외계층 관광활성화 사업 등은 여행경

비의 일부 지원 및 물리적 접근성 제고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여행 참여 기회 확 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기존 여행이용권 사업의 규모가 작아 취약계층 여행이용권 신장에 일정 한 한계가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으로 가구당 10만원 범위 안에서 문화, 여행, 스포츠관광 중 수혜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관광 확대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측됨

- 다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여행 관련 전문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 15-6〉 취약계층 복지관광(여행바우처)(14-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확대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의 여행 참여 및 관광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향유권 증진 및 관광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집행	사업 규모가 작고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잦은 변경을 겪었으나 점 차 체계화·제도화되고 있어 바람직한 변화로 판단됨
성과환류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확대 과제의 성과지표는 복지관광 참여자 수로서 경제·신체적 여 건으로 인해 최소한의 여행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 하는 데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제3절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14-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4-다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14-다-1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지도사 양성배치 ① 생활체육시설 연차별 확충 ②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증원
		14-다-2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①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② 스포츠바우처 지원
		14-다-3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가. 기획

-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중점추진과제는 크게 3개의 세부시행과제로 구성됨
 -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지도사 양성 배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성격을 띠며,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은 교육·프로그램 지원의 성격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육 지원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3개의 세부시행과제는 중점추진과제와의 연계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집행

- 동 과제와 관련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회,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회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편 대부분의 사업은 현장 모니터링과 담당자 워크숍,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행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는 '생활체육 참여율'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로 직접적 산출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며, 세부시행과제의 내용을 감안하여 타당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는 만 10세 이상 전 국민 9,000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국 10~69세 등록장애인 중 2,500명에 대해 주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율로 측정됨(주 몇회 이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계열 비교에 필요)
- 한편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장애인 중 2500명에 대한 설문(전화/대면 병행)을 통해 '1주일에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안이 아닌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응답자'로 보고 있는데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일반 국민과 장애인에 대한 조사에서 '생활체육참여율'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생활체육 참여율 및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모두 전 기간에 걸쳐 목표치를 상회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최하 97%)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표 15-7〉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14-다)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지도사 양성 배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성격을 띠며,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은 교육·프로그램 지원의 성격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교육 지원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중점추진과제와의 연계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집행	관련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회,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회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생활체육 참여율'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로 직접적 산출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며, 세부시행과제의 내용을 감안하여 타당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1.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지도사 양성배치(14-다-1)

가. 기획

□ 생활체육시설의 연차별 확충(14-다-1-①)

-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및 국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건강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됨
 - 2009~2013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광특회계) : 총 27개소 (8,346백만원)
 - 생활체육공원 : 총 95개소(광특회계) (60,095백만원)
 - 운동장생활체육시설(광특회계) : 총 643개소 (322,670백만원)
 - 농어촌복합체육시설(광특회계) : 총 29개소 (16,500백만원)
 - 국민체육센터(체육진흥기금) : 총 239개소 (253,620백만원)
 - 생활체육시설 전체 : 1,033개소

□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증원(14-다-1-②)

- 생활체육 현장에 생활체육지도사(일반/어르신)를 고정 배치하여 체육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받게 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됨
 - 노인 계층의 체육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2010년 이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나. 집행

□ 생활체육시설의 연차별 확충(14-다-1-①)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
 - 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이 광특회계 사업으로 이관

되면서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 및 지원개소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해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협조요청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업예산은 2009년 60억원에서 2013년 5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생활체육시설 확충 개소 수는 1,806개소로 계획(1,033개소)을 초과 달성함
- 다만 생활체육시설 유형에 따라 기능과 수혜대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음

□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증원(14-다-1-②)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2013년까지 총 9,734명(일반 7,059명, 어르신 2,675명)이 생활체육현장에 배치됨
 - 양적으로는 적지 않은 수치이나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신분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매년 배치인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분기별 사업실적 점검 및 반기별 사업심사 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생활체육지도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다. 성과환류

□ 생활체육시설의 연차별 확충(14-다-1-①)

- 성과지표인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인구 대비 실제로 활용가능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정도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성과지표로 보임
-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009년 2.88m²에서 2013년 3.80m²로 증가했으며 90%~109.9%의 성과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및 증원(14-다-1-②)

- 성과지표는 2009년~2010년 프로그램 참여자 수(산출지표)에서 2011년부터

는 수혜자 만족도와 지도자 활동 지속 참여율(효과지표)로 변경하여 직접적 산출이 아닌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임

- 다만 성과지표로 설정된 수혜자 만족도와 지도자 활동 지속 참여율의 경우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공급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로부터 생활체육지도를 받은 수혜자들의 수나 그들의 만족도와 같은 보충지표를 통해 동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또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수혜자 만족도 지표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과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도자 활동 지속 참여율은 88.9~122.5%로 변동성이 크며, 목표 달성률 역시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년 단기 고용에 그치는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낮은 보수, 불안정한 신분으로 높은 이직률이 초래되어 지속참여율의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진단되며, 이들의 신분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장기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 추진이 검토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자격체계 세분화, 자격요건 간소화, 자격검정과목 축소, 실무교육 및 실무연수 강화 등)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라. 총평 및 제언

□ 생활체육시설의 연차별 확충(14-다-1-①)

- 생활체육시설은 생활체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동 사업은 생활체육활동의 기본적 여건 마련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광특회계로 이관된 이후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시설확충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성과지표인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목표치가 현재는 매년 달성치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점증적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나 예산확보와 연계된 목표치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증원(14-다-1-②)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H/W)뿐 아니라 휴먼웨어(H/W)의 확충이 필수적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지역주민과 노령층에게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다만 성과지표로 설정된 수혜자 만족도와 지도자 활동 지속 참여율의 경우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공급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로부터 생활체육지도를 받은 수혜자들의 수나 그들의 만족도와 같은 보충지표를 통해 동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또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1년 단기 고용에 그치는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낮은 보수, 불안정한 신분으로 높은 이직률이 초래되어 지속참여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안정적 고용여건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조치가 필요함

〈표 15-8〉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지도사 양성배치(14-다-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생활체육시설의 연차별 확충 :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및 국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건강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됨
	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증원 : 생활체육 현장에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를 고령 배치하여 체육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받게 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필요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됨
집행	① 생활체육시설의 연차별 확충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증원 : 분기별 사업실적 점검 및 반기별 사업심사 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생활체육지도자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성과현류	① 생활체육시설의 연차별 확충 : 성과지표인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인구 대비 실제로 활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정도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성과지표로 보임
	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증원 : 성과지표는 2009년~2010년 프로그램 참여자 수(산출지표)에서 2011년부터는 수혜자 만족도와 지도자 활동 지속 참여율(효과지표)로 변경하여 직접적 산출이 아닌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임

2.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14-다-2)

가. 기획

□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14-다-2-①)

- 노인시설에 체육용품 지원하고, 실버스포츠 종목을 보급하며, 노인 및 다문화가정 대상 생활체육캠프 및 축제 등의 개최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절성이 인정됨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해 필요한 체육용품과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동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스포츠바우처 지원(14-다-2-②)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19세 유·청소년에 대해 매월 7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절성이 인정됨
 - 유소년기 체육활동이 이후 건강 및 정서적·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과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율 저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스포츠강좌바우처를 통해 이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집행

□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14-다-2-①)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와 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체육기금)은 2009년 15억원에서 2013년 51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노인 및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활동 기회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월별·분기별 사업실적 점검, 반기별 사업심사분석 실시, 고객만족도 조사,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피드백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스포츠바우처 지원(14-다-2-②)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시설 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009년 28억원에서 2013년 149억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저소득계층 유·청소년의 체육교육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상하반기 현장점검, 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효과적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 운영, SMS 발송과 스포츠강좌 등록시설 안내표식과 안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집행관리 및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성과환류

□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14-다-2-①)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운동용품 지원 개소수'로서 이 지표는 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체육용품을 제공하여 생활체육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성과를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사업은 '운동용품 지원' 외에도 실버스포츠종목 보급, 행복나눔생활체육교실 운영, 실버축제 개최 등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사업내용까지 포괄하는 성과지표, 예컨대 운동용품지원, 실버스포츠종목 보급 지원, 행복나눔생활체육교실, 실버축제 등을 통해 생활체육활동을 하게 된 수혜자의 수 등과 같은 지표와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운동용품 지원 개소수는 2009년 900개소에서 2013년 2,626개소로 증가하여 전 기간에 걸쳐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희망 운동종목 등 수혜자들의 요구사항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의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스포츠바우처 지원(14-다-2-②)

- 스포츠강좌바우처 사업의 성과지표는 2009년~2010년에는 수혜인원 수였다가 2011년 이후에는 스포츠바우처 사업 수혜자 만족도로 변경되어 단순한 양적 산출지표에서 보다 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임
 - 다만 수혜자 만족도 조사가 가지고 있는 일부 한계 등을 감안할 때, 그리고 스포츠강좌바우처 사업을 통해 일시적이거나 스포츠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 자체 또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포츠바우처 사업 수혜인원 수 또한 보충지표로 함께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스포츠바우처 사업 수혜인원의 수는 2009년 9,402명에서 2013년 30,23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함
 - 평균 이용월 수도 2009년 5개월에서 2013년 약 7개월로 스포츠강좌 참여기간이 보다 장기화되고 있음
 - 다만 종목별로 보면 태권도 강좌가 71.5%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종목에 다소 편중되는 경향이 보이므로 다양한 체육강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장점검 실시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용카드 도입을 통해 결제의 투명성과 편의성이 제고되었고 전용 콜센터 운영,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지역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운영, 지원대상 연령의 확대, 예산집행을 제고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지자체 예산 인센티브제도 운영, 정보알림서비스(SMS) 확대 발송, 스포츠강좌 등록시설 안내표식 제작배포, 스포츠시설 확대를 위한 시설운영자용 안내물 제작배포 등이 조치가 취해짐

라. 총평 및 제언

(표 15-9)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14-다-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①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해 필요한 체육용품과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동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② 스포츠바우처 지원 : 유소년기 체육활동이 이후 건강 및 정서적·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과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율 저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스포츠강좌 바우처를 통해 이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집행	①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 사업실적 점검, 사업심사분석 실시, 고객만족도 조사,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피드백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② 스포츠바우처 지원 : 현장점검, 워크숍, 콜센터 운영, SMS 발송과 스포츠강좌 안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집행관리 및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성과현류	①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 성과지표는 운동용품 지원 개소 수로서 이 지표는 노인 및 소외계층에게 체육용품을 제공하여 생활체육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② 스포츠바우처 지원 : 성과지표는 2009년~2010년에는 수혜인원 수였다가 2011년 이후에는 스포츠바우처 사업 수혜자 만족도로 변경되어 단순한 양적 산출지표에서 보다 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임

□ 어르신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14-다-2-①)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해 필요한 체육용품과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동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성과지표로 설정된 ‘운동용품 지원 개소수’는 사업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버스포츠종목 보급, 행복나눔생활체육교실 운영, 실버축제 개최 등까지 포괄하는 성과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스포츠바우처 지원(14-다-2-②)

- 유소년기 체육활동은 이후 건강 및 정서적·사회적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은 수강료로 인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체육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저소득계층 유청소년의 체육교육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참

여울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종목별 이용액을 살펴보면 태권도 강좌가 71.5%로 일부 종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보이므로 다양한 체육강좌에 접근하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수혜자 만족도 조사 외에 사업 수혜인원 수와 같은 구체적·계량적 지표를 보충적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14-다-3)

가. 기획

- 동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참여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도자 배치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임
- 구체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청소년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생활체육을 위한 지도자를 배치하며,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화 등을 파악하고자 함
- 한편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함
- 다만 과제명이 기존의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로 변경이 되었는데, 과제명에서 사업의 지향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예산을 확대하고 개별면접조사로 전환하여 '생활체육 실태'뿐 아니라 '문화예술'이나 '여행' 등의 참여실태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정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다만 이 경우 조사수행주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다른 주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집행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원은 체육기금임
- 사업 예산은 사업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2009년 54억원에서 2013년 8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예산집행율은 2013년 기준 95%로 나타남
- 동 사업을 통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2009년 101명에서 2013년 230명으로 증가했으며, 개발·보급된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또한 2009년 457개에서 2013년 565개로 증가함
- 다만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보다는 조사연구에 보다 전문성을 가진 시행주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 성과환류

- 동 과제의 성과지표는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로서 사업내용이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측정산식에 있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인구를 '1주일에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안이 아닌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응답자'로 설정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생활체육참여율'의 측정산식과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특성상 집안을 제외한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자에 한해 참여자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엄격한 측정산식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 성과지표인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9년 7%에서 2013년 12.3%로 크게 증대하였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를 통해 자체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와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표본수 확대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를 수행하는 등 사업의 제도적 개선노력이 엿보임

라. 총평 및 제언

〈표 15-10〉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14-다-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참여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도자 배치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임
집행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사업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함.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의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보다는 조사연구에 보다 전문성을 가진 시행주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로서 사업내용이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교육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2012년부터는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사업을 추가 보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참여 실태와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다만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의 경우 표본 수가 작고 조사방법 또한 전화 설문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사연구에 보다 전문성을 가진 시행주체로 변경하고 표본 수와 조사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예술이나 여행 등 참여현황까지 포함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제16장 여성복지 분야

제1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제2절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16

여성복지 분야 <<

제1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15-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5-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15-가-1	실효성 있는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15-가-2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가. 기획

□ 과제 선정의 타당성

○ 정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4년),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수립(2004년)과 지속적 보완(2007년, 2008년, 2011년)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을 매우 적절

□ 세부시행과제

- 세부시행과제는 '성매매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의 2개로 선정
 - 국민이 체감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 범정부적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체계 내실화
 -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및 국민의식 개선
 -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충 및 개선
 -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을 위한 현장기능 강화
 -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한 일자리 제공사업 확대

○ 대상기간(2009~2013) 동안 세부시행과제의 변동 사항은 없음

□ 세부시행과제의 타당성

○ 본 중점추진과제의 세부시행과제는 2007년에 수정·보완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따라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과 본 중점추진과제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은 예방, 보호, 집행의 3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4개, 5개, 8개 등 17개 과제, 49개 시책으로 이루어짐

○ 세부사업 중 성매매방지대책은 종합대책의 예방 분야의 내용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어, 세부사업의 내용이 타당성이 높음

○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의 세부시행과제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과 무관하며, 일부 내용이 연계성이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타당성이 낮음

- 세부시행과제의 내용은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보호, 집행 분야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거나 또는 동일 분야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정하지 않음

- 세부시행과제 내용이 성매매피해자 지원보호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지엽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2013년에 15-가-1과 15-가-2의 2개 세부사업을 1개로 통합하였으나, 통합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이전과 차이가 없으며, 세부시행과제를 통합해야 할 외부적 요인도 없다는 점에서 행정적 편의에 의한 통합으로 판단됨

나. 집행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단 운영

○ 성매매방지 대책의 범정부적 추진, 관련기관의 연계 및 역할 분담,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단의 밀도 있는 운영을 통해 성매매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성은 필수적이며, 사업집행의 중심기관 및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의 내용 및 내용의 적절성
 - 본 중점추진과제(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의 성과지표는 '성매매방지 정책 만족도'
 - 성매매방지정책의 만족도의 측정
 - 2009~2011년의 3개년에 만족도는 성문화 온라인 실태조사를 통해 '성매매의 사회적 범죄행위 주장에 대한 공감 정도'로 측정하는 것으로 설정
 - 2012년 이후에 만족도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입소·이용자의 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
 - 성과지표의 적절성 평가
 - 정책의 만족도를 성매매행위에 대한 태도/인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과지표를 성매매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였음
 - 성매매방지정책의 만족도를 2012년부터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입소·이용자의 만족도로 변경한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시설 및 상담소 이용자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성과지표로 적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인 성매매방지정책의 만족도를 대표하는 성과지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성매매방지대책의 만족도는 2009~2011년의 3년만 측정
 - 만족도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100~104%)으로 달성하였음
 - 그러나 목표치의 설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약
 - 평가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성문화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성과지표(만족도)의 달성도를 파악할 수 없음
 -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2012년과 2013년의 2개년을 제시
 - 평가자료에 의하면, 이용자 만족도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
 - 그러나 성과지표를 변경한 사유가 적절하지 않으며, 성과지표 변경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한 것 역시 타당하지 않음

〈표 16-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15-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세부사업 중 성매매방지대책은 종합대책의 예방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어, 세부사업의 내용이 타당성이 높음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의 세부시행과제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과 무관하며, 일부 내용이 연계성이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타당성이 낮음
집행	성매매방지대책 추진단의 밀도 있는 운영을 통해 성매매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됨.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성은 필수적이며, 사업집행의 중심기관 및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성과환류	정책의 만족도를 성매매행위에 대한 태도/인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과지표를 성매매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였음

1. 실효성 있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15-가-1)

가. 기획

- 연차별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2009년에 '성매매 방지 및 건전한 성의식 제고'였음

며, 2010년 이후에는 '성 산업 축소와 여성의 인권 향상 추진'임

- 2010년 세부시행과제 목적의 변경은 적절
 - 2009년의 목적은 다소 추상적인 반면에 2010년 이후 과제의 목적은 보다 성 산업 축소라는 보다 명료한 내용으로 변경
 - 건전한 성의식 제고의 대상자는 일반국민(잠재적으로 성매수자)인 반면에 여성의 인권 향상의 대상자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인 피해자 관점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
 - 2009년에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매칭이 비교적 적절
 - 반면에 2010년 이후 세부시행과제의 목적 변경은 적절했으나, 변경된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연계되지 않음
 - 특히, 성 산업 축소라는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연계성이 미흡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전반적으로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추진점검체계 내실화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추진 실적 평가'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평가자료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단할 수 없음

나. 집행

□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추진실적 점검(추진점검단 운영)

- 추진점검단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단장으로 17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

- 추진점검단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34차 회의를 개최
 - 2009~2013년 기간 중에서 18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매년 3~4차례 회의를 통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
- 추진점검단의 운영은 내실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08년 이후 회의록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
 - 보도자료는 물론 이전과 동일하게 회의록의 전면 공개가 필요함

□ 성매매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 홍보 매체 및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판단되며, 홍보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있다고 판단됨
- 홍보와 더불어 성매매 예방교육에 역량을 집중하였고,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확대한 것은 주목할 성과임

다. 성과현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2009~2011년에 성매매 행위에 대한 국민인식(성매매 행위가 사회적 범죄라는 점에 공감 정도)이며, 2012년에는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율
- 2012년에 성과지표가 변경된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음
- 성과지표란 사업의 목적(목표)에 근거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본 과제의 목적인 성 산업 축소, (피해자)여성 인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타당함

□ 성과지표 달성도

-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 범죄라는 점에 공감하는 정도는 2011년에 72%로, 목표

치를 상회하고 있어 성과지표 달성도는 100% 이상

- 그러나 성매매가 범죄행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국민인식 개선의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임

- 2012년에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율 역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음
 - 의무교육 대상기관이 초·중·고,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교육 실시율을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율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제도 개선 노력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의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성과가 두드러짐
 - 성매매예방 의무교육,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그리고 대책 추진 전반에 걸쳐 많은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제도개선의 성과를 거둠
 - 특히, 성매매방지법 개정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외부지적 사항인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위험성 노출 및 청소년의 인식 부족 문제는 일회성 캠페인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향후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표 16-2〉 국민이 체감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15-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추진의 내용 역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음. 반면에 과제의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이 연계성이 부족하고, 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집행	과제의 추진체계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중심으로 적절하게 마련함.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계획된 사업의 내용은 효과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성매매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둠
성과환류	과제 추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 및 그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자체 노력에 의한 제도 개선의 상당한 성과로 연계되었음

2.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15-가-2)

가. 기획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

- 본 과제의 목적은 2009년과 2010년에는 피해자 보호와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1년에는 피해자 구조, 보호, 자립, 자활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 이후에 사회복귀 촉진과 재유입 방지를 추가
- 이러한 변화는 집행과정에서 과제의 범위 확대와 성과를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적절한 선택이라고 판단됨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시행계획(수단)의 연계성
 - 전반적으로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비교적 적절하게 매칭됨
 - 사업 목적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대안학교, 현장기능 강화, 지원시설의 확충, 의료·법률·직업훈련 등의 지원프로그램 확충 등이 추가
- 중기계획(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내용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됨
 - 장기발전방향에 언급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는 2009년 4월에 기관이 설립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다만, 기관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시행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

나. 집행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체계화 및 기반 마련

-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생활시설 3종, 이용시설 2종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성

- 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재정지원 방식의 확립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의 기반을 마련
- 지원시설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체계화 및 사업 집행을 위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집행관리
 - 지원시설 평가, 현장 점검 등 시설운영 점검과 사업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함
 -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
 - 민원, 불편사항 및 고충처리,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에 노력하는 등 운영·집행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짐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대상기간인 2009~2013년의 5년 동안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수'임
 - 사업 목적이 성과지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건수는 적절한 성과지표라 할 수 없을 것임
 - 사업의 목적에 근거한다면, 탈성매매 또는 재유입 방지 등을 의미하는 자립·자활 여성의 비율이 성과지표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달성도
 - 제도개선 건수의 달성치와 목표치를 비교한 성과지표 달성도 : 2009년 100%(5/5), 2010년 120%(6/5), 2011년 129%(9/7), 2012년 100%(6/6), 2013년 100%(7/7)
 - 2019~ 2013년 동안 성과지표 달성도는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각년도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한 근거가 미흡함

□ 제도 개선 노력

- 외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의 내용에 연계성이 미흡
 -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자활이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낙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함
 - 전문성 강화와 컨설팅으로 자립·자활 프로그램의 성과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낙인에 대한 대응 노력은 미흡하였음
 - 참여자(탈성매매 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 반면에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지원단의 운영을 통한 자체 개선노력은 충실하게 진행되었음
 - 추진단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자활사업을 내실화하는 노력과 이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보임

〈표 16-3〉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15-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과 추진 계획은 적절하게 기획되었으며, 목적과 계획내용(수단)의 연계성이 확보되었음
집행	과제 추진체계로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체계화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 내실화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성과환류	과제 추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성과지표의 내용과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은 미흡함

제2절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15-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5-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15-나-1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15-나-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

가. 기획

□ 과제 선정의 타당성

-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가 증가하면서 아동·여성의 안전의 위협, 가정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
-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예방, 성폭력·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
-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본 과제의 선정은 매우 적절

□ 중점추진과제의 세부시행과제

- 세부시행과제는 '사회안전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 등 2개로 설정함
- '아동·여성폭력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은 종합대책 마련과 시행, 제도 개선, 예방활동 등에 초점
 - 범정부적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운영 내실화
 - 아동·여성 안전영역 지표 개발과 국가차원 수준에서 관리·점검
 -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제도 개선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정비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 강화
- '폭력 피해 아동·여성 지원 서비스 개선'은 시설 확충, 보호·자립지원서비스 등

의 내용으로 설정

-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지원서비스 내실화
-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대상기간(2009~2013) 동안 세부시행과제의 변동 사항은 없음

□ 세부시행과제의 적절성

- 세부시행과제는 '인프라 구축'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자의 세부시행과제는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이전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 및 방지, 사업의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며
 - 후자의 세부시행과제는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이후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충과 제공을 내용으로 함
- 본 중점추진과제의 세부시행과제의 설정은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통합센터 설치·운영이 장기발전방향에서는 15-나-2에 포함될 반면에, 연차별 계획에서는 15-나-1에 포함되어 있으며,
 - 연차별 계획의 15-나-2 세부시행과제명이 여성폭력피해자로 되어 있어, 아동폭력피해자에 대한 사업이 생략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 따라서 15-나-2의 세부시행과제명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 또는 장기발전방향의 '폭력 피해 아동·여성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집행

□ 중점추진과제의 추진체계 구축

- 본 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대책을 보완·확충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담당부처, 경찰, 지자체, 서

비스제공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추진체계의 수직적 편제는 잘 구성된 반면에 수평적 협업체계는 다소 미흡함
 - 성폭력·가정폭력 문제의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보호체계(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그리고 아동, 여성,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기관(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및 각종 복지시설)과의 협업이 필수
 - 경찰, 검찰, 법무부 등과의 협업이 주로 성폭력 문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
 -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구분하는 등 분절적 제공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들 기관의 인력, 예산 등의 측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역량에 한계를 노출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구축·운영하는 등 다차원적 추진 체계를 구성한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의 내용 및 내용의 적절성

- 본 중점추진과제(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의 성과지표는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로 설정됨
 - 이용자 만족도는 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②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등 2개를 평균하여 측정
- 이용자 만족도는 세부시행과제 15-나-2의 성과지표로 적절할 수 있으나,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로는 적절하지 않음
 -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성과지표로서 적절하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의 대표 성과지표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음

- 장기발전방향의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여성 안전영역 지표'가 보다 포괄적인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로 판단됨

□ 성과지표의 달성도

-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101~105%)으로 달성
- 목표치 설정 수준은 82점(2009년), 83점(2010년), 83.4점(2011년), 84.2점(2012년), 87.8점(2013년)
 - 목표치 설정 수준 및 매년 목표치 증가 폭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근거 미약

〈표 16-4〉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15-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부시행과제 내용이 장기발전방향과 연차별 계획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 중점추진과제의 기획은 적절하게 이루어짐
집행	법정부차원의 추진체계 및 민관협력체계 등 다차원적 추진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기존 전달체계나 복지시설 등과의 수평적 협업체계는 다소 미흡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계획대로 모두 달성했으나, 성과지표의 내용과 목표 설정 수준의 적절성에는 다소 의문이 있음

1.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15-나-1)

가. 기획

□ 연차별 계획의 세부시행과제 목적

- 세부시행과제 목적의 연도별 변화
 - 2009년에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체계에서 2010년 이후에 '지역안전망'과 2013년에는 '지역차원'의 용어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음
 - 반면에 '폭력 예방'은 2009년에 제시되었다가 2010년 이후에는 안전망 강화라는 용어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세부시행과제 목적의 타당성

-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강조한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사회안전시스템을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결과
-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및 보호대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룸
- 그 결과, 세부시행과제의 내용이 지역연대와 지원시설 중심으로 편향되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세부시행과제 목적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계획

-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차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연대 구성과 원스톱 지원센터를 정책수단으로 선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함
-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일관성
 - 2009~2013년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은 일관성이 있으나, 반면에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과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은 일관성이 결여
 - 점검단 활동 및 종합대책의 이행상황 점검 등은 2010년 이후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아동·여성 안전영역 지표 개발,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정책대안 마련,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관련한 법령정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 연차별 시행계획은 성폭력·가정폭력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연대 구성·운영,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에 비해서 연차별계획이 축소된 형태로 기획된 결과

나. 집행

□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 점검

- 종합대책 추진 및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이행점검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할 수 없음

- 제출된 평가자료에 의하면,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집행체계 구축, 관련 사업의 집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원스톱 서비스 혹은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지향한 것은 바람직
- 다만, 통합지원센터가 원스톱 지원센터(17개소), 해바라기 아동센터(8개소),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8개소) 등으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음. 향후 명실상부한 통합센터로 확대·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아동·여성 지역연대

- 지역연대의 지속적인 신설과 확충, 운영지침 표준화,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서 지역연대 운영의 내실화에 역점

□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정비 현황 및 그 내용
- 성폭력 관련 법률을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으로 분리입법 추진 여부
- 아동·여성 안전영역 지표의 개발
- 성폭력·가정폭력 실태 조사 및 결과 활용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인지 인권교육으로 통합 추진 여부 등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의 추진 여부 및 그 실적

다. 성과환류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목표는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이며, 목표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는 지원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정

- 성과지표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음
 -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2009년)
 - 센터 만족도(2010년)
 - 해바라기아동센터 및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이용자 만족도(2011~2012년)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2013년)
-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변화는 목표치의 재설정이 필요
 - 2012년에 만족도 조사지 항목 세분화, 원스톱지원센터 만족도 포함 등의 변경으로 성과지표의 측정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성과지표 측정방식이 변경되었다면 목표치의 재설정이 필요하며, 제시된 평가자료에는 성과지표 변경의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향후, 본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발전을 위해서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지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함

□ 성과지표 달성도

- 본 과제의 성과지표 달성도는 2009~2011년의 기간에는 달성치가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상회하고 있어 달성률이 100% 이상
- 반면에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2012년에 93.4%, 2013년에 90.6%로 하락
- 성과지표 목표치는 2009~2012년의 기간에 전년 대비 소폭 상승의 관점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에 목표치를 90.5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 제도 개선 노력

- 자체 점검을 통하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한 점은 매우 긍정적임
- 반면에 부처간 협의 및 점검체계 운영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표 16-5〉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15-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사업내용은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간의 괴리가 있고, 사업의 목적과 지향성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국한되는 경향성을 보임 사업의 기획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제시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계성과 일관성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집행	본 과제의 추진체계는 지역연대와 지원센터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지역차원의 지원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반면에 기존의 보호체계, 여성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각급학교 등과의 수평적 협업체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성과환류	과제 추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성과지표 달성도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2.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15-나-2)

가. 기획

□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됨

- 2009년과 2010년의 과제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며, 2010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선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추가
- 2011년 이후에는 과제 목적이 제공자 관점(서비스 제공)에서 피해자 관점(피해자 회복 지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함
- 2012년 이후에 지원서비스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폭력피해 회복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을 정리하고 있음

□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시행계획

- 세부시행과제 목적과 연차별 시행계획(수단)의 내용은 매정이 비교적 적절
 - 세부시행과제의 목적은 연도별로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동일
- 장기발전방향과 연차별계획의 내용은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함

- 시설 평가 이외에 인증제 도입 검토, 평가와 국고지원 연계 등의 내용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언급되지 않음

나. 집행

- 지원시설의 운영
 - 긴급전화,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운영, 종사자 보수 및 전문교육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체계를 정립
 -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위탁 등의 방식을 통한 자원 획득과 서비스 제공을 차질 없이 진행함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정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피해 발생에서 복귀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긴급전화,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의 연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성폭력과 가정폭력 영역을 구분하여 서비스 지원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으나, 관련 지원시설의 영세화로 인한 서비스 제공역량의 미흡, 통합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통합하는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시설운영의 관리감독
 - 2010년과 2013년에 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를 차질없이 실시
 - 시설평가 결과와 국고지원 연계, 평가결과 전면 공개 등 평가의 목적과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

다. 성과환류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 본 과제의 성과지표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로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 목표치는 전년도 달성치를 감안하여 당해연도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만족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함
 - 이용자 만족도는 본 과제의 성과지표로 적절함
 - 다만, 만족도는 조사 시점, 문항, 조사 방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성과지표 달성도
 -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성과지표)의 달성치는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과지표 달성도는 102 ~ 106% 수준
- 제도 개선 노력
 - 자체 개선 노력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한 제도개선 성과를 나타냄
 - 외부 지적사항(국회)에 대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함

〈표 16-6〉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서비스 개선(15-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본 과제의 추진 목적과 내용은 타당하게 설정되었으며, 과제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내용이 잘 연계되어 있음 반면에 장기발전방향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상이하며, 장기발전방향의 내용의 일부가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
집행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 종사자 교육, 시설 평가 등 집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향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영역의 통합하는 전달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성과환류	과제 추진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향후 만족도 지표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자체 노력과 외부 지적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필요한 제도개선의 성과를 실현함



제17장 농어촌복지 분야

- 제1절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 제2절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
- 제3절 농어촌 보육교육여건 개선
- 제4절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

제1절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16-가)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6-가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16-가-1	기초생활보장제 특례 개선
		16-가-2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16-가-3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16-가-4	농지연금사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
		16-가-5	농어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

- 농업농촌은 농산물 시장개방, 고령화 심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으로 활력 저하와 고령농가 증가 및 연령대별 소득수준 차이 등으로 농가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고령농이 될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
-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낮은 소득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부조 취약으로 농업인 다수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함. 농어촌 및 농업 종사자의 생활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정부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농어촌 및 농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
 -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제도 도입('11) 및 지원으로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노후생활 지원
 - 농업인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신체나 재산에 대

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을 통해 주민주도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지원

- 대외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보장과 농어촌 거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시행과제들이 구성됨
 - 농어업인 생활안정 분야는 5개의 세부시행과제로 구성됨
 -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가 특례개선. 둘째,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개선. 셋째,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 넷째, 농지연금 도입. 다섯째, 농어업인 재해 보상 강화 임
 - 위 사업 중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육성은 계획초기에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 활성화”과제를 변경 강화한 사업임
-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를 목표로 설정된 동 사업들의 경우 농어업 종사자의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시행과제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청장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은 고령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가 특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및 재해보상 강화는 농어업 일자리 확대와 농어업 종사증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의 경우 정부가 사회적 경제 강화를 기조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공동체 회사들을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전환하는 것은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사료됨
- 중점추진과제의 목표는 고령화와 소득감소 등으로 노후가 불안정한 농업인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농지연금 및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 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 강화
- 향후 차기 사업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임. 현재 설

정된 성과지표는 “연금보험료 지원자의 납기 내 징수율”로서 동 지표가 중점추진과제인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를 대표하기에는 한계

○ 세부시행과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도농간 소득격차 변화’, ‘19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가입률’ 등 농어촌 및 농어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함

〈표 17-1〉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16-가)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를 목표로 설정된 동 사업들의 경우 농어업 종사자의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점추진과제와 세부시행과제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
집행	중점추진과제의 목표는 고령화와 소득감소 등으로 노후가 불안정한 농업인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농지연금 및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 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 강화
성과환류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이 개선되었으면 함.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는 “연금보험료 지원자의 납기 내 징수율”로서 동 지표가 중점추진과제인 ‘농어업인 생활안정 강화’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가 특례 개선(16-가-1)

가. 기획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 등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산정시 소득재산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농어촌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필요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수급자 선정 및 급여산정으로 농어업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 적용 확대
-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이
 -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농어민가구 가구특성별 지출항목으로 추가,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산정에서 제

외 (2010.1월)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개정, 농지소유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금 시행규정」에 따른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실제소득에서 차감(2010. 3.29)

나. 집행

- 세부시행과제의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보장기관 (시·군·구청장)
 - (총사업 기간) 매년 1월~ 12월(연중)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년 1회)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 절차 및 과정
 - (사업시행 절차) 급여신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세부시행과제의 집행관리
 - 기초수급자 농어업인 소득산정 특례 확대안 마련 (2009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 개정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 예산
 - 재원형태 : 국비 서울 40~60%, 그 외 70~90%, 지방비 서울 60~40%, 그 외 30~10%
 -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복지지출 비율에 따른 차등보조제도 운영

- 세부시행과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소득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해당 예산 별도 구분 불가

다. 성과환류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
 - 기초생활보장제 농어가 특례 개선에 따른 적용대상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치의 설정은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이용 농어민가구 특례적용 대상을 근거로 함
- 성과지표 달성도는 당초 목표대비 초과 달성함 (4년 평균 104%)
- 세부시행과제의 성과지표와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간의 관련성
 - 기초생활보장제 농어가 특례 개선에 따른 적용대상 가구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며, 또한 2010년 특례확대에 따라 2011년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농어민가구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확대, 기초생활보장제 농어가 특례개선
 - 경영이양소득보조금(2010년),
 -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2011년)
 -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 특례 확대를 위하여 관련 법령(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개정 완료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 (지적사항) 각종 농어업인 특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촌지역 빈곤률이 높

으므로 농어민가구에 대한 특례 추가 확대 필요

- (대처노력)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제도 특례 추가 확대 추진
 - 기초생활수급제도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별 지출(차감)항목 추가 확대(3→7개)
 - 대상직불금 확대를 위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완료('14.8.1 시행)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관련 지침 개정완료, '14.1월),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시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농촌특례 적용

라. 총평 및 제언

〈표 17-2〉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가 특례 개선(16-가-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동사업은 농어촌 및 농어업 종사자 중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초기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포함된 사업으로 장기발전계획의 목표와도 일치 농어촌 주민 및 농어업 종사자 생활안정을 위한 적절한 사업임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사업내용과 지원내용은 한정되어 있음
집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함께 수행하는 사업으로 체계와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 예산교육 및 모니터링 등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지만, 읍면 업무특성상 동 사업에 대한 자원 투입 한계 지자체 차원에서 집행과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 관리체계 구축은 한계
성과향류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목적에 충실하게 설정됨 성과목표가 본래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들이 수행

- 농어촌 주민 및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지원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
- 2014년 하반기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시 급여분리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특히 주거급여 측면)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보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16-가-2)

가. 기획

- 시장개방, 농어업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소득격차(농가/전국) : ('05) 88%(30,503원/34,779) → ('10) 74%(32,121천원/43,851)
-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나. 집행

- 세부시행과제의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식품부, 국민연금공단
 - 사업시행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 → 농어업인) → 보험료 납입(농어업인 → 공단) → 보험료 지원(농식품부 → 공단)
- 예산 : 재원은 국비 100%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추진실적

년도	월평균 지원인원 (천명)	보험료 지원금액 (백만원)	비고
2009	230	88,847	기준소득금액 73만원
2010	234	86,079	기준소득금액 79만원
2011	256	98,424	기준소득금액 79만원
2012	266	92,428	기준소득금액 79만원
2013	290	123,782	기준소득금액 79만원, 경영주가 아닌 협업농까지 지원확대

다. 성과환류

□ 세부시행과제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률)
2009년	국민연금 가입유지 및 확대	납기내 징수율	85	88 (104.0%)
2010년	국민연금 가입유지 및 확대	납기내 징수율	86	88.5 (102.9%)
2011년	국민연금 가입유지 및 확대	납기내 징수율	87	88.5 (101.7%)
2012년	국민연금 가입유지 및 확대	납기내 징수율	88	91 (103.4%)
2013년	국민연금 가입유지 및 확대	납기내 징수율	89	91 (102.2%)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지원대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상·하반기 일제조사 실시
- 국민연금 가입유지 및 확대를 위한 홍보 실시
-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경영주가 아닌 협업농 사업대상 포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17-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16-가-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촌 고령노인 증가는 도농 소득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청장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주요한 사업임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은 적절하며 장기발전계획 목표와 부합 초기 농어업종사자중 협업배우자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적정성에 있어 한계 사업내용은 기획에 부합되게 설정됨
집행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고 국민연금공단이 협업한다는 점에서 추진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예산은 국비로 인력 등은 국민연금공단을 적절히 활용 부처간 협업 사업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복지부산하 연금공단간 사업 집행 및 관리가 잘 진행됨.
성과환류	연금보험료라는 특성을 고려시 징수율은 성과지표로서 부합됨. 하지만 목표치를 초기 과소하게 설정함 본래 목표로 설정된 목표는 달성됨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농어업인 생활안정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

- 농어촌에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향후 농어촌 생활안정을 위한 우선지원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필요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라는 점에서 동 사업은 의미 있으며, 향후 지속적 발전이 요구됨
- 여러 측면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며, 협업배우자가 2013년부터 포함된 점은 발전된 제도 개선임
 - 하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목표인 기준소득의 변화는 계획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정부지원 수준을 볼 때 여전히 농어업인의 보험징수율이 90%초반이라는 점은 도시근로자 징수율에 비교시 낮은 수준임
 - 농어업 종사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 근로자 수준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향후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3.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16-가-3)

가. 기획

- 농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일자리는 감소하는 반면, 복지 수요는 증가하여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 반복으로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어려움
- 한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성격의 조직이 나타나면서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사례가 등장하여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활성화하기에 좋은 기회
- 침체된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체계를

- 마련 하는 등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정책 도입 추진('10~'11)
-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수립('10.4), 실태조사 추진('10.5), 법률 개정('10.7), 지자체 담당자 대상 활성화 워크숍 개최('10.12)
- 지원센터 개설('11.2) 및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육성('11, 54개소)
 - 연도별 예산 : ('11년) 54개소 15억 → ('12) 54, 15 → ('13) 54, 15
- (개요)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R&D,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개소당 국비 25백만원(1,350백만원, 54개소), 최대 2년
 - 지원센터 운영 : 공동체회사 컨설팅, 모니터링, 우수사례 확산 등
 - 추진근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나. 집행

- 세부시행과제의 사업추진주체는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시행과제의 집행관리(홍보, 제도개선, 모니터링 등)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워크숍 개최,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계자 회의 및 워크숍 개최,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현장점검,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제도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간 연계,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를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 등
- 예산(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25%, 지부담 25%)

다. 성과환류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농어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매년 실시(총 4회 : '10 ~ '13년)

-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정책개발 및 지역별 공동체회사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10.4)
 - 농어촌공동체회사의 개념, 유형별 모델정립, 육성방향, 추진체계 마련 등
-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침 마련('10.12)
- 농식품부-고용부 MOU체결('10.10) : 농촌분야 사회적기업 육성·협력
-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정책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와 정책간 연계('12.2)
 - 지원대상 농어촌공동체회사를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지원 등 추진
- 사회서비스제공형 중심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13.11)
 - 제도 도입('11.1) 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 최대 지원기간 확대(2→3년), 자금 사용용도 완화 등

□ 지적사항

-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대상이 타부처 및 부내 유사사업 지원과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11년 결산, 예산정책처, 상임위)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제와 연계 제고방안 필요('11년 결산, 상임위)
-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물량 증액 필요('11년 예산안 예결위 지적)

□ 대처 노력

- '13년 지침을 개정('12.12)하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국비사업과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
-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선정된 조직체를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2), 사회적기업 관련 제도와 연계

라. 총평 및 제언

〈표 17-4〉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16-가-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해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은 주요한 사업입 사업설정 근거와 장기발전계획과도 부합되는 사업입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농어촌공동체 회사를 지원하는 수단은 바람직 기존의 유사사업과의 중복성문제 및 최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과의 차별성 부각은 부족
집행	중앙 및 지방정부, 공사가 함께 참여하며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컨설팅은 바람직 자원(예산, 인력 등) 투입은 적절히 수행되고 있지만 매년 지원규모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음 집행관리, 교육, 모니터링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됨
성과환류	공동체회사의 개소 수 및 매출액 등의 지표설정은 적절하나, 2013년 지표변화의 설명이 부족 매년 목표는 초과달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향후 사회적 경제(예, 협동조합 등)측 면에서 농어촌공동체회사의 특성 부각이 필요

- 농어촌지역의 좋은 일자리 감소는 청장년층의 도시이주를 높이고, 농어촌의 청장
년층이 공동화되는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활력 잃은 농어촌화 가능성이 상존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은 청장년들이 계속해서 농어촌에 남아 생활할 수 있는 근
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주요한 사업입
 - 하지만 현재 사업의 내용을 볼 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함
 - 성과지표가 개소 수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되었지만 그 근거설명이 부족하며,
실제 지원개소 수는 54개로 동일하면서 농어촌공동체 회사 설립 수는 2011년
약 1200여개, 2012년 약 2200개로 통계가 나와 있어 추가설명 필요
- 향후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수
행하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발전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 필요

4. 농지연금사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16-가-4)

가. 기획

-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등 공적
부조 취약으로 농업인 대부분이 노후생활 불안정
 - 65세 이상 농가인구(%) : ('90) 11.6 → ('00) 21.7 → ('13) 37.3(전국 12.2)
 - 65세 이상 농가 594천가구중 연금 미수급 농가('09) : 45.7%
-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농촌형 역모기지) 도입 필요성 제기
 - 농가 고정자산의 70%가 농지임을 감안하여 농지를 활용한 상품개발 검토
-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및 내용
 - 농지연금제도 도입 및 시행('11.1)으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강화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09.6), 상품모형 설계 연구용역
('10.3~8) 등
 - 농지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 ②항 신설('11.7)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 개정('13.12)
 -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
진하였으며, 국정과제 단위과제로 농지연금이 선정됨
 -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13.1) :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 면제, 6억
초과시 6억만 면제
- 사업개요
 -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0,000㎡이하 농업인
 -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하고 가입자 사망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의 상환 또는 저당권 실행을 통해 채무회수

- 사업목적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나. 집행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시행과제의 집행관리(홍보, 제도개선, 모니터링 등) :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도입·시행 발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상품모형설계 연구용역, 농지연금 홈페이지 개설(www.fplove.or.kr), 농지연금 본격 시행, 농지연금 집중 홍보, 농지연금 간담회 개최, 농지연금모형 리스크 평가 용역,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상호협력 MOU 체결 등

다. 성과환류

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률)
2011년	농지연금 가입률	(누계 가입건수*/15,000호**) × 100% * 지원농가수 **목표농가수('11~'15)	3.3	6.7 (203.0)
2012년			13.9	14.7 (105.8)
2013년			17.0	17.4 (102.3)

- 외부기관 지적사항
 - '12년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 : 주택연금과 비교할 때 감정가기준, 재산세 감면여부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제도개선 검토 필요
 - '13년 국정감사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할 필요
- 지적사항에 대한 대처노력
 - 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13.1)

- 6억 이하인 농지의 경우 재산세 면제, 6억 초과 경우 6억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면제
- 가입연령 조건을 완화하여 다문화가정 등 부부의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함*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공포('14.5.9)
- 가입연령 : (현행) 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개선) 가입자만 65세 이상

라. 총평 및 제언

<표 17-5> 농지연금사업 조기정착 및 활성화(16-가-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촌 고령층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임. 하지만 농지소유가 적거나 없는 저소득 농업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 목표설정과 내용이 일관성 있으며, 장기발전방향과도 부합됨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책수단이 바람직 사업내용 및 재원확보는 적절하게 수행. 다른 사업과의 연계, 차별성 부각이 필요
집행	초기 사업으로 향후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런점에서 금용기관이 아닌 농어촌공사가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지 평가 요구 예산, 인력 및 교육 등이 적절하게, 계획한대로 수행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이 시기별로 적절히 수행
성과환류	연금이라는 특성상 가입률을 성과목표로 둔 점은 바람직 하지만, 모든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지표 개발 고민이 필요 성과목표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었음. 하지만 주택연금 등과의 차별성 부각은 부족

- 농지연금 사업은 도입초기이며, 향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주택연금과 같은 다른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고령 농어업종사자들의 소득보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농업인들의 농지소유에 대한 보유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농지연금이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알리는 작업이 함께 진행될 필요 있음
- 하지만 농지소유가 적거나 없는 농업인의 경우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농지소유에 따른 차별성 발생가능성이 함께 상존

- 농지이외 소유자와 낮은 농지를 가진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생활안정 강화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5. 농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16-가-5)

가. 기획

□ 배경 및 필요성

-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사고·질병 등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정장치가 미흡하므로 농업인력의 안정적 유지 및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안정망 설치 필요
- 민간보험으로 운영 중인 '농업인재해보험'의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은 점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독립된 법적근거(「농어업인 안전보험」제정)를 갖춘 농업인안전보험 도입 추진

□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농업인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재해 시 이를 보험으로 보상

- (지원내용) 보험료 국고 50%(자부담 50%) 지원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 (목적)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농가 생활안정 도모

나. 집행

□ 추진체계

- 사업대상자
 - 농업인재해보험 : 만 15~84세로 영농립에 종사하는 농립업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 보험사업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보험(NH농협생명), 농기계종합보험(NH농협손해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농협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협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다. 성과환류

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률)
2009년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농업인재해 보험 가입률	48.9%	49.6% (101.4%)
			* 전년실적 대비 4.5% 증가 목표	
2010년			51.0%	51.7% (101.4%)
			* 전년실적 대비 3.0% 증가 목표	
2011년			52.4%	53.7% (102.4%)
	* 전년실적 대비 1.5% 증가 목표			
2012년		55.7%	54.2% (97.3%)	
	* 전년실적 대비 3.5% 증가 목표			
2013년		57.7%	55.7% (96.5%)	
	* 전년실적 대비 6.5% 증가 목표			

□ 지적사항

- 농업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의무가입 방식의 농업인안전보험을 도입하여 현행 농업인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법 제정 요구

□ 대처노력

- 농업인 및 농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급여수준을 강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임의가입 방식의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제정 추진('13.12 국회제출)

라. 총평 및 제언

〈표 17-6〉 농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16-가-5)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업재해율이 산업재해율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재해보상 도입은 필요성 높은 사업임 장기발전방향과 부합되며, 목표가 분명함 보험을 농협에서만 다루고 있어 사업자 확대를 통한 가입자 제고노력이 필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집행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고 민간업체(농협보험)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바람직. 단 가입자 제고 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 관련 예산과 인력이 적절히 투입되고 있음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바람직
성과환류	재해보험이라는 점에서 가입률을 기준으로 한 점은 바람직함 일부 연도에 성과가 목표에 다소 미흡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외부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는 못함(강제가입)

- 2013년 기준 농업재해율은 1.4%로 노동자 산업재해율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임.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농작업중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측면에서 농어업인 대한 재해보상보험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초기 도입이후 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가입률 제고를 위해 농협이외 다른 보험회사들의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보상 범위 및 수준을 강화하여 농작업중 재해로 부상을 입은 농어업인들이 재해이후에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

6. 어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16-가-5)

6-1.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 기획

- (개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하여 순보험료 및 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체계적인 요양과 보상을 통하여 어업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안정된 어업활동 지원

- (목적)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경영 지원
- 세부시행과제의 연차별 시행계획
 - 사업대상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 사업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톤급별 차등 지원

나. 집행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수협중앙회
 - 사업시행 관리·감독 : 해양수산부
 - 2013년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감독기관 변경
 - 사업시행 주체 및 관련기관 담당직무(업무)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사업시행지침 시달, 자금교부 및 사업집행 감독
 - 수협중앙회 : 회원조합 보험사업 관리 감독, 사업·정책 홍보 및 교육
 - 회원조합 : 보험가입신청접수, 보험료 수납, 보험금 지급
- 세부시행과제의 집행관리
 - 사업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 연중 수시로 어업인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험제도 홍보 및 가입율 제고 등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의견 수렴
 - 어업현장 밀착형 홍보강화를 통해 정책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

- 어선기관무상점검 서비스 및 어선원 보상업무 현장서비스 등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민원 창구를 통한 어업인의 고충처리
 - 보험요율 산출 전문 법인을 통한 적정 요율 검증
- 예산
- 재원형태 : 국비 15~71%, 지방비 -, 자담 29~85%

다. 성과환류

- 성과목표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을 제고로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
- 성과지표명 및 개념 : 어업인 및 어선원이 어업 관련 활동 또는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체 상해 및 인명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어선원보험 가입율 정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여부 : 보험가입율은 어선원 및 어선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어선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목적과 지표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음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013년도 성과계획서상 어선원 · 어선 재해보험 가입율은 최근 3개년 평균 실적에 10% 증가를 목표(16%)로 설정
 - 어선원보험 = 15.95%(14.5% * 110%)
 - 최근 어획부진으로 매년 보험가입대상 어선이 감척되고 있는 추세에서도 목표는 10% 증액 ('10년) 74,718척 → ('13년) 67,368척
 - 외부환경 대비 :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어획 부진으로 감척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의 가입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성과제고 대비 : 보험가입을 제고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 캠페인 실시 및 각종 안내장 제작, 수산전문지 광고 등의 홍보 사업을 추진

□ 성과지표 달성치의 설정 근거

- 측정산식 : (어선원보험 가입어선 척수/어선원보험 가입대상어선 척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각 년도별 1. 1 ~ 12. 31
 - 측정수행기관 : 수협중앙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수협중앙회)

□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연도별 현황

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달성률)
2009년	어선원재해보험가입률	가입률	80	80(100%)
2010년	어선원재해보험가입률	가입률	12.2	13.1(107.4%)
2011년	어선원재해보험가입률	가입률	12.5	14.3(114.4%)
2012년	어선원재해보험가입률	가입률	14.5	16.1(111%)
2013년	어선원재해보험가입률	가입률	16	16.7(104.4%)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등을 통해 어업인설명회 및 간담회, 어선원 보상업무 현장 서비스, 어선기관무상점검 서비스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사업시행주체(수협중앙회) 자체 제도 개선
 - 외부기관 연구용역 '어선원 및 어선보험 제도 발전방향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추진방식 변경 등을 객관적·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약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6-2. 수산인 안전공제

가. 기획

□ 배경

- 국정과제(국정 52-1-1) 사업으로서 보상체계 강화
 - 보험금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어업인의 보장수준 확대
-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입법예고중 (2013. 12월)
 - 새 법령에 따른 상품 개정 및 국고보조 사항 제정 필요

□ (개요) 수산인안전공제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수산인의 수산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촉진

□ (목적) 경제활동중의 상해를 보장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연차별 시행계획

- 사업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배우자
- 사업내용
 - 수산인안전공제 주계약 순공제료 및 부가공제료 지원
 - 순공제료 : 공제가입자의 순공제료(총 공제료의 85%)중 50% 지원
 - 부가공제료 : 공제가입자의 부가공제료(총 공제료의 15%)중 50% 지원
- 세부시행과제 연차별 계획의 연도별 추이
 - 농업인의 경우 부부형 가입시 부부중 1인이 농업인에 해당 할 경우 그 배우자 또한 가입이 가능한 반면, 어업인의 경우 부부형 가입시 부부 모두가 어업인에 해당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농업인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사업대상에 어업인의 비어업인 배우자 추가

-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 등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2012년부터 사업대상 어업인의 가입나이를 기존 만 84세까지에서 만 87세까지로 확대

나. 집행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수협중앙회
- 사업시행 관리·감독 : 해양수산부
 - 2013년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감독기관 변경
- 사업시행 주체 및 관련기관 담당직무(업무)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사업시행지침 시달, 자금교부 및 사업집행 감독
 - 수협중앙회 : 회원조합 사업시행 관리 감독, 사업·정책 홍보 및 교육
 - 회원조합 : 상품상담 및 안내, 공제료 수납, 공제금 지급

□ 세부시행과제의 집행관리

- 사업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 사업시행지침 등을 통해 현지 점검, 일제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
-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민원 창구를 통한 어업인의 고충처리
- 보험요율 산출 전문 계리법인을 통한 적정 보험료 검증

□ 예산

- 재원형태 : 국비 50%, 자부담 50%
- 과목표의 초과 달성에도 불구하고 공제료 부담을 이유로 고액형, 표준형 가입보다 상대적으로 공제료가 저렴한 절약형 위주의 가입이 이루어짐.
 - 중도 가입해지(어선원 보험으로 전환 또는 어업활동 중단·전업 등에 의한

중도 계약 해지)함으로써 보조금 환수액 및 불용액 발생

다. 성과환류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

- 성과목표 : 어업인 및 어업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공제료 지원 등을 통해 수산인안전공제 가입을 유도하고 재해시 수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 복지증진을 도모
- 성과지표 : 어업인 및 어업인의 배우자가 수산업 관련 활동 또는 각종 사고 발생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체 상해 및 인명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율 정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여부
 - 수산인안전공제는 어업인이 수산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체 상해 및 인명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어업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업인이 최대한 많이 가입하여야 하므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짐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근거
 - 어선원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가입대상에 어업인 감소(통계청 어업 총 조사 자료에 따른 어업 종사자 수 감소)를 감안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함

□ 성과지표 달성도는 2012년(98.1%)을 제외하고는 100%를 상회

- 어업인의 경우 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산인안전공제의 공제료가 농업인안전보험 대비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안전보험과 동일한 국고보조율로 계약자 본인이 부담이 많음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농어업인 복지증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시행지침 등을 통해 현지 점검,

일제조사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수산인안전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현장 마케팅 및 예산 지원
- 수산인안전공제 보장수준 확대
- 국고보조 대상 확대

○ 사업시행주체(수협중앙회) 자체 제도 개선

- 어업인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수기 청약제도 도입

라. 총평 및 제언

〈표 17-7〉 어업인 재해보상 지원 강화(16-가-5)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위험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재해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란 점에서 의미 있음 장기발전방향과 부합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수협과 협력사업이며 지속적으로 사업개선을 위해 노력 어업인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적절함
집행	민간(수협)협력사업으로 추진체계가 잘 정리됨 예산집행률이 다소 미흡 민관협력 사업으로 모니터링 및 집행이 적절히 수행됨
성과환류	성과목표는 본 목적에 맞추어 설정됨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일부 성과가 다소 미진함 제도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

□ 어업재해보상과 수산인 안전공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가입이 꾸준히 제고되고 있지만, 전체 어업인대비 가입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지속적인 홍보와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인 가입률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자 등과 같은 비어업인들이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과 같이 보장내용과 수준에서 차별성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됨

제2절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16-나)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6-나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	16-나-1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16-나-2	농어업 질환 예방 및 농어업인 건강증진 지원

-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노인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농어업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찾아내고 이를 지원하는 것 역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한 사업임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서 노인들의 경우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업인 의료보장 강화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위와 같은 목적 하에 농어업인 의료보장에서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과 농어업인 질환예방 및 농어업인 건강증진 지원의 두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식품부가 복지부와 함께 수행하는 협업사업이며,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은 농식품부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집행체계가 명확함
- 성과지표를 의료보장이란 점에서 건강보험 지원료를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만, 실질적 의료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보장에 대한 보장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 여러 관련지표를 검토하고 이를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바도 중요함

〈표 17-8〉 농어업인 의료보장 확대(16-나)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업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더불어 노동자와 차별되어 나타나는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찾아내고 이를 지원하는 것 역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한 사업임
집행	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식품부가 복지부와 함께 수행하는 협업사업이며,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은 농식품부가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집행체계가 명확함
성과환류	성과지표를 의료보장이란 점에서 건강보험 지원료를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만, 실질적 의료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보장에 대한 보장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 여러 관련지표를 검토하고 이를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바도 중요함

1.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16-나-1)

가. 기획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
 - 의료기관의 8.6%, 병상수의 13.2%, 의사 중 6.6%만 농어촌에 소재(09.12)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의료비) 경감과 복지증진 도모

나. 집행

- 사업시행주체 : 농식품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시행절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 → 농어업인) → 보험료 납입(농어업인 → 공단) → 보험료 지원(농식품부 → 공단)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 보험료 지원세대는 2009년에 457천 세대에서 2013년에 387세대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감소에 따른 것임
 - 지원금액은 전체 보험료 대비 28%를 유지

다. 성과환류

- 세대당 지원금액은 2013년에 68,728원으로 목표 대비 120.6% 수준이며, 장기 발전방향 기간 동안 달성률은 100%를 상회
- 세부시행과제의 성과지표와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간의 관련성
 -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

함으로써 「세대당 건강보험료 지원수준 향상」에 기여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지원자격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상하반기 일제조사 실시
 -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12.10.9)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 고소득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 필요('13년 국정감사)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소득자 지원문제 개선 추진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12.10. 보건복지부)

라. 총평 및 제언

〈표 17-9〉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16-나-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를 필요한 사업입 사업목표가 장기발전방향의 목표에 부합됨 보험료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 사업내용이 필요성과목표에 부합됨
집행	농식품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업체계를 구축 예산과 인력이 적절히 투입됨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다소 미흡
성과환류	성과목표가 초과하여 달성됨 보험료 지원을 넘어서 실질적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

- 도농간 소득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출에 대한 간접적 지원정책은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을 위해 중요

- 특히 계층별 접근시 소득수준별 차등보험료 부과체계 도입과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요구됨
- 소득이 적은 노인은 보험료보다는 보장수준 혹은 급여에 대한 확대가 더 효과적이며, 의료보장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험료와 더불어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노력들이 함께 간구될 필요가 있음

2. 농어업인 질환 예방 및 농어업인 건강 증진 지원(16-나-2)

가. 기획

- 농업인의 건강상태는 도시민에 비해 열악하고, 노령화와 기계 등을 이용한 영농 활동으로 각종 만성 질환을 앓고 있음
 - 유병율(10. 사회통계조사) : 농어촌 주민(25.3%), 도시민(19.7%)
- 농어업인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사업의 목적은 농어업인의 질환 예방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연차별 시행계획

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2010년	농어업인의 건강안전증진방안 마련
2011년	농어업인의 건강안전증진방안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2012년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 방안 마련
2013년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나. 집행

- 세부시행과제의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농업안전보건센터

○ 사업추진절차 : 센터공모(농식품부) ⇒ 센터 지정(농식품부 → 신청기관) ⇒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농식품부)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센터 → 농식품부)

□ 농어업질환 예방 및 농어업인 건강증진 지원 실적

년도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개소수	지정내역
2013	5개소	한양대, 강원대, 충북대, 조선대, 경상대

다. 성과환류

□ 농어업안전보건센터와 농업안전보건센터는 계획대로 모두 설치, 운영하여 목표를 달성함

라. 총평 및 제언

〈표 17-10〉 농어업인 질환 예방 및 농어업인 건강 증진 지원(16-나-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목표와 내용이 일관적으로 계획되고 수행됨 공공과 병원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협업과제로 적절한 체계를 갖춘 사업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음
집행	공공과 민간병원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체계는 바람직 계획 5년 중 마지막 해에 사업이 집행됨으로써 자원투입은 한계 초기 사업으로 집행관리에 대한 내용이 다소 미흡
성과환류	초기 사업으로 설치운영을 위한 성과지표의 의미가 다소 모호함 성과목표를 달성함, 초년 사업으로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지지 못함

□ 농어업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농어업 수행과정에서 서로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찾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은 진행되지 못함

○ 농어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작업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제3절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16-다)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6-다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	16-다-1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6-다-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확대
		16-다-3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지역균형 선발제 도입 권장)
		16-다-4	농어촌 유학 활성화

□ 정책환경 및 여건 변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소득수준 및 보육교육 여건은 농어촌 주민의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젊은 세대 이촌의 가장 큰 원인임
- (보육교육 접근성) 젊은세대의 이촌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공동화를 가속시켜 보육교육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악순환 유발
- (보육교육비 부담)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이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 지속 지원 필요
-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어촌의 교육 및 보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청장년들의 도시로의 이주를 완화하는 점은 일하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 (보육교육 활성화) 농어촌 보육교육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원, 농촌 유학 활성화 지원
 - (소규모 보육시설)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 사각지대 아동들의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 (보육교사 수당) 보육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보육시설의 애로를 완화하고, 농어촌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근무 수당 지원
 - (농어촌 유학)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 및 통폐합 등을 완화하고, 도농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를 위해 '10년부터 농어촌 유학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경감) 농어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및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의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양육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단가 상향 등 농어업인 보육비 부담 경감 지원 확대
 - (대학 학자금 지원) 농어촌 출신 자녀 대상 학자금 무이자 용자 확대로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
 - '12년부터 농식품부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복지부로, 복지부의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농식품부로 각각 이관

□ (목표) 농어촌 여건에 맞는 보육교육여건 개선 지원으로 보육교육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 및 보육교육비 부담 경감

- 농어촌 교육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세개의 세부시행과제들로 구성됨
 - 첫째,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 둘째,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확대
 - 셋째, 농어촌 유학 활성화
 - 위 사업중 농어업인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동 사업이 전국단위로 크게 확대 강화되면서 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되고 이후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변경됨
- 농어촌 교육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시기별로 적절하게 변경되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집행관리 등이 원활하게 수행됨

□ 세부시행과제 변동사항

- '12년부터 농식품부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복지부로, 복지부의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농식품부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변경
 - ('09~'11)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수준 확대 → ('12~'13)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 성과지표 : 성과지표 없음

- 사업 성과와 농어촌 발전측면에서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용자 지원사업이 과연 농어촌 및 농어업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필요
 - 단순 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농어업을 활용하고 이후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수행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이들 모두를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무이자 용자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공개하는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표 17-11>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16-다)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어촌의 교육 및 보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청장년들의 도시로의 이주를 완화하는 점은 일하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임
집행	농어촌 교육보육여건 개선 사업은 시기별로 적절하게 변경되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집행관리 등이 원활하게 수행됨
성과환류	사업 성과와 농어촌 발전측면에서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용자 지원사업이 과연 농어촌 및 농어업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

1.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16-다-1)

가. 기획

- 농어촌의 영유아 보육여건 악화와 양육부담 등으로 출산기피 및 탈농 심화
- 일부 농어촌 지역은 보육수요가 있으나, 적정수의 아동 확보가 어려워 민간 보육 시설의 진입이 제한적임

- 전체 읍·면 1,412개 중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 412개로 29.2% 차지('13,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또한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은 출퇴근 거리, 대중교통수단 등 도시지역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려움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수준 확대(2009~2011)
 - 사업내용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를 일부 지원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촌 사회의 활력을 유지
 - 총리 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7.8)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12년부터 이관됨
- 농어촌 보육여건개선(2012~2013)
 - 사업내용은 농어촌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농어촌의 보육여건을 개선

나. 집행

- 세부시행과제의 추진체계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수준 확대('09~'11)
 - 사업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 절차 : 농어업인(신청) → 이·통장(내용 확인) → 읍·면·동(지원 여부 확인) → 시·군·구(대상자 확정) → 보육료 지원
 - 총 사업기간(사업시행시기) : 2004년 ~ 계속

- 농어촌 보육여건개선('12~'13)
 - 사업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 총 사업기간(사업시행시기) : 2009년 ~ 계속
- 예산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수준 확대('09~'11)
 - 예산 : 재원형태 국비 50%, 지방비 50%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12~'13)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국비 70%, 지방비 30, (운영비) 국비 100%
 -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 국비 40~60%(재정자립도에 의한 차등지원), 지방비 40~60%

다. 성과환류

- 세부시행과제의 자체 점검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수준 확대('09~'11) : 양육비 지원 만족도 조사
 -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및 만족도 등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유형화된 설문지를 통해 매년 조사
 - 만족도 결과는 ('09) 70% → ('10) 75 → ('11) 86.7
 -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12~'13)
 - 사업설명회(시·도, 지역농협 등), 시·도 전문가 회의, 사업관련 기관 담당자 간담회 등 다각도의 사업개선방안 모색 및 의견수렴('12, 총 2회, '13, 총 7회)
- 세부시행과제의 제도개선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자 기준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

- 연차별 농외소득 제한요건 완화 : ('09) 3,500만원 미만 → ('10) 3,700 → ('11) 4,000
- 농어업인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중 시설 미이용 자녀의 지원비율 상향으로 농어업인 자녀의 보육지원 강화
 - ('10) 지원단가의 35% → ('11) 45%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액 상향
 - ('12) 개소당 130백만원 → ('12) 152백만원(차량구입비 등 추가 지원)
-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유지를 위해 운영비 지원 및 집행 세부기준 마련('13~)
 - 보육교사 교통신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개소당 최대 13,700천원 지원

라. 총평 및 제언

〈표 17-12〉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16-다-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촌 청장년층의 도시이주를 막고 인구유입을 도울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장기발전방향의 목표에 부응함 사업과 목표가 잘 연계됨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내용이 구성됨
집행	중앙 및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체계가 잘 구성됨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었지만, 예산 및 인력이 적절히 투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적절히 수행
성과환류	보육비 지원 및 보육여건 개선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히 성과지표가 설정 사업목표가 대부분 달성되었지만 일부가 미진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내용들이 원활히 진행

- 농어촌 인구 증대를 위해서는 청장년세대의 지속적인 유입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및 보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함
- 동 사업은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변경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향후 사업발전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양질의 보육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의 상향과 더불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간조직 육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보급 및 평가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용자 확대(16-다-2)

가. 기획

- 배경 및 여건변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소득수준 및 교육여건은 농어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 과중, 젊은세대 이촌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
 - 농가소득('12. 31,031천원)은 전국가구소득 대비 63.4%,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57.6%
 - 이촌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33.8%)이며, 특히 40대 이하는 더욱 높은 비율(30대이하 56.2%, 40대 55.9%) 차지(2011, 농촌생활지표조사)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대학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경향
 - 학자금 장기연체자의 회생·상환 지원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 증대
-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
 - 농어촌 주민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어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용자 지원 수혜학생 수 지속 확대
 - 수혜 규모 : ('09) 29천명 → ('10) 31 → ('11) 33 → ('12) 34 → ('13) 40
 - 사업시행기관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변경('09~)하여 장학재단의 타 학자금 지

원정책(교육부)과의 연계 강화

- 국가장학금과 공동 신청, 장학금 및 타 학자금 용자 제도와 의 이중수혜 방지 등
- 수혜자의 부담 경감 및 상환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도입
 - 졸업 후 상환 거치기간 연장('11년부터 1년 → 2년으로 연장), 장기연체자 대상 분할상환약정에 도입, 채권관리규정 제·개정 등

□ 개요

- 농어촌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무이자 용자 지원
 - 용자범위 확대 추이 : ('94~'00) 학기당 100만원 → ('01~'02) 학기당 150만원 → ('03) 학기당 200만원 → ('04) 등록금 범위 내 전액
-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후부터 용자분과 비례(1학기분을 1년 이내)하여 상환

나. 집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재)한국장학재단(위탁)
- (사업 추진체계) 사업 시행지침 확정 및 국고예산 출연(농식품부) → 학기별 용자 세부 시행계획 작성(한국장학재단, 농식품부 승인) → 용자신청(학생 → 한국장학재단) → 학사정보 입력(소속 대학) → 용자대상 심사(한국장학재단) → 용자 실시(한국장학재단 → 대학) → 용자실적 보고(한국장학재단 → 농식품부)

다. 성과환류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용자 신청자의 편의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장학금과의 신청 일원화, 신청기간 확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확대 등 추진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 (외부 지적사항)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거치기간 연장, 장기연체자 분할상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여 사업구조 개선방안 마련('10년 결산 시정 요구사항, 2011)
- (관련 제도 개선) 상환 거치기간 연장('11년부터 졸업 후 1년 → 2년으로 연장된 거치기간 적용), 농촌학자금 채권관리규정 제정('11), 장기연체자 분할상환 약정제 도입('13~'14) 등을 통한 사업운영 내실화, 관리 강화 및 수혜자 경감 부담 지원

라. 총평 및 제언

〈표 17-13〉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용자확대(16-다-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하고 향후 농어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장기발전방향과 부합 공공과 민간(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임 장학금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내용이 구성됨
집행	중도에 한국장학재단으로 일원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수행 재단을 통해 자원이 원활하게 집행 사업집행과정에서 점검 및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
성과환류	만족도가 중요한 성과지표이지만 조사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가 모두 달성됨 제도 개선 특히 장기 채무자 및 연체자 등에 대한 개선노력이 있었음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농촌출신 학생의 인적자본 형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을 위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임

- 하지만 외부지적사항에서 나오듯이 과다채무자 및 연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중요함. 졸업후 학자금을 상환하고자 해도 청년취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학자금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함

- 장기적으로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 이외에 동 인력들이 농촌에서 농어업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할 것임
-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농어촌 일자리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교생활속에서 그리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취업을 통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school to work을 위한 사업들이 함께 수행되어야 함

3.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16-다-3)

가. 기획

- 배경 및 여건변화
 - 학생선발에 있어 지역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대학진학을 위해 수도권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수요 경감 필요
 - 지역균형선발제 관련 공정성·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12년부터는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균형인재선발 확대 유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4.7 제정 예정)
- 학생선발에 있어 지역적 다양성 확대 유도를 통해 대학과 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
 - 개별 대학에서 매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수립 후 지역 학생 선발

나. 집행

- 세부시행과제의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교육부(대학의 학생선발 정책 기획·총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협력)
 - 집행기관 : 개별 대학(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입전형

- 기본사항 마련 및 개별대학의 전형시행계획 심의)
 - 직무교육 실적
 - 매년 전국대학 입학처장 협의회(3월), 입학관리자 협의회(5월), 입학실무자 협의회(6월) 참석 및 대입정책 주요사항 설명
- 세부시행과제의 집행관리
 - 매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및 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발표 등에 대한 사전협의 수시 진행
 - 대학 독자적기준에 따른 지역균형선발 전형시행계획을 심의 후 확정토록 변경('12년)
 - 매년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등 지역균형 선발제 관련 내용 반영
- 세부시행과제의 예산 및 추진 실적 : 비예산 사업

다. 성과환류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
 - 성과목표 : 지역균형선발제 학생선발
 - 농어촌 학생의 고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 입학에서 '지역균형선발제 학생선발'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 성과지표는 지역균형선발제를 통해 선발하는 대학 수 및 학생 수
- 성과지표 달성치의 설정 근거
 - 지역균형선발제 선발 대학수 62교 이상, 선발비율을 입학정원 대비 연도별 1.7%(6,000명 내외) 이상 목표 설정
 - 단, 지역균형선발제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2012년부터

목표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2,000명 내외)

*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개별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부의 직접 추진이 어려운 점 고려

□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연도별 현황

○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를 연도별로 작성

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률)
2009년	지역균형선발제 학생선발	선발대학 수 및 선발학생수	62교, 6,000명	62교(100%) 6,000명(100%)
2010년	지역균형선발제 학생선발	선발대학 수 및 선발학생수	62교, 6,000명	58교(93.5%) 6,003명(100%)
2011년	지역균형선발제 학생선발	선발대학 수 및 선발학생수	65교, 6,500명	71교(109%) 7,613명(117%)
2012년	지역균형선발제 학생선발	선발대학 수 및 선발학생수	65교, 6,500명	65교(100%) 7,894명(121%)
2013년	지역균형선발제 학생선발	선발 학생수	2,500명	2,017명(80.7%)

□ 성과지표 달성도

○ 지역균형선발제에 대한 공정성·형평성 논란으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대교협에서 심사 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13년 달성율이 80.7%로 '09년~'12년에 비해 다소 떨어짐

□ 세부시행과제의 성과지표와 중점추진과제의 성과지표간의 관련성

○ 대학이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고르게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지역균형선발제 선발학생수' 성과지표는 중점추진과제인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직접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임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고등교육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부에서 지역균형선발제를 직접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 특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지역균형선발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입학관리자 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권장

○ 또한, 시행을 위한 근거 법령을 제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14.1.28)하여, 지역인재를 적극 선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 지역균형선발제가 대학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지원자격, 지역범위 설정등에 대한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 공정한 지역균형선발제 추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대교협에서 전형계획 심사를 통해 공정성이 확보된 전형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법령에 근거를 마련(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4.1.28)

라. 총평 및 제언

〈표 17-14〉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16-다-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지방출신 학생들의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하고 주요한 지방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사업임 국가 균형발전과 도농간의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가 적절 직접 사업이기 보다는 대학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수단에 한계 사업내용은 목적에 맞게 구성
집행	교육부 계획하에 대학의 자율형 사업임 비예산 사업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환류	성과지표는 바람직하게 설정 성과에 있어 다소 미흡 사업개선을 위한 일부 개선의 노력이 있음

□ 국내 대학진학에 있어 지역간 균형선발은 국가 발전과 지역간 학력격차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주요한 사업임

- 대학 선발결과에서도 주요 대학에 특정지역 출신이 과도하게 선발되는 문제들이 지적된 바가 있음.
- 지역 불균형적 대학 진학은 지역간 불신, 공교육에 대한 신뢰 상실, 거주이동에 따른 주택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함
- 위와 같은 측면에서 현재의 지역균형선발 사업은 교육에 있어 지역간 양극화 문제를 줄이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사업임

□ 자료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 및 홍보에는 한계가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점과 지역간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초하여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

4. 농어촌 유학 활성화(16-다-4)

가. 기획

□ 배경 및 여건변화

-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 및 통폐합 등 농어촌 학교 위축 가속화
 - 농어촌 지역 학생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 : ('05) 27% → ('13) 45%
- 도시 아이들의 인성함양 등을 위한 농어촌 체험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일본 산촌유학의 영향을 받은 농어촌유학시설이 자생적으로 발생·운영되기 시작
-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력 제고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원 필요성 확대
 - 농어촌유학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가 필수
- 청소년활동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관심 증대

□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

- 농어촌유학 지원 시범사업 도입추진 및 지원대상 확대
 - 지원규모 : ('10) 3개소, 99백만원 → ('11) 5,200 → ('12) 12,200(농가 5,40 포함) → ('13) 13,375
-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해 지원방식 변경
 - ('10~'12)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한국농어촌공사) → ('13) 지자체경상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농어촌 유학의 안전성 제고 및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인증제와의 연계 추진

□ 개요

- 도시 아이들이 장기간(6개월 이상) 농어촌의 생활 및 학교를 체험하는 농어촌 유학을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10~)
 - 유학시설의 교사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컨설팅·홍보·교육비, 시설 개보수비 등 농어촌유학시설 운영을 위한 전반 비용 지원
- 농어촌 예비유학과정 등을 활용한 농어촌유학 홍보 및 관계자 교육·워크숍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유학 내실화 및 역량제고 추진

나. 집행

□ 세부시행과제의 추진체계 및 시행 절차과정

- 시행주체 : 시장·군수, 농어촌공사
 - 추진체계 변경 :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민간경상보조 ('10~'12, 국고 100%, 한국농어촌공사) 방식에서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방식으로 지원 방식 및 추진체계 변경
- (사업 추진체계) 사업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신청서 제출(농촌유학시설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구성·심사) → 자금배정 및 사업추진(농식품부 → 지자체 → 유학시설) → 정산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시도 → 농식품부)

- ('13년 불용 사유) 농어촌유학의 내실화를 위해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지역-학교-유학시설 간 운영규약 제정·적용, 조직성(법인격 등) 등 지원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시설 부족
 - '10~'12년의 시범사업 기간은 농어촌유학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 '13년부터는 농어촌유학 운영 역량 제고 및 내실화에 초점
 - '14년에는 유학시설들이 지역-학교와의 운영규약 제정 및 조직성 등을 강화하여 신청, 불용이 미발생('14. 16개소, 640백만원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유학 역량 제고에 기여

다. 성과환류

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달성률)
2010년	농어촌유학시설 지원을 통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개소수	3	3(100.0%)
2011년			5	5(100.0%)
2012년			7	7(100.0%)
2013년			16	13(81.3%)

- ('13년 미달성 이유) 농어촌유학의 내실화를 위해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지역-학교-유학시설 간 운영규약 제정·적용, 조직성(법인격 등) 등 지원조건을 강화함에 따라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시설 부족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재정방식 변경(민간경상보조 → 지자체보조)
- 농어촌유학시설과 지역 학교·공동체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역, 학교와 연계한 유학시설 프로그램 지원, 지원자격 요건에 유학시설-학교-마을 간 운영규약 작성·적용 규정 및 지원대상 선정 시 지역 등과의

연계 항목 평가 등

- 농어촌유학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활동인증제와의 연계 추진
 - 농어촌유학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인증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 지원, 선정시 청소년 활동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라. 총평 및 제언

〈표 17-15〉 농어촌 유학 활성화(16-다-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촌농어업의 가치를 도시청소년들에게 알리고, 농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음 국가 균형발전과 도농간 사회보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발전방향과 일치 도시 청소년을 유도하는 사업은 의미 있지만, 다소 미흡 사업내용은 적절하게 수행
집행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가 바람직 예산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활성화를 위한 여러 자원투입방안 마련이 요구(민간 전문기관 협업 등) 대한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등이 함께 잘 집행되고 있음
성과환류	성과를 위한 지표는 바람직하게 설정 일부 연도에 있어 성과가 다소 미흡 사업개선을 위한 일부 개선의 노력이 있음

- 도시 청소년들에게 농촌 및 농어업이 가지는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농촌 유학활성화 사업은 매우 바람직. 특히 농촌의 학교들이 소학교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유치는 농촌 학교 안정화에도 기여

-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 충분한 홍보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도시 청소년들의 경우 방과후에도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학습단체 등과 연계된 방과후 프로그램위 내실화 노력이 있었으면 함

- 농촌 유학이후 학생들이 도시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지속해서 농촌학교와 관계를 가지고 농어촌 및 농어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각종 사업 혹은 자원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함

제4절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16-라)

중점추진과제		세부시행과제	
16-라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	16-라-1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16-라-2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16-라-3	농어촌 고령자 주거여건 개선
		16-라-4	이민여성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

□ 정책 환경 및 여건

-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 다문화가정 증가 등으로 복지욕구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복지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
- 지속가능한 농어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복지서비스 보장 필요

□ 농어촌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농어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 있는 사업임

- 농어촌의 특성으로 고령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이들 취약계층과 영농을 돕기 위한 각종 도우미 지원 및 영농교육 사업들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농어촌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된 농어촌 서비스 확대는 4개의 세부시행과제로 구성됨

- 농어촌서비스 기준도입, 취약농가인력지원, 농어촌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이민여성 농촌정착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 성과지표로 설정된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가구수는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로는 맞지만 중점추진과제를 대표하는 성과지표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의 농어촌 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기준으로 하는 성과지표 개발과 이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이 동 사업의 의미를 좀 더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17-16〉 농어촌 복지서비스 확대(16-라)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촌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농어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 있는 사업임
집행	농어촌의 특성으로 고령화,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이들 취약계층과 영농을 돕기 위한 각종 도우미 지원 및 영농교육 사업들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성과환류	성과지표로 설정된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가구수는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로는 맞지만 중점추진과제를 대표하는 성과지표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 농어촌서비스 기준 운용(16-라-1)

가. 기획

-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촌 고령화,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04.12) 및 범정부적 삶의 질 대책 수립추진
- 농어촌 복지·교육·생활인프라 개선 등 범부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어촌간 공공서비스 수준 격차 여전
 - 의료서비스 도시집중도('08) : 종합병원(93.6%), 병상수(89.5%), 의료인력(88%)
 - 상/하수도 보급률('07) : 도시(97.6%/89.9%), 군(65.7%/45.7%)

□ 낮은 인구밀도, 기초인프라 미흡 등 농어촌과 도시의 생활여건 격차를 감안한 정책 성과목표 설정 및 정책선진화 추구 필요

□ 주민, 지자체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목표치로 제시하

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 추진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운용('11) 이후에도 강력범죄 등 치안안전 여건에 대한 정책적 요구 증가, 농어촌 학교 활성화를 위한 요구 등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정책 수요 변화를 감안하여 지속적 수정·보완 추진

□ 개요

-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항목 및 항목별 최소기준(national minimum)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성도를 점검·평가

나. 집행

□ 세부시행과제의 추진체계

- 서비스기준의 수립·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13개부처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9명
- 서비스기준 수립 및 점검평가 자문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 이행 실태조사, 결과분석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세부시행과제의 시행 절차 및 과정

- 농어촌서비스기준 수립·고시 →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통계자료 수집(전문지원기관) → 항목별·지역별 통계자료 분석·평가(전문지원기관) → 평가결과 보고(위원회), 통보(관계부처 및 지자체) → 정책반영(관계 부처 및 지자체)

□ 세부시행과제의 집행관리(홍보, 모니터링, 제도개선 등)

-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평가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업무 위탁
- 홍보 :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대한 리플릿 배포 등 홍보('10.1월~)

- 농어촌서비스기준(주거, 교통 등 8개 분야 31개 기준)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농어촌 정책추진 시 가이드라인 역할
- '2011~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결과' 책자 배포(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다. 성과환류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09.12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운용방안 마련('10.6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법적근거 마련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고시('11.1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구성 및 개최('11.7월)
 - '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11.10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통계 취합 및 DB구축('12.9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목표치 수정·보완('12.10월)
 - '1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12.12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예산반영 현황 조사('13.6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개선 사례 발굴('13.6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개최
 -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목표치 수정·보완에 따른 시행령 개정
 - 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13.12월)
-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
- 도·농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 세미나('11.6월)

- 도·농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11.6월)
- 제1차, 제2차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개최('11.7월, '11.12월)
- 정책토론회 개최(관계부처, 전문가 등 17명)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11.12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개최('12.10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12.10월)
-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정책 우수사례 발표('12.11월)
-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정책 개선 사례 발굴('13.6월)
- 농촌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13.7~12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개최('13.9월)
-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13.10~12월)

라. 총평 및 제언

〈표 17-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운용(16-라-1)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열악한 농어촌의 기반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인 농어촌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적절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수단은 부족함 현재 실태조사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담아내고 있지는 못함
집행	농식품부와 전문연구기관이 중심이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형태로 바람직 연구중심 사업으로 자원 투입이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사업수행을 위한 지표개발, 모니터링,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됨
성과환류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향후 요구됨 성과를 달성함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됨

□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도시에 비해 취약한 농어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농격

차를 해소하기 위한 농어촌 사회보장의 핵심적 과제임

- 현재는 초기 사업으로 조사와 통계를 중심으로 한 평가보고서 발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실질적인 농어촌과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즉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사회보장 및 생활기반에 대한 조사 및 통계가 산개되고 정리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 기준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은 향후 농어촌 발전의 기반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2.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6-라-2)

가. 기획

- 농어업인 고령화로 인한 질병, 농기계 등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농어업인 존재
 - 65세 이상 농가인구 고령화율: ('06) 30.8%→('10) 31.8%

□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취약농가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가사영농도우미 지원

나. 집행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농식품부, 농협
 - 사업시행 절차 : 도우미 신청(농업인) → 지원대상 선정(지역농협) → 도우미파견 (지역농협) → 도우미 임금지급(지역농협)

다. 성과환류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확대

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 (달성률)
2009년	영농·가사도우미 지원규모 연차적 확대	수혜자 만족도	89	89
2010년	상 동	수혜자 만족도	90	90
2011년	상 동	수혜자 만족도	91	91
2012년	상 동	수혜자 만족도	91	90
2013년	상 동	수혜자 만족도	91	91.2 (100.0%)

라. 총평 및 제언

〈표 17-18〉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6-라-2)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영농 및 가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사업임 사업목표와 내용이 분명함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잘 설정됨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내용구성은 명확하지만, 그 지원내용에 있어 한계가 있음
집행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으로 민간협력 사업으로 추진체계가 명확함 예산과 자원이 적절히 투입 사업수행시 모니터링, 평가 등이 미흡함
성과환류	사업특성상 만족도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목표수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검토 필요 본래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발견되지 못함

□ 영농 및 가사도우미는 사고 등으로 인해 농업 및 가사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재해보상과 더불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지원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음

○ 오랜 기간 사업이 수행됨으로써 성과지표와 같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주요한 필요 사업으로 판단됨

□ 하지만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지원일수 등이 제한적이며, 참여자에 대한 급여 등 사업수행을 위한 여건은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주기적으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성과 발전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3. 농어촌 고령자 주거여건 개선(16-라-3)

가. 기획

□ 농어촌 지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64만동으로 20.6%에 이르며, 이는 도시 지역 6.6%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10, 통계청)

○ 노후주택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개량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나, 경제적 취약계층은 융자금 상환능력 부재로 사업대상에서 사실상 제외

○ 자력으로 주택을 개보수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등 농어촌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필요

□ 정부중심이 아닌 민간중심의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해 다솜동지복지재단을 설립 ('07)하여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나. 집행

□ 사업의 시행 주체는 (재)다솜동지복지재단

○ 시행절차 : 사업계획수립·기부금모금(다솜동지복지재단) → 마사회특별적립금 지원(농식품부) →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추진(한국농촌건축학회, 한국농어촌공사, 주거복지공동체, 어업관리단) → 성과보고 및 정산(다솜동지복지)

재단)

□ 집행관리(홍보, 제도개선, 모니터링 등)

○ 홍보실적

- (TV) KBS 사랑의 가족, 6시 내고향, 러브인아시아 및 MBC 파워매거진, 뉴스투데이 등 공중파에 10여 차례 홍보영상 방영
- (지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문, 아시아경제, 내일신문, 시사투데이 등 50여 차례 신문보도
- (캠페인) 광화문 거리 캠페인 진행

○ 홍보에 따른 성과 : 후원회원 및 후원금, 봉사활동 참여자 증가

다. 성과환류

□ 자체 점검 및 제도 개선 실적

○ 집 고쳐주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0년부터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 운영하고, 기획과제시리즈를 발행하여 배포

라. 총평 및 제언

□ 사업필요성에서 지적하듯이 농어촌의 노후주택은 64만동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취약한 상황임

○ 정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개량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용자사업으로 저소득 및 주거빈곤 가구는 동 사업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하고자 해도 사업 물량이 적어 실제 참여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수행하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며, 장려될 사업임

○ 하지만 농어촌의 노후주택 규모와 비교시 사업물량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향후 사업물량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

○ 재원이 마사회적립금을 활용함으로 사업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은 실정

□ 정부차원에서 농어촌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점에서 기존 타부처의 주택개량사업과 연계를 통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나가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임

〈표 17-19〉 농어촌 고령자 주거여건 개선(16-라-3)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64만호에 이르는 농어촌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목표는 명확하고 장기발전방향과 부합됨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아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 사업내용은 적절하지만 필요성에 제시된 64만호와 비교시 매우 부족한 상황임
집행	농식품부가 수립하고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민간협력 사업임 국비보다는 마사회 적립금 등을 활용하고 있음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잘 수행됨
성과환류	노후주택 개선이란 점에서 주택개보수를 성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목표가 낮게 설정됨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농어촌 노후주택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됨

4. 이민여성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16-라-4)

가. 기획

□ 농촌은 국제결혼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으며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전체 혼인건수 중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혼인비율('13) : 읍·면 8.9%, 전국 5.7
- 다문화 농가인구(통계청) : ('11) 63천명 → ('12) 66천명 → ('13) 67천명

- 결혼이민여성의 영농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필요
- 사업내용 : 농촌 결혼이민자에게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

나. 집행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농협중앙회
- 세부시행과제의 모니터링
 - 농촌 이민여성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이민여성의 농업인력화를 위한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마련, 이민여성 농업인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다. 성과환류

- 세부시행과제의 자체 점검
 - 이민여성 맞춤형 영농교육 만족도 조사
 - 사업추진의 효과성 및 만족도, 사업성과 등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유형화된 설문지를 통해 매년 조사
 - ('10) 91.4% → ('11) 89.5 → ('12) 91 → ('13) 94
- 세부시행과제의 제도개선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품목별 영농시기에 맞춘 1:1 교육을 통해 전문 여성농업인의 재배기술 노하우 전수
 - 교육생 수요를 반영하여 전통식품 제조, 농식품 가공기술 등 농업교육 프로

그림 다양화

- 1:1 맞춤형 영농교육 후견인을 위한 농업교육 교수법 등 사전교육 강화

라. 총평 및 제언

〈표 17-20〉 이민여성 맞춤형 영농교육 확대(16-라-4) : 영역별 평가결과

영역	평가결과
기획	농어촌 결혼이민여성의 증가에 맞추어 이들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입 목표는 명확하며 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은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목표는 적절한 사업수행을 위한 수단도 적절함 늘어나는 결혼이민자에 비해 참여자 규모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됨
집행	농협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민간사업으로 정부개입이 요구됨 예산과 관련 인력이 적절히 투입됨 사업집행과 관리가 시기에 맞게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
성과환류	사업에 맞추어 지표가 설정됨 초년도를 제외하고 목표가 잘 달성됨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들이 있었으며, 정부의 적극적 참여(예산, 인력지원 등)가 필요함

-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이들 여성들이 농어촌에서 주요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 여성들에 대한 영농교육은 시의적절하고 주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단순히 영농사업만을 통해 이민여성들이 국내에 정착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민간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영농교육이외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
-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 역시 농어촌에 남을 수 있는 주요한 인적자본이라는 점에서 그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함께 발굴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임



제1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야별 평가결과 정리
제2절 평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제1절 분야별 평가결과 정리

□ 보육가족 : 중점 추진과제 4, 세부 시행과제 16

- 성과지표 5개 중 '평가인증 보유시설 비율'과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률' 등의 2개의 성과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평가인증 보유시설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2009년, 39.5%→2013년, 68.8%)하였으며,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률 역시 지속적인 상승하였으나, 실적에 비해 목표치를 높게 설정함
- 보육가족 분야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
 - 합계출산율: 1.15('09), 1.23('10), 1.24('11), 1.3('12), 1.19('13)

□ 아동·청소년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9

- 아동 보호와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안전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분야 사업의 성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개의 성과지표 중 '복지예산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의 비율'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분야의 재정투입이 미흡하였음을 의미
-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규정의 혼재, 분절적 사업 편제, 유사한 사업을 부처별로 분리 집행(방과 후 돌봄) 등으로 사업의 구조조정과 재설계 요청됨

□ 노인 : 중점 추진과제 4, 세부 시행과제 11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중에서 예방적 보건서비스와 재가 돌봄서비스

스는 원만한 사업 추진과 상당한 성과를 보임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노인보호, 사회참여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이는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예산확보의 어려움에서 기인
 - 자원봉사, 여가 등 사회참여 지원은 정책 내용과 우선순위의 재검토 필요

□ 장애인 : 중점 추진과제 4, 세부 시행과제 8

- 재정투입의 우선순위가 낮아 장애인 분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
 -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되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의 급여 인상과 대상자 확대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함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대신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대체되면서,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욕구가 활동지원제도에 집중되는 부작용 초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소규모 시설과 그룹 홈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흡
- 활동지원 중심의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강조는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

□ 일자리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7

- 일자리는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서 근로자복지와 더불어 가장 강조한 분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
 -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목표를 달성
 -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자활사업의 취업성공률 강조는 바람직
-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며, 향후 사업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위한 개편이 필요

□ 소득보장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9

- 소득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국민연금제도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체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 연금제도 재구조화를 통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 제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간의 연계성 제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은 가시적 성과가 없이 차기로 미루어짐

- 현행 소득보장제도는 빈곤율 감소, 소득격차 완화에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개혁이 시급
- 성과지표인 비수급 빈곤층 규모,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률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필요

□ 의료보장 : 중점 추진과제 2, 세부 시행과제 7

- 의료보장성 강화와 제도의 재정안정화라는 상반된 목적을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에서 정책추진의 난이도가 높은 영역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재정안정화는 상당한 성과를 나타냄
 - 의료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성과를 보임
- 의료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며,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검토가 시급

□ 복지전달체계 : 중점 추진과제 5, 세부 시행과제 14개

-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과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행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
 - 분권교부세 제도의 개선은 논의에 국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의 과중함은 완화되지 않음
 - 사회서비스 관리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은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차기로 미루어짐

□ 민간자원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8

- 공공영역의 복지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영역의 복지자원 개발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둠
 - 개인과 기업의 모금과 기부는 당초 의도한 목표를 초과 달성
- 자원봉사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으며, 부처 간 연계 또는 조정 필요
- 사회복지시설 평가, 서비스 품질관리, 민간전달체계 개편 등은 별다른 변화 없이 이전의 관행을 답습하는 양상일 보임

□ 교육복지 : 중점 추진과제 5, 세부 시행과제 14

- 교육복지 분야는 학교급식비 지원과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과 성과가 미흡
- 근로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 Wee 프로그램, 장애아동 교육지원 등의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
 - 사업과 관련된 부처가 많은 상황에서 부처 간 연계·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무부처의 관심도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교육복지 분야는 주무부처의 변경 등을 포함하여 구조조정이 필요

□ 근로자복지 : 중점 추진과제 6, 세부 시행과제 18

- 근로자복지는 당초 6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11개의 세부 시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시행 첫해에 중점 추진과제 3개와 세부시행과제 7개를 추가
-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었으며,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둠
 -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은 2008~9년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함에 따라 정책 수요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이후에 근로자복지 분야는 신규 사업 추가, 투입재정 증가 등으로 큰 폭의 계획 변동이 진행

- 사업량의 증가와 목표의 상향 조정으로 초기에 집행의 어려움을 겪음
-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퇴직연금 도입 등은 기업의 협조 없이 현재의 정책만으로 성과의 제고가 제한적

□ 주거복지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시행과제 10

- 주거복지 분야는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지원, 그리고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주요 내용하는 사업으로 구성
- 임대주택 공급은 5년간 목표 대비 실적이 85.9%로 양적 목표달성에는 미흡
 - 매입·전세 방식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은 목표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맞춤형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임대주택공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향후 맞춤형 임대주택 뿐 아니라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전세자금 지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
 - 전세자금 지원의 목표 대비 실적은 111.4%이며, 80만 8천 가구를 지원
 - 향후 지원가구 및 용자금 상향조정, 수요자 중심의 제도설계 노력 필요

□ 에너지복지 : 중점 추진과제 1, 세부 시행과제 3

- 에너지 분야는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보장을 위한 요금감면 및 공급중단 유예,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구성
 - 에너지 이용보장 사업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회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부담과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부처와 연계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복지 : 중점 추진과제 3, 세부 시행과제 7

-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과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

- 문화바우처와 복지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대상자 확대는 주목할 성과이나, 대상자 확대에 의한 제도의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실화가 필요
- 여성복지 : 중점 추진과제 2, 세부 시행과제 4
 - 성매매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시행과제가 모두 전반적으로 잘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의 발생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 사후적 피해자 지원에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사전적 대책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시급
- 농어촌복지 : 중점 추진과제 4, 세부 시행과제 16
 - 농어업인 생활안정 지원과 의료보장 확대는 상대적으로 잘 추진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반면에 농어촌 보육교육 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흡
 - 보육·교육 지원은 주로 현금지원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 확충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한계를 보임
 -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사업은 다른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조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
 - 농업·어업 담당부처, 사회정책 담당부처,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정기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

〈표 18-1〉 16개 분야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

분야	성과지표명	달성도(목표치 / 달성치)	
		2009년	2013년
보육가족	평가인증 보육시설(%)	50 / 39.5	75 / 68.8
	가족친화 인증기업(개)	31 / 34	140 / 522
	가족친화자수(점)	45 / 49	51 / 58 (201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자립성공률(%)	62 / -	66 / 79.8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률(%)	35 / 13	50 / 27.4
아동청소년	복지예산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0.12 / -	2.32 / 1.18
	드림스타트사업 수혜 아동(천명)	22.5 / 26.2	75 / 95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수혜 청소년(천명)	90 / 98	170 / 183
	안전사고 사망 아동(십만명당 명)	5.8 / 6.2	5.0 / 4.6
노인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노인인구 대비 %)	5.6 / 5.4	9.6 / 6.1
	치매검진 인원(천명)	630 / 690	840 / 2,250
	(노인) 자원봉사 활동자(천명)	50 / -	180 / -
	노인 여가 활동 지원(천명)	10 / -	100 / -
	노인돌봄서비스 수혜 인원(천명)	130 / 130	200 / 313
	노인보호전문기관(개)	20 / 20	32 / 25
장애인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수당 수급비율(%)	21 / 20	30 / 25
	1급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수급비율(%)	11 / -	30 / 36.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4 / -	80 / -
	장애인주거시설 중 소규모 및 그룹홈 비율(%)	25 / -	15 / -
일자리	보건복지 사회서비스일자리 취업자 비중(%)	3.9 / -	5.0 / 6.3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성공률(%)	14.0 / 16.9	20.0 / 31.8
	장애인 보호고용률(%)	1.17 / -	1.80 / -
소득보장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 빈곤층 규모(%)	2.1 / -	1.7 / -
	공적연금 노후소득 보장율(%)	80 / -	85 / -

〈표 18-1〉 16개 분야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계속)

분야	성과지표명	달성도(목표치 / 달성치)	
		2009년	2013년
의료보장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세대 비율(%)	25.1 / -	24.5 / 25.8
	암환자 보장률(%)	75 / -	80 /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비율(%)	1.9 / 7.5	8.3 / 20.4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일)	15 / -	15 / 12
복지 전달체계	중점서비스 연계대상자 비율(%)	1 / - (2010)	7 / -
	부적정 급여율(%)	10.8 / -	7.7 / -
민간자원	개인기부금(억원)	460 / 468	673 / 1,917
	사회복지분야 기업기부금(조원)	1.1 / 2.7	2.0 / 3.2 (2012)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참가인원(만명)	300 / 108	500 / 138
교육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만명)	155 / 155	180 / 187
	근로장학금 지원(백억원)	12 / -	9.3 / 8.1 (2011)
	학자금대출 지원 인원(만명)	35 / -	107 / 29.5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학교 수(개)	1,440 / -	1,440 / - (201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수혜율(%)	65 / - (2010)	75 / - (2012)
	다문화가정 학생 입학초기 적응교육 만족도(%)	70 / -	80 / -
	다문화가정 학생 중도탈락율(%)	6.1 / -	4.0 / -
	wee클래스 확대 개소 수(개)	1,000 / 1,000	1,000 / 640 (2011)
	wee 센터 확대 개소 수(개)	49 / 49	50 / 16 (2011)
	wee 스쿨 확대 개소 수(개)	2 / 5 (2010)	8 / 2 (2011)
	농산어촌 돌봄학교 지원수(개)	378 / -	378 / - (2011)
	농산어촌 전문학교 지원수(개)	110 / -	22 / 93 (2011)
	유치원 종일반 운영률(%)	95 / 100	100 / 100 (2012)
	장애영아 학급 운영(학급수)	53 / 70 (2010)	159 / 92 (2012)

〈표 18-1〉 16개 분야별 성과지표 및 달성도(계속)

분야	성과지표명	달성도(목표치 / 달성치)	
		2009년	2013년
근로자	저소득비정규직 생활안정자금 대부(억원)	320 / 246	340 / 425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자금 대부(억원)	2,200 / 1,084	200 / 177
	임금체불 근로자 체당금 지원(억원)	2,802 / 3,080	2,443 / 2,239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억원)	178 / 424	193 / 158
	우리사주 취득금액(조원)	4.7 / 4.6	6.9 / 5.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기금액(조원)	7.7 / 6.3	9.4 / 9.4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률(%)	7.9 / 11	10.6 / 14 (2012)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15 / 32.5	25 / 36 (2011)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도입사업장(개)	10 / 4 (2010)	23 / 9
	산업재해율(%)	0.68 / 0.7	0.59 / 0.59 (2012)
주거	업무상 질병자 수(천명)	10.5 / 8.7	9.6 / 7.4 (2012)
	장기공공임대 공급 물량(천호)	62.5 / 59.5	65.0 / 65.2
에너지	전세자금지원 이용자수(천명)	169.7 / 145.0	145.0 / 155.1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천가구)	65 / 64	80 / 49.6
문화체육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천명)	200 / 296	280 / 1,639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천명)	22 / 9	26 / 35
	복지관광 참가자 수(천명)	4.6 / 4.6	6.5 / 6.8
	생활체육 참여율(%)	35 / -	39 / 45.5
여성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7 / 7	10 / 12.3
	성매매방지정책 만족도(%)	67 / 69.7	71 / 72 (2011)
	성가정 폭력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82 / 84	86 / 86
농어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자의 납기 내 징수율(%)	85 / 88	90 / 91
	세대당 건강보험료 지원액(원/월)	49,000 / 50,729	55,000 / 68,728
	영농도우미 지원(천 가구)	13 / 11.8	20 / 15.6
	가사도우미 지원(천 가구)	18 / 19.4	20 / 12

제2절 평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 사회보장 전략계획으로서 위상을 정립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현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영역의 기본계획이며 동시에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짐
 - 전략계획이란 계획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을 체계화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며,
 -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하는 일련의 계획을 의미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전략계획이 아닌 사업목록의 성격이 강함
 - 정책적 맥락과 비전 그리고 계획의 방향성간의 정합성이 부족하며, 목표와 수단(추진과제)간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추진 전략과 우선순위가 부재
 - 재정투자계획은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향후에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추상적 논의에 국한
 - 국가 차원의 전략계획이라 하기에는 추진과제가 너무 많고(추진과제 55, 시행과제 174), 이로 인하여 추진과제 집행의 총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 향후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전략계획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한 보완 필요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현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체계화
 - 추진 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재배치하고, 핵심과제 중심으로 사업의 개수를 대폭 축소
 - 계획의 목표(비전, 지향성, 이념)과 수단(추진과제, 시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지도(map) 작성

□ 성과지표의 설정의 문제점과 총괄 성과지표의 부재

- 정책 산출(output)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은 개선이 필요
 - 분야별·사업별 성과지표로 대상자(수급자) 증가, 복지시설 및 제공기관 확

충, 투입 예산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정책 성과(outcome)보다는 정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에 해당하는 지표
- 제시한 지표들이 달성이 되었을 때 장기발전방향에서 제시된 정책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어떠한 거시지표가 그러한 변화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
- 향후에 총괄 지표부터 개별영역 지표들까지의 흐름도(flow chart)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총괄 성과지표의 부재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정책여건(맥락)부터 비전과 목표 그리고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분야별 그리고 과제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하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지표의 합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

○ 국가적 차원의 총괄 성과지표 설정의 중요성

- 거시적 총괄 성과지표는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정책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님
- 사회보장정책은 조세정책과 경제정책 등과 결합된 상황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사회지표 개선을 위해서 다른 정부 영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총괄적 성과지표는 중요
- 총괄 성과지표의 부재로 각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roadmap)이 제시되지 못함

- 향후에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핵심정책과 과제가 있고, 어떠한 주체들이 추진할 것이며, 세부 성과지표는 무엇이며, 투입재정 규모는 어떠한고, 결과적으로 어떤 거시적 성과지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계획 수립을 ‘구체적 총론과 추상적 각론’의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 현행 ‘추상적 총론과 구체적 각론’방식의 문제점
 -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총론은 추상적인 비전과 목표를 서술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반면에 각론은 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제시와 년 단위 성과지표를 설정
 - 현행 방식은 사회보장정책의 결정 및 총괄집행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고, 사업의 집행주체에 대해서는 재량(discretion)을 줄이고 책무성을 강하게 부여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성 부족과 집행 단계의 자율성을 제약
- ‘구체적 총론과 추상적 각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비전이란 계획을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5년 후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합의된 목표(agreed objective)이며 전략과 우선순위의 설정 기준이 됨
 - 성과지표는 계획과 정책의 산출과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이며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
 - 추진전략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시행과제의 수를 대폭 축소
- 총괄집행 주체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부여하여 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정책조정을 담당하고, 사업별 집행주체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제고